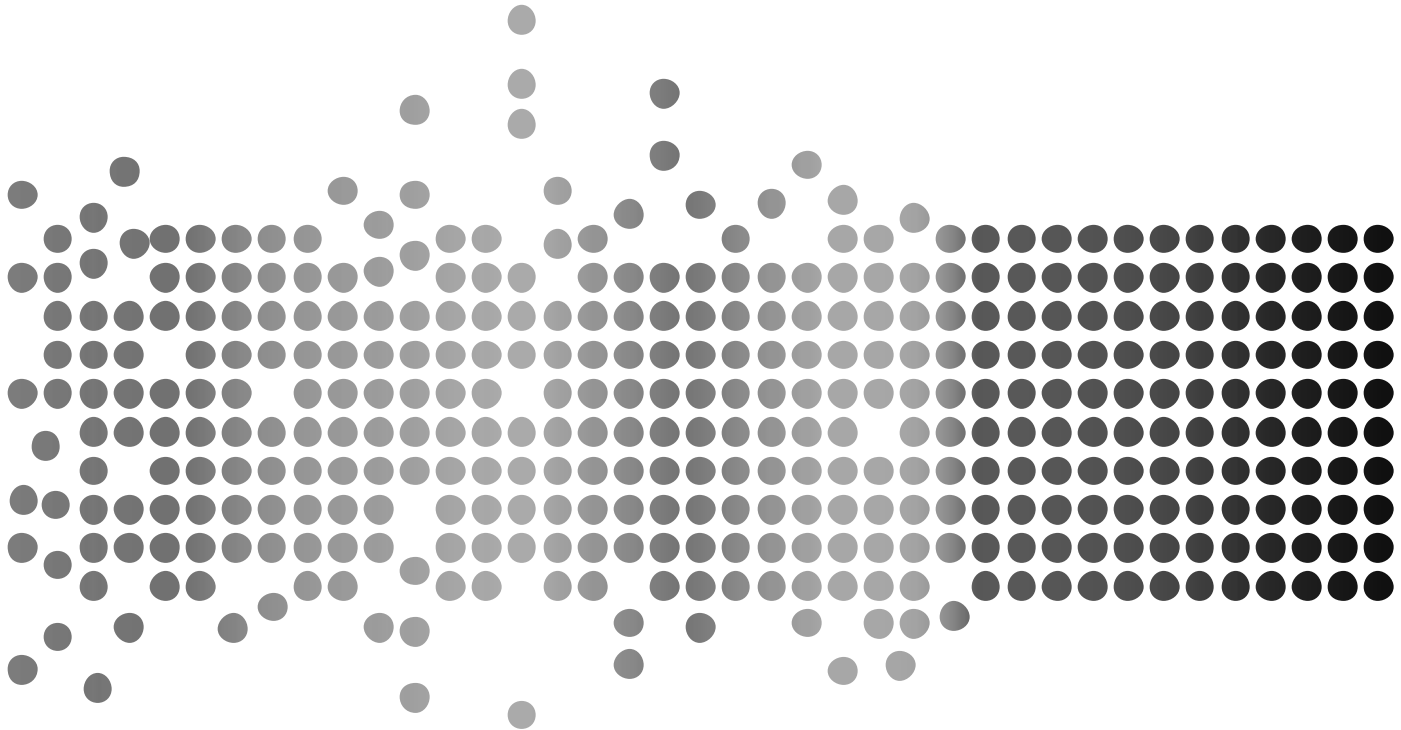


2011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본 한국의 사회지표

Development of Social Indicators by means of
KOWEPS Data

강신욱 · 박능후 · 이병희 · 정희선 · 이경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1-44-2

2011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본 한국의 사회지표

발행일	2011년 12월
저자	강신욱 외
발행인	김용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우: 122-705)
전화	대표전화: 02) 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쇄	고려문화
가격	8,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ISBN 978-89-8187-846-7 93330



머리말

한국복지패널은 2006년 조사와 자료 생산이 시작된 이래 금년에는 6차 조사까지 진행되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매년 전년도 조사된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심층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여 왔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는 주요 사회지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모습을 진단하고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모습을 비추는 사회지표는 다양한 원시자료에 근거하여 여러 기관에서 산출하고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복지패널자료는 국민들의 생활실태와 복지 욕구에 대해 다른 어떤 자료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이 자료에 근거한 사회지표의 산출 작업은 우리 사회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국민들의 생활실태와 정책의 효과 등에 대한 정보는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 나가는 데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이다.

금년의 심층분석 보고서는 1차에서 5차에 이르는 자료를 이용하여 좀 더 긴 시계열에 걸쳐 사회지표를 분석하고 있으며, 일부 주제의 경우 기본적인 동태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향후에 자료의 차수가 충분히 늘어난다면 한국 사회의 횡단면적 특성은 물론 종단적 변화를 설명하는 더욱 풍부한 분석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구는 우리 연구원의 강신욱 연구위원의 책임으로 진행되었으며, 정희선 연구원과 이경진 연구원이 참여하였으며 원외에서는 경기대학교의 박능후 교수와 한국노동연구원의 이병희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하였다. 원자료를 꼼꼼하게 분석하여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통찰을 제시해준 연구진의 노력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한국복지패널 자료의 생산 차수가 누적되면서 더욱 다양한 연구의 기초자료로써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011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 목적	11
제2절 연구 내용	12
제3절 분석 방법 및 한계	14
제2장 한국복지패널 개관	19
제1절 조사개요	19
제2절 한국복지패널의 장점 및 한계	24
제3장 소득	29
제1절 소득 범주의 구분	29
제2절 소득관련 지표 분석결과	31
제3절 소결 및 정책적 함의	42
제4장 소득분배	47
제1절 소득분배 관련 지표 산출 방식	47
제2절 소득분배 지표 산출결과와 추이	50
제5장 주거	63
제1절 주거복지 지표 산출방식	65
제2절 주거복지 지표 산출 결과와 추이	69

제3절 소결 및 정책적 함의	82
제6장 보건의료	87
제1절 보건의료 측정지표의 선정 및 측정도구	87
제2절 보건의료지표 측정결과와 추이	92
제3절 소결 및 정책적 함의	118
제7장 노동	121
제1절 노동지표 산출 방식	122
제2절 노동지표 산출 결과와 추이	126
제3절 소결 및 정책적 함의	154
제8장 복지수급	157
제1절 복지수급 지표 산출 방식	158
제2절 복지수급 지표 산출 결과	164
제3절 소결 및 정책적 함의	177
제9장 빈곤의 동태적 변화	181
제1절 동태적 분석의 의의와 데이터 구성	181
제2절 빈곤지위의 변화	183
제3절 빈곤 진입과 탈출	189
제4절 소결 및 정책적 함의	192
제10장 비공식 근로와 빈곤	197
제1절 문제의식	197
제2절 분석 방법과 자료	198

제3절 비공식 근로와 빈곤간 관계	200
제4절 비공식 근로의 지속성과 빈곤에 미치는 영향	208
제5절 소결 및 정책적 함의	217
제11장 근로장려세제 효과분석: 근로동기와 가구소득에 미친 영향	221
제1절 서론	221
제2절 이론적 고찰	223
제3절 연구설계	227
제4절 분석결과	233
제5절 소결 및 정책적 함의	248
참고문헌	251

표 목차

〈표 2- 1〉 한국복지패널 표본추출 개요	19
〈표 2- 2〉 패널가구 및 가구원의 원표본 유지율	20
〈표 2- 3〉 1차 대비 5차 조사완료 패널가구 및 가구원 수	21
〈표 2- 4〉 조사표의 조사 대상·조사방법·응답대상 기간 및 시점(5차 자료의 예) ..	22
〈표 2- 5〉 패널조사 영역(5차 자료의 예)	23
〈표 2- 6〉 조사 주제별 구성	24
〈표 2- 7〉 한국복지패널의 각 자료별 원표본 유지율 비교	25
〈표 3- 1〉 소득분류와 구성요소	30
〈표 3- 2〉 5년간 명목소득 변화 추이	31
〈표 3- 3〉 5년간 실질소득 변화 추이(기준년도=2005년)	32
〈표 3- 4〉 명목소득의 20~80분위수	34
〈표 3- 5〉 실질소득의 20~80분위수(기준년도=2005년)	35
〈표 3- 6〉 지역별 가구명목소득 추이	36
〈표 3- 7〉 지역별 가구실질소득 추이(기준년도=2005년)	37
〈표 3- 8〉 가구원수별 가구명목소득 추이	38
〈표 3- 9〉 가구원수별 가구실질소득 추이(기준년도=2005년)	39
〈표 3-10〉 노인·무노인 가구 명목소득 추이	41
〈표 3-11〉 노인·무노인 가구 실질소득 추이(기준년도=2005년)	42
〈표 3-12〉 시장소득 계산 과정	44
〈표 4- 1〉 빈곤지표(최저생계비 기준)	51
〈표 4- 2〉 아동 및 노인인구 빈곤지표(최저생계비 기준)	51
〈표 4- 3〉 지역별 빈곤지표(최저생계비 기준)	52
〈표 4- 4〉 행정구역별 빈곤율(최저생계비 기준)	53
〈표 4- 5〉 상대빈곤율과 빈곤격차비율(중위소득 50% 기준)	54
〈표 4- 6〉 아동, 노인인구의 빈곤지표(중위소득 50% 기준)	55

〈표 4- 7〉 지역별 빈곤지표(중위소득 50% 기준)	56
〈표 4- 8〉 행정구역별 빈곤지표(중위소득 50% 기준)	57
〈표 4- 9〉 불평등지표	58
〈표 5- 1〉 주거복지 측정지표	64
〈표 5- 2〉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69
〈표 5- 3〉 점유형태별 가구비율	70
〈표 5- 4〉 지역별 자가 점유율	70
〈표 5- 5〉 소득 5분위별 자가 점유율	71
〈표 5- 6〉 지역별 1인당 주거면적	72
〈표 5- 7〉 소득 5분위별 1인당 주거면적	72
〈표 5- 8〉 점유형태별 1인당 주거면적	73
〈표 5- 9〉 지역별 방당 거주인 수	74
〈표 5-10〉 소득 5분위별 방당 거주인 수	74
〈표 5-11〉 점유형태별 방당 거주인 수	75
〈표 5-12〉 가구원수별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3인 이상)	75
〈표 5-13〉 지역별 3인 이상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	76
〈표 5-14〉 지역별 월소득대비 임대료 비율	77
〈표 5-15〉 소득 5분위별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77
〈표 5-16〉 소득 5분위별 주거비부담이 과도한 가구의 비율	79
〈표 5-17〉 가구원수별 주거비부담이 과도한 가구의 비율	79
〈표 5-18〉 지역별 연소득 대비 자가주택가격(현시가기준) 비율	79
〈표 5-19〉 소득 5분위별 연소득 대비 자가주택가격(현시가기준) 비율	80
〈표 5-20〉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규모 추이	81
〈표 6- 1〉 건강 형평성 지표의 분류	88
〈표 6- 2〉 소득5분위별 주관적 건강상태(가구주)	93
〈표 6- 3〉 소득5분위별 주관적 건강상태(가구원 전체)	93
〈표 6- 4〉 지역별 주관적 건강상태(가구주)	94

〈표 6- 5〉 지역별 주관적 건강상태(가구원 전체)	94
〈표 6- 6〉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가구주)	95
〈표 6- 7〉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가구원 전체)	95
〈표 6- 8〉 주관적 건강상태에서의 보건의료지표	96
〈표 6- 9〉 소득 5분위별 우울에 대한 인식(가구주)	98
〈표 6-10〉 소득 5분위별 우울에 대한 인식(가구원 전체)	98
〈표 6-11〉 지역별 우울에 대한 인식(가구주)	99
〈표 6-12〉 지역별 우울에 대한 인식(가구원 전체)	99
〈표 6-13〉 성별 우울에 대한 인식(가구주)	100
〈표 6-14〉 성별 우울에 대한 인식(가구원 전체)	100
〈표 6-15〉 우울에서의 보건의료지표	101
〈표 6-16〉 소득5분위별 흡연율 및 흡연량(가구주)	102
〈표 6-17〉 소득5분위별 흡연율 및 흡연량(가구원 전체)	103
〈표 6-18〉 지역별 흡연율 및 흡연량(가구주)	104
〈표 6-19〉 지역별 흡연율 및 흡연량(가구원 전체)	105
〈표 6-20〉 성별 흡연율 및 흡연량(가구주)	106
〈표 6-21〉 성별 흡연율 및 흡연량(가구원 전체)	107
〈표 6-22〉 흡연에서의 보건의료지표	108
〈표 6-23〉 소득5분위별 간접흡연율 및 간접흡연 시간(가구주)	108
〈표 6-24〉 소득5분위별 간접흡연율 및 간접흡연 시간(가구원 전체)	109
〈표 6-25〉 지역별 간접흡연율 및 간접흡연 시간(가구주)	109
〈표 6-26〉 지역별 간접흡연율 및 간접흡연 시간(가구원 전체)	110
〈표 6-27〉 성별 간접흡연율 및 간접흡연 시간(가구주)	110
〈표 6-28〉 성별 간접흡연율 및 간접흡연 시간(가구원 전체)	111
〈표 6-29〉 간접흡연에서의 보건의료지표	111
〈표 6-30〉 소득5분위별 음주율, 평균음주횟수, 평균음주량(가구주)	112
〈표 6-31〉 소득5분위별 음주율, 평균음주횟수, 평균음주량(가구원 전체)	113

〈표 6-32〉 지역별 음주율, 평균음주횟수, 평균음주량(가구주)	114
〈표 6-33〉 지역별 음주율, 평균음주횟수, 평균음주량(가구원 전체)	115
〈표 6-34〉 성별 음주율, 평균음주횟수, 평균음주량(가구주)	116
〈표 6-35〉 성별 음주율, 평균음주횟수, 평균음주량(가구원 전체)	117
〈표 6-36〉 음주에서의 보건의료지표	117
〈표 7- 1〉 노동지표의 구성	121
〈표 7- 2〉 가구주의 소득분위별 경제활동지표	126
〈표 7- 3〉 가구원 전체의 소득분위별 경제활동지표	127
〈표 7- 4〉 가구주의 지역별 경제활동지표	128
〈표 7- 5〉 가구원 전체의 지역별 경제활동지표	129
〈표 7- 6〉 가구주의 성별 경제활동지표	129
〈표 7- 7〉 가구원 전체의 성별 경제활동지표	130
〈표 7- 8〉 가구주의 학력별 경제활동지표	131
〈표 7- 9〉 가구원 전체의 학력별 경제활동지표	132
〈표 7-10〉 가구주의 연령별 경제활동지표	132
〈표 7-11〉 가구원 전체의 연령별 경제활동지표	133
〈표 7-12〉 가구내 취업자수 비중의 연도별 추이	134
〈표 7-13〉 2009년 소득분위별 가구내 취업자수 비중	135
〈표 7-14〉 2009년 지역별 가구내 취업자수 비중	135
〈표 7-15〉 소득분위별 가구 취업지수	136
〈표 7-16〉 2009년 지역별 가구 취업지수	136
〈표 7-17〉 가구주의 소득분위별 연간 취업경험률	137
〈표 7-18〉 가구원 전체의 소득분위별 연간 취업경험률	138
〈표 7-19〉 가구주의 지역별 연간 취업경험률	138
〈표 7-20〉 가구원 전체의 지역별 연간 취업경험률	139
〈표 7-21〉 가구주의 성별 연간 취업경험률	140
〈표 7-22〉 가구원 전체의 성별 연간 취업경험률	140

〈표 7-23〉	가구주의 학력별 연간 취업경험률	141
〈표 7-24〉	가구원 전체의 학력별 연간 취업경험률	142
〈표 7-25〉	가구주의 연령별 연간 취업경험률	142
〈표 7-26〉	가구원 전체의 연령별 연간 취업경험률	143
〈표 7-27〉	취업중인 가구주의 종사상지위 비중	144
〈표 7-28〉	취업중인 가구원 전체의 종사상지위 비중	144
〈표 7-29〉	2009년 소득분위별 가구주의 종사상지위 비중	145
〈표 7-30〉	2009년 소득분위별 가구원 전체의 종사상지위 비중	145
〈표 7-31〉	2009년 가구주 성별에 따른 종사상지위 비중	146
〈표 7-32〉	2009년 가구원 전체의 성별에 따른 종사상지위 비중	146
〈표 7-33〉	2009년 가구주의 연령별 종사상지위 비중	147
〈표 7-34〉	2009년 가구원 전체의 연령별 종사상지위 비중	147
〈표 7-35〉	소득분위별 일의 불규칙성	148
〈표 7-36〉	성별 일의 불규칙성	149
〈표 7-37〉	학력별 일의 불규칙성	149
〈표 7-38〉	연령별 일의 불규칙성	150
〈표 7-39〉	종사상 지위별 일의 불규칙성	150
〈표 7-40〉	소득분위별 유해환경 근로 비율	151
〈표 7-41〉	성별 유해환경 근로 비율	151
〈표 7-42〉	학력별 유해환경 근로 비율	152
〈표 7-43〉	연령별 유해환경 근로 비율	153
〈표 8- 1〉	복지수급 지표의 구성	157
〈표 8- 2〉	지역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욕구 대비 수급률	164
〈표 8- 3〉	가구규모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욕구 대비 수급률	165
〈표 8- 4〉	가구형태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욕구 대비 수급률	165
〈표 8- 5〉	지역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비 대비 보장수준	166
〈표 8- 6〉	가구규모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비 대비 보장수준	167

〈표 8- 7〉 가구형태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비 대비 보장수준	167
〈표 8- 8〉 지역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 대비 보장수준	168
〈표 8- 9〉 가구규모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 대비 보장수준	168
〈표 8-10〉 가구형태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 대비 보장수준	169
〈표 8-11〉 분위별 공적연금 수급률	170
〈표 8-12〉 분위별 국민연금 수급률	170
〈표 8-13〉 지역별 영구임대주택 이용경험률	171
〈표 8-14〉 가구규모별 영구임대주택 이용경험률	171
〈표 8-15〉 가구형태별 영구임대주택 이용경험률	172
〈표 8-16〉 지역별 공공(국민)임대주택 이용경험률	172
〈표 8-17〉 가구규모별 공공(국민)임대주택 이용경험률	173
〈표 8-18〉 가구형태별 공공(국민)임대주택 이용경험률	173
〈표 8-19〉 노인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	174
〈표 8-20〉 만 5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보육지원 서비스 이용경험률	175
〈표 8-21〉 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의 학비지원 서비스 이용경험률	175
〈표 8-22〉 장애인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	176
〈표 8-23〉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	176
〈표 9- 1〉 각 연도별 가구 빈곤율 변화(연도별 원자료 이용)	183
〈표 9- 2〉 연결자료 상의 각 연도별 가구 빈곤율 변화	184
〈표 9- 3〉 2005년~2009년의 5년간 빈곤경험횟수의 분포	185
〈표 9- 4〉 빈곤경험횟수별 평균소득 비교(경상소득 상대빈곤율 기준)	186
〈표 9- 5〉 기초보장수급 경험횟수별 평균소득 비교	187
〈표 9- 6〉 연도별 빈곤진입률과 빈곤탈출률	190
〈표 10-1〉 취업형태별 공적 연금과 고용보험 가입 현황(2009, 18~59세 취업자)	201
〈표 10-2〉 빈곤여부별 공적 연금과 고용보험 가입 현황(2009, 18~59세 취업자)	202
〈표 10-3〉 비공식 근로의 규모(2009, 18~59세 취업자)	202
〈표 10-4〉 빈곤 여부별 비공식 취업률 추이(18~59세 취업자)	203

〈표 10- 5〉 공식 근로 여부별 빈곤율 추이(18~59세 취업자)	204
〈표 10- 6〉 표본 특성(2009, 18~59세 취업자)	205
〈표 10- 7〉 비공식 근로와 빈곤에 대한 연립방정식 프로빗 추정	207
〈표 10- 8〉 일자리 특성별·빈곤 여부별 1년 후 일자리 특성의 변화 (15~59세 근로능력자)	209
〈표 10- 9〉 비공식 근로 경험과 지속(15~59세 취업경험자)	210
〈표 10-10〉 비공식 근로의 지속 확률 추정	213
〈표 10-11〉 일자리 특성 변화별 빈곤 상태의 변화(15~59세 근로능력자) ..	214
〈표 10-12〉 비공식 근로와 빈곤 유형(15~59세 취업경험자)	216
〈표 10-13〉 빈곤 유형의 결정요인(취업경험자, 다항로짓)	217
〈표 11- 1〉 근로장려세제 급여구간별 이론적 노동공급효과	224
〈표 11- 2〉 주요 변수의 조작적 정의	231
〈표 11- 3〉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제도에 대한 인지도	233
〈표 11- 4〉 전체 가구 특성별 구성	235
〈표 11- 5〉 근로장려금 수준별 가구수 분포	236
〈표 11- 6〉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의 연도별 경상소득 분포	237
〈표 11- 7〉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의 가구임금소득 분포	237
〈표 11- 8〉 가구임금소득변화 분석결과: 가구임금소득 연 3,000만원 이하 경우 ..	239
〈표 11- 9〉 가구임금소득변화 분석결과: 가구임금소득 연 4,000만원 이하 경우 ..	241
〈표 11-10〉 가구임금소득변화 분석결과: 가구임금소득 연 5,000만원 이하 경우 ..	242
〈표 11-11〉 가구임금소득변화 분석결과: 전가구	243
〈표 11-12〉 가구 총근로일수변화 분석결과: 가구임금소득 연 3,000만원 이하 경우 ..	244
〈표 11-13〉 가구 총근로일수변화 분석결과: 가구임금소득 연 4,000만원 이하 경우 ..	245
〈표 11-14〉 가구 총근로일수변화 분석결과: 가구임금소득 연 5,000만원 이하 경우 ..	246
〈표 11-15〉 가구 총근로일수변화 분석결과: 전체 가구	247

그림 목차

[그림 2- 1]	조사표의 구성(4차조사와 5차조사의 예)	22
[그림 3- 1]	5년간 명목소득 변화 추이	33
[그림 3- 2]	5년간 실질소득 변화 추이(기준년도=2005년)	33
[그림 5- 1]	지역별 자가 점유율	71
[그림 5- 2]	지역별 1인당 주거면적	73
[그림 5- 3]	가구원수별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3인 이상)	76
[그림 5- 4]	소득5분위별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78
[그림 5- 6]	7개 지역별 연소득 대비 자가주택가격(현시가기준) 비율	80
[그림 5- 7]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규모(2005~2009년도)	82
[그림 6- 1]	주관적 건강상태: 가구원, 소득분위집단	96
[그림 6- 2]	주관적 건강상태에서의 보건의료지표: 가구원, 소득분위집단	97
[그림 6- 3]	우울에 대한 인식(우울점수): 가구주, 가구원 소득분위집단	101
[그림 6- 4]	우울증에서의 보건의료지표: 가구주, 가구원 소득분위집단	101
[그림 9- 1]	가구특성별 빈곤경험횟수의 분포(연령, 성, 학력별)	188
[그림 9- 2]	가구특성별 빈곤경험횟수의 분포(지역, 가구원수, 경제활동상태별)	188
[그림 9- 3]	기초보장수급 진입률과 탈출률	192
[그림 10-1]	빈곤이력에 따른 빈곤 유형 구분	215
[그림 11-1]	근로장려세제 급여모형	224
[그림 11-2]	근로장려세제 효과 측정 논리를	230

A dark, irregular, ink-blot-like shape with a lighter, textured center. The word "Abstract" is written in a black, handwritten-style font across the center of this shape.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velop social indicators of Korea by using Korea Welfare Panel Study(KOWEPS) Data(1st~5th wave). The KOWEPS data, made and released b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KIHASA) and Social Welfare Research Center of SNU, provide much information on conditions of life and welfare needs of households in Korea. By developing social indicators, we expect to get useful insights to understand Korean Society and policy implications.

This report is consist of three parts. At first, we introduce the scope of our research and give an brief outline of KOWEPS data. The second part(ch.3~ch.9) deals with social indicators of six areas: income, distribution, housing, health, labor, social security, and poverty dynamics. The last part includes in-depth analysis on the relation between informal labor and poverty(ch.10) and the effect of EITC in Korea(ch.11).

요약

1. 연구의 목적 및 분석 방법

-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공동으로 조사하고 생산하는 <한국복지패널(KOWEPS)>의 각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사회 실태를 보여주는 다양한 지표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변화 방향을 분석하는 것임.
- 본 연구는 2006년 조사된 한국복지패널 1차 자료부터 2010년 조사된 5차 자료까지 원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통해 주요 사회지표를 산출함.
 - 분석의 대상이 되는 각 사회지표의 정의 및 산출 방식을 제시하였으며
 - 분석은 개인단위의 분석을 원칙으로 함(가구 표본가중치에 가구원수를 곱한 값을 가중치로 사용)

2. 주요 결과

- 소득
 - 2009년 현재 우리나라 가구의(균등화지수를 취한) 실질시장소득은 연평균 약 2,091만원이고 실질 경상소득은 약 2,239만원, 실질 가처분소득은 약 2,067만원으로 나타남.
 -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가구 실질 시장소득의 평균값과 중위값은 연평균

약 1.9%의 증가율을 기록함. 경상소득은 평균값의 경우 2.1%, 중위값의 경우 2.2%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임.

□ 소득분배

- 2009년의 시장소득 기준 절대빈곤율(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인구의 비율)은 약 11.3%로, 경상소득 기준 절대빈곤율은 2009년에 약 4.9%로 나타남
- 중위소득의 50%선을 기준으로 한 상대빈곤율은 2009년 시장소득의 경우 18.4%, 경상소득은 14.3%, 가처분소득은 13.5%로 나타남.
- 대표적인 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의 경우, 시장소득을 이용하여 측정한 값은 2009년 0.3544로 나타남.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는 각각 0.3190과 0.3098로 나타남.
- 최하위 1분위 소득 대비 최상위 10분위의 소득비율은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경우 2009년에 16.9배로 나타남.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을 이용하여 측정한 값은 2009년의 경우 각각 약 9배, 8.5배로 나타남.

□ 주거

- 3인 이상 가구의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이 2009년에 증가하였으며, 전체 비율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음. 또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경우도 면적기준에서 전체가구의 1.95%로 과거에 비하여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주거복지가 개선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후 RIR)이 1분위에서 27.31%로 2분위(11.57%), 3분위(10.30%)에 비해서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었음. 이는 월세(또는 보증부월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매우 크다는 것을 말해주며, 특히 RIR 30%초과(주거비부담이 과도한 가구)의 비율이 1분위의 경우 22.10%로 2분위(2.02%), 3분위(1.80%)에 비해서 크게 높아 1분위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임을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월세 지원 등 주거 복지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규모가 2005년(19.47%)에 비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어 2009년에는 13.74%까지 있음을 알 수 있었음. 또한 1분위의 경우 30.91%에서 19.42%로 줄어들어 1분위에서도 큰 폭의 하락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음.

□ 보건의료

- 주관적 건강상태는 전체적으로 2005년에 비하여 좋아졌으며, 소득이 낮은 집단의 건강상태가 예전에 비해 좋아졌으며, 소득이 높은 집단은 반대로 건강상태가 나아졌음을 알 수 있었음. 하지만 그럼에도 소득이 낮은 집단의 건강상태가 소득이 높은 집단에 비하여 낮은 상태는 유지가 되었음.
- 우울의 경우는 모든 집단에서 2005년에 비하여 우울지수가 낮아져 우울상태가 개선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가 있었음. 하지만 그럼에도 소득이 낮은 집단의 우울지수가 소득이 높은 집단에 비하여 높은 상태는 유지가 되어 건강지수나 우울 모두 소득이 낮을수록 더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흡연, 간접흡연의 경우 전체적으로 흡연을 하는 비율이 2005년에 비해서 줄어들었으며, 집단들 사이에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에 음주율의 경우 2005년에 비하여 모든 집단이 음주비율이 줄었으나 소득이 높을수록 음주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울, 건강상태와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음. 이는 흡연을, 간접흡연을, 음주율이 저소득층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보편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함.

□ 노동

-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으며,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남성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게 나타났다. 실업률의 경우 2005년 이래로 점차 감소하였으나 청년층의 실업률은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청년층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더 나아가 저소득층과 여성,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더 나은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와 훈련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마련이 필요함.
- 가구 내 가구원들의 경제활동 참여 상태정보를 나타내는 가구 취업지수는

2005년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가구 취업자 수도 높았음. 또한 연간 취업경험률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소득분위와 성별, 학력, 연령과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남성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연간 취업경험률이 높게 나타났음.

- 취업자의 종사상지위 비중을 살펴보면, 상용직 임금근로자는 2005년 이래로 점차 감소하는 반면, 임시직 임금근로자는 점차 증가함. 그 밖의 일용직 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업 등은 2005년부터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음. 취업자의 종사상지위 비중을 소득분위별로 분석해본 결과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임시직 임금근로자, 일용직 임금근로자, 자영업자가 높은 반면,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일용직 및 임시직 임금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하며, 더 나아가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막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함. 또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들 중에서도 특히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함.

□ 복지수급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욕구 대비 수급률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에는 2005년에 비해 약 1.6%나 증가함. 그러나 국민기초생활제도를 생활비 및 소득 대비 보장수준을 살펴보면 보장 수준이 점차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지역별로는 농어촌 지역이 보장수준이 낮았으며, 가구형태별로는 노인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모두 40% 내외의 낮은 보장수준을 보였으며, 모부자가구는 보장수준이 특히 낮게 나타났음.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해결방안 모색뿐만 아니라 국민기초 보장 수준의 다양화를 위한 급여체계를 개편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주력해야 함.
- 공적연금 수급률과 국민연금 수급률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적으로 증가하였음.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수급률이 낮았으며,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수급률이 높게 나타났음. 즉, 저소득층의 노후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및 기초노령연금 가입의 확대가 필요함.
- 노인가구, 아동가구, 장애인가구를 모두 포괄하는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 이용

를 살펴보면, 노인 복지서비스와 아동 복지서비스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이용률이 점차 증가한 반면,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이용률로 분석되어 장애인 가구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의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함. 또한 노인 및 아동가구를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함.

□ 빈곤의 동태적 특성

- 1차 자료부터 5차 자료까지 소득이 관측된 가구만을 대상으로 연결데이터를 구축한 후 가구별 빈곤경험횟수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경상소득 기준의 절대빈곤을 5년간 한번이라도 경험한 가구의 비율은 약 23.9%로 나타났으며, 경상소득 기준의 상대빈곤을 5년간 한번이라도 경험한 가구의 비율은 약 35.1%로 나타남.
- 5년간 한번 이상의 기초보장 수급경험을 가진 가구의 비율은 약 9.2%였으며,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5년동안 계속하여 수급상태에 머무르고 있었음.
- 5년간의 빈곤경험횟수는 70대 이상(2.91년), 여성(2.24년), 중졸이하(2.03년), 1인가구(2.45년), 비경활가구주 가구(2.29년) 등에서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 공식근로와 비공식근로

- 공적연금과 고용보험에 모두 가입한 임금근로자와 공적연금에 가입한 비임금근로자를 공식근로로, 적용제외자와 미가입자를 비공식근로로 정의하였을 때 비공식근로는 취업자의 1/3을 상회하며 빈곤층의 비공식 근로 비중은 빈곤층에 비해 2배 이상이었음.
- 비공식근로가 공식근로로 이동할 가능성은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는 15.0%였고, 5년에 걸쳐 약 38.9%만이 공식근로로 이동함. 이는 사회안전망이 미비한 상태에서 빈곤층은 비공식근로에 비자발적으로 종사함을 보여줌
- 비공식근로가 다음해에도 지속될 확률은 59.4%로 높게 나타났으며, 비공식근로의 지속성은 개인적 특성보다 상태의존성에 기인함을 알 수 있음.

□ 근로장려세제의 수급효과

- 근로장려금 수급집단의 규모가 작고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상황이므로 근로장려세제의 효과에 대한 해석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전제 하에서 보았을 때, 근로장려세제의 시행은 잠재적 수급가구의 근로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초래함.
- 근로장려세제가 잠재적 수급가구의 근로시간 증대에 미친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3. 주요 시사점

- 5년간 빈곤 경험가구가 25%가 넘는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빈곤정책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빈곤 예방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전체 가구의 1/4을 빈곤정책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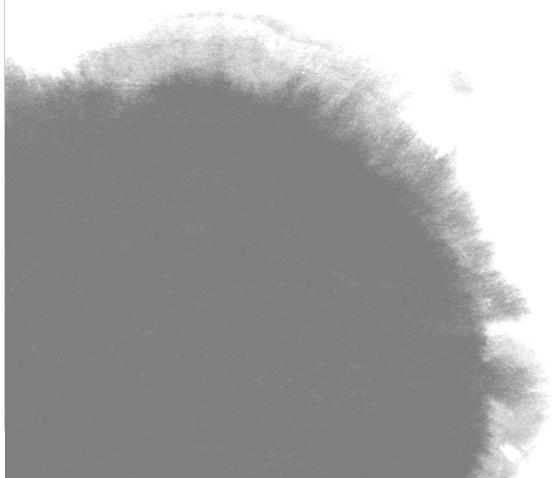
- 정태적 측면에서 빈곤 위험에 취약한 계층은 동태적 측면에서도 유사한 취약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들 집단에 대해 빈곤의 진입을 방지하는 정책과 함께 빈곤의 장기화를 막을 수 있는 지원 대책이 필요함.

- 기초보장 수급자 중 장기수급자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은 반대로 일시적 빈곤층에 대한 기초보장제도의 보호기능이 미흡할 수 있음을 시사하므로, 빈곤층의 규모 변화에 대한 기초보장제도의 대응성을 높이거나 일시적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

- 비공식근로의 상태의존성과 고착화 경향, 그리고 비공식근로가 반복빈곤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식근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보편적인 정책이 필요함.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은 노동시장의 지위가 사회보험으로부터의 배제로 이어지는 고리를 단절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01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매년 공동으로 조사, 생산하는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우리 사회의 주요 모습과 국민들의 생활 실태 및 복지욕구를 각종 사회지표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다. 작년까지 『00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라는 제하에 발간되던 보고서를 금년부터는 『00년 한국복지패널-한국의 사회지표』라는 제목으로 바꾸어 발간하게 되었다.

2006년 1차 자료를 시작으로 2010년 5차 자료 데이터까지를 공개하고 있는 한국복지패널은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한 종단면 조사이며, 기존 횡단면 조사나 종단면 조사가 가지고 있었던 약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농어가와 읍면지역을 표본에 포함함으로써 표본의 대표성을 높인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1차 완료된 표본규모는 7,072가구이며, 원가구 기준으로 2차년도 6,511가구(원가구 표본유지율 92.1%), 3차년도 6,128가구(원가구 표본유지율 86.7%), 4차년도 5,394가구(원가구 표본유지율 83.9%), 5차년도 5,657가구(원가구 표본유지율 80.25%)를 조사 완료함으로써 세계 주요 패널의 표본유지율을 웃돌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장점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첫째, 한국복지패널 원자료를 활용하여 각 영역-분배, 주거, 건강 및 의료, 노동, 복지수급-에서 주요한 사회지표를 산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사회상을 한 눈에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하는데 일차

적 목적이 있다.

둘째, 각 영역별 사회지표의 변화상을 보여줌으로써 한국복지패널자료의 정책적 활용도와 기여도를 높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경제·사회정책은 그 나라의 재정과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엄밀하고 체계적인 자료에 바탕을 두고 수립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경제·사회정책의 수립에 기초가 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제공하는데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체계적으로 분석된 결과들이 좀 더 심층적인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복지패널 원자료는 매우 방대한 변수를 담고 있는 만큼 자료가 복잡하다. 연구자들이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좀 더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연구 내용

이 연구는 모두 11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내용면에서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2장은 분석의 자료가 되는 한국복지패널자료의 특성에 대해 개괄할 것이다. 즉 1차에서 5차에 이르는 한국복지패널자료의 연혁과 표본추출, 조사표의 구성과 내용, 조사 절차 등이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다.

두 번째 부분은 제3장에서 제8장까지의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산출된 주요 사회지표를 분석하는 부분으로써, 전년도(연구1)에서 제시된 사회지표들을 일부 정정하고 시계열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장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다.

제3장 ‘소득’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5차 원자료를 활용하여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의 명목소득과 실질소득으로 20~80분위수, 집단별·연도별 소득추이를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1) 김미곤, 여유진 외(2010) 「2009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보고서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한 사회지표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4장부터 제8장까지는 매년 생산하여 오던 주요 사회지표를 분야별로 산출하고 그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제4장 ‘분배’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5차 원자료를 활용하여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각종 분배 관련 지표를 분석하고 있다. 최저생계비 기준 절대빈곤율, 경상소득 50% 기준 상대빈곤율, 지니계수 등의 불평등 지표를 인구학적 기준—전체, 노인, 아동—과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로 제시하고 있다.

제5장 ‘주거’에서는 주거서비스 지표를 이용하여 연도별·지역별·계층별·점유형태별 주거특성 및 주거서비스 수준을 살펴보았다. 본 보고서에서 분석하고 있는 주거 지표로는 자가 점유율, 1인당 주거면적, 3인 이상 단칸방 거주비율,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이다. 특히, 이러한 주거지표를 소득 5분위별로 제시함으로써 계층별 주거실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제6장 ‘보건의료’에서는 한국복지패널 원자료로 분석 가능한 보건의료 관련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건강 부문에서 주관적 건강상태와 우울증 정도, 건강행태 부문에서 흡연과 음주실태를 소득 5분위별, 성별, 연령별로 분석하였다.

제7장 ‘노동’에서는 한국복지패널 원자료를 활용하여 노동관련 지표를 분석하고 있다. 경제활동 참가 상태를 보여주는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등의 지표와 종사상의 지위, 비경제활동 사유, 유해환경 노출 비율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관련 지표 역시 소득 5분위와 성별, 연령별 등으로 세분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제8장 ‘복지수급’에서는 사회복지 급여의 수급 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공공부조),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그리고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별 사회서비스와 주거, 교육, 의료 등 대상별 사회서비스의 수급률과 수급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세 번째 부분인 제9장부터 제11장의 내용은 2011년 보고서에 새로 추가된 부분이다. 한국복지패널 자료가 5차년도에 걸쳐 조사됨에 따라 기본적인 동태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제9장과 제10장은 가구의 빈곤과 개인의 빈곤 및 근로활동 변화에 대한 동태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마지막 제11장은 4~5차 자료를 이용하여 2008년 이후 도입된 근로장려세제의 적용 실태 및 효과를 분석할 것이다.

제3절 분석 방법 및 한계

본 연구는 성격상 동일한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위주로 하고 있다. 각 장에서 다루는 영역의 특성에 따라 사회지표를 산출하는 과정은 상이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감안하더라도 본 연구에서는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분석이 진행되었다.

먼저, 한국복지패널의 각 년도 자료 가운데 가구용 데이터를 일차적으로 사용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가구원 정보와 가구 정보를 연결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가구용 데이터를 이용할 경우에도 분석은 개인단위의 분석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가구단위 가중치가 아닌 개인 단위 가중치를 사용하였으며, 개인단위 가중치는 각 년도별로 가구의 횡단면 표본가중치에 가구원수를 곱하여 산출하였다.

소득계층별 실태를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각 가구의 계층적 지위를 우선 판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 예외적인 소득값을 갖는 가구(outlier)에 대해서는 소득을 보정하였다. 소득의 보정방법은 LIS(Luxemburg Income Study)의 방법에 따라 소득이 상위 99% 이상의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백분위가 99%인 소득의 가구를 대체하였으며, 소득이 하위 1%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분위가 1%인 가구의 소득을 대체하여 사용하였다.

사회지표를 가구원수별로 집단화하여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소득범주는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균등화지수의 적용 방법은 가구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주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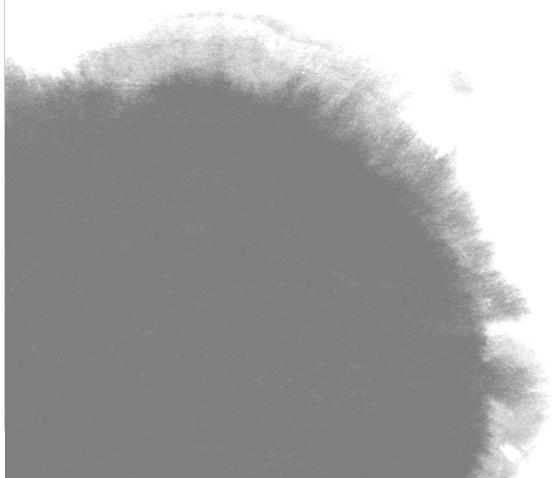
이상과 같은 방법을 공통적으로 적용하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장마다 분석의 특성상 상이한 방법을 적용한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장에서 별도로 분석방법을 밝히도록 하였다.

한편,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각 년 도별 사회지표를 산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한계에 대해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패널조사자료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표본에 대해 동일한 사항을 일정한 주기로 반복적으로 조사함으로써 생산된다. 그러나 표본의 일부가 탈락되는 것이 불가능하며, 표본의 탈락이 확률적으로 무작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표본의 구성은 해가 지남에 따라 일정한 특징을 띠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패널자료를 이용한 사회지표는 본래부터 횡단면자료의 산출을 목적으로 조사된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사회지표와는 다른 경향성을 보일 수 있다. 예컨대 제3장이나 제4장에서 제시되는 저소득층의 평균소득 변화 양상이나 분배지표의 변화 양상은 이러한 경향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한국복지패널이 다른 통계자료가 제공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복지욕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매년 동일한 사회지표를 반복적으로 생산할 경우 불가피하게 띠게 되는 이러한 제한점이 있다는 점을 미리 밝혀두고자 한다.

02

한국복지패널 개관



제2장 한국복지패널 개관

제1 절 조사개요²⁾

1. 표본추출 및 조사완료율

한국복지패널은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한 종단면 조사로서 읍면지역의 농어가까지 포함함으로써 대표성 높은 표본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1차 조사 완료된 표본규모는 7,072가구³⁾이며, 조사대상은 표본가구, 표본가구에 속하는 중고등학교 학생을 제외한 15세 이상 가구원, 부가조사 대상으로 구분된다.

패널 원표본 7,072가구를 선정하기 위한 자료는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를 이용하였으며, 국민생활실태조사는 2005년 인구센서스 자료 90% 조사구에서 추출하였다.

〈표 2-1〉 한국복지패널 표본추출 개요

	인구주택 총조사(90%)	국민생활실태 조사	한국복지패널조사
조 사 구	23만여개 조사구	517개 조사구	446개 조사구
가 구 수	14백만 가구	30,000 가구	7,000가구
추출방법	-	2단계층화집락	층화집락계통
대 표 성	-	전 국	전 국

2) 본 장의 내용은 강신욱, 손창균, 남상호 외(2010) 등 각년도의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보고서」를 참고로 작성되었으며, 특히 전년도에 이어 새로 추가된 5차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4차 자료까지의 특징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으로는 김미곤, 여유진 외(2010)을 참조할 것이다.

표본 배분은 복지욕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을 과대표집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즉, 중위소득 60%(OECD 상대빈곤선) 미만의 저소득층을 3,500가구 추출하고, 중위소득 60%(OECD 상대빈곤선)이상의 일반가구를 3,500가구 추출하였다. 물론 최종적인 조사결과가 전국 대표성을 띌 수 있도록 가중치를 통하여 조정하는 절차를 거쳤다.

한국복지패널 5차년도 조사에서는 먼저 4차년도에 조사되었던 원가구와 원가구원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4차년도에 응답하지 않았던 1차년도 원가구 및 원가구원에 대해 추가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년도 원가구 및 원가구원으로서 5차년도에 조사 완료된 원가구 및 원가구원 원표본 유지율은 다음의 <표 2-2>와 같다.

<표 2-2> 패널가구 및 가구원의 원표본 유지율

(단위: 가구, 명, %)

조사자료	가 구		가 구 원	
	표본수	유지율	표본수	유지율
1차 자료	7,072	100.00	14,463	100.00
2차 자료	6,511	92.06	13,083	90.46
3차 자료	6,128	86.65	12,191	84.29
4차 자료	5,935	83.92	11,909	82.34
5차 자료	5,675	80.25	11,400	78.82

5차 자료에 새롭게 진입한 표본가구는 원 표본가구에서 분가하여 새로운 가구를 형성한 경우로서 359가구이며, 가구원은 864명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4차 자료에서 탈락했던 2가구를 추적 조사하여 추가로 원가구 및 원가구원에 대한 패널관리를 함으로서 유지율을 높이하고자 노력하였다. 결과적으로 원표본가구와 원표본가구원을 합한 5차 자료 표본가구 및 가구원수는 다음의 <표 2-3>과 같다. 즉, 1차 자료 대비 5차 자료 조사완료 가구 및 가구원 비율을 살펴보면 가구는 85.32%의 완료 비율을 나타내며, 가구원은 84.80%로서 1차 자료 대비 85%의 완료율을 보였다.

〈표 2-3〉 1차 대비 5차 조사완료 패널가구 및 가구원 수

(단위: 가구,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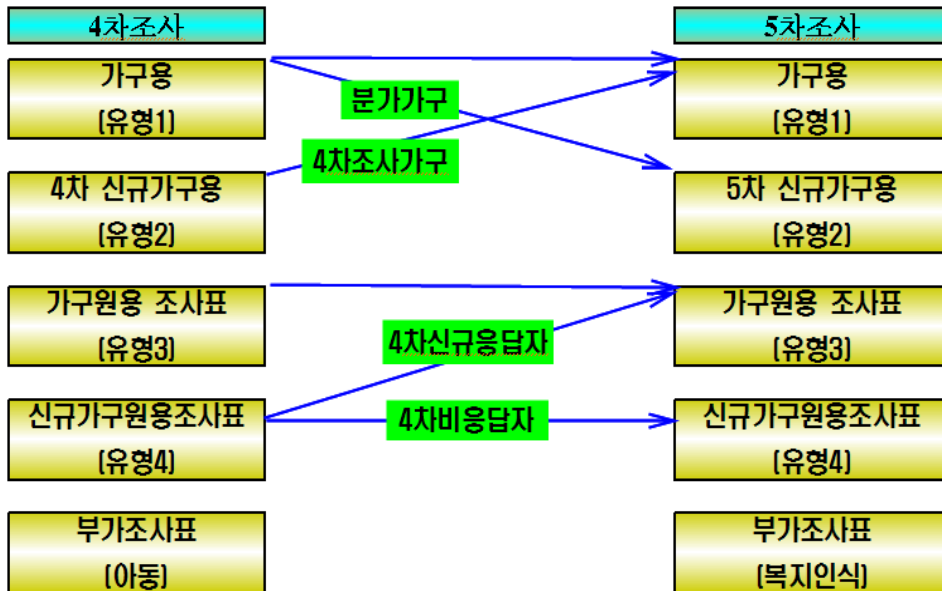
구 분	가 구		가구원	
	표본 수	비 율	표본 수	비 율
원표본	5,675	80.25	11,400	78.82
신규	359	5.07	864	5.98
계	6,034	85.32	12,264	84.80

2. 조사표 구성 및 조사 내용

가. 조사표의 구성

각 년도의 자료는 크게 가구용 설문과 가구원용 설문, 부가조사 설문 3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조사 전년도 9월 이전에 분가, 결혼 등의 이유로 원가구(가구주 중심)로부터 분리된 가구에 대해서는 신규가구용 조사가 이루어진다. 또한 가구원용 설문의 경우 전년도에서 가구원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가구원을 조사하기 위해 신규가구원용 조사가 이루어진다. 또한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는 매년 부가조사가 이루어진다. 부가조사는 동일한 주제에 대해 3년 주기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5차년도에는 부가조사 설문은 2차년도에 부가조사 된 바 있던 복지인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가구용 설문은 표본대상 가구 전체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응답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사 방법은 면접조사로, 조사 기준 기간은 조사가 행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전년도 1년, 기준 시점은 전년도 12월 31일로 하였다. 예를 들어 2010년에 이루어진 5차 조사의 경우 조사대상 기간은 2009년 1년간이며, 조사 대상 시점은 2009년 12월 31일이다. 가구원용 설문의 조사방법 및 조사 기준 기간과 시점은 가구용 설문과 동일하다. 5차년도 부가조사로 실시한 복지인식 설문의 대상은 2차년도에서 부가조사가 완료된 대상과 5차년도에 새로 선정된 가구주와 배우자로 응답시점은 조사일 현재이다.

[그림 2-1] 조사표의 구성(4차 조사와 5차 조사의 예)



<표 2-4> 조사표의 조사 대상·조사방법·응답대상 기간 및 시점(5차 자료의 예)

가구용 설문(유형1·2)	가구원용 설문(유형3·4)	부가조사 설문(복지인식)
- 조사대상: 가구주 또는 가구주배우자 - 조사대상 기간: 2009.1.1~12.31 - 기준 응답시점: 2009.12.31	- 조사대상: - 만 15세 이상 가구원 전체(중고생 제외, 신규 진입자 포함) 2009년 2월에 고등학교 졸업한 가구원 - 조사대상 기간: 2009.1.1 ~12.31 - 기준 응답시점: 2009.12.31	- 조사대상: 2차년도 부가조사 완료된 대상과 신규 선정된 가구주 및 배우자 - 기준 응답시점: 조사일 현재

나. 조사 내용

가구용(유형1·유형2), 가구원용(유형3·유형4), 부가조사용(아동) 각 설문지의 조사 영역은 다음 표와 같다. 가구용(유형1·유형2) 설문은 가장 많은 영역을 담고 있다. 가구일반사항, 가계수지, 경제활동상태, 사회복지제도와 관련한 17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구원용(유형3·유형4) 설문 가구의 대표응답자가 응답하기에 부적절한 것을 가구원 개인만이 응답할 수 있는 영역·주로 의식 관련 영역·으로 7개 영역(단, ‘교육’과 ‘개인사’의 경우 5차 신규가구원용에만 해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가 조사 설문(복지인식)은 의식을 중심으로 한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5〉 패널조사 영역(5차 자료의 예)

조사표 구분	조사 영역	
가구용 (유형1·유형2)	I. 가구일반사항 II. 건강 및 의료 A III. 경제활동상태 IV.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 V. 의료 B VI. 주거 VII. 생활비 VIII. 소득 IX. 부채, 이자, 주관적 최저생계비	X. 재산 XI. 생활여건 XII. 국민기초생활보장 XII-1. 근로장려세제 XIII.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XIV.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XV. 아동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XVI. 장애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XVII. 가족
가구원용 (유형3·유형4)	A. 사회보험, 퇴직금, 개인연금 수급 B. 근로 C. 생활실태·만족 및 의식 D.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의식	E. 생활습관, 가족관계 및 정신건강 F. 교육(유형4에만 포함됨) G. 개인사(유형4에만 포함됨)
복지인식 부가조사	I. 전반적인 사회적·정치적 인식과 태도 II. 복지재원 및 대상범위	III. 정치참여와 성향

이상 3개 설문지의 영역들을 주제별로 분류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 가구원의 인구 사회학적 배경 및 개인사 관련 문항은 문항 성격에 따라 가구용과 가구원용 설문에 나뉘어져 있다. 가구여건 관련 문항은 가구용 조사 설문의 해당 영역에 배치되어 있으며, 사회복지 가입 및 수급실태는 문항의 적절한 응답대상자에 따라 가구용과 가구원용 설문으로 구분되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의 각 영역에 배치되었다. 경제상황은 가구단위의 가계수지 및 재산 관련한 문항이므로 가구용 설문

삽입되었다. 근로 관련한 문항은 개개인의 일자리 특성 및 경험을 다루고 있으므로 주요 문항들은 가구원용 설문에 배치되었으며, 객관적인 근로능력정도 및 경제활동 상태 관련한 문항들은 가구용 설문에 삽입되었다. 기타 부가조사는 각 연도의 주제와 관련된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표 2-6〉 조사 주제별 구성

주제	세부주제	항목 포함 영역
1. 가구원 배경 및 개인사	1) 가구원일반사항	가구용 설문 I. 가구일반사항 가구원용 설문 F. 교육
	2) 부모세대	가구원용 설문 G. 개인사
	3) 개인사	가구원용 설문 G. 개인사
2. 가구여건 (복지욕구)	1) 보육, 교육	가구용 설문 XV. 아동
	2) 건강 및 의료	가구용 설문 II. 건강 및 의료 A, V. 의료 B
	3) 주거	가구용 설문 VI. 주거
	4) 기타	가구용 설문 XI. 생활여건
3. 사회복지 가입 및 수급	1) 사회보험	가구용 설문 IV.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 가구원용 설문 A. 사회보험, 퇴직금, 개인연금 수급
	2) 공공부조	가구용 I. 가구일반사항(기초보장수급형태), XII. 국민기초생활보장 XII-1. 근로장려세제
	3) 사회복지서비스	가구용 설문 XIII.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XIV. 노인, XV. 아동, XVI. 장애인, XVII. 가족
4. 경제상황	1) 소득	가구용 설문 VIII. 소득
	2) 지출 및 저축	가구용 설문 VII. 생활비, X. 재산
	3) 자산 및 부채	가구용 설문 IX. 부채 및 자산, 주관적 최저생계비, X. 재산
5. 근로	1) 직업이력	가구원용 설문 G. 개인사
	2) 경제활동상태	가구용 설문 III. 경제활동상태, 가구원용 설문 B. 근로
	3) 고용지원프로그램	가구원용 설문 B. 근로
6. 기타	1) 생활실태, 정신건강 등	가구원용 설문 C. 생활실태·만족 및 의식, D.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의식, E. 생활습관, 가족관계 및 정신건강
	2) 아동	아동 부가 설문

제2절 한국복지패널의 장점 및 한계

한국복지패널은 몇 가지 장점과 함께 일정정도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먼저 장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가구단위 패널조사 중 한국의료패널조사 다음

으로 규모가 큰 패널조사라는 점이다. 기존 국내의 가구단위 패널 조사의 경우 표본 규모는 5,000가구 내외이거나 미만이다. 하지만 『한국복지패널』의 표본 규모는 7,072가구이고, 2차년도 조사 완료된 가구는 6,580가구이고, 3차 조사 완료 가구 수는 6,314가구이다. 이번 5차 조사에서 조사가 완료된 가구는 6,034가구였다(신규 생성가구 포함). 표본수가 많다는 것은 통계학적으로는 표본오차가 적어지고, 현실적으로는 세부단위까지의 다양한 분석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둘째, 전국을 대표하는 패널조사라는 점이다. 통계청 가계조사의 경우 농어가가 제외되어 있고, 노동패널의 경우 표본이 도시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다. 즉, 읍면동에 대한 자료가 없다. 하지만 한국복지패널의 경우 조사 대상가구에 지역적으로는 제주도, 가구 유형으로는 농어를 포함함으로써 패널조사로는 유일하게 전국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

셋째, 신뢰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생산하고 있는 패널이라는 점이다. 기존 국내 대부분의 패널은 패널 구축초기 소득수준이 통계청의 80%내외이나, 한국복지패널은 소득 및 지출 수준이 통계청의 가계조사의 결과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예컨대, 저소득층은 통계청 조사결과보다 약간 높고, 중산층은 거의 유사하고, 고소득층은 통계청보다 약간 높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조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바람직한 결과이다.

넷째, 2차·3차 자료 원가구 표본유지율이 다른 유수의 패널보다 높다. 한국복지패널의 경우 2차 자료 원가구유지율 92.1%(7,072 원가구 중 6,511가구 완료)이고, 3차 자료 원가구 표본유지율 또한 86.7%(7,072 원가구 중 6,128가구 완료)로 나타나 국내 주요 패널의 원가구 표본 유지율보다 높다. 2010년 5차 자료의 원가구 표본유지율은 80.25%(7,072 원가구 중 5,675가구 완료)로서 이 또한 국내의 유수 패널의 유지율보다 높다.

〈표 2-7〉 한국복지패널의 각 자료별 원표본 유지율 비교

(단위: %)

자료	한국복지패널	노동패널	대우패널	미국 PSID	영국 BHPS	독일 GSOEP
2차 자료	92.1	87.6	79.0	89.0	87.7	89.9
3차 자료	86.7	80.9	66.0	86.3	81.5	86.0
4차 자료	83.9	77.3	59.0	83.7	79.9	84.9
5차 자료	80.3	76.0	56.0	81.2	76.8	81.3

다섯째, 저소득층 연구에 적합한 패널이다. 표본 추출 시 중위소득 60%미만 저소득층에 표본의 50%를 할당하였기 때문에 국내 패널조사 중 가장 많은 저소득층 가구를 포괄하고 있다.

여섯째, 학제간 연구가 가능한 패널조사이다. 한국복지패널은 다양한 영역의 설문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사회복지학, 경제학, 사회학, 가정학, 보건학 등 다양한 분야에 훌륭한 학제 간 연구의 장을 열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에, 한국복지패널은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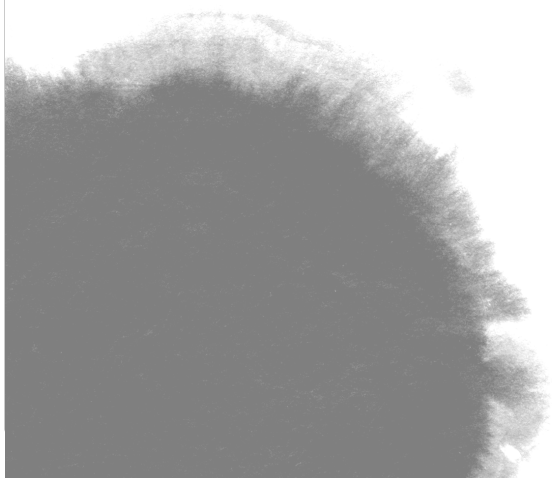
첫째, 조사시점이 종합소득세가 신고 되는 시점(5월)을 기준으로 전년도 내용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회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피할 수 없는 한계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연초에 조사를 실시하면, 회상의 문제는 줄일 수 있으나, 자영업자 등의 정확한 소득파악이 어렵다. 자영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5월을 기준으로 전년도 소득이 정리되기 때문이다.

둘째, 시간의 부족이다. 매년 패널 조사를 실시하고 동 연도에 기초분석보고서를 발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연구진은 시간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에러 체크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아직도 부분적으로 바로 잡아야 할 문항들이 있음을 밝힌다. 양질의 조사자료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투여하여 에러를 바로잡아야 한다. 미국 PSID의 경우 에러 체크(error checking) 기간이 3년이라는 점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사실 패널조사는 자료 입력 후 데이터 클리닝 과정에서 뿐 아니라, 조사과정과 분석과정에서 에러체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현지조사 단계에서의 에디팅, 조사 후 에디팅, 입력 후 에러체크, 기초분석 과정에서의 에러체크, 심층분석 과정에서의 에러체크, 다음 연도 조사 과정에서 에러체크가 세밀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양질의 조사 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기초보고서에 제시된 수치들은 이후의 지속적인 에러 체크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음을 밝혀둔다.

03

소독



제3장 소득

본 장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5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연도별·지역별·계층별 소득 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소득 5분위를 나누기 위해 사용하는 소득의 20, 40, 60, 80백분위를 제시하며, 세분화된 계층의 중위소득과 평균소득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복지패널은 여러 연구분야에서 쓰여지고 있는 소득을 최대한 세분화하여 조사하였다. 세분화된 소득들은 좀 더 복잡하고 엄밀한 분석이 가능하게 해주며 특히 다양한 복지정책의 효과를 소득과 연관시켜서 보기에 매우 유용하다.

제1절 소득 범주의 구분

<표 3-1>은 복지패널에서 수집하고 있는 소득들을 정리한 것이다. <표 3-1>에서 제시한 소득 중 본 문에서는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을 사용하여 여러 집단별 소득수준을 알아보려 한다.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은 각각 h05_cin과 h05_din으로 복지패널 내에 변수로 주어져 있으나 시장소득은 변수로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구해야 한다⁴⁾.

이들 시장소득을 통해서는 개인의 사적이익의 추세를 확인 할 수가 있으며, 경상소득과의 비교를 통해서 국가의 보조와 같은 공적이전 소득을 통해 소득의 추세가 어떻게 변화 하였는지를 알 수가 있다. 또한 가처분소득을 통해 세금이후 소득의 변화까지 알 수 있다.

4) 시장소득을 구하는 자세한 방법은 3장 마지막장 <표 3-12>에 제시되어 있다.

〈표 3-1〉 소득분류와 구성요소

소득분류	구성요소(단위:연간)	한국복지패널의 세부화된 소득요소
1차소득	임금소득+사업소득+농어업소득 +기타근로소득+재산소득	임금소득 = 상용근로자소득+임시근로자소득 재산소득 = 이자·배당금+임대수입 + 기타
시장(민간부문) 소득	1차소득+사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 개인연금+기타민간보험+부모나 자녀 로부터의 보조금+민간보조금
경상소득	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 사회보험(공적연금+고용보험+산재보 험)+기타정부보조금(장애수당+경로연금+노인교통비+ 모부자가정수당+가정위탁금(소년소녀가장보호비)+영 유아보육료지원+학비지원+국가유공자에대한보조금+ 농어업정부보조금+기타+유류환급금+진급복지지원금+ 바우처지원금)+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가처분소득	경상소득-세금 및 사회보장부담금	세금 및 사회보장부담금 = (세금+사회보장부담금) ×12 (*소득은 연단위로, 세금 및 사회보장부담금은 월단위 로 조사되었으므로 반드시 12를 곱해주어야 함.)
총소득	경상소득+비경상소득	비경상소득(기타소득) = 중여·상속 + 경조금 + 보상금 + 사고보험금 + 퇴직금·사회보험 일시금·보장성 보험 계약금 + 기타 + 동산·부동산매매차익

주: 5차조사(2009년 소득) 기준임

자료: 여유진(2008) 「한국복지패널로 본 분배지표와 재분배효과」,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정리

그리고 본 문에서는 명목소득 뿐 아니라 실질소득도 함께 제시하였다. 실질소득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text{실질소득} = \frac{\text{명목소득}}{\text{소비자물가지수}} \times 100$$

실질소득을 구하는 식에서 소비자물가지수는 통계청의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기준연도가 2005년인 수치를 사용하였다.

또한, 소득을 평균소득과 중위소득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를 통하여 소득분포의 유추가 가능하다. 평균소득과 중위소득의 격차가 커진다는 것은 2분위로 나누어 하위50%의 소득과 상위50%의 소득의 격차가 커졌다는 뜻이다.

제2절 소득관련 지표 분석결과

1. 소득변화 추이

가장 먼저, 전체 가구의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소득추세를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는 <표 3-2>, <표 3-3>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표 3-2> 5년간 명목소득 변화 추이

(단위: 만원, %)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평균 소득	중위 소득	평균 소득	중위 소득	평균 소득	중위 소득
2005	1,721.70	1,451.00	1,817.08	1,529.98	1,658.19	1,428.36
2006	2,073.36	1,561.29	1,999.15	1,680.00	1,829.76	1,565.77
2007	2,015.86	1,698.47	2,150.08	1,820.50	1,952.43	1,686.50
2008	2,144.16	1,838.94	2,306.70	1,986.09	2,116.67	1,856.76
2009	2,291.74	1,944.00	2,461.82	2,109.30	2,270.45	1,976.50
연평균증가율	7.41	7.59	7.89	8.36	8.17	8.46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표 3-2>는 5년 동안의 명목소득의 변화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시장소득의 경우 2007년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2007년에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위기가 국내에도 영향을 미쳐 시장소득의 감소를 부른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08년에는 다시 2006년보다 높은 소득을 보여 명목소득 자체는 다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시장소득의 경우 2006년에 중위소득과 평균소득의 격차가 매우 커졌으나 그 이후 다시 격차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으며 2009년에는 격차가 다시 커졌다. 경상소득, 가처분소득은 평균소득과 중위소득이 5년간 하락없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통해 2007년의 시장소득의 감소를 공적이전소득이 증가상태로 다시 끌어올린 것을 확인 할 수가 있다. 시장소득과는 다르게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의 경우 중위소득과 평균소득의 격차가 2005년 이후로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이다가 2009년 들어서 격차가 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표 3-3〉 5년간 실질소득 변화 추이(기준년도=2005년)

(단위: 만원, %)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평균 소득	중위 소득	평균 소득	중위 소득	평균 소득	중위 소득
2005	1,721.70	1,451.00	1,817.08	1,529.98	1,658.19	1,428.36
2006	2,028.72	1,527.68	1,956.11	1,643.84	1,790.37	1,532.07
2007	1,923.53	1,620.68	2,051.60	1,737.12	1,863.00	1,609.26
2008	1,954.57	1,676.34	2,102.73	1,810.47	1,929.50	1,692.58
2009	2,031.69	1,723.40	2,182.47	1,869.95	2,012.81	1,752.22
연평균증가율	4.23	4.40	4.69	5.14	4.96	5.24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표 3-3>은 5년 동안의 실질소득의 변화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명목소득과 가장 차이점을 보이는 것이 2007년의 시장소득이 하락한 뒤 2008년에도 2006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물가지수가 반영되면서 2007년에 소득의 하락 여파가 2008년까지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물가상승이 소득에 반영되면서 2008년에도 실질적으로는 예전수준까지 회복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중위소득은 상승하여 평균소득과 중위소득의 격차는 감소하는 형태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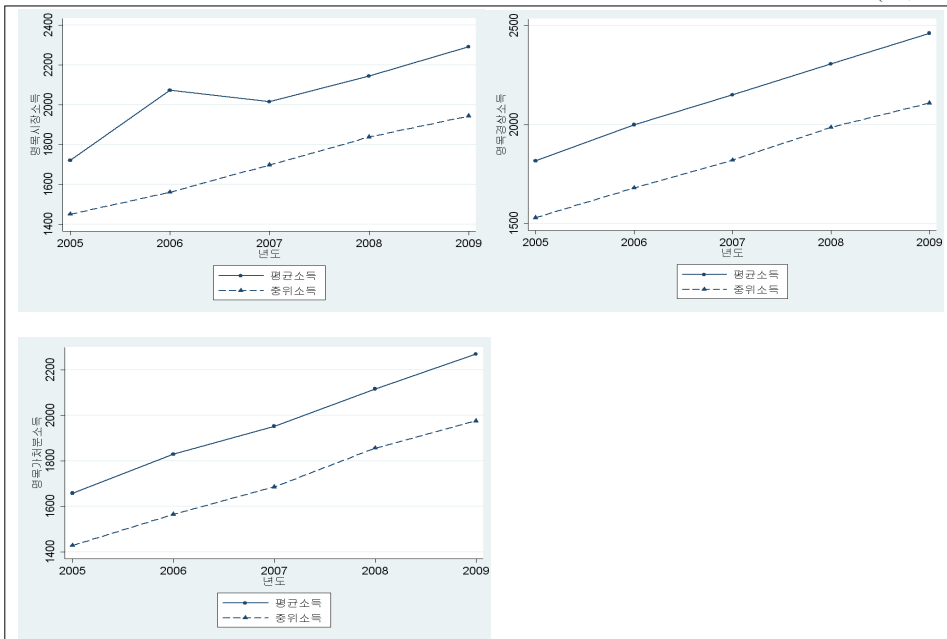
시장소득과 비교해서 경상소득의 경우에는 2007년에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2005~2009년 5년간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 결과를 통해서 2007년에 하락했던 가구의 시장소득이 공적이전소득의 효과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경제위기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가구에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평균소득과 중위소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중위소득과 평균소득 간 격차는 2008년에 소량 줄었을 뿐 나머지 기간에는 조금씩 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처분소득은 경상소득과 거의 유사한 추세를 보이며 경상소득에 비하여 중위소득과 평균소득의 격차가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과 [그림 3-2]는 명목소득과 실질소득의 변화 추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3-1] 5년간 명목소득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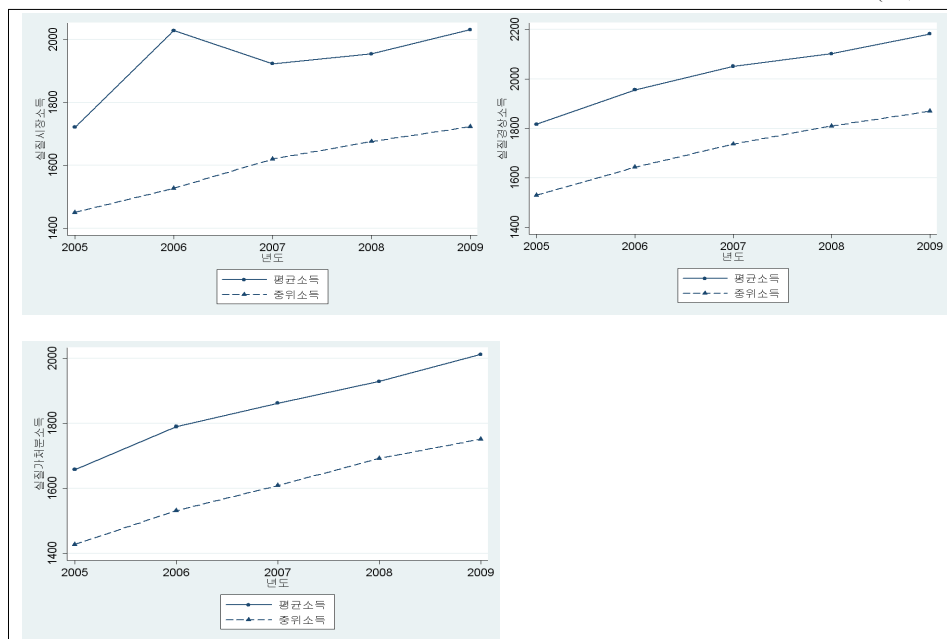
(단위: 만원)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그림 3-2] 5년간 실질소득 변화 추이(기준년도=2005년)

(단위: 만원)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2. 소득 분위 경계

〈표 3-4〉 명목소득의 20~80분위수

(단위: 만원, %)

		20분위수	40분위수	60분위수	80분위수
시장	2005	780.00	1,285.50	1,898.91	2,771.28
	2006	850.00	1,449.73	2,085.00	3,091.13
	2007	954.94	1,565.00	2,216.00	3,234.32
	2008	1,030.00	1,720.50	2,388.00	3,357.50
	2009	1,155.00	1,832.00	2,530.00	3,510.12
	연평균증가율	10.31	9.26	7.44	6.09
경상	2005	906.95	1,388.51	1,952.02	2,800.00
	2006	1,007.63	1,533.44	2,141.26	3,087.00
	2007	1,107.00	1,702.10	2,307.29	3,301.00
	2008	1,233.50	1,847.00	2,494.50	3,440.00
	2009	1,365.18	1,957.45	2,644.58	3,584.86
	연평균증가율	10.76	8.96	7.89	6.37
가처분	2005	859.13	1,294.40	1,790.39	2,526.58
	2006	964.00	1,432.00	1,960.00	2,797.00
	2007	1,043.50	1,573.28	2,110.50	2,965.50
	2008	1,165.67	1,720.50	2,307.09	3,144.50
	2009	1,295.00	1,828.50	2,425.00	3,277.50
	연평균증가율	10.80	9.02	7.88	6.72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표 3-4>는 명목소득의 소득5분위를 나누는 소득의 20~80분위수이다. 20분위수 미만까지가 1분위이며 20분위수 초과 그리고 40분위수 미만까지가 2분위이다. 2005년에서 2009년으로 시간이 갈수록 분위수 값들은 점점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의 경우 하위분위가 상위분위보다 증가율 자체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에서는 80분위가 20분위에 비해서 소득의 증가가 더 커서 증가율로만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표 3-5〉 실질소득의 20~80분위수(기준년도=2005년)

(단위: 만원, %)

		20분위수	40분위수	60분위수	80분위수
시장	2005	780.00	1,285.50	1,898.91	2,771.28
	2006	831.70	1,418.52	2,040.12	3,024.59
	2007	911.20	1,493.32	2,114.50	3,086.18
	2008	938.92	1,568.37	2,176.85	3,060.62
	2009	1,023.94	1,624.11	2,242.91	3,111.81
	연평균증가율	7.04	6.02	4.25	2.94
경상	2005	906.95	1,388.53	1,952.02	2,800.00
	2006	985.94	1,500.43	2,095.17	3,020.55
	2007	1,056.30	1,624.14	2,201.61	3,149.81
	2008	1,124.43	1,683.68	2,273.93	3,135.82
	2009	1,210.27	1,735.33	2,344.49	3,178.07
	연평균증가율	7.48	5.73	4.69	3.22
가처분	2005	859.14	1,294.40	1,790.39	2,526.58
	2006	943.25	1,401.17	1,917.81	2,736.79
	2007	995.71	1,501.22	2,013.84	2,829.68
	2008	1,062.60	1,568.37	2,103.09	2,866.45
	2009	1,148.05	1,621.01	2,149.82	2,905.59
	연평균증가율	7.52	5.79	4.68	3.56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표 3-5>는 실질소득의 소득5분위를 나누는 20~80분위수의 소득이다. 실질소득에서도 명목소득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명목소득과 동일하게 하위분위율의 증가율이 상위분위율의 증가율보다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3. 집단별 소득변화 추이

<표 3-6>은 가구의 지역별 명목소득추이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시장소득의 경우 2005년에는 중소도시가 가장 높았으나 그 이후에는 대도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 시장소득이 전체와 마찬가지로 2006년에 높은 증가를 보이다가 2007년에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농어촌의 경우는 2007년에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모든 도시에서의 중위소득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 3-6〉 지역별 가구명목소득 추이

(단위: 만원, %)

구 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평균 소득	중위 소득	평균 소득	중위 소득	평균 소득	중위 소득	평균 소득	중위 소득
시 장 소 득	2005	1,721.70	1,451.00	1,749.03	1,446.03	1,788.15	1,558.85	1,176.72	779.05
	2006	2,073.36	1,561.29	2,153.51	1,628.50	2,122.27	1,617.50	1,344.56	872.56
	2007	2,015.86	1,698.47	2,102.59	1,767.85	2,059.79	1,755.15	1,351.71	950.32
	2008	2,144.16	1,838.94	2,215.42	1,930.08	2,198.00	1,894.00	1,506.10	1,064.82
	2009	2,291.74	1,944.00	2,374.32	2,009.18	2,332.16	2,039.30	1,667.88	1,208.39
	연평균증가율	7.41	7.59	7.94	8.57	6.87	6.95	9.11	11.60
경 상 소 득	2005	1,817.08	1,529.98	1,852.44	1,556.30	1,867.53	1,615.00	1,313.69	982.88
	2006	1,999.15	1,680.00	2,039.30	1,733.78	2,058.70	1,715.00	1,443.11	1,051.50
	2007	2,150.08	1,820.50	2,236.25	1,889.39	2,188.75	1,874.66	1,514.75	1,138.54
	2008	2,306.70	1,986.09	2,385.82	2,077.50	2,346.25	2,032.50	1,699.28	1,303.00
	2009	2,461.82	2,109.30	2,539.33	2,181.81	2,498.04	2,153.00	1,884.79	1,416.00
	연평균증가율	7.89	8.36	8.20	8.81	7.54	7.45	9.44	9.56
가 치 분 소 득	2005	1,658.19	1,428.36	1,687.42	1,434.14	1,703.40	1,509.00	1,222.13	926.07
	2006	1,829.76	1,565.77	1,866.99	1,624.00	1,880.47	1,607.00	1,338.72	1,012.94
	2007	1,952.43	1,686.50	2,029.02	1,757.01	1,982.11	1,723.00	1,410.90	1,090.96
	2008	2,116.67	1,856.76	2,185.02	1,928.00	2,150.10	1,881.58	1,595.55	1,259.22
	2009	2,270.45	1,976.50	2,339.08	2,019.57	2,301.72	2,017.38	1,763.46	1,357.50
	연평균증가율	8.17	8.46	8.51	8.93	7.82	7.53	9.60	10.03

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 영남권-경남, 경북, 부산, 대구, 울산 / 중부권-강원, 충북, 충남 / 호남권-전북, 전남, 제주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경상소득의 경우는 2005, 2006년에는 중소도시가 대도시보다 소득이 높았으나 그 이후에는 대도시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공적이전소득이 감소한 시장소득부분을 보충하여 손실을 없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치분소득은 경상소득과 유사한 추세를 보이며 연평균 증가율은 소득 중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은 가구의 지역별 실질소득추이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명목소득과 마찬가지로 2005년에는 중소도시가 가장 높았으나 그 이후에는 대도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와 마찬가지로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2007년에 시장소득이 하락한 이후 2008년에도 2006년의 소득을 회복하지 못했으나 농어촌지역은 2006년 수준 이상으로 2008년에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소득과는 다르게 중위소득은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평균소득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표 3-7〉 지역별 가구실질소득 추이(기준년도=2005년)

(단위: 만원, %)

구 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평균 소득	중위 소득	평균 소득	중위 소득	평균 소득	중위 소득	평균 소득	중위 소득
시 장 소 득	2005	1,721.70	1,451.00	1,749.03	1,446.03	1,788.15	1,558.85	1,176.72	779.05
	2006	2,028.72	1,527.68	2,107.15	1,593.44	2,076.59	1,582.68	1,315.62	853.79
	2007	1,923.53	1,620.68	2,006.28	1,686.88	1,965.45	1,674.76	1,289.80	906.79
	2008	1,954.57	1,676.34	2,019.53	1,759.42	2,003.65	1,726.53	1,372.93	970.66
	2009	2,031.69	1,723.40	2,104.89	1,781.19	2,067.52	1,807.89	1,478.62	1,071.27
	연평균증가율	4.23	4.39	4.74	5.35	3.70	3.77	5.88	8.29
경 상 소 득	2005	1,817.08	1,529.98	1,852.44	1,556.30	1,867.53	1,615.00	1,313.69	982.88
	2006	1,956.11	1,643.84	1,995.40	1,696.46	2,014.38	1,678.08	1,412.04	1,028.87
	2007	2,051.60	1,737.12	2,133.83	1,802.85	2,088.50	1,788.79	1,445.37	1,086.39
	2008	2,102.73	1,810.47	2,174.85	1,893.80	2,138.78	1,852.78	1,549.03	1,187.79
	2009	2,182.47	1,869.95	2,251.18	1,934.23	2,214.57	1,908.69	1,670.91	1,255.32
	연평균증가율	4.69	5.14	4.99	5.59	4.35	4.27	6.20	6.31
가 치 분 소 득	2005	1,658.19	1,428.36	1,687.42	1,434.14	1,703.40	1,509.00	1,222.13	926.07
	2006	1,790.37	1,532.07	1,826.80	1,589.04	1,839.99	1,572.41	1,309.90	991.13
	2007	1,863.00	1,609.26	1,936.09	1,676.54	1,891.32	1,644.08	1,346.28	1,040.99
	2008	1,929.50	1,692.58	1,991.82	1,757.52	1,959.98	1,715.21	1,454.46	1,147.87
	2009	2,012.81	1,752.22	2,073.65	1,790.40	2,040.53	1,788.45	1,563.35	1,203.46
	연평균증가율	4.96	5.24	5.29	5.70	4.62	4.34	6.35	6.77

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 영남권-경남, 경북, 부산, 대구, 울산 / 중부권-강원, 충북, 충남 / 호남권-전북, 전남, 제주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경상소득의 경우 모든 지역에서 전체소득과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명목소득과 마찬가지로 공적이전소득의 투입이 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가치분소득의 경우 경상소득과 유사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은 가구원수별 명목가구소득 추이를 나타낸 것으로 소득이 가장 높은 가구는 4인 가구였으며 가장 소득이 낮은 가구는 1인 가구였다. 시장소득의 경우 1, 2, 5인 가구에서 2007년에 소득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중위소득은 계속 상승하여 중위소득과 평균소득의 격차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소득의 경우는 시장소득에서 2007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던 1, 2, 5인 가구가 경상소득에서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공적이전소득의 투입이 소득감소를 막고 증가 추세로 변경시킨 것을 확인 할 수가 있었다. 가치분소득의 경우도 모든 가구에서 5년간 소득

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가구원수별 가구명목소득 추이

(단위: 만원, %)

구 분			전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이상
시장 소득	평균 소득	2005	1,721.70	1,235.99	1,455.23	1,856.65	2,097.75	1,742.62
		2006	2,073.36	1,381.33	1,702.48	2,247.06	2,538.31	2,337.94
		2007	2,015.86	1,282.86	1,563.28	2,324.03	2,546.08	2,137.08
		2008	2,144.16	1,434.54	1,797.26	2,444.32	2,671.79	2,327.82
		2009	2,291.74	1,695.26	1,905.46	2,485.37	2,881.92	2,405.81
		연평균증가율	7.41	8.22	6.97	7.56	8.26	8.40
	중위 소득	2005	1,451.00	720.00	1,004.80	1,606.77	1,896.00	1,506.19
		2006	1,561.29	723.00	1,077.63	1,794.98	2,048.00	1,750.84
		2007	1,698.47	752.00	1,115.11	1,941.05	2,243.00	1,815.69
		2008	1,838.94	865.00	1,382.39	2,096.94	2,398.00	1,996.36
		2009	1,944.00	1,083.00	1,401.49	2,154.67	2,596.00	2,107.38
		연평균증가율	7.59	10.74	8.67	7.61	8.17	8.76
경상 소득	평균 소득	2005	1,817.08	1,353.30	1,615.44	1,955.26	2,132.93	1,811.06
		2006	1,999.15	1,391.51	1,752.86	2,177.67	2,354.58	2,134.80
		2007	2,150.08	1,430.36	1,823.89	2,426.11	2,594.89	2,259.60
		2008	2,306.70	1,621.85	2,070.54	2,580.60	2,749.77	2,469.78
		2009	2,461.82	1,878.28	2,211.28	2,629.91	2,954.17	2,552.36
		연평균증가율	7.89	8.54	8.17	7.69	8.48	8.96
	중위 소득	2005	1,529.98	854.00	1,272.79	1,674.32	1,916.00	1,592.08
		2006	1,680.00	858.00	1,363.30	1,883.89	2,056.50	1,800.04
		2007	1,820.50	890.00	1,414.21	2,014.38	2,269.00	1,923.02
		2008	1,986.09	1,048.00	1,711.91	2,181.23	2,461.50	2,109.42
		2009	2,109.30	1,303.00	1,745.14	2,252.82	2,676.00	2,217.29
		연평균증가율	8.36	11.14	8.21	7.70	8.71	8.63
가처분 소득	평균 소득	2005	1,658.19	1,267.49	1,483.15	1,789.54	1,920.11	1,643.95
		2006	1,829.76	1,303.90	1,628.78	1,990.07	2,121.16	1,953.49
		2007	1,952.43	1,327.34	1,688.78	2,195.39	2,316.05	2,059.97
		2008	2,116.67	1,511.17	1,926.22	2,361.25	2,488.94	2,266.64
		2009	2,270.45	1,765.85	2,058.27	2,417.11	2,687.38	2,360.13
		연평균증가율	8.17	8.64	8.54	7.80	8.77	9.46
	중위 소득	2005	1,428.36	840.20	1,186.53	1,535.75	1,744.00	1,443.61
		2006	1,565.77	837.60	1,277.04	1,731.47	1,895.00	1,673.92
		2007	1,686.50	854.20	1,361.18	1,870.04	2,056.50	1,795.56
		2008	1,856.76	1,023.00	1,603.72	2,042.67	2,219.00	1,969.98
		2009	1,976.50	1,268.80	1,645.44	2,099.25	2,422.00	2,042.87
		연평균증가율	8.46	10.85	8.52	8.13	8.56	9.07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연평균 증가율의 경우 1인 가구의 소득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2인 가구가 증가폭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인 가구의 경우 시장소득의 연평균증가율이 6.97%이었으나 경상소득에서 8.17%로 1.2%p정도 증가하여 다른 가구보다 증가율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공적이전소득의 투입이 2인 가구에 더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표 3-9〉 가구원수별 가구실질소득 추이(기준년도=2005년)

(단위: 만원, %)

구 분			전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이상
시장 소득	평균 소득	2005	1,721.70	1,235.99	1,455.23	1,856.65	2,097.75	1,742.62
		2006	2,028.72	1,351.59	1,665.83	2,198.69	2,483.67	2,287.61
		2007	1,923.53	1,224.10	1,491.68	2,217.59	2,429.47	2,039.20
		2008	1,954.57	1,307.69	1,638.34	2,228.19	2,435.54	2,121.99
		2009	2,031.69	1,502.89	1,689.24	2,203.34	2,554.90	2,132.81
		연평균증가율	4.23	5.01	3.80	4.37	5.05	5.18
	중위 소득	2005	1,451.00	720.00	1,004.80	1,606.77	1,896.00	1,506.19
		2006	1,527.68	707.44	1,054.43	1,756.34	2,003.91	1,713.15
		2007	1,620.68	717.56	1,064.03	1,852.15	2,140.27	1,732.53
		2008	1,676.34	788.51	1,260.16	1,911.52	2,185.96	1,819.84
		2009	1,723.40	960.11	1,242.45	1,910.17	2,301.42	1,868.24
		연평균증가율	4.40	7.46	5.45	4.42	4.96	5.53
경상 소득	평균 소득	2005	1,817.08	1,353.30	1,615.44	1,955.26	2,132.93	1,811.06
		2006	1,956.11	1,361.55	1,715.13	2,130.79	2,303.90	2,088.85
		2007	2,051.60	1,364.84	1,740.35	2,314.99	2,476.04	2,156.11
		2008	2,102.73	1,478.44	1,887.46	2,352.41	2,506.63	2,251.40
		2009	2,182.47	1,665.15	1,960.35	2,331.48	2,618.94	2,262.73
		연평균증가율	4.69	5.32	4.96	4.50	5.27	5.72
	중위 소득	2005	1,529.98	854.00	1,272.79	1,674.32	1,916.00	1,592.08
		2006	1,643.84	839.53	1,333.96	1,843.34	2,012.23	1,761.29
		2007	1,737.12	849.24	1,349.44	1,922.11	2,165.08	1,834.94
		2008	1,810.47	955.33	1,560.53	1,988.36	2,243.85	1,922.90
		2009	1,869.95	1,155.14	1,547.11	1,997.18	2,372.34	1,965.68
		연평균증가율	5.14	7.84	5.00	4.51	5.49	5.41
가처분 소득	평균 소득	2005	1,658.19	1,267.49	1,483.15	1,789.54	1,920.11	1,643.95
		2006	1,790.37	1,275.83	1,593.72	1,947.23	2,075.50	1,911.44
		2007	1,863.00	1,266.54	1,611.43	2,094.84	2,209.97	1,965.62
		2008	1,929.50	1,377.55	1,755.90	2,152.46	2,268.87	2,066.22
		2009	2,012.81	1,565.47	1,824.71	2,142.83	2,382.43	2,092.32
		연평균증가율	4.96	5.42	5.32	4.61	5.54	6.21
	중위 소득	2005	1,428.36	840.20	1,186.53	1,535.75	1,744.00	1,443.61
		2006	1,532.07	819.57	1,249.55	1,694.20	1,854.21	1,637.89
		2007	1,609.26	815.08	1,298.84	1,784.39	1,962.31	1,713.32
		2008	1,692.58	932.54	1,461.91	1,862.05	2,022.79	1,795.79
		2009	1,752.22	1,124.82	1,458.72	1,861.03	2,147.16	1,811.06
		연평균증가율	5.24	7.57	5.30	4.92	5.34	5.83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표 3-9>는 가구원수별 실질가구소득 추이를 나타낸 것으로 소득이 가장 높은 가구는 4인 가구였으며 1인 가구가 소득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장소득에서 평균소득의 경우 3인 가구는 2008년까지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다 2009년에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나머지 가구는 전체와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위소득은 1인 가구가 2006년에 감소했으며 2인, 3인 가구는 2009년에 감소하였다. 이렇게 감소한 시점은 평균소득이 증가했던 기간이었기 때문에 중위소득과 평균소득 간 격차가 더 벌어졌음을 알 수 있다. 다른 가구는 전체와 동일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소득의 경우 3인 가구의 경우 2009년 평균소득이 감소했으며, 나머지는 전체와 같은 모습을 보였다. 시장소득과 마찬가지로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이 2006년에 감소하였으며, 2인 가구는 2009년에 감소하였다. 나머지는 전체추세와 동일한 모습을 보였고 가처분소득 역시 경상소득과 유사한 추세를 보였다.

연평균증가율은 1인 가구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3인 가구가 가장 작게 나타났다. 중위소득과 평균소득 간 격차의 변화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노인 가구와 노인이 없는 가구(이후 무노인 가구)의 소득추세를 살펴볼 것이다. <표 3-10>, <표 3-11>은 노인 가구와 무노인 가구의 명목, 실질소득추세를 나타낸 표이다.

<표 3-10>의 분석결과 노인 가구의 경우 전체의 추세와 같게 2007년에 소득이 감소하였다. 하지만 중위소득은 지속적인 증가를 보여 평균소득과 중위소득의 격차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또한 2007년에 줄어든 시장소득이 공적이전소득이 더해진 경상소득에서는 이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국가의 지원이 노인들의 소득감소를 막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가처분소득의 경우는 경상소득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며 연평균 증감률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가구와 무노인 가구 사이의 소득격차가 시간에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무노인/노인의 결과를 우측에 제시하였다. 무노인/노인의 경우 중위소득의 격차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장소득에서 2007년 이후 평균소득의 격차가 크게 늘었지만 공적이전소득이 추가되면서 격차를 많이 줄여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10〉 노인·무노인 가구 명목소득 추이

(단위: 만원, %)

구 분		전체		무노인		노인		무노인/노인	
		평균 소득	중위 소득	평균 소득	중위 소득	평균 소득	중위 소득	평균 소득	중위 소득
시장 소득	2005	1,721.70	1,451.00	2,008.57	1,765.67	927.02	604.00	2.17	2.92
	2006	2,073.36	1,561.29	2,390.31	1,931.81	1,290.16	716.30	1.85	2.70
	2007	2,015.86	1,698.47	2,411.09	2,116.00	1,122.25	774.23	2.15	2.73
	2008	2,144.16	1,838.94	2,509.67	2,198.95	1,228.29	821.66	2.04	2.68
	2009	2,291.74	1,944.00	2,682.63	2,344.00	1,275.25	916.00	2.10	2.56
	연평균증감률	7.41	7.59	7.50	7.34	8.30	10.97	-0.74	-3.27
경상 소득	2005	1,817.08	1,529.98	2,062.91	1,801.33	1,136.08	839.00	1.82	2.15
	2006	1,999.15	1,680.00	2,284.14	1,990.13	1,294.95	920.65	1.76	2.16
	2007	2,150.08	1,820.50	2,489.97	2,170.50	1,381.56	998.58	1.80	2.17
	2008	2,306.70	1,986.09	2,616.05	2,269.11	1,531.54	1,120.76	1.71	2.02
	2009	2,461.82	2,109.30	2,785.40	2,430.07	1,620.35	1,245.00	1.72	1.95
	연평균증감률	7.89	8.36	7.80	7.77	9.28	10.37	-1.36	-2.35
가처분 소득	2005	1,658.19	1,428.36	1,872.45	1,667.97	1,064.64	812.25	1.76	2.05
	2006	1,829.76	1,565.77	2,076.16	1,833.58	1,220.90	896.86	1.70	2.04
	2007	1,952.43	1,686.50	2,242.67	1,982.50	1,296.18	953.00	1.73	2.08
	2008	2,116.67	1,856.76	2,387.05	2,119.20	1,439.16	1,083.29	1.66	1.96
	2009	2,270.45	1,976.50	2,552.95	2,252.00	1,535.82	1,196.43	1.66	1.88
	연평균증감률	8.17	8.46	8.06	7.79	9.59	10.17	-1.40	-2.15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표 3-11>의 분석결과 시장소득의 경우 무노인 가구가 노인 가구에 비하여 약 두 배 정도의 소득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노인 가구의 경우 평균소득의 경우 증가율이 5.09%이고 중위소득은 7.68%로 중위소득의 증가가 빨라서 점점 중위 소득과 평균소득 간 격차는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상소득을 보면 무노인, 노인 가구 모두 시장소득에서 2007년도의 소득감소가 나타났으며 무노인의 경우 2008년에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경우 증가율이 시장소득의 4.99%에서 경상소득은 6.17%로 크게 상승하여 공적이전소득의 투입으로 그 격차를 매운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가처분소득역시 경상소득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무노인/노인의 결과는 명목소득과 동일하다.

〈표 3-11〉 노인·무노인 가구 실질소득 추이(기준년도=2005년)

단위: 만원, %

구 분		전체		무노인		노인		무노인/노인	
		평균 소득	중위 소득	평균 소득	중위 소득	평균 소득	중위 소득	평균 소득	중위 소득
시장 소득	2005	1,721.70	1,451.00	2,008.57	1,765.67	927.02	604.00	2.17	2.92
	2006	2,028.72	1,527.68	2,338.86	1,890.23	1,262.39	700.88	1.85	2.70
	2007	1,923.53	1,620.68	2,300.66	2,019.08	1,070.85	738.77	2.15	2.73
	2008	1,954.57	1,676.34	2,287.75	2,004.51	1,119.68	749.00	2.04	2.68
	2009	2,031.69	1,723.40	2,378.21	2,078.01	1,130.54	812.06	2.10	2.56
	연평균증감률	4.23	4.40	4.31	4.16	5.09	7.68	-0.74	-3.27
경상 소득	2005	1,817.08	1,529.98	2,062.91	1,801.33	1,136.08	839.00	1.82	2.15
	2006	1,956.11	1,643.84	2,234.97	1,947.29	1,267.07	900.83	1.76	2.16
	2007	2,051.60	1,737.12	2,375.93	2,071.09	1,318.29	952.84	1.80	2.17
	2008	2,102.73	1,810.47	2,384.73	2,068.47	1,396.11	1,021.66	1.71	2.02
	2009	2,182.47	1,869.95	2,469.33	2,154.32	1,436.48	1,103.72	1.72	1.95
	연평균증감률	4.69	5.14	4.60	4.58	6.04	7.10	-1.36	-2.35
가처분 소득	2005	1,658.19	1,428.36	1,872.45	1,667.97	1,064.64	812.25	1.76	2.05
	2006	1,790.37	1,532.07	2,031.47	1,794.11	1,194.62	877.55	1.70	2.04
	2007	1,863.00	1,609.26	2,139.96	1,891.70	1,236.81	909.35	1.73	2.08
	2008	1,929.50	1,692.58	2,175.98	1,931.81	1,311.91	987.50	1.66	1.96
	2009	2,012.81	1,752.22	2,263.25	1,996.45	1,361.54	1,060.66	1.66	1.88
	연평균증감률	4.96	5.24	4.85	4.60	6.34	6.90	-1.40	-2.15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제3절 소결 및 정책적 함의

이상으로 한국복지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득추세와 분위값을 확인해 보았다. 분석을 통하여 2007년에 시장소득이 소량 감소 하였으나 물가가 반영된 실질소득에서는 큰 폭으로 감소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적이전소득이 시장소득의 감소를 막아 소득을 끌어올려준 것으로 나타나 정부지원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집단별로 소득 추세를 확인한 결과 명목소득의 경우 대도시, 중소도시 지역에서는 전체 추세와 마찬가지로 2007년에 감소하였으나 농어촌 지역은 2007년에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질소득에서도 2007년 감소는 하였지만 2008년에 2006년의 수준보다 더 높게 회복되어 다른 지역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가구원수별 소득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5인 가구이상의 소득이 3인 가구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인 가구라 함은 노인이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자녀수가 3인 이상일 경우이다. 이들 노인 또는 다자녀가구의 소득이 가구원수에 비하여 매우 낮은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복지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노인 가구의 시장소득은 비노인 가구의 소득의 5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나이로 인하여 경제활동인구에서의 탈락되는 경우가 많아서 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노인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3-12〉 시장소득 계산 과정

□ 근로소득

- 상용근로자 임금소득 = $h0508_114 + h0508_116 + h0508_118 + h0508_120 + h0508_3aq2 + h0508_4aq70 + h0508_4aq72 + h0508_4aq74 + h0508_4aq76$
-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소득 = $h0508_122 + h0508_124 + h0508_126 + h0508_128 + h0508_130 + h0508_4aq78 + h0508_4aq80 + h0508_4aq82 + h0508_4aq84$
- 근로소득 = 상용근로자 임금소득 +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소득

□ 사업 및 부업소득

- 고용주·자영자 사업소득(순소득) = $h0508_148 + h0508_150 + h0508_152 + h0508_154 + h0508_4aq86 + h0508_4aq88 + h0508_4aq90 + h0508_4aq92 + h0508_4aq94$
- 농림축산업소득(순소득) = $h0508_164$
- 어업소득(순소득) = $h0508_170$
- 기타근로소득 = $h0508_172 + h0508_174 + h0508_176 + h0508_178 + h0508_4aq106 + h0508_4aq108 + h0508_4aq110 + h0508_4aq112 + h0508_4aq114$
- 사업 및 부업소득 = 자영자 및 사업주의 사업소득 + 농림수산업소득 + 어업소득 + 기타근로소득

□ 재산소득

- 재산소득 = 이자 및 배당금($h0508_aq9$) + 임대료($h0508_aq10$) + 기타재산소득($h0508_aq11$)

□ 사적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 = 부모($h0508_3aq6$)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h0508_3aq7$) + 민간보험($h0508_aq15$) + 기타 민간보조금($h0508_aq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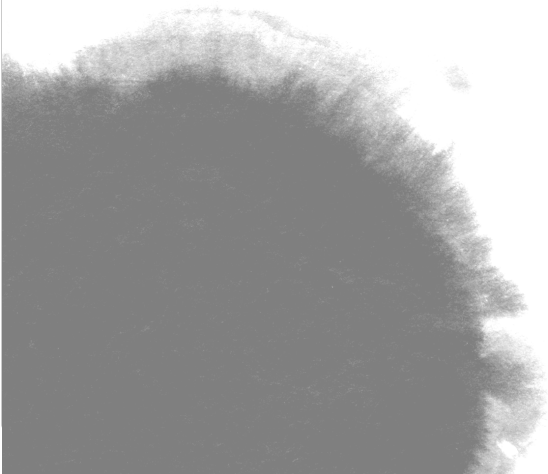
□ 시장소득

- 시장소득 = 근로소득 + 사업 및 부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주: 5차 자료의 예시임

04

소득분배



제4장 소득분배

이 장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5차 원자료를 활용하여 소득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를 산출하고자 한다. 제1절에서는 소득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표들 중 대표적인 빈곤지표와 불평등지표를 중심으로 산출 방식을 간단히 소개한다. 이후 제2절부터는 한국복지패널 원자료를 활용하여 빈곤지표와 불평등지표를 산출한 결과를 제시하는데, 제2절에서는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를 빈곤선으로 이용한 빈곤관련 지표를, 제3절에서는 중위소득의 50%선을 빈곤선으로 이용한 빈곤 관련 지표를, 그리고 제4절에서는 불평등지표를 제시할 것이다.

제1 절 소득분배 관련 지표 산출 방식

1. 빈곤지표 산출 방식

본 연구에서는 빈곤지표로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두 가지 지표, 즉 빈곤율(HR: Headcount Ratio)과 빈곤격차비율(PRG: Poverty Gap Ratio)을 사용하였다.

먼저, 빈곤율(HR)은 빈곤선 이하의 소득을 가지는 사람(혹은 가구)을 전체 인구(혹은 가구) 수로 나눈 값을 의미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text{빈곤율} = \frac{\text{빈곤선 이하의 소득을 얻는 인구의 수}}{\text{전체 인구의 수}} \times 100(\%)$$

여기서 HR은 빈곤율, q 는 소득(또는 지출)이 빈곤선 이하인 인구(혹은 가구)수이며, n 은 전체 인구(혹은 가구)수를 나타내며 y 는 개인(혹은 가구)소득(혹은 지출), z 는 빈곤선을 나타낸다. 위에서 계산된 빈곤율은 빈곤의 전체적인 수준을 표현하는데 좋은 지표이지만 빈곤선 이하의 빈곤층이 느끼는 박탈의 정도, 즉 빈곤의 심도(depth)를 표현하는 데는 부족하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빈곤율과 더불어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빈곤지표로는 빈곤격차비율(PRG)을 들 수 있다. 먼저, 빈곤격차는 빈곤선을 기준으로 빈곤선 이하에 있는 사람들의 빈곤선과 개인(혹은 가구)의 소득(혹은 지출)과의 차이를 계산한 값을 의미한다. 즉, 개인(또는 가구) n 명으로 구성된 경제에서 빈곤층에 속한 개인(또는 가구) i 의 빈곤격차는 빈곤선과 빈곤선 이하에 있는 개인(또는 가구)의 소득차($g_i = z - y_i$)로 정의되며, 총빈곤격차는 빈곤층 전체의 빈곤격차를 합한 $\sum_{i \in z(y)} g_i = \sum_{i=1}^q (z - y_i)$ 가 된다. 여기서 빈곤격차는 빈곤선 이하에 있는 개인(또는 가구)의 소득을 빈곤선 상태로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액수를 의미한다. 위에서 구한 총빈곤격차를 빈곤선 이하에 있는 개인(또는 가구)의 수에 빈곤선을 곱한 액수로 나눌 경우 빈곤격차비율(poverty gap ratio)이 되며 이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PGR = \frac{\sum_{i=1}^q (z - y_i)}{z q}$$

여기서 PGR은 빈곤격차비율, z 는 빈곤선을 나타내며, y_i 는 빈곤선 이하에 속한 개인의 소득, 그리고 q 는 빈곤선 이하에 있는 개인의 수를 나타낸다. 빈곤격차비율은 빈곤율과 달리 빈곤의 심각성 또는 심도(depth)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빈곤율과 빈곤격차비율을 특정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산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인빈곤율, 아동빈곤율 등은 각각 노인 및 아동을 대상을 산출한 빈곤율이다. 구체적으로 노인빈곤율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 가운데 빈곤한 가구에 속하는 노인의 비율을 의미한다. 노인의 빈곤격차비율은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빈곤격차비율을 구한

것이다. 아동빈곤율은 역시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즉, 아동빈곤율은 18세 미만의 전체 아동 가운데 빈곤한 가구에 속하는 아동의 비율을 의미한다. 아동의 빈곤격차비율은 아동인구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빈곤격차비율이다.

2. 불평등지표 산출 방식

본 연구에서는 불평등 지표로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니계수와 더불어 일반화된 엔트로피지수, 앳킨슨지수, 분배율 등이 사용되었다.

지니계수는 절대적 평등선(사선)과 로렌즈곡선 간의 차이의 비율(ratio)-사선 아래쪽의 삼각형 지역-로서 측정된다. 지니계수를 정의하는 방식은 다양하며, 약간의 조작을 하면 모든 쌍의 소득들 간의 차이의 절대값의 산술평균으로 정의되는 상대평균차의 정확히 절반(1/2)이다. 이를 산출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G &= (1/2n^2\mu) \sum_{i=1}^n \sum_{j=1}^n |y_i - y_j| \\ &= 1 - (1/n^2\mu) \sum_{i=1}^n \sum_{j=1}^n \text{Min}(y_i, y_j) \\ &= 1 + (1/n) - (2/n^2\mu)[y_1 + 2y_2 + \dots + ny_n] \text{ for } y_1 \geq y_2 \geq \dots \geq y_n. \end{aligned}$$

소득분위배율은 하위 분위의 평균소득 대비 상위 분위의 평균소득의 값을 나타낸다. 소득 10분위 배율은 전체 인구를 10개의 소득분위로 나눈 후, 최상위인 10분위가 최하위인 1분위에 비해 몇 배의 소득을 얻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전체 인구를 5개의 소득분위로 나눈 후, 최상위인 5분위가 최하위인 1분위에 비해 몇 배의 소득을 얻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3. 소득의 정의와 빈곤선 기준

이 장에서의 소득 범주는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등 세 가지를 사용할 것이다. 각 소득범주의 의미는 앞의 제3장에서 소개된 바와 같다.

빈곤 지표를 산출할 때 본 장에서는 두 가지의 빈곤선을 사용할 것이다. 먼저 보건 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를 빈곤선으로 사용할 것이며(제2절), 다음으로 중위소득의 50%를 빈곤선으로 사용할 것이다(제3절).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를 이용하여 빈곤지위를 판정하는 제2절의 경우를 제외하고 빈곤과 불평등 지표를 산출할 때에는 균등화된 가구소득을 사용할 것이다. 가구소득을 균등화하는 방법은 제3장에서와 마찬가지로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주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 장에서의 분석단위는 개인이다. 특히 빈곤을 산정에서는 가구단위 빈곤율이 종종 사용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분석단위는 개인단위이며, 특히 국가간 비교연구에서 주로 활용되는 분석단위가 개인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개인을 단위로 분배지표를 산출하였다.

제2절 소득분배 지표 산출결과와 추이

1. 빈곤

가. 최저생계비 기준 빈곤지표

다음의 <표 4-1>은 최저생계비를 빈곤선을 설정하였을 때의 소득범주에 따른 빈곤율과 빈곤격차비율의 변화를 보여준다. 모든 소득범주에서 빈곤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2009년의 시장소득 빈곤율의 경우 2008년의 11.9%에서 더 감소한 11.3%이고, 경상소득 빈곤율은 2008년의 5.7%에서 더 감소한 약 4.9%이다. 가처분소득 빈곤율은 2009년의 경우 약 5.6%로 나타났다.

빈곤격차비율은 빈곤율의 변화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2007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상승하는 경향을, 그리고 2007년 이후에는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다. 시장소득 기준 빈곤격차 비율의 경우 2008년에는 약 5.6% 그리고 2009년에는 5.0%로 감소하였다.

〈표 4-1〉 빈곤지표(최저생계비 기준)

(단위: %)

	빈곤율			빈곤격차비율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2005	15.56	9.85	11.07	7.50	3.39	3.94
2006	14.13	7.94	9.05	6.71	2.57	3.02
2007	13.36	7.41	8.52	6.83	2.82	3.22
2008	11.94	5.73	6.72	5.63	1.66	2.10
2009	11.25	4.85	5.59	5.02	1.25	1.50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한편 <표 4-2>는 아동 및 노인인구의 빈곤율을 보여준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아동빈곤율은 전체 아동(18세 미만)인구 가운데 빈곤한 가구에 속하는 아동의 비율을 의미한다. 빈곤율의 저하경향은 아동 및 노인빈곤율에서도 그대로 관측된다. 2009년의 경우 아동빈곤율은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각각 약 8.2%, 3.7%, 4.2%이다. 2009년의 노인빈곤율은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각각 약 38.2%, 17.4%, 19.1%이다.

〈표 4-2〉 아동 및 노인인구 빈곤지표(최저생계비 기준)

(단위: %)

	연도	빈곤율			빈곤격차비율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아동	2005	10.78	6.99	8.24	4.79	2.47	2.89
	2006	10.23	5.89	6.77	4.65	2.05	2.45
	2007	9.39	4.96	6.20	5.03	2.33	2.72
	2008	8.38	3.90	4.98	3.67	1.20	1.65
	2009	8.23	3.65	4.17	3.57	0.90	1.11
노인	2005	46.89	29.87	31.81	23.27	9.19	10.03
	2006	41.94	24.09	26.22	20.51	7.01	7.70
	2007	41.05	24.44	26.26	20.19	7.28	7.98
	2008	39.33	19.16	20.49	18.05	4.44	4.95
	2009	38.24	17.38	19.08	17.72	4.13	4.71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한국복지패널자료는 두 가지 지역 구분을 제공하고 있다. 하나는 서울, 광역시, 시, 군, 도농복합군 등 5개의 구분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광역 행정자치단체를 묶어 7개의 행정구역으로 구분하는 방식이다. 아래의 <표 4-3>은 5개의 지역구분을 다시 대도시(서울과 광역시), 중소도시(시), 농어촌(군, 도농복합군)으로 재분류하여 각 지역별 빈곤율과 빈곤격차비율을 산출한 것이다. 또한 <표 4-4>는 7개의 행정구역별로 빈곤율과 빈곤격차비율을 제시한 것이다.

3개 지역 가운데에서 빈곤율과 빈곤격차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농어촌이고, 다음으로 대도시, 중소도시의 순이다. 세 지역 모두 빈곤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동일하다. 대도시의 시장소득 빈곤율은 2008년 10.3%에서 2009년에는 9.7%로 감소하였고, 중소도시의 경우 2008년 11.7%에서 2009년에는 11.3%로 감소하였다. 농어촌의 시장소득 빈곤율은 2008년 21.3%에서 2009년에는 19.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인 점은 중소도시와 대도시의 시장소득 빈곤율 차이는 점차 늘어나는 반면, 농어촌과 대도시의 시장소득 빈곤율 차이는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표 4-3> 지역별 빈곤지표(최저생계비 기준)

(단위: %)

지역	연도	빈곤율			빈곤격차비율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대도시	2005	14.61	8.74	9.67	7.24	2.81	3.43
	2006	13.18	6.92	8.00	6.66	2.36	2.71
	2007	12.07	6.18	7.21	6.68	2.56	2.98
	2008	10.34	4.85	5.86	5.25	1.49	1.86
	2009	9.65	3.99	4.65	4.55	1.02	1.23
중소도시	2005	13.97	8.97	10.54	6.75	3.40	3.86
	2006	12.96	7.58	8.74	6.03	2.42	2.98
	2007	12.67	7.39	8.59	6.23	2.69	3.06
	2008	11.74	5.68	6.73	5.35	1.59	2.12
	2009	11.25	4.79	5.64	4.92	1.32	1.59
농어촌	2005	30.00	21.27	22.24	13.23	6.79	7.41
	2006	25.77	15.59	16.61	10.74	4.54	4.96
	2007	23.68	14.01	15.12	10.75	4.90	5.34
	2008	21.27	10.55	11.17	9.03	2.90	3.24
	2009	19.34	9.50	10.15	7.90	2.13	2.39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표 4-4〉 행정구역별 빈곤율(최저생계비 기준)

(단위: %)

지역	연도	빈곤율			빈곤격차비율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서울	2005	11.37	7.40	8.52	5.53	2.63	3.34
	2006	9.97	6.09	7.10	5.19	2.37	2.75
	2007	9.53	5.82	6.68	5.91	2.79	3.39
	2008	8.50	4.14	5.31	4.60	1.72	2.16
	2009	7.36	3.19	3.82	3.54	0.87	1.11
경기/ 인천	2005	13.40	8.90	10.56	6.45	3.19	3.75
	2006	11.33	5.93	7.02	5.22	1.68	2.19
	2007	10.49	5.75	6.93	5.39	2.46	2.78
	2008	8.90	4.20	5.58	3.84	1.12	1.73
	2009	8.33	2.82	3.75	3.56	0.77	0.97
부산/ 경남/ 울산	2005	14.28	7.95	8.44	6.66	2.30	2.71
	2006	14.44	7.59	8.31	7.48	2.70	3.11
	2007	12.93	6.40	6.94	6.45	2.27	2.47
	2008	11.15	5.05	5.31	5.29	1.07	1.25
	2009	12.34	6.07	6.70	5.65	1.60	1.82
대구/ 경북	2005	21.03	13.33	14.41	10.54	4.28	4.93
	2006	18.09	10.01	11.55	8.15	2.74	3.11
	2007	20.01	11.01	12.13	9.61	4.12	4.49
	2008	16.41	7.20	8.62	7.17	2.26	2.69
	2009	17.25	7.33	8.33	7.43	2.18	2.55
대전/ 충남	2005	16.05	7.98	9.94	7.72	2.86	3.26
	2006	14.71	8.68	10.51	7.80	3.35	3.96
	2007	14.69	9.49	11.22	7.19	3.11	3.57
	2008	14.90	6.76	7.44	7.55	2.13	2.36
	2009	11.62	5.24	5.79	5.54	1.33	1.64
강원/ 충북	2005	16.98	11.81	12.59	8.07	4.62	4.94
	2006	15.70	8.61	9.94	5.62	2.19	2.69
	2007	12.59	6.14	8.32	5.38	1.74	2.22
	2008	14.66	6.02	7.84	5.97	1.27	1.91
	2009	15.65	7.19	7.92	5.88	1.64	2.00
광주/ 전남/ 전북/ 제주	2005	25.78	17.34	18.68	12.43	6.09	6.69
	2006	23.76	14.39	15.40	10.80	4.54	5.02
	2007	21.55	11.96	13.20	10.63	3.75	4.21
	2008	19.78	11.33	11.46	9.77	3.13	3.53
	2009	16.50	7.77	8.25	7.71	1.63	1.81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위의 <표 4-4>를 통해 볼 때 2009년 현재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경북지역(17.3%)이고 다음은 광주/전남/전북/제주지역(16.5%)이다. 빈곤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7.4%)이다. 전체 인구의 빈곤율 감소 경향은 지역별

빈곤율 변화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특히 2009년의 시장소득 빈곤율은 다른 지역에서는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부산/경남/울산 지역과 대구/경북지역, 그리고 강원/충북지역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시장소득 기준 빈곤격차비율도 이들 세 지역은 증가한 반면 타 지역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중위소득 기준 빈곤지표

중위소득의 20%를 빈곤선으로 설정하여 측정한 상대빈곤율은 아래의 <표 4-5>와 같다. 시장소득 상대빈곤율은 2008년의 19.6%에서 2009년에는 18.4%로 감소하였고, 경상소득은 같은 기간 동안 15.6%에서 14.3%로, 그리고 가처분소득은 15.2%에서 13.5%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빈곤율의 감소추세는 최저생계비 기준 빈곤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빈곤격차비율에서도 지속적인 감소경향이 확인되고 있다.

<표 4-5> 상대빈곤율과 빈곤격차비율(중위소득 50% 기준)

(단위: %)

연도	빈곤율			빈곤격차비율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2005	20.44	17.04	16.43	9.91	6.15	6.05
2006	20.23	16.83	15.99	9.51	5.76	5.62
2007	19.55	16.22	15.45	9.29	5.51	5.32
2008	19.62	15.56	15.17	8.88	5.10	5.00
2009	18.41	14.29	13.47	8.18	4.30	4.05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상대빈곤선을 기준으로 한 아동빈곤율과 노인빈곤율⁵⁾ 살펴보면 다음의 <표 4-6>과 같다. 2009년의 아동빈곤율은 시장소득과 경상소득,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각각 12.9%, 9.8%, 9.1%의 수준이다. 이는 2008년에 비해 감소한 수치이다. 노인빈곤율의 경우 2009년에 시장소득 기준 57.5%, 경상소득 기준 45.6%, 그리고 가처분소득 기준 43.2%인 것으로 나타났다.

5) 아동빈곤율과 노인빈곤율을 추정하는 경우에도 빈곤선은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산출된 중위소득의 50%선을 이용하였다.

아동빈곤율과 노인빈곤율을 전체 인구집단의 빈곤율(<표 4-5> 참조)과 비교하여 보면, 아동빈곤율은 전체 인구집단의 빈곤율에 비해 낮은 반면 노인빈곤율은 전체 인구집단의 빈곤율의 약 두배 이상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인빈곤율이 전체 인구집단의 빈곤율에 비해 높은 것은 다수의 노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음에 따라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소득이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제3장 참조). 반대로 아동빈곤율이 낮은 것은 대개의 경우 아동이 있는 가구의 부모세대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아동이 없는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6〉 아동, 노인인구의 빈곤지표(중위소득 50% 기준)

(단위: %)

	연도	빈곤율			빈곤격차비율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아동	2005	14.29	12.18	11.72	5.89	3.79	3.76
	2006	14.21	12.30	11.14	6.08	3.76	3.70
	2007	13.21	11.09	10.07	5.82	3.16	3.15
	2008	13.50	10.85	10.66	5.41	3.06	3.13
	2009	12.89	9.80	9.11	5.29	2.58	2.43
노인	2005	60.45	49.71	48.24	32.44	19.79	18.64
	2006	58.45	49.15	47.30	30.28	18.64	17.51
	2007	58.02	49.09	46.75	30.29	18.97	17.54
	2008	59.01	48.27	46.42	29.98	17.58	16.21
	2009	57.51	45.61	43.21	29.20	16.01	14.78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다음의 <표 4-7>과 <표 4-8>은 전국을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으로 구분했을 때의 상대빈곤율 변화와 7개 권역으로 구분했을 때의 빈곤율 변화를 보여준다.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빈곤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농어촌의 빈곤율이 가장 높고 다음이 중소도시, 대도시의 순이다. 2009년에 대도시의 시장소득 빈곤율은 16.7%, 중소도시의 시장소득 빈곤율은 17.6%, 농어촌의 시장소득 빈곤율은 31.3%였다.

한편 시장소득 빈곤율과 가처분소득 빈곤율의 차이는 정부의 개입(재정지출과 조세 및 사회보장부담금 부과)이 빈곤율을 얼마나 낮추는 효과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2009년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보면, 대도시의 경우 두 빈곤율의 차이는 약 4.4%p였으나 중소도시는 약 4.9%p, 그리고 농어촌은 약 8.0%p로 나타나, 정부

의 개입이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농어촌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7〉 지역별 빈곤지표(중위소득 50% 기준)

(단위: %)

지역	연도	빈곤율			빈곤격차비율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대도시	2005	19.33	15.60	15.08	9.42	5.33	5.35
	2006	19.01	15.88	14.93	9.16	5.23	5.08
	2007	17.73	14.56	13.61	8.64	4.72	4.63
	2008	17.03	13.48	13.18	7.86	4.35	4.32
	2009	16.62	12.72	12.26	7.31	3.70	3.52
중소도시	2005	18.68	15.87	15.29	8.90	5.82	5.70
	2006	18.77	15.35	14.67	8.57	5.34	5.33
	2007	18.57	15.27	14.88	8.58	5.28	5.10
	2008	19.33	15.20	14.98	8.59	4.97	4.96
	2009	17.64	13.71	12.73	7.91	4.16	3.93
농어촌	2005	36.75	32.03	30.71	18.50	12.77	12.13
	2006	35.09	30.24	29.15	16.62	10.98	10.26
	2007	34.26	29.87	28.02	16.41	10.90	10.06
	2008	34.64	28.16	26.45	15.62	9.60	8.78
	2009	31.33	25.18	23.35	13.98	8.04	7.36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7개 행정권역의 비교할 때 상대빈곤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경북지역이고 다음이 광주/전남/전북/제주지역이다. 2009년의 경우 대구/경북지역의 시장소득 상대빈곤율은 약 27.5%로 전국평균에 비해 약 9%p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상대빈곤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과 경기/인천이었다. 2009년의 경우 시장소득 상대빈곤율은 서울이 14.3%로 경기/인천보다 약간 낮았지만,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 기준 상대빈곤율은 경기/인천이 서울에 비해 다소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정부의 개입이 상대빈곤율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지역별로 비교하면 그 효과가 가장 큰 지역은 강원/충북지역으로 2009년의 경우 시장소득 상대빈곤율과 가처분소득 상대빈곤율의 차이가 약 8.0%p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행정구역별 빈곤지표(중위소득 50% 기준)

(단위: %)

행정 구역	연도	빈곤율			빈곤격차비율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서울	2005	15.75	13.61	13.27	7.30	4.67	4.92
	2006	15.27	12.92	12.68	7.12	4.65	4.65
	2007	14.05	12.22	12.37	6.85	4.10	4.32
	2008	14.18	12.00	12.04	6.65	4.15	4.30
	2009	14.25	11.75	11.37	5.77	3.17	3.13
경기/ 인천	2005	18.36	15.85	15.39	8.60	5.67	5.62
	2006	16.55	13.86	13.11	7.49	4.31	4.32
	2007	15.71	12.72	12.72	7.10	4.20	4.08
	2008	15.86	12.83	12.48	6.34	3.77	3.86
	2009	14.32	10.92	10.23	5.89	2.96	2.80
부산/ 경남/ 울산	2005	18.06	13.60	13.37	8.83	4.73	4.56
	2006	19.19	15.97	14.42	9.93	5.53	5.35
	2007	18.19	14.14	12.99	8.78	4.71	4.30
	2008	19.19	14.18	13.54	8.49	4.41	4.09
	2009	18.95	13.90	13.34	8.93	4.75	4.43
대구/ 경북	2005	28.26	23.05	21.60	13.92	8.09	7.86
	2006	26.55	20.99	20.33	12.09	7.17	6.78
	2007	27.80	23.85	22.09	13.57	8.37	7.98
	2008	27.12	20.64	19.13	12.11	6.70	6.52
	2009	27.45	20.97	19.63	12.28	6.37	6.01
대전/ 충남	2005	21.10	17.41	16.72	10.18	5.58	5.39
	2006	22.18	17.50	16.49	10.82	6.55	6.59
	2007	22.41	18.92	17.39	10.39	6.63	6.29
	2008	21.84	17.89	18.21	11.00	6.25	5.96
	2009	17.99	14.37	13.63	8.71	4.48	4.26
강원/ 충북	2005	20.70	17.15	16.88	10.39	7.26	6.96
	2006	22.53	18.61	18.35	9.00	5.79	5.59
	2007	20.73	18.40	16.94	9.04	5.68	5.37
	2008	25.43	18.61	18.07	11.07	5.94	5.84
	2009	21.88	15.37	13.90	10.14	5.41	5.16
광주/ 전남 전북/ 제주	2005	31.62	26.98	25.40	16.38	10.65	10.22
	2006	32.33	27.98	26.53	15.63	10.08	9.56
	2007	31.09	25.26	23.15	15.46	9.09	8.55
	2008	28.54	23.27	23.03	14.54	8.56	8.05
	2009	26.19	21.61	20.06	12.49	6.62	6.01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2. 불평등 지표

아래의 <표 4-9>는 대표적인 불평등지표인 지니계수와 소득 10분위배율 및 5분위배율을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기간에 걸쳐 추정한 것이다.

지니계수의 경우, 세 가지 소득범주 모두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니계수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불평등이 완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불평등의 완화 경향은 소득분위 배율(10분위, 5분위 모두)에서 확인되는 바이다.

시장소득 지니계수의 변화를 보면 2005년에 0.378이었던 것이 2008년에는 0.363으로 감소하였고, 2009년에는 다시 0.354로 줄어들었다.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역시 2008년의 0.319에서 2009년의 0.310으로 줄어들었다. 한편 시장소득 지니계수에서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를 뺀 수치는 정부의 개입에 의한 소득불평등의 완화효과를 추정할 수 있게 해준다. 이 크기는 2005년의 0.0435에서 2008년에는 0.0449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2009년에는 다시 0.0446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표 4-9> 불평등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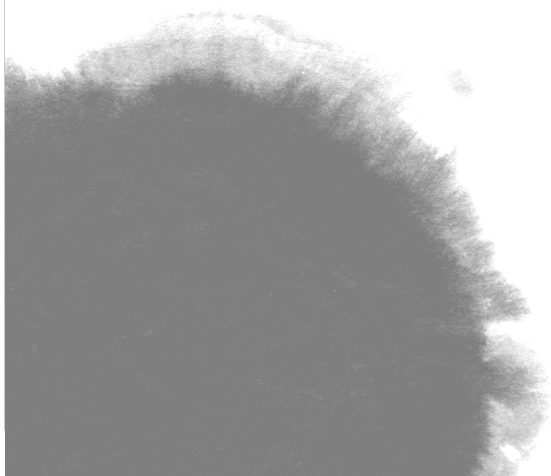
구분	연도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2005	0.3784	0.3452	0.3349
	2006	0.3761	0.3422	0.3315
	2007	0.3711	0.3384	0.3257
	2008	0.3633	0.3290	0.3185
	2009	0.3544	0.3190	0.3098
10분위배율	2005	23.71	11.58	11.18
	2006	21.84	10.95	10.47
	2007	21.00	10.66	9.93
	2008	19.31	9.86	9.39
	2009	16.85	8.99	8.48
5분위배율	2005	9.74	6.70	6.36
	2006	9.43	6.52	6.15
	2007	9.09	6.38	5.94
	2008	8.55	5.97	5.66
	2009	7.83	5.51	5.21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최하위 소득 1분위의 평균소득 대비 최상위 소득 10분위의 평균소득의 비율을 의미하는 10분위 배율은 위의 <표 4-9>에서와 같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2005년의 경우 시장소득의 10분위 배율은 23.7배였다. 그러나 이 수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9년에는 약 16.9%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을 이용하여 측정한 소득 10분위 배율은 이보다 훨씬 작게 나타난다. 2009년의 경우 각각 약 9.0배, 8.5배로 나타났다. 소득분위 배율의 감소경향은 시장소득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5

주거



제5장 주거

본 장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5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연도별·지역별·계층별⁶⁾·점유형태별 주거복지 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거복지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로써 윤주현·김근용·박천규 외(2005) 및 최은희·홍형욱·지은영 외(2008)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였다. 이에 포함되는 세부지표는 한국 복지패널자료로 분석이 가능한 몇 가지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각 지표가 가지는 의미와 본 연구에서 분석한 세부지표는 다음과 같다. 주거안정성 지표는 얼마나 안심하고 편안하게 주거소비를 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자가 점유율을 살펴보았다. 양적지표는 특정지역 거주가구의 주거소비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로 1인당 주거면적, 방당 거주인 수를 측정하였다. 질적지표는 개별가구의 주거소비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로 주거밀도를 나타내는 3인 이상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을 구하였다. 주거비부담 지표는 소득에 대비한 개인 주거비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을 측정하였다. 추가적으로 주택지불능력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연소득 대비 자가주택가격(현시가기준)비율을 포함하여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주거빈곤 주거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대상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을 측정하였다.

6) 계층 중에 분위별로 나눈 표들은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분위값을 통하여 분위기를 나누었다.

〈표 5-1〉 주거복지 측정지표⁷⁾

구분	지표	의의	측정방법	분석 가능여부
주거 안정성 지표	자가점유율	주거안정성	$\frac{\text{자가거주가구수}}{\text{전체가구수}} \times 100$	○
	평균 거주기간	주거안정성	조사년도 - 이사년도 + 1	×
	강제이동 비율	주거안정성	“주거부담이 비싸서/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의 이사이유를 선택한 가구의 비율	×
양적 지표	주택보급률	주택재고의 절대부족 정도	$\frac{\text{주택수(소유권기준)}}{\text{보통가구수}} \times 100$	×
	1인당 주거면적	개인의 주거소비량, 주거밀도	$\frac{\text{가구전용면적}}{\text{가구원수}} \times 100$	○
	방당 거주인수	주거밀도	$\frac{\text{가구원수}}{\text{방수}} \times 100$	○
질적 지표	건축경과년수	주택의 물리적 노후도	조사년도 - 신축년도 + 1	×
	3인 이상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	조밀도	$\frac{\text{3인 이상 단칸방 거주 가구수}}{\text{3인 이상 가구수}} \times 100$	○
	주거만족도 (시설, 환경, 주변편의)	개별가구가 느끼고 있는 만족도	4점 척도	×
주거비 부담 지표	PIR(연소득대비주택 구입가격비율)	주택구입부담	$\frac{\text{주택구입가격}}{\text{연소득}} \times 100$	×
	RIR(월소득대비 임대료 비율)	임차가구의 주거비부담 정도	$\frac{\text{임대료}}{\text{월소득}} \times 100$	○
	PTI(월소득대비 상환액 비율)	주택자금대출의 상환능력 측정	$\frac{\text{월상환액}}{\text{월소득}} \times 100$	×
	LTV(주택가격대비 대출금액 비율)	주택구입의 초기부담정도 측정	$\frac{\text{대출금액}}{\text{주택구입가격}} \times 100$	×
주거 빈곤 지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비율	주거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대상계층	최저주거기준을 기준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시설·침실·면적)를 산정	○

7) 주거복지 지표는 유주현 외(2005), 『지역간·계층간 주거서비스 격차 완화방안 연구(I): 주거서비스 지표의 개발 및 측정』, 국토연구원과, 최은희 외(2008) 『주거복지지수의 개발과 관리』, 주택도시연구원을 참조하여 재구성하였다.

제1 절 주거복지 지표 산출방식

1. 자가 점유율

자가 점유율은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이는 내 집이라는 안정감과 자산 가치 상승기대, 그 사회의 주거안정성을 표시하는 지표로 사용된다(윤주현 외, 2005:53).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별·계층별(소득5분위별) 자가 점유율을 구하였다. 5차년도에서는 주거 점유형태(h0506_3=1) 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text{자가 점유율} = \frac{\text{자가거주가구수}}{\text{전체가구수}} \times 100(\%)$$

2. 1인당 주거면적

1인당 주거면적은 개인의 주거 소비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통해 주거밀도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윤주현 외, 2005:53).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별·계층별(소득5분위별)·점유형태별 1인당 주거면적을 측정하였다. 5차년도에서는 주거면적(h0506_5), 가구원수(h0501_1)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윤주현 외(2005)의 선행연구에서는 주거면적을 전용면적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한국복지패널자료에서 제시된 주거면적은 전용면적 기준과 분양면적 기준이 혼재⁸⁾되어 있다. 따라서 산출된 지표는 타 전수조사 자료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

$$1\text{인당주거면적} = \frac{\text{가구전용면적}}{\text{가구원수}} \times 100$$

8) 한국복지패널 자료의 주거면적은 주거유형에 따라 일반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면적 기준으로 조사되었다.

3. 방당 거주인 수

1인당 주거면적뿐만 아니라 방당 거주인 수를 통해서도 이를 통해 주거밀도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별·계층별(소득5분위별)·점유형태별 방당 거주인 수를 측정하였다. 5차년도에서는 방수(h0506_4), 가구원수(h0501_1)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표는 가족이 필수적인 활동을 수행하는데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는가를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이지만, 가족 수, 가족원의 성별, 연령, 관계 등에 따라 필요한 주택공간의 양이 감안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최은희 외, 2008)

$$\text{방당 거주인 수} = \frac{\text{가구원수}}{\text{방수}} \times 100$$

4. 3인 이상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

3인 이상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은 주거의 질적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조밀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여기서 3인 이상 거주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1인 가구, 2인 가구의 증대에 따른 조밀도 완화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단칸방이라도 거주인원이 1~2인 경우 주거과밀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3인 이상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로 주거의 질을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윤주현 외, 2005:54).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원수별(3인 이상)·지역별 3인 이상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을 측정하였다. 5차년도에서는 방수(h0506_4=1), 가구원수(h0501_1≥3)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text{3인 이상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 = \frac{\text{3인 이상 단칸방 거주가구 수}}{\text{3인 이상 가구 수}} \times 100(\%)$$

5.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ent to Income Ratio : RIR)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임차가구의 주거비부담 정도를 측정하는데 사용된다(윤주현 외, 2005:55).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별·계층별(소득5분위별)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을 구하였다. 5차년도에서는 주택 월세액⁹⁾(h0507_3aq3), 가처분 소득(h05_din)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월소득의 경우 가처분소득을 월단위로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text{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RIR)} = \frac{\text{임대료}}{\text{월소득}} \times 100(\%)$$

6. 연소득 대비 자가주택가격(현시가기준) 비율

연소득 대비 자가주택가격(현시가기준) 비율은 주택구입능력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측정하였다. 통상적으로 주택구입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가격 비율(PIR)로 측정을 하지만 한국복지패널 조사에는 구입당시의 주택가격 변수가 없기 때문에 자가주택가격(현시가기준)으로 대체하여 분석하였음을 밝혀둔다.

$$\text{연소득 대비 자가주택가격비율} = \frac{\text{자가주택가격 (현시가기준)}}{\text{연소득}}$$

9) 3차년도 이후 주택 월세액의 경우 1,2차년도와 시점 상 차이가 있다. 1,2차년도는 12월 31일 기준의 주택 월세액을 묻는 반면 3차년도 이후에는 1년 중 평균 월세액을 묻는 문항으로 바뀌었다.

7.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비율

최저주거기준이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기준을 의미하며, 주택법 제5조의 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건설교통부¹⁰⁾ 장관이 설정·공고한 기준을 말한다(김혜승, 2007:20)¹¹⁾.

최저주거기준은 크게 시설기준, 침실기준, 면적기준, 구조·성능·환경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구조·성능·환경기준의 경우 관련요소의 법정기준 적합여부를 가 구별로 파악하는 것이 어렵고, 자연재해의 위험과 주택상태(내열·내화·방열·방습) 및 환경(방음·환기·채광·난방 설비 구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이 기준을 실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규모 추정 시 엄밀히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김혜승, 2007: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조·성능·환경기준을 제외한 시설·침실·면적 기준을 중심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규모를 파악하고자 한다.

우선, 시설기준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설비가 각 세부기준(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전용 목욕시설)에 미달하는지를 확인하고, 이 중 하나라도 미달인 가구는 시설기준 미달가구로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침실기준과 면적기준의 경우 최저주거기준 공고문(표 5-2 참조)을 바탕으로 미달여부를 판단하였다. 이는 해당가구원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최소 주거면적과 방수의 최대값을 나타낸 것으로 현재 주거상황이 이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건교부가 제시한 가구원 수별 최소주거면적과 방수는 다음 표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시설·침실·면적 기준을 중심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5차년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시설기준 미달여부는 주거시설 사용형태_부엌($2 \leq h0505_22 \leq 5$), 주거시설 사용형태_화장실($2 \leq h0506_23 \leq 5$), 주거시설 사용형태_목욕시설($3 \leq h0506_24 \leq 5$) 중 하나라도 미달인 가구는 시설기준 미달가구로 판단하였다. 침실 기준은 방수(h0506_4)와 가구원수(h0501_1) 변수를 사용하여 <표 5-2>에서 제시된 가구원수별 방수 기준에서 미달인 가구를 선정하였다. 면적 기준은 주거면적(h0506_5)과 가

10) 건설교통부는 2008년 3월 6일 국토해양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11) 김혜승(2007), 『최저주거기준을 활용한 2006년 주거복지 소요추정 연구』, 국토연구원.

가구원수(h0501_1) 변수를 사용하여 <표 5-2>에서 제시된 가구원수별 총 주거면적 기준에서 미달인 가구를 선정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침실·면적기준에서는 표준가구구성에 따른 가구원수별 최소주거면적 및 방수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가구원수별 최소주거면적 및 방수를 고려하였다¹²⁾.

〈표 5-2〉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가구원수(인)	표준가구구성 ¹⁾	실(방)구성 ²⁾	총 주거면적(m ²)
1	1인 가구	1K	12(3.6평)
2	부부	1DK	20(6.1평)
3	부부+자녀1	2DK	29(8.8평)
4	부부+자녀2	3DK	37(11.2평)
5	부부+자녀3	3DK	41(12.4평)
6	노부모+부부+자녀2	4DK	49(14.8평)

주: 1) 3인 가구의 자녀 1인은 6세 이상 기준

4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5인 가구의 자녀 3인은 8세 이상 자녀(남2, 여1 또는 남1, 여2) 기준

6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2) K는 부엌, DK는 식사실 겸 부엌을 의미하며, 숫자는 침실(거실겸용 포함) 또는 침실로 활용이 가능한 방의 수를 말함.

제2절 주거복지 지표 산출 결과와 추이

1. 자가 점유율

점유형태별 가구비율을 살펴보면 2005~2009년 기간 동안 자가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2009년에 들어서면서 자가의 비율이 감소하고 전세와 월세의 비율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12) 예컨대, 3인 가구는 표준가구구성상 부부와 자녀 한 명으로 구성된 가구를 의미하지만, 본 분석에서는 단순히 3명의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표 5-3〉 점유형태별 가구비율

(단위: %)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기타	계
2005	53.53	19.45	15.91	2.30	8.80	100.00
2006	54.88	19.25	15.40	2.46	8.01	100.00
2007	54.35	18.85	15.66	2.29	8.85	100.00
2008	53.78	19.71	15.42	2.28	8.81	100.00
2009	53.43	20.15	16.00	2.24	8.19	100.00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자가 점유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2005~2009년 기간 동안 농어촌의 자가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대도시 지역이 가장 낮았다. 이는 농어촌 지역이 대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가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4〉 지역별 자가 점유율

(단위: %)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05	53.53	51.10	53.89	66.39
2006	54.88	52.17	55.07	69.39
2007	54.35	51.79	54.34	67.61
2008	53.78	50.81	54.48	65.73
2009	53.43	50.16	54.58	64.49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소득계층별(소득 5분위별) 자가 점유율을 살펴보면, 2005년을 뺀 나머지에서 1분위가 가장 낮았으며 1분위와 5분위의 자가 점유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나머지 분위의 경우는 상승과 하락이 같이 있어 변동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9년에는 3분위를 뺀 나머지분위 모두에서 자가점유율이 감소하여 2008년에 비해서 주거가 불안정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5분위가 2008년에는 자가 점유율이 가장 높았으나 2009년에는 4분위의 자가 점유율이 가장 높았다.

〈표 5-5〉 소득 5분위별 자가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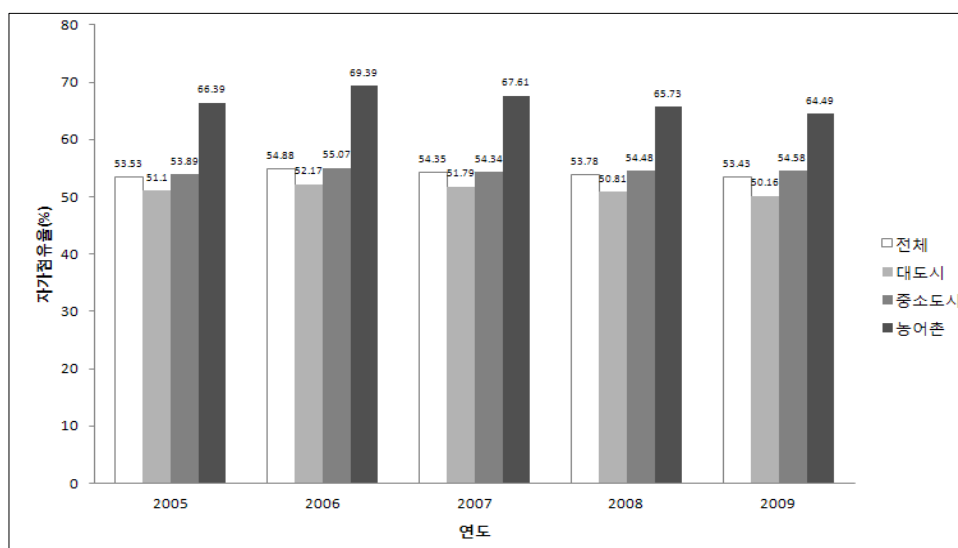
(단위: %)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05	53.53	46.89	45.92	56.08	59.42	59.37
2006	54.88	47.30	48.37	54.02	60.88	63.78
2007	54.35	46.68	48.24	55.27	58.79	62.80
2008	53.78	43.21	47.99	55.05	60.99	61.66
2009	53.43	43.11	49.23	53.76	60.56	60.48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지역별 자가 점유율을 그림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5-1〕 지역별 자가 점유율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2. 1인당 주거면적

1인당 주거면적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농어촌이 가장 넓었으며, 대도시가 가장 면적이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든지역이 2005년에 비해 주거면적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 지역별 1인당 주거면적

(단위: m²)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05	30.01	29.19	30.35	33.05
2006	29.91	29.11	30.05	33.71
2007	34.21	32.01	36.61	37.92
2008	31.95	30.21	32.71	37.22
2009	32.71	31.04	33.45	37.63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소득계층별로 1인당 주거면적을 살펴보면, 1분위의 주거면적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분위에 속한 1~2인 가구 비율이 다른 분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¹³⁾으로 보인다. 주거면적에서는 모든 분위에서 추세가 일정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으나 2005년에 비하여 모든 분위에서 면적이 넓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5-7〉 소득 5분위별 1인당 주거면적

(단위: m²)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05	30.01	34.66	26.43	27.22	29.09	32.62
2006	29.91	34.70	28.51	25.94	28.17	32.19
2007	34.59	44.91	30.24	30.30	31.81	35.69
2008	31.95	38.70	30.15	27.76	28.76	34.40
2009	32.71	38.50	30.63	28.88	31.42	34.12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점유형태별 1인당 주거면적을 살펴보면, ‘기타¹⁴⁾’를 제외하고 ‘자가’의 주거면적이 가장 넓었다. 또한 ‘월세’ ‘보증부월세’가 가장 면적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세와 기타의 경우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다른 집단에서는 일정한 추세를 보이지 않았다.

13) 예컨대, 2009년의 경우 1분위에 속한 1~2인 가구의 비율은 약 60%로 타 분위(4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1인 가구 30.94%, 2인 가구 29.15%).

14) 한국복지패널자료의 주거 점유형태 중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상으로 주택에 사는 경우, 둘째, 주택 명목이 가구원이 아닌 자로 된 경우, 셋째,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된 사택이나 관사에 사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표 5-8〉 점유형태별 1인당 주거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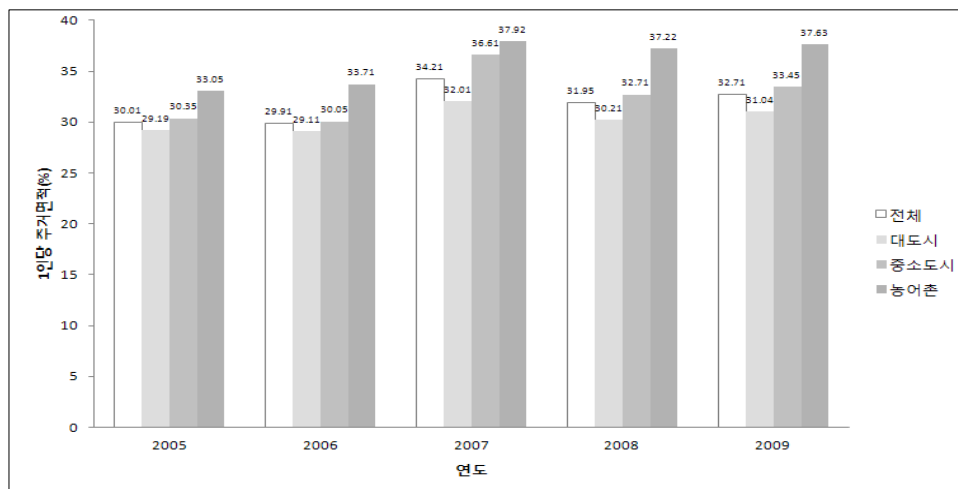
(단위: m²)

	전체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월세	기타
2005	30.01	32.89	25.96	24.36	19.52	34.36
2006	29.91	33.05	25.81	23.34	17.94	34.49
2007	34.21	38.19	29.44	25.08	21.35	39.86
2008	31.95	34.43	28.53	24.27	21.93	40.53
2009	32.71	34.65	29.38	25.85	23.35	44.22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지역별 1인당 주거면적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5-2〕 지역별 1인당 주거면적



3. 방당 거주인 수

2008년 방당 거주인 수의 값이 전년도에 비해 전체적으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용방수를 묻는 문항에 대한 조사 지침사항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⁵⁾.

15) 2005년~2007년에는 거실의 경우 침실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만을 방수에 포함하여 조사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거실의 경우 미닫이문이 있어서 독립적인 공간으로 구분이 가는 한 경우도 방수에 포함하여

〈표 5-9〉 지역별 방당 거주인 수

(단위: m²)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05	1.18	1.18	1.20	1.05
2006	1.18	1.18	1.21	1.05
2007	1.17	1.17	1.19	1.01
2008	1.12	1.13	1.14	0.97
2009	1.12	1.14	1.13	0.98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지역별 방당 거주인 수를 보면 농어촌이 1이하로 평균적으로 각자 방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도시가 중소도시보다 소량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2009년에는 대도시가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소득계층별로 방당 거주인 수를 살펴보면, 1분위가 1이하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1인당 주거면적과 마찬가지로 1분위에 속한 1~2인 가구 비율이 다른 분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¹⁶⁾으로 보인다.

〈표 5-10〉 소득 5분위별 방당 거주인 수

(단위: m²)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05	1.18	0.98	1.31	1.26	1.22	1.14
2006	1.18	0.96	1.26	1.31	1.24	1.15
2007	1.17	0.91	1.24	1.30	1.23	1.15
2008	1.12	0.88	1.17	1.22	1.22	1.11
2009	1.12	0.89	1.19	1.22	1.17	1.12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점유형태별 방당 거주인 수를 살펴보면, ‘기타’를 제외하고 ‘자가’의 수치가 가장 작았으며 가장 넓었다. 또한 ‘월세’ ‘보증부월세’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하도록 하였다.

16) 예컨대, 2009년의 경우 1분위에 속한 1~2인 가구의 비율은 약 60%로 타 분위(4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1인 가구 30.94%, 2인 가구 29.15%).

〈표 5-11〉 점유형태별 방당 거주인 수

(단위: m²)

	전체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월세	기타
2005	1.18	1.13	1.25	1.30	1.42	1.06
2006	1.18	1.12	1.26	1.32	1.47	1.07
2007	1.17	1.11	1.24	1.33	1.38	1.03
2008	1.12	1.09	1.18	1.24	1.17	0.97
2009	1.12	1.09	1.17	1.24	1.29	0.92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4. 3인 이상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

가구원수별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을 살펴보면 3인 가구는 2008년에 비해서 2009년에는 소량 증가 하였으며 4인 가구는 약간 감소하였다. 하지만 5인 가구의 경우는 단칸방 거주 비율이 0.13%에서 0.53%로 2009년에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인 가구에서 2009년에 단칸방 거주가구가 새로 발생하였다.

〈표 5-12〉 가구원수별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3인 이상)

(단위: %)

	전체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05	0.75	1.86	1.26	0.36	0
2006	0.92	2.20	1.31	0.66	0
2007	0.91	2.48	1.02	1.21	0
2008	0.30	0.84	0.43	0.13	0
2009	0.35	0.93	0.41	0.53	0.61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3인 이상 가구 중 단칸방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소도시가 2008년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도시가 전체년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적인 추세를 보면 대도시의 경우 2008년에 비해서 2009년에 0.1%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와 다르게 농어촌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3〉 지역별 3인 이상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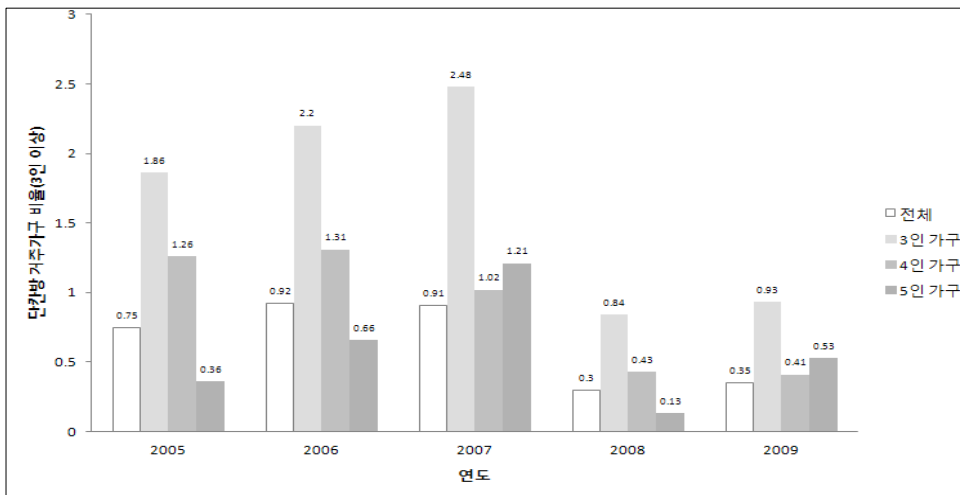
(단위: %)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05	0.75	0.67	0.95	0.75
2006	0.92	0.68	1.18	0.83
2007	0.91	0.60	1.28	0.72
2008	0.30	0.16	0.42	0.45
2009	0.35	0.26	0.45	0.32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3인 이상 가구 중 단칸방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5-3〕 가구원수별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3인 이상)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5.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ent to Income Ratio : RIR)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대체적으로 대도시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농어촌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2008년에는 농어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4〉 지역별 월소득대비 임대료 비율

(단위: %)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05	17.01	17.00	17.14	15.09
2006	17.86	21.82	13.72	12.40
2007	15.56	18.42	12.72	10.35
2008	13.82	13.69	13.89	14.86
2009	14.68	16.24	13.22	9.53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소득계층별(소득5분위별)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을 살펴보면 2005~2009년 기간 동안 1분위에서는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5분위에서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주거비부담이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15〉 소득 5분위별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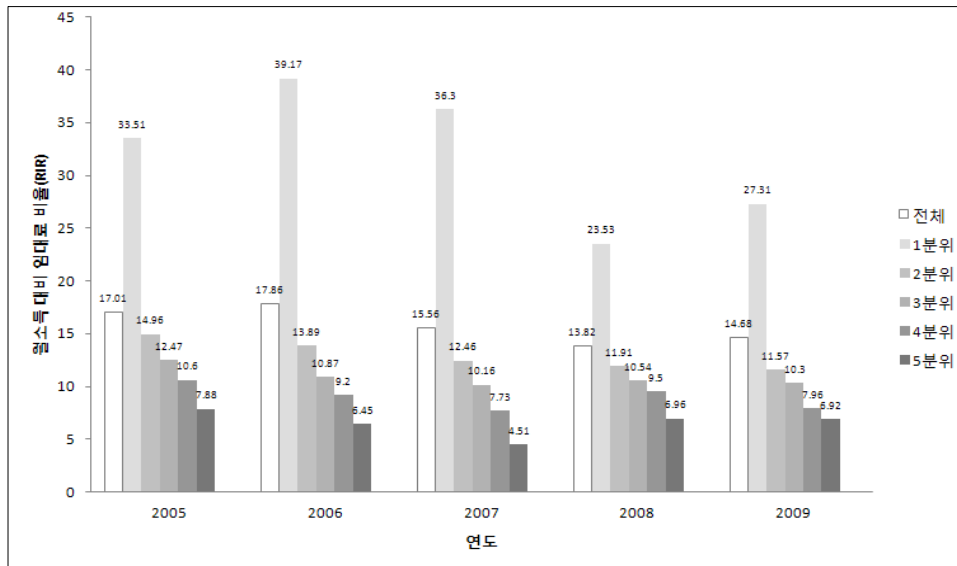
(단위: %)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05	17.01	33.51	14.96	12.47	10.60	7.88
2006	17.86	39.17	13.89	10.87	9.20	6.45
2007	15.56	36.30	12.46	10.16	7.73	4.51
2008	13.82	23.53	11.91	10.54	9.50	6.96
2009	14.68	27.31	11.57	10.30	7.96	6.92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소득계층별(소득5분위별)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을 그림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5-4] 소득5분위별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그림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듯이 1분위의 주거비부담은 2분위의 두 배가 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저소득층의 주거비부담 실태는 분위별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을 보여주는 <표 5-16>의 결과에서도 잘 나타난다⁷⁾. <표 5-13>은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이 30%를 초과하는 가구를 ‘주거비부담이 과도한 가구’라고 가정하고, 소득계층별 주거비 부담이 과도한 가구비율의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표 5-16>에 따르면 2009년에 보증부월세 및 월세로 사는 세입자 중 ‘주거비부담이 과도한 가구’의 비율이 1분위에서는 22.10%로 상당히 높게 나타난 반면 3분위에서는 1.80%, 5분위에서는 2.49%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즉, 중·상위 소득계층에서는 소득에 비해 주거비부담이 과도한 가구비율이 낮은 반면, 하위소득계층에서는 소득에 비해 주거비부담이 과도한 가구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⁸⁾.

17) 미 주택 도시 개발청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에서는 주거를 위해 가구소득의 30% 보다 많이 지출하는 경우를 “과도한 주거비부담”(excess cost burden)으로 정의하며, 주거를 위해 가구소득의 50% 보다 많이 지출하는 경우를 “심각한 주거비부담”(severe cost burden)으로 정의하고 있다(오동훈(1997), “Housing Affordability and Urban Renters’ Characteristics: A Budget Share Approach”, 「국토계획」 제32권 제 5호.).

18) 이 결과는 주거 점유형태가 ‘보증부 월세’ 혹은 ‘월세’인 가구들만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이기에 ‘보증부 월세’, ‘월세’ 및 ‘전세’인 가구는 월세로 환산하여 포함한 연구결과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표 5-16〉 소득 5분위별 주거비부담이 과도한 가구의 비율

(단위: %)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09	7.33	22.10	2.02	1.80	0.00	2.49

자료: 한국복지패널 5차년도 원자료.

다음으로 가구원수별 주거비부담이 과도한 가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인 가구의 경우 RIR이 30%를 초과하는 비율이 15.60%로 2~5인 가구에 비해서 크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17〉 가구원수별 주거비부담이 과도한 가구의 비율

(단위: %)

	전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2009	7.33	15.60	4.42	1.38	1.40	1.54	0.00	0.00

자료: 한국복지패널 5차년도 원자료.

6. 연소득 대비 자가주택가격(현시가기준) 비율¹⁹⁾

〈표 5-18〉 지역별 연소득 대비 자가주택가격(현시가기준) 비율

(단위: 배)

	전체	3개 지역구분			7개 지역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서울	수도권 (인천/경기)	부산/경남/울산	대구/경북	대전/충남	강원/충북	광주/전남/전북/제주도
2005	6.10	7.55	5.12	3.58	10.55	6.21	4.45	5.08	4.83	4.33	3.70
2006	5.97	7.29	5.23	3.35	10.84	6.45	4.27	4.89	4.48	3.85	3.12
2007	6.01	7.23	5.42	3.46	10.76	7.08	4.02	4.55	4.36	4.08	3.40
2008	5.56	6.93	4.86	2.89	10.48	6.38	3.70	3.75	3.99	4.11	3.22
2009	5.53	6.89	4.73	3.36	10.49	6.20	4.01	3.79	3.99	4.47	3.10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19) 연소득 대비 자가주택가격(현시가기준) 비율 전체의 분포상태를 고려하여 상·하위 1% 극단치를 제거한 후 분석하였다.

지역별 연소득 대비 자가주택가격(현시가기준) 비율을 보면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농어촌의 경우 2009년에 다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개 지역구분에서는 대도시가 가장 높았으며, 7개 지역구분에서는 서울과 수도권이 가장 높았다. 이는 서울 및 수도권지역의 주택가격이 타 도시에 비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19〉 소득 5분위별 연소득 대비 자가주택가격(현시가기준) 비율

(단위: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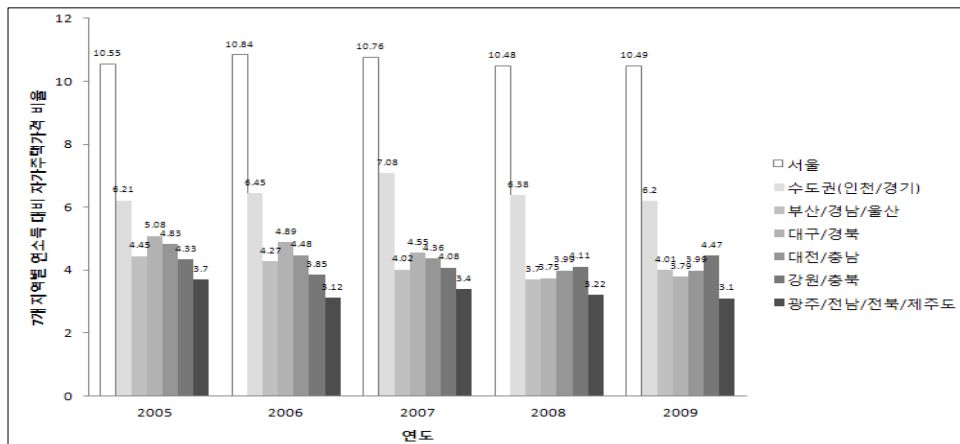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05	6.10	10.80	7.60	5.16	4.34	4.26
2006	5.97	10.48	6.98	5.31	4.55	4.10
2007	6.01	10.15	6.87	5.56	4.65	4.23
2008	5.56	9.90	6.12	5.23	4.22	3.99
2009	5.53	8.91	6.38	5.09	4.37	4.18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소득 5분위별 연소득 대비 자가주택가격(현시가기준) 비율을 살펴보면 RIR과 마찬가지로 1분위의 비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주택구입능력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더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7개 지역의 RIR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5-6〕 7개 지역별 연소득 대비 자가주택가격(현시가기준) 비율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7.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비율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규모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의 경우 13.74%로 2006년부터 서서히 낮아지는 추세이다.

〈표 5-20〉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규모 추이

(단위: 천 가구, %)

연도	미달요건 구성요소	시설 기준	침실 기준	면적 기준	시설&침실 기준	시설&면적 기준	침실&면적 기준	시설&침실 &면적기준	최저주거 기준 미달가구계
2005	규모	1,259	1,812	499	95	168	273	50	3,085
	비율	7.94	11.44	3.15	0.60	1.06	1.73	0.32	19.47
2006	규모	1,349	1,871	507	101	181	264	52	3,234
	비율	8.37	11.61	3.15	0.63	1.12	1.64	0.32	20.07
2007	규모	1,008	1,843	437	91	132	233	42	2,875
	비율	6.16	11.26	2.67	0.56	0.81	1.42	0.26	17.56
2008	규모	1,025	1,452	440	70	153	174	26	2,546
	비율	6.17	8.73	2.65	0.42	0.92	1.04	0.15	15.31
2009	규모	799	1,499	330	54	110	170	24	2,318
	비율	4.74	8.89	1.95	0.32	0.65	1.01	0.14	13.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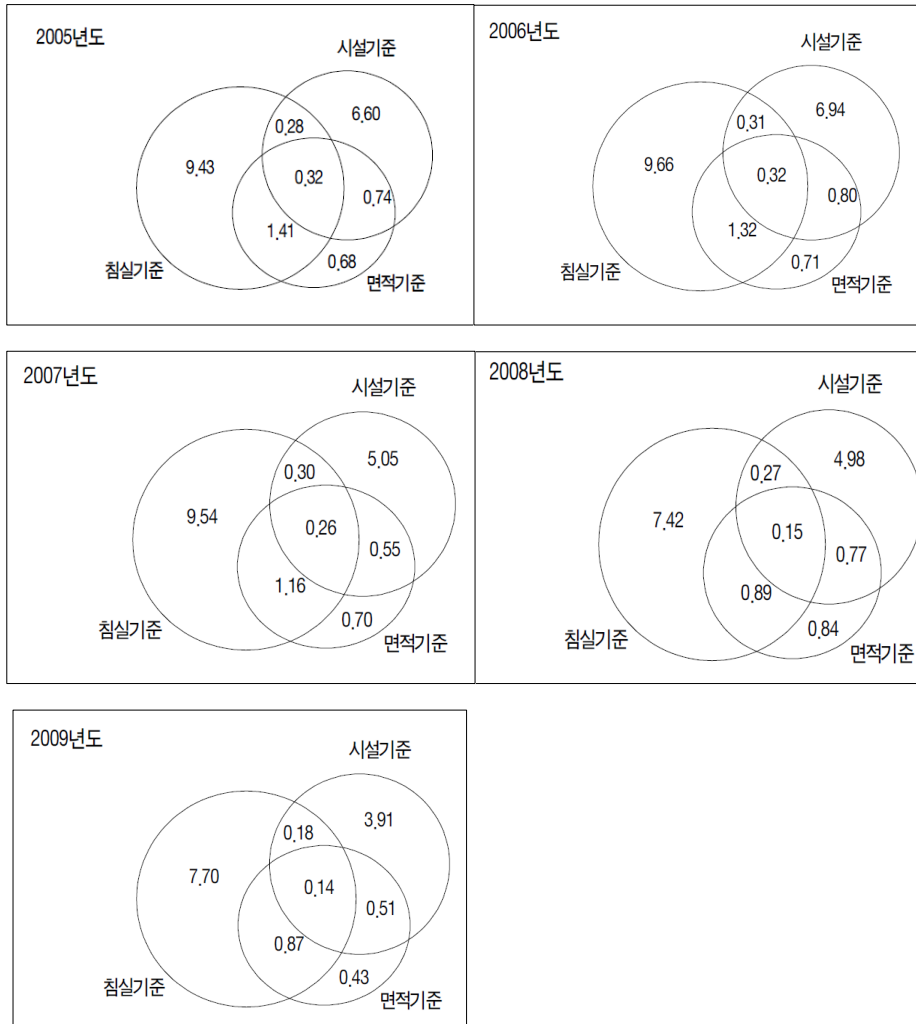
주: 구성요소 합계와 우측 끝 총계 사이의 차이는 반올림으로 인한 오차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미달요건 구성요소별로 살펴보면, 시설기준 미달가구의 경우 전체가구에서 시설기준 미달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9년 4.74%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침실기준 미달가구가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9년 8.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05년~2009년 기간 동안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침실기준 미달가구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시설기준 미달가구, 면적기준 미달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규모 추이를 그림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5-7]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규모(2005~2009년도)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제3절 소결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원자료를 활용하여 연도별·지역별·계층별·점유형태별 주거복지 실태와 수준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얻을 수 있다.

첫 번째로 3인 이상 가구의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이 2009년에 증가하였음을 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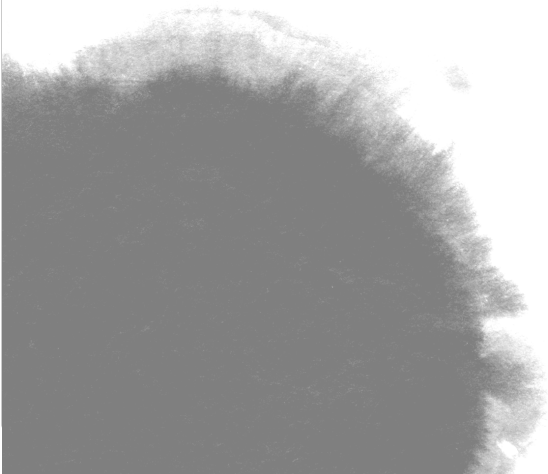
수 있었으며, 또한 전체 비율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경우도 면적기준에서 전체가구의 1.95%로 과거에 비하여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주거복지가 개선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후 RIR)이 1분위에서 27.31%로 2분위(11.57%), 3분위(10.30%)에 비해서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월세(또는 보증부 월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매우 크다는 것을 말해주며, 특히 RIR 30%초과(주거비부담이 과도한 가구)의 비율이 1분위의 경우 22.10%로 2분위(2.02%), 3분위(1.80%)에 비해서 크게 높아 1분위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임을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월세 지원 등 주거 복지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규모가 2005년(19.47%)에 비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어 2009년에는 13.74%까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1분위의 경우 30.91%에서 19.42%로 줄어들어 1분위에서도 큰 폭의 하락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06

보건의료



제6장 보건의료

본 절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자료로써 분석 가능한 보건의료지표를 선정하여, 해당지표와 관련된 변수값의 연도별 추이를 소득분위²⁰⁾별·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 영역별로 최고 건강수준집단과 최저 건강수준집단을 짝 비교(paired comparison)하여 절대차이(AD, absolute difference)와 상대차이(RD, relative difference) 지표를 산출하도록 한다²¹⁾.

제1 절 보건의료 측정지표의 선정 및 측정도구

보건의료와 관련된 측정지표를 분류하면 아래 표와 같다²²⁾. 측정지표는 대분류로서 건강수준, 건강형태 및 위험요인, 의료서비스에서의 보건의료지표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건강수준 영역에서 주관적 건강상태와 우울증, 건강형태 및 위험요인 영역에서 흡연과 음주에서의 지표가 한국복지패널 자료로 분석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 흡연, 음주에서의 보건의료지표를 중심으로 소득분위별·지역별·성별로 나누어 5개년도의 추이를 살펴보도록 한다.

20) 소득분위는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1~5분위로 구분하였다.

21) 건강불평등 측정도구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총불평등 측정도구, 사회집단 간 불평등 측정도구, 인구집단에 대한 영향 측정도구, 평균 불비례 정도 측정도구 등 다양하다. 이 중 어떤 측정도구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정책 목적과 자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사회집단 간 건강수준이 한국복지패널이 구축된 5개년도 사이에 어떠한 추이를 보이는지 개략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본 절의 1차적 목적이므로, 여기에서는 건강수준의 크기를 비교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짝 비교를 통해 절대차이(AD) 및 상대차이(RD) 지표를 산출할 것이다.

22) 한국건강형평성학회, 『건강형평성 측정방법론』, 2007.

〈표 6-1〉 건강 형평성 지표의 분류

대분류	중분류	분석 가능 여부	대분류	중분류	분석 가능 여부
건강 수준	기대여명(life expectancy)	X	건강 수준	혈압	X
	건강여명(health expectancy)	X		비만	X
	총사망(all-cause mortality)	X		B형 간염	X
	암 발생률, 암 생존율	X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X
	주관적 건강상태	O	건강행태 및 위험요인	흡연	O
	우울증	O		식생활	X
	자살	X		음주	O
	손상	X		신체활동	X
	대사증후군 (metabolic syndrome)	X		모유수유(breast-feeding)	X
	활동제한 및 장애	X		자궁경부암 검진	X
	치매	X		예방접종	X
	저체중아 출산등	X	의료 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X
	구강건강	X		보건의료재원	X
	결핵	X			

측정도구인 짝 비교는 두 집단 간의 건강 불평등 크기를 비교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여기에는 절대차이(AD)와 상대차이(RD) 지표가 있다. 먼저 절대차이와 상대차이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이때, r_1 과 r_2 는 두 하위 사회집단의 건강 수준이다²³⁾.

$$AD = r_1 - r_2 \quad (r_2: \text{기준집단 또는 가장 건강한 하위 사회집단의 건강수준})$$

$$RD = r_1 / r_2 \quad (r_2: \text{기준집단 또는 가장 건강한 하위 사회집단의 건강수준})$$

23) r_2 의 경우 기준집단을 정하거나 또는 가장 건강한 집단을 사용하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기준을 통일하기 위하여 가장 건강한 집단을 r_2 로 사용하였으며, 가장 건강수준이 떨어지는 집단을 r_1 으로 사용하였다.

절대차이는 r_1 , r_2 와 같은 단위로 표시되며, ‘범위(range)’라는 통계량으로 이해된다. 반면 상대차이는 단위가 없는 비율 비(rate ratio)이다²⁴⁾.

1. 주관적 건강상태에서의 보건의료지표 산출방식

주관적 건강상태(self-rated health)는 조사시점의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건강상태를 5점 척도로 조사한 문항을 통해 가구주, 가구원 전체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세부적으로 소득분위별, 지역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변수처리의 경우 복지패널 조사에서는 1에서 5로 갈수록 건강이 안 좋은 것으로 조사를 했으나 분석할 때에는 0에서 숫자가 높아질수록 건강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서 5에서 건강상태변수를 뺀 결과를 통해 건강상태를 분석하였다.

2. 우울증에서의 보건의료지표 산출방식

우울증(depression)은 각 년도 조사시점(2006년 11월 1일~12월 31일, 2007년 4월 24일~7월 20일, 2008년 4월 13일~6월 10일, 2009년 4월 18일~7월 19일, 2010년 5월 17일~8월 31일) 전 1주일 동안을 기준으로 우울감의 정도를 4점 척도로 조사한 11문항을 통해 가구주, 가구원 전체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세부적으로 소득분위별, 지역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변수처리²⁵⁾의 경우 해당변수를 리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증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되도록 하였다. 그 산식은 다음과 같다.

24) AD는 수치가 0에 가까울수록 격차가 작은 것이고 RD는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격차가 작은 것이다.

25) 한국복지패널에서는 우울감 척도로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역학연구용 우울척도)를 사용하고 있다. 척도는 0~3점 척도, 20문항으로 구성되며, 우울증 판별을 위한 분할 점수(cutoff point)는 16점이다. 그런데 복지패널조사표 문항에는 1~4점 척도, 11문항으로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1~4점에 걸친 변수값을 0~3점으로 처리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측정하는 2문항(비교적 잘 지냈다(p0105_10, p0205_10, p0305_10, p0405_10, p0505_10)와 불만없이 생활했다(p0105_15, p0205_15, p0305_15, p0405_15, p0505_15)은 역으로 점수화하였다. 또한 총점에 20/11을 곱한 것은, 11문항의 총점(33점)을 20문항일 때의 총점(60점)으로 환산한 것이다.

$$\text{우울점수} = (\text{점수화 한 11개의 우울지표 항목의 합}) \times \frac{20}{11}$$

또한 우울증을 측정하는 문항의 신뢰도를 알 수 있는 표준화된 크론바흐 알파 (Cronbach's α) 값은 1차년도 자료의 경우 0.85, 2차년도 자료의 경우 0.84, 3차년도 자료의 경우 0.83, 4차년도 자료의 경우 0.83, 5차년도 자료의 경우 0.86으로 나타나 문항의 내적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²⁶⁾.

3. 흡연에서의 보건의료지표 산출방식

가. 흡연율

흡연율(smoking rate)은 1,2차는 조사시점의 전년도 1년간 평균적인 흡연량을 5점 척도로 조사한 문항²⁷⁾을 통해 가구주, 가구원 전체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3~5차는 조사시점이 조사일 현재로 변경되고, 문항도 1,2차에 조사한 것과 연계성이 있게 2개의 문항²⁸⁾을 합쳐서 살펴보았다. 또한 세부적으로 소득분위별, 지역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한편 흡연율은 통상적인 국제비교에서 15세 이상 남녀인구의 흡연자 비율을 말한다. 그런데 통계청에서는 20세 이상 남녀인구의 흡연자 비율을 통계치로 발표하고 있다(통계청, 2008 국제통계연감, p479). 따라서 통계청과 비교를 위해 20세 이상 인구에서의 흡연율을 구하였다.

변수처리의 경우 1,2차는 해당변수에 1~4점으로 응답한 경우는 흡연, 5점으로 응답한 경우는 비흡연으로 구분하여 흡연여부를 더미처리 하였고 3~5차는 2개의 변수

26)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연구에서 0.7 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본다.

27) “1년간 평균적으로 귀하는 흡연을 얼마나 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하루에 반갑 이내”면 1, “하루에 한갑 이내”면 2, “하루에 두갑 이내”면 3, “하루에 두갑 이상”이면 4, “전혀 흡연하지 않는다”면 5로 응답하는 문항임.

28) “귀하께서는 현재 담배를 피우십니까?”라는 질문과 “귀하의 하루 평균 흡연량은 몇 개비 입니까?”라는 질문임.”

를 사용하여 1점으로 응답한 경우는 흡연, 2점으로 응답한 경우는 비흡연으로 1, 2차와 동일하게 부여하였다. 그 산식은 다음과 같다.

$$\text{흡연율} = \frac{\text{흡연인구}}{\text{20세이상인구}} \times 100(\%)$$

나. 간접흡연율

간접흡연율(smoking rate)은 3~5차 조사시점의 하루 평균 간접흡연 시간을 조사한 문항²⁹⁾을 통해 가구주, 가구원 전체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세부적으로 소득 분위별, 지역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변수처리의 경우 2~3으로 응답한 경우는 간접흡연, 1로 응답한 경우는 간접흡연이 없는걸로 구분하여 간접흡연여부를 더미처리 하였고 그 산식은 흡연율과 같다.

$$\text{간접흡연율} = \frac{\text{간접흡연인구}}{\text{20세이상인구}} \times 100(\%)$$

4. 음주에서의 보건의료지표 산출방식

음주율은 1~3차는 조사시점의 전년도 1년간 평균적인 음주횟수를 4점 척도로 조사한 문항³⁰⁾을 통해 가구주, 가구원 전체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4차와 5차는 조사시점이 당해 연도로 변경되고, 문항도 1~3차에 조사한 것과 연계성이 있게 문항³¹⁾의

29) “귀하께서 밀폐된 공간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맡는 시간은 하루 몇 시간 정도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0시간(없음)”이면 1, “1시간미만”이면 2, “1시간이상”이면 3로 응답하는 문항임.

30) “1년간 평균적으로 귀하는 술을 얼마나 자주 마셨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주 1회 이하”면 1, “주 2~3회”면 2, “주 4회 이상”이면 3, “전혀 마시지 않는다”면 4로 응답하는 문항임.

31) “1년간 평균적으로 귀하는 술을 얼마나 자주 마셨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월 1회 이하”면 1, “월 2~4회”면 2, “주 2~3회”이면 3, “주 4회 이상”이면 4, “전혀 마시지 않는다”면 5로 응답하는 문항에서 1~3차 문항의 연계성을 위해 4차와 5차의 보기문항 1,2 → 1, 3 → 2, 4 → 3, 5 → 4로 리코딩함.

보기문항 값을 리코딩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세부적으로 소득분위별, 지역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음주하는 경우 평균 음주량(음주시 마시는 술잔 횟수)도 함께 살펴보았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소득분위별, 지역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음주율 또한 흡연율과 마찬가지로 통계청과 비교를 위해 20세 이상 인구에서의 음주율을 구하였다.

변수처리의 경우 해당변수에 1~3점으로 응답한 경우는 음주, 4점으로 응답한 경우는 비음주로 구분하여 음주여부를 더미처리하였다. 그 산식은 다음과 같다.

$$\text{음주율} = \frac{\text{음주인구}}{\text{20세이상인구}} \times 100(\%)$$

제2절 보건의료지표 측정결과와 추이

1. 주관적 건강상태

먼저 가구주의 소득5분위별 주관적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건강상태는 2005년에 2.55점이었는데 이후에 2006년 2.43점으로 감소한 뒤 2009년에는 2.63점으로 점점 좋아졌음을 알 수 있으며, 1분위 가구주의 건강상태가 가장 안 좋은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음을 알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낮은 분위의 건강상태가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분위 간 건강상태 차이가 매우 줄었음을 알 수 있다.

〈표 6-2〉 소득5분위별 주관적 건강상태(가구주)

(단위: 점)

구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05	2.55	1.73	2.51	2.81	2.96	3.07
2006	2.43	1.75	2.44	2.68	2.76	2.84
2007	2.51	1.86	2.46	2.76	2.86	2.92
2008	2.62	2.00	2.63	2.84	2.92	2.96
2009	2.63	2.01	2.65	2.90	2.89	2.94

주. 점수는 건강이 아주 안좋다(0점)~아주 건강하다(4점)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다음으로 가구원 전체의 소득5분위별 주관적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가구주와 마찬가지로 2005년 이후로 2006년에 감소한 뒤 점점 좋아졌음을 알 수 있으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낮은 분위의 사람들의 건강상태가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 분위 간 건강상태 격차가 매우 줄었음을 알 수 있다.

〈표 6-3〉 소득5분위별 주관적 건강상태(가구원 전체)

(단위: 점)

구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05	2.80	2.12	2.75	2.91	3.07	3.13
2006	2.68	2.09	2.66	2.80	2.91	2.94
2007	2.73	2.18	2.68	2.88	2.94	2.98
2008	2.83	2.35	2.82	2.93	3.03	3.05
2009	2.84	2.32	2.83	3.02	2.98	3.03

주. 점수는 건강이 아주 안좋다(0점)~아주 건강하다(4점)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가구주의 지역별 주관적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중소도시의 가구주가 2.67점으로 가장 건강상태가 좋았으며 농어촌의 가구주가 2.40점으로 가장 낮았다. 하지만 농어촌의 건강상태가 2005년 이후 계속해서 좋아졌으며 대도시, 중소도시의 경우도 2006년에 감소한 이후로는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도시 전체적으로 건강상태가 개선되었음을 확인 할 수가 있다.

〈표 6-4〉 지역별 주관적 건강상태(가구주)

(단위: 점)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05	2.55	2.58	2.60	2.11
2006	2.43	2.43	2.48	2.16
2007	2.51	2.50	2.57	2.18
2008	2.62	2.65	2.64	2.31
2009	2.63	2.63	2.67	2.40

주: 점수는 건강이 아주 안좋다(0점)~아주 건강하다(4점)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가구원 전체의 지역별 주관적 건강상태에서도 중소도시의 경우가 2.8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농어촌이 2.64점으로 가장 낮았다. 가구원 전체에서도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는 2005년 이후에도 건강상태에 큰 변화가 없었으나 농어촌의 경우는 꾸준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5〉 지역별 주관적 건강상태(가구원 전체)

(단위: 점)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05	2.80	2.83	2.82	2.44
2006	2.68	2.67	2.72	2.46
2007	2.73	2.73	2.78	2.47
2008	2.83	2.84	2.87	2.59
2009	2.84	2.85	2.86	2.64

주: 점수는 건강이 아주 안좋다(0점)~아주 건강하다(4점)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가구의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에는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남성, 여성 모두 건강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가구원 전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6-6〉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가구주)

(단위: 점)

구분	전체	남성	여성
2005	2.55	2.69	1.93
2006	2.43	2.57	1.84
2007	2.51	2.64	1.94
2008	2.62	2.73	2.10
2009	2.63	2.74	2.13

주: 점수는 건강이 아주 안좋다(0점)~아주 건강하다(4점)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표 6-7〉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가구원 전체)

(단위: 점)

구분	전체	남성	여성
2005	2.80	2.89	2.71
2006	2.68	2.78	2.58
2007	2.73	2.83	2.64
2008	2.83	2.91	2.76
2009	2.84	2.91	2.76

주: 점수는 건강이 아주 안좋다(0점)~아주 건강하다(4점)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관적 건강상태의 절대차이와 상대차이를 확인해 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절대차이와 상대차이가 각각 0과 1에 가까워지고 있어 소득분위별, 지역별, 성별 모두 전년에 비해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주에 비해서 가구원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6-8〉 주관적 건강상태에서의 보건의료지표

(단위: 점, 비율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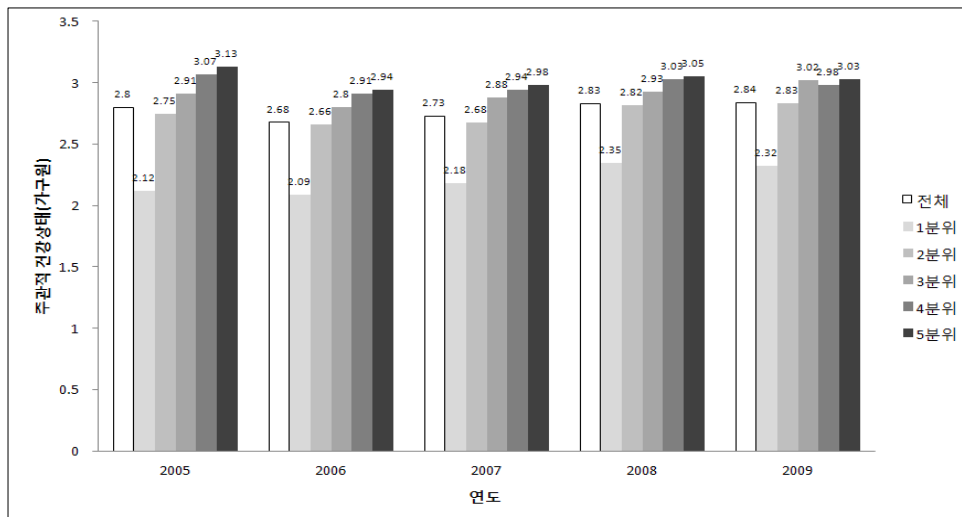
구분	가구주						가구원 전체					
	소득분위집단 간		지역집단 간		성별 간		소득분위집단 간		지역집단 간		성별 간	
	AD	RD	AD	RD	AD	RD	AD	RD	AD	RD	AD	RD
2005	-1.34	0.56	-0.49	0.81	-0.76	0.72	-1.01	0.68	-0.39	0.86	-0.18	0.94
2006	-1.09	0.62	-0.32	0.87	-0.73	0.72	-0.85	0.71	-0.26	0.90	-0.20	0.93
2007	-1.06	0.64	-0.39	0.85	-0.70	0.73	-0.80	0.73	-0.31	0.89	-0.19	0.93
2008	-0.96	0.68	-0.34	0.87	-0.63	0.77	-0.70	0.77	-0.28	0.90	-0.15	0.95
2009	-0.93	0.68	-0.27	0.90	-0.61	0.78	-0.71	0.77	-0.22	0.92	-0.15	0.95

주: 점수는 건강이 아주 안좋다(0점)~아주 건강하다(4점)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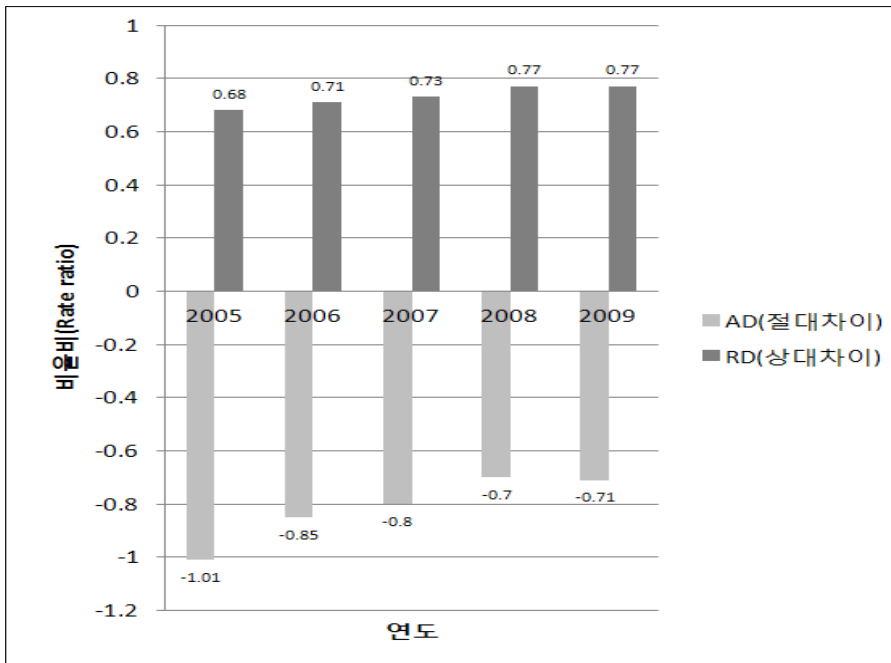
가구원의 경우 소득분위집단간 주관적 건강상태의 추이, 절대차이 및 상대차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림 6-1〕 주관적 건강상태: 가구원, 소득분위집단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그림 6-2] 주관적 건강상태에서의 보건의료지표: 가구원, 소득분위집단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2. 우울증에서의 보건의료지표

가구주의 우울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2006년의 9.62점에서 2010년에는 6.63점으로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구주의 소득 5분위별 우울에 대한 인식에서 볼 수 있듯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3, 5분위를 제외한 분위들의 경우 2006년부터 서서히 우울지수가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1분위는 2006년에는 우울증이 의심되는 16점을 넘었으나 점차 감소하여 2010년에는 12.04점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 할 수가 있다.

〈표 6-9〉 소득 5분위별 우울에 대한 인식(가구주)

(단위: 점)

구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06	9.62	16.30	9.86	7.69	6.68	5.28
2007	9.34	15.21	9.52	7.56	6.42	5.45
2008	8.51	13.40	9.00	6.45	6.01	5.19
2009	7.94	12.55	8.33	6.49	5.50	4.97
2010	6.63	12.04	6.61	4.52	3.99	3.72

주: 1) 극히 드물다=0점, 대부분 그렇다=3점

2) 우울점수=11문항 총점*20/11한 값으로 최저 0점, 최고 60점

3)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증가함. 우울점수가 16점 이상이면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음.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표 6-10〉 소득 5분위별 우울에 대한 인식(가구원 전체)

(단위: 점)

구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06	9.35	15.17	10.10	8.10	7.22	5.89
2007	9.13	14.52	9.97	8.02	6.86	6.07
2008	8.27	13.00	9.09	6.86	6.52	5.56
2009	7.79	11.93	8.41	7.33	5.94	5.39
2010	6.27	11.24	6.54	5.04	4.51	3.94

주: 1) 극히 드물다=0점, 대부분 그렇다=3점

2) 우울점수=11문항 총점*20/11한 값으로 최저 0점, 최고 60점

3)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증가함. 우울점수가 16점 이상이면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음.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가구원 우울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2006년의 9.35에서 2010년에는 6.27점으로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구원의 경우도 가구주와 마찬가지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6-11〉 지역별 우울에 대한 인식(가구주)

(단위: 점)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06	9.63	9.69	9.42	10.42
2007	9.34	9.47	8.92	10.86
2008	8.51	8.74	8.02	9.84
2009	7.94	8.05	7.75	8.40
2010	6.63	6.65	6.27	8.28

주: 1) 극히 드물다=0점, 대부분 그렇다=3점

2) 우울점수=11문항 총점*20/11한 값으로 최저 0점, 최고 60점

3)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증가함. 우울점수가 16점 이상이면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음.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가구주의 지역별 우울의 경우를 살펴보면 농어촌이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우울점수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하지만 모든 도시가 우울점수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건강상태가 개선되는 모습을 확인 할 수가 있다. 이러한 모습은 가구원 전체의 결과에서도 동일한 모습을 보인다.

〈표 6-12〉 지역별 우울에 대한 인식(가구원 전체)

(단위: 점)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06	9.35	9.33	9.30	9.82
2007	9.13	9.29	8.70	10.63
2008	8.27	8.36	7.98	9.35
2009	7.79	7.86	7.63	8.34
2010	6.27	6.05	6.24	7.64

주: 1) 극히 드물다=0점, 대부분 그렇다=3점

2) 우울점수=11문항 총점*20/11한 값으로 최저 0점, 최고 60점

3)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증가함. 우울점수가 16점 이상이면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음.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남녀 가구주의 우울을 살펴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의 경우가 우울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2006년에는 거의 16점에 가까운 점수를 보여 우울증세가 있었음을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후로는 점점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2006년에 비해서 매우 개선된 모습을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가 있다.

〈표 6-13〉 성별 우울에 대한 인식(가구주)

(단위: 점)

구분	전체	남성	여성
2006	9.63	8.19	15.96
2007	9.34	7.91	15.40
2008	8.51	7.18	13.90
2009	7.94	6.80	13.15
2010	6.63	5.29	12.58

주: 1) 극히 드물다=0점, 대부분 그렇다=3점

2) 우울점수=11문항 총점*20/11한 값으로 최저 0점, 최고 60점

3)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증가함. 우울점수가 16점 이상이면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음.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남녀 가구원 전체의 경우에도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 가구주 여성의 수치와 비교해서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 여성 가구주의 경우 가구주로서의 스트레스가 큰 것을 유추할 수가 있다. 반면에 남성의 경우는 가구주나 가구원이나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표 6-14〉 성별 우울에 대한 인식(가구원 전체)

(단위: 점)

구분	전체	남성	여성
2006	9.35	8.18	10.37
2007	9.13	7.83	10.25
2008	8.27	7.83	10.25
2009	7.79	6.83	8.70
2010	6.27	5.07	7.40

주: 1) 극히 드물다=0점, 대부분 그렇다=3점

2) 우울점수=11문항 총점*20/11한 값으로 최저 0점, 최고 60점

3)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증가함. 우울점수가 16점 이상이면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음.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울점수의 절대차이와 상대차이를 확인해 보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절대차이와 상대차이는 소득분위별, 지역별, 성별 모두 전년에 비해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0년이 되면서 그 차이가 더 커진 것을 확인 할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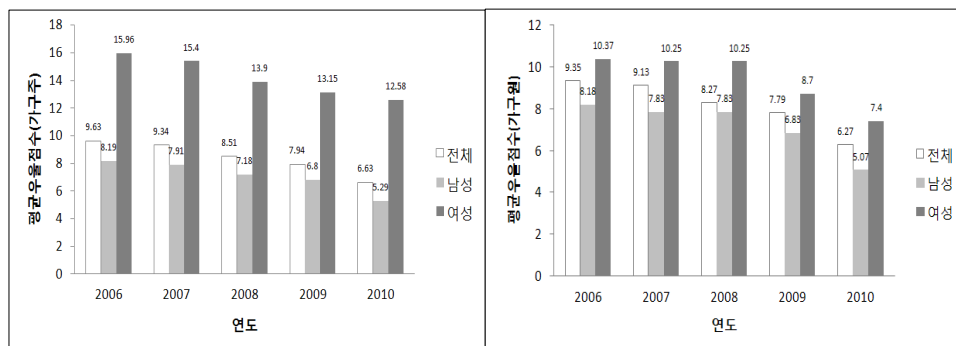
〈표 6-15〉 우울에서의 보건의료지표

(단위: 점, 비율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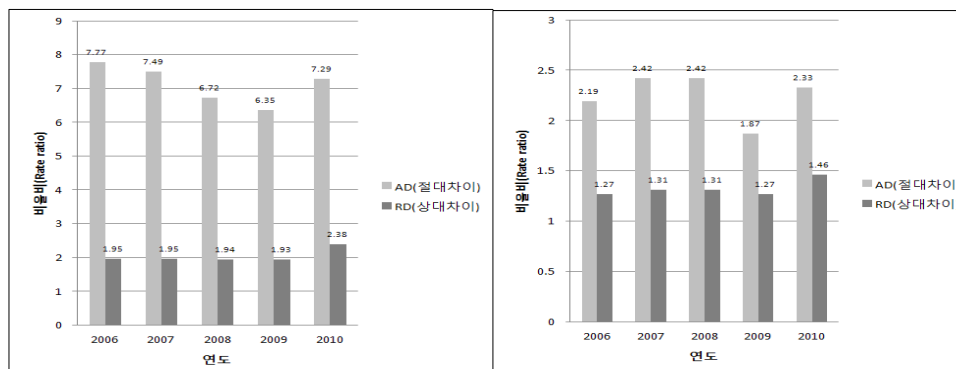
구분	가구주						가구원 전체					
	소득분위집단 간		지역집단 간		성별 간		소득분위집단 간		지역집단 간		성별 간	
	AD	RD	AD	RD	AD	RD	AD	RD	AD	RD	AD	RD
2006	11.02	3.09	1.00	1.11	7.77	1.95	9.28	2.58	0.52	1.06	2.19	1.27
2007	9.79	2.81	1.94	1.22	7.49	1.95	8.45	2.39	1.93	1.22	2.42	1.31
2008	8.21	2.58	1.82	1.23	6.72	1.94	7.44	2.34	1.37	1.17	2.42	1.31
2009	7.58	2.53	0.65	1.08	6.35	1.93	6.54	2.21	0.71	1.09	1.87	1.27
2010	8.32	3.24	2.01	1.32	7.29	2.38	7.30	2.85	1.59	1.26	2.33	1.46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그림 6-3〕 우울에 대한 인식(우울점수): 가구주, 가구원 소득분위집단



〔그림 6-4〕 우울증에서의 보건의료지표: 가구주, 가구원 소득분위집단



3. 흡연에서의 보건의료지표

가. 흡연

가구주의 흡연율을 살펴보면 2005년에 43.41%에서 2010년 39.51%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으며, 흡연량에서는 여전히 ‘하루 한갑 이내’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5분위별 가구주의 흡연율, 흡연량을 살펴보면 년도에 상관없이 2분위와 3분위가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흡연비율에서도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6〉 소득5분위별 흡연율 및 흡연량(가구주)

(단위: %)

구 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05	비 율			43.41	33.86	46.41	46.71	48.05	45.40
	흡연 =100	하루 반갑 이내		35.35	44.52	29.87	30.99	35.69	35.81
		하루 한갑 이내		53.90	46.66	57.54	58.23	54.50	52.46
		하루 두갑 이내		9.45	7.43	11.06	9.34	9.38	10.02
		하루 두갑 이상		1.30	1.39	1.53	1.44	0.43	1.71
2006	비 율			42.38	32.13	49.43	47.29	43.68	43.65
	흡연 =100	하루 반갑 이내		33.34	40.43	30.83	27.75	32.73	35.45
		하루 한갑 이내		54.57	49.53	55.69	59.33	55.97	52.04
		하루 두갑 이내		10.47	8.29	12.50	11.03	9.86	10.46
		하루 두갑 이상		1.61	1.75	0.98	1.89	1.44	2.04
2008	비 율			39.93	29.39	45.32	47.31	42.67	39.70
	흡연 =100	하루 반갑 이내		32.5	39.99	30.26	29.43	32.14	31.02
		하루 한갑 이내		54.79	49.24	56.81	56.11	55.89	55.69
		하루 두갑 이내	21~30	7.57	5.73	7.01	10.32	6.75	7.81
			31~40	4.56	4.42	5.77	3.86	4.02	4.69
하루 두갑 이상			0.59	0.62	0.16	0.28	1.19	0.79	
2009	비 율			39.97	32.40	46.43	45.81	43.09	35.04
	흡연 =100	하루 반갑 이내		31.36	37.35	26.52	30.74	29.38	33.38
		하루 한갑 이내		55.68	50.51	60.18	56.70	56.98	53.36
		하루 두갑 이내	21~30	8.04	7.48	8.65	7.85	8.09	8.12
			31~40	4.46	4.48	4.51	4.26	5.02	4.00
하루 두갑 이상			0.46	0.18	0.13	0.46	0.53	1.14	
2010	비 율			39.51	30.51	46.17	47.05	39.27	38.02
	흡연 =100	하루 반갑 이내		34.00	38.32	32.16	33.32	29.08	37.29
		하루 한갑 이내		54.83	50.02	57.40	54.97	61.19	50.35
		하루 두갑 이내	21~30	7.72	7.72	7.71	9.27	6.22	7.35
			31~40	2.88	3.45	1.92	2.44	2.60	4.28
하루 두갑 이상			0.57	0.49	0.81	0.00	0.91	0.73	

주: 1) 20세 이상 인구 중 흡연율임.

2) 3차년도 조사부터 자료의 조사시점이 변경되어 2007년은 누락되고, 보기문항을 변경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가구원의 흡연율을 살펴보면 2005년에 25.64%에서 2010년 24.05%로 소량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으며, 흡연량에서는 가구주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하루 한갑 이내’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5분위별 가구원의 흡연율과 흡연량을 살펴보면 2005년에는 2~5분위가 비슷한 비율을 보였으나 4분위, 5분위는 점차 감소하였으며 2분위, 3분위는 증가와 감소를 함께 보이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흡연량에서도 ‘하루 한 갑 이내’가 모든 분위에서 가장 많았다.

〈표 6-17〉 소득5분위별 흡연율 및 흡연량(가구원 전체)

(단위: %)

구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05	비율			25.64	23.94	26.94	25.86	26.29	25.37
	흡연 =100	하루 반갑 이내		38.25	46.17	33.80	34.21	38.84	38.20
		하루 한갑 이내		52.34	45.97	55.67	56.27	52.73	51.08
		하루 두갑 이내		8.34	6.75	9.28	8.36	7.93	9.39
		하루 두갑 이상		1.07	1.11	1.25	1.17	0.50	1.33
2006	비율			26.02	23.76	29.21	26.94	24.83	25.78
	흡연 =100	하루 반갑 이내		36.56	42.11	33.99	31.81	34.01	40.88
		하루 한갑 이내		52.17	48.87	53.61	56.18	53.32	48.86
		하루 두갑 이내		9.54	7.38	11.19	10.01	10.28	8.74
		하루 두갑 이상		1.74	1.64	1.21	2.01	2.40	1.51
2008	비율			24.48	22.25	26.63	26.62	24.60	22.69
	흡연 =100	하루 반갑 이내		37.36	42.69	34.13	35.31	36.58	38.47
		하루 한갑 이내		51.59	47.28	54.10	51.97	52.98	51.40
		하루 두갑 이내	21~30	6.72	5.43	6.91	9.30	5.66	6.09
			31~40	3.79	4.03	4.73	3.07	3.73	3.39
		하루 두갑 이상		0.54	0.57	0.12	0.34	1.05	0.66
2009	비율			24.76	24.24	27.63	25.88	24.51	21.84
	흡연 =100	하루 반갑 이내		36.33	41.69	31.95	36.23	34.04	38.09
		하루 한갑 이내		52.98	48.18	56.87	52.87	54.92	51.76
		하루 두갑 이내	21~30	6.52	5.99	7.18	6.97	6.46	5.91
			31~40	3.76	3.94	3.90	3.32	4.20	3.42
		하루 두갑 이상		0.41	0.20	0.10	0.60	0.38	0.82
2010	비율			24.05	22.84	27.95	25.65	22.89	21.35
	흡연 =100	하루 반갑 이내		37.62	40.19	36.04	34.90	36.36	41.14
		하루 한갑 이내		52.81	50.11	54.88	54.70	54.73	49.11
		하루 두갑 이내	21~30	6.61	6.30	6.75	8.35	5.97	5.52
			31~40	2.52	3.02	1.72	2.05	2.31	3.71
		하루 두갑 이상		0.43	0.37	0.61	0.00	0.64	0.53

주: 1) 20세 이상 인구 중 흡연율임.

2) 3차년도 조사부터 자료의 조사시점이 변경되어 2007년은 누락되고, 보기문항을 변경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지역별 가구주의 흡연율을 살펴보면 중소도시의 흡연율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대도시에서 2009년에 흡연율이 증가했으나 대부분 모든 지역에서 흡연율이 2005년 이후 감소해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흡연량의 경우 모든 도시에서 ‘하루 한갑 이내’가 가장 높았으며, 2005년 이후에 ‘하루 반갑 이내’의 비율이 줄어들어 2005년에 비해서 소량 흡연자의 흡연량이 증가 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6-18〉 지역별 흡연율 및 흡연량(가구주)

(단위: %)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05	흡연 =100	비율		43.41	42.71	45.17	37.72
		하루 반갑 이내		35.35	37.13	33.36	36.53
		하루 한갑 이내		53.90	52.72	55.70	49.85
		하루 두갑 이내		9.45	8.72	9.80	12.18
		하루 두갑 이상		1.30	1.43	1.13	1.44
2006	흡연 =100	비율		42.38	41.65	44.15	36.82
		하루 반갑 이내		33.34	34.34	32.09	35.07
		하루 한갑 이내		54.57	53.21	55.95	54.48
		하루 두갑 이내		10.47	10.99	10.10	9.52
		하루 두갑 이상		1.61	1.46	1.86	0.93
2008	흡연 =100	비율		39.93	38.53	42.18	35.56
		하루 반갑 이내		32.50	34.06	31.39	30.13
		하루 한갑 이내		54.79	54.49	54.63	57.56
		하루 두갑 이내	21~30	7.57	6.65	8.49	7.28
			31~40	4.56	4.13	4.96	4.62
		하루 두갑 이상		0.59	0.67	0.53	0.41
2009	흡연 =100	비율		39.97	39.91	40.96	35.13
		하루 반갑 이내		31.36	31.98	31.05	29.60
		하루 한갑 이내		55.68	55.17	55.83	57.77
		하루 두갑 이내	21~30	8.04	8.43	7.78	7.27
			31~40	4.46	4.10	4.84	4.33
		하루 두갑 이상		0.46	0.31	0.50	1.03
2010	흡연 =100	비율		39.51	38.90	40.85	35.83
		하루 반갑 이내		34.00	36.28	32.54	29.96
		하루 한갑 이내		54.83	52.31	56.13	61.09
		하루 두갑 이내	21~30	7.72	8.58	7.06	6.79
			31~40	2.88	2.57	3.39	1.72
		하루 두갑 이상		0.57	0.27	0.89	0.44

주: 1) 20세 이상 인구 중 흡연율임.

2) 3차년도 조사부터 자료의 조사시점이 변경되어 2007년은 누락되고, 보기문항을 변경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지역별 가구원의 흡연율을 살펴보면 중소도시의 흡연율이 가장 높았으나 2010년에는 대도시에 역전되는 현상을 보인다. 또한 가구원의 경우는 가구주와 다르게 흡연비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지 않고 있다. 흡연량의 경우 ‘하루 한갑 이내’가 가장 많았으며 2005년 이후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고 감소하기도 하고 증가하기도 하였다.

〈표 6-19〉 지역별 흡연율 및 흡연량(가구원 전체)

(단위: %)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05	흡연 =100	비율		25.64	25.61	26.24	22.30
		하루 반갑 이내		38.25	40.03	36.09	39.90
		하루 한갑 이내		52.34	51.23	54.09	48.45
		하루 두갑 이내		8.34	7.63	8.82	10.44
		하루 두갑 이상		1.07	1.12	1.00	1.21
2006	흡연 =100	비율		26.02	26.00	26.57	22.94
		하루 반갑 이내		36.56	37.99	34.68	39.01
		하루 한갑 이내		52.17	50.98	53.58	51.11
		하루 두갑 이내		9.54	9.72	9.45	8.80
		하루 두갑 이상		1.74	1.31	2.29	1.08
2008	흡연 =100	비율		24.48	24.33	25.18	21.37
		하루 반갑 이내		37.36	39.36	36.08	32.19
		하루 한갑 이내		51.59	50.99	51.62	55.47
		하루 두갑 이내	21~30	6.72	5.77	7.56	7.62
			31~40	3.79	3.20	4.31	4.38
		하루 두갑 이상		0.54	0.69	0.43	0.34
2009	흡연 =100	비율		24.76	24.96	25.02	22.20
		하루 반갑 이내		36.33	36.34	36.78	33.41
		하루 한갑 이내		52.98	53.31	52.28	55.19
		하루 두갑 이내	21~30	6.52	6.52	6.57	6.26
			31~40	3.76	3.50	3.97	4.16
		하루 두갑 이상		0.41	0.33	0.41	0.98
2010	흡연 =100	비율		24.05	24.22	24.21	22.20
		하루 반갑 이내		37.62	40.90	35.15	31.86
		하루 한갑 이내		52.81	49.49	55.27	58.96
		하루 두갑 이내	21~30	6.61	7.25	5.93	6.67
			31~40	2.52	2.17	2.96	2.16
		하루 두갑 이상		0.43	0.19	0.70	0.36

주: 1) 20세 이상 인구 중 흡연율임.

2) 3차년도 조사부터 자료의 조사시점이 변경되어 2007년은 누락되고, 보기문항을 변경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성별 가구원의 흡연율을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흡연율이 크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여성의 경우 2006년에 흡연율이 증가했으나 그 이후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흡연량의 경우도 남성의 경우는 하루 한갑 이내가 가장 많았으나 여성의 경우는 하루 반갑 이내로 남성에 비해서 흡연율이나 흡연량 모두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은 가구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6-20〉 성별 흡연율 및 흡연량(가구주)

(단위: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2005	비율				43.41	50.99	9.30
	흡연 =100	하루 반갑 이내			35.35	33.94	70.22
		하루 한갑 이내			53.90	55.07	25.16
		하루 두갑 이내			9.45	9.69	3.60
		하루 두갑 이상			1.30	1.31	1.02
2006	비율				42.38	49.70	10.43
	흡연 =100	하루 반갑 이내			33.34	32.10	59.21
		하루 한갑 이내			54.57	55.49	35.42
		하루 두갑 이내			10.47	10.74	4.86
		하루 두갑 이상			1.61	1.66	0.48
2008	비율				39.93	47.22	9.18
	흡연 =100	하루 반갑 이내			32.50	30.71	71.35
		하루 한갑 이내			54.79	56.24	23.36
		하루 두갑 이내	21~30	7.57	7.72	4.35	
			31~40	4.56	4.73	0.93	
		하루 두갑 이상			0.59	0.61	0.00
2009	비율				39.97	46.63	8.56
	흡연 =100	하루 반갑 이내			31.36	29.81	71.25
		하루 한갑 이내			55.68	56.82	26.44
		하루 두갑 이내	21~30	8.04	8.28	1.79	
			31~40	4.46	4.62	0.52	
		하루 두갑 이상			0.46	0.47	0.00
2010	비율				39.51	46.44	7.91
	흡연 =100	하루 반갑 이내			34.00	32.63	70.51
		하루 한갑 이내			54.83	55.89	26.36
		하루 두갑 이내	21~30	7.72	7.89	3.13	
			31~40	2.88	2.99	0.00	
		하루 두갑 이상			0.57	0.59	0.00

주: 1) 20세 이상 인구 중 흡연율임.

2) 3차년도 조사부터 자료의 조사시점이 변경되어 2007년은 누락되고, 보기문항을 변경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표 6-21〉 성별 흡연율 및 흡연량(가구원 전체)

(단위: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2005	비율			25.64	51.42	2.98
	흡연 =100	하루 반갑 이내		38.25	36.10	71.21
		하루 한갑 이내		52.34	54.27	23.05
		하루 두갑 이내		8.34	8.55	5.23
		하루 두갑 이상		1.07	1.11	0.52
2006	비율			26.02	50.14	4.65
	흡연 =100	하루 반갑 이내		36.56	34.42	56.95
		하루 한갑 이내		52.17	54.05	34.16
		하루 두갑 이내		9.54	10.15	3.66
		하루 두갑 이상		1.74	1.38	5.23
2008	비율			24.48	48.10	3.39
	흡연 =100	하루 반갑 이내		37.36	34.42	74.49
		하루 한갑 이내		51.59	53.88	22.66
		하루 두갑 이내	21~30	6.72	7.07	2.31
			31~40	3.79	4.05	0.54
		하루 두갑 이상		0.54	0.59	0.00
2009	비율			24.76	47.19	3.07
	흡연 =100	하루 반갑 이내		36.33	34.05	70.24
		하루 한갑 이내		52.98	54.68	27.64
		하루 두갑 이내	21~30	6.52	6.87	1.37
			31~40	3.76	3.96	0.75
		하루 두갑 이상		0.41	0.44	0.00
2010	비율			24.05	46.35	2.63
	흡연 =100	하루 반갑 이내		37.62	35.96	65.75
		하루 한갑 이내		52.81	54.04	31.98
		하루 두갑 이내	21~30	6.61	6.87	2.27
			31~40	2.52	2.67	0.00
		하루 두갑 이상		0.43	0.45	0.00

주: 1) 20세 이상 인구 중 흡연율임.

2) 3차년도 조사부터 자료의 조사시점이 변경되어 2007년은 누락되고, 보기문항을 변경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흡연율의 절대차이와 상대차이를 확인해 보면 소득분위집단 간의 경우는 가구주나 가구원 모두에서 차이의 변화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지역집단 간에서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별은 2006년에 큰 폭 감소했다가 다시 차이가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6-22〉 흡연에서의 보건의료지표

(단위: 점, 비율비)

구분	가구주						가구원 전체					
	소득분위집단 간		지역집단 간		성별 간		소득분위집단 간		지역집단 간		성별 간	
	AD	RD	AD	RD	AD	RD	AD	RD	AD	RD	AD	RD
2005	14.19	1.42	7.45	1.20	41.69	5.48	3.00	1.13	3.94	1.18	48.44	17.26
2006	17.30	1.54	7.33	1.20	39.27	4.77	5.45	1.23	3.63	1.16	45.49	10.78
2008	17.92	1.61	6.62	1.19	38.04	5.14	4.38	1.20	3.81	1.18	44.71	14.19
2009	14.03	1.43	5.83	1.17	38.07	5.45	5.79	1.27	2.82	1.13	44.12	15.37
2010	16.54	1.54	5.02	1.14	38.53	5.87	6.60	1.31	2.02	1.09	43.72	17.62

주: 1) 20세 이상 인구 중 흡연율임.

2) 3차년도 조사부터 자료의 조사시점이 변경되어 2007년은 누락되고, 보기문항을 변경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나. 간접흡연

가구주의 간접흡연율을 살펴보면 2008년 이후 49.52%에서 38.18%로 점점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간접흡연량에서도 ‘하루 1시간 미만’이 높아져서 간접흡연량도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위별로 확인하면 4분위가 가장 높았으며 모든 분위에서 간접흡연이 감소하였다. 간접흡연량에서도 전체와 동일하게 ‘1시간 미만’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간접흡연량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표 6-23〉 소득5분위별 간접흡연율 및 간접흡연 시간(가구주)

(단위: %)

구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08	비율		49.52	33.76	55.26	53.78	57.75	54.55
	간접흡연 =100	하루 1시간 미만	64.37	69.56	59.61	66.28	61.80	65.45
		하루 1시간 이상	35.63	30.44	40.39	33.72	38.20	34.55
2009	비율		45.63	29.22	50.60	53.80	54.72	46.38
	간접흡연 =100	하루 1시간 미만	75.16	77.36	72.78	74.97	77.00	73.98
		하루 1시간 이상	24.84	22.64	27.22	25.03	23.00	26.02
2010	비율		38.18	25.36	41.56	43.46	45.29	40.46
	간접흡연 =100	하루 1시간 미만	82.26	80.66	83.30	81.74	84.17	80.99
		하루 1시간 이상	17.74	19.34	16.70	18.26	15.83	19.01

주: 20세 이상 인구 중 간접흡연율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3차~5차년도 원자료

가구원의 경우 간접흡연율 비율이 2008년 이후 점점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간접흡연량도 가구주와 마찬가지로 ‘하루 1시간 미만’이 높아져 가는 추세를 보였다. 분위별 간접흡연을 살펴보면 2008년에는 2분위가 가장 높았으며 그 이후부터는 4분위가 가장 높았다. 4분위의 경우 2009년 간접흡연 비율이 증가 하였으나 2010년에는 다시 감소하였고 다른 분위에서는 모두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 6-24〉 소득5분위별 간접흡연을 및 간접흡연 시간(가구원 전체)

(단위: %)

구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08	비율		42.19	33.57	46.55	45.16	43.42	43.17
	간접흡연 =100	하루 1시간 미만	69.06	70.73	68.09	71.59	65.23	69.87
		하루 1시간 이상	30.94	29.27	31.91	28.41	34.77	30.13
2009	비율		38.60	28.91	40.64	41.70	43.72	38.37
	간접흡연 =100	하루 1시간 미만	77.21	77.73	74.51	78.33	78.30	77.03
		하루 1시간 이상	22.79	22.27	25.49	21.67	21.70	22.97
2010	비율		29.93	24.18	31.06	31.89	31.97	30.82
	간접흡연 =100	하루 1시간 미만	82.90	82.93	83.90	81.62	82.67	83.45
		하루 1시간 이상	17.10	17.07	16.10	18.38	17.33	16.55

주: 20세 이상 인구 중 간접흡연율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3차~5차년도 원자료

〈표 6-25〉 지역별 간접흡연을 및 간접흡연 시간(가구주)

(단위: %)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08	비율		49.52	49.66	52.07	35.18
	간접흡연 =100	하루 1시간 미만	64.37	63.19	63.88	77.37
		하루 1시간 이상	35.63	36.81	36.12	22.63
2009	비율		45.63	49.20	44.79	31.79
	간접흡연 =100	하루 1시간 미만	75.16	75.44	74.18	80.05
		하루 1시간 이상	24.84	24.56	25.82	19.95
2010	비율		38.18	40.43	38.19	27.07
	간접흡연 =100	하루 1시간 미만	82.26	81.10	82.82	86.80
		하루 1시간 이상	17.74	18.90	17.18	13.20

주: 20세 이상 인구 중 간접흡연율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3차~5차년도 원자료

지역별 가구주의 간접흡연율을 살펴보면 2008년에는 중소도시가 가장 높았으나 그 이후 급격한 감소를 보이며 나머지 년도에서는 대도시가 가장 높았다. 간접흡연율은 모든 지역에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으며 간접흡연량에서도 흡연량이 줄어들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모습은 가구원의 간접흡연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표 6-26〉 지역별 간접흡연율 및 간접흡연 시간(가구원 전체)

(단위: %)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08	간접흡연 =100	비율	42.19	42.57	43.46	32.73
		하루 1시간 미만	69.06	68.25	68.85	76.84
		하루 1시간 이상	30.94	31.75	31.15	23.16
2009	간접흡연 =100	비율	38.60	41.45	37.10	30.49
		하루 1시간 미만	77.21	78.11	75.35	82.70
		하루 1시간 이상	22.79	21.89	24.65	17.30
2010	간접흡연 =100	비율	29.93	32.86	28.09	23.42
		하루 1시간 미만	82.90	82.27	83.19	86.05
		하루 1시간 이상	17.10	17.73	16.81	13.95

주: 20세 이상 인구 중 간접흡연율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3차~5차년도 원자료

성별 가구주의 간접흡연율을 살펴보면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간접흡연량을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2009년 이후에 ‘하루 1시간 이상’의 비중이 30.9%로 남성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간적인 추세는 간접흡연율과 간접 흡연량 모두 2008년 이후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 6-27〉 성별 간접흡연율 및 간접흡연 시간(가구주)

(단위: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2008	간접흡연 =100	비율	49.52	54.84	27.60
		하루 1시간 미만	64.37	63.70	69.89
		하루 1시간 이상	35.63	36.30	30.11
2009	간접흡연 =100	비율	45.63	50.60	22.76
		하루 1시간 미만	75.16	75.75	69.10
		하루 1시간 이상	24.84	24.25	30.90
2010	간접흡연 =100	비율	38.18	42.48	19.00
		하루 1시간 미만	82.26	82.86	76.21
		하루 1시간 이상	17.74	17.14	23.79

주: 20세 이상 인구 중 간접흡연율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3차~5차년도 원자료

성별 가구원의 간접흡연율을 살펴보면 가구주때와 마찬가지로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간접흡연량에서는 가구주와는 다르게 남성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간적인 추세는 간접흡연율과 간접흡연량 모두 2008년 이후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 6-28〉 성별 간접흡연율 및 간접흡연 시간(가구원 전체)

(단위: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2008	비율		42.19	55.59	30.50
	간접흡연 =100	하루 1시간 미만	69.06	64.80	75.82
		하루 1시간 이상	30.94	35.20	24.18
2009	비율		38.60	52.10	25.82
	간접흡연 =100	하루 1시간 미만	77.21	75.84	79.81
		하루 1시간 이상	22.79	24.16	20.19
2010	비율		29.93	42.85	17.74
	간접흡연 =100	하루 1시간 미만	82.90	82.78	83.19
		하루 1시간 이상	17.10	17.22	16.81

주: 20세 이상 인구 중 간접흡연율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3차~5차년도 원자료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간접흡연율의 절대차이와 상대차이를 확인해 보면 소득분위집단이나 지역집단의 경우는 가구주나 가구원 모두에서 차이의 변화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의 경우에는 절대차이는 줄었으나 상대차이는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9〉 간접흡연에서의 보건의료지표

(단위: 점, 비율비)

구분	가구주						가구원 전체					
	소득분위집단 간		지역집단 간		성별 간		소득분위집단 간		지역집단 간		성별 간	
	AD	RD	AD	RD	AD	RD	AD	RD	AD	RD	AD	RD
2008	23.99	1.71	16.86	1.48	27.24	1.99	12.98	1.39	10.73	1.33	25.09	1.82
2009	25.50	1.87	17.41	1.55	27.84	2.22	14.81	1.51	10.96	1.36	26.28	2.02
2010	19.93	1.79	13.36	1.49	23.48	2.24	7.79	1.32	9.44	1.40	25.11	2.42

주: 20세 이상 인구 중 간접흡연율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3차~5차년도 원자료

4. 음주에서의 보건의료지표

가구주의 음주율을 살펴보면 2005년에 67.13%에서 2010년에는 72.07%로 상승한 것을 확인 할 수가 있다. 그 추세를 살펴보면 2007년 까지는 음주량이 증가하다가 2009년에 감소한 뒤 2010년에 다시 증가 하였다. 또한 음주횟수를 확인하면 ‘주 1회 이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0년에는 감소하였다. 분위별로 확인하면 대체로 소득이 클수록 음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주횟수는 4분위와 5분위가 ‘주 4회 이상’의 비율이 다른 분위에 비해 적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6-30〉 소득5분위별 음주율, 평균음주횟수, 평균음주량(가구주)

(단위: %)

구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05	비율		67.13	47.02	67.18	72.14	74.95	81.33
	음주 =100	주 1회 이하	44.84	45.98	44.32	43.83	42.62	47.27
		주 2~3회	35.71	28.40	34.99	37.47	39.22	37.23
		주 4회 이상	19.45	25.62	20.69	18.70	18.16	15.50
2006	비율		70.44	48.03	70.64	76.53	81.61	84.91
	음주 =100	주 1회 이하	46.03	46.72	46.95	44.97	44.40	47.23
		주 2~3회	34.86	26.74	31.58	35.09	40.73	38.31
		주 4회 이상	19.11	26.53	21.47	19.94	14.87	14.46
2007	비율		73.99	52.72	74.15	80.12	85.17	88.00
	음주 =100	주 1회 이하	47.27	48.30	47.90	45.26	45.15	49.70
		주 2~3회	34.34	27.43	32.11	37.04	37.92	36.51
		주 4회 이상	18.39	24.27	19.99	17.70	16.93	13.79
2009	비율		71.87	51.26	69.82	77.74	83.07	85.69
	음주 =100	주 1회 이하	54.63	55.95	52.86	53.41	53.54	57.15
		주 2~3회	29.38	24.24	27.45	30.20	34.58	29.62
		주 4회 이상	15.99	19.81	19.69	16.39	11.89	13.23
2010	비율		72.07	52.93	71.78	79.99	79.25	84.23
	음주 =100	주 1회 이하	50.51	53.38	49.93	48.89	46.32	53.90
		주 2~3회	30.79	23.89	26.73	34.53	37.08	31.05
		주 4회 이상	18.70	22.73	23.34	16.59	16.59	15.05

주: 1) 20세 이상 인구 중 음주율임.

2) 4차년도 조사부터 자료의 조사시점이 변경되어 2008년은 누락되고, 보기문항을 변경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가구원의 음주율을 살펴보면 2005년에 53.01%에서 2010년에는 61.46%로 상승한 것을 확인 할 수가 있다. 그 추세를 살펴보면 2007년 까지는 음주량이 증가하다

가 2009년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주횟수를 확인하면 ‘주 1회 이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0년에는 감소하였으며 ‘주 4회 이상’이 증가하였다. 분위별로 확인하면 대체로 소득이 클수록 음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주횟수는 2009년 까지는 4분위와 5분위의 ‘주 4회 이상’의 비율이 다른 분위에 비해 적었으나 2010년에는 4분위가 3분위보다 더 많은 음주 횟수를 보였다.

〈표 6-31〉 소득5분위별 음주율, 평균음주횟수, 평균음주량(가구원 전체)

(단위: %)

구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05	비율		53.01	39.15	51.62	56.55	58.96	59.49
	음주 =100	주 1회 이하	57.80	55.40	56.77	57.24	59.00	59.59
		주 2~3회	28.88	25.07	28.49	29.99	29.85	29.86
		주 4회 이상	13.32	19.53	14.74	12.77	11.15	10.55
2006	비율		60.19	42.75	59.05	65.39	67.49	67.44
	음주 =100	주 1회 이하	59.86	56.43	60.21	60.29	60.22	61.11
		주 2~3회	27.61	23.71	26.01	26.96	30.20	29.50
		주 4회 이상	12.53	19.86	13.77	12.75	9.58	9.39
2007	비율		65.93	48.75	63.37	70.64	74.06	73.92
	음주 =100	주 1회 이하	61.83	59.48	61.56	60.64	60.95	65.55
		주 2~3회	26.48	23.15	25.18	28.34	28.70	26.00
		주 4회 이상	11.69	17.38	13.26	11.02	10.36	8.46
2009	비율		63.80	46.70	61.92	68.57	69.69	72.25
	음주 =100	주 1회 이하	67.99	66.30	65.33	69.77	67.06	70.42
		주 2~3회	21.96	19.06	22.52	20.79	25.25	21.33
		주 4회 이상	10.05	14.63	12.15	9.44	7.69	8.26
2010	비율		61.46	45.71	59.97	67.56	67.23	67.20
	음주 =100	주 1회 이하	62.86	60.74	63.38	62.30	60.91	66.27
		주 2~3회	24.94	21.79	21.03	27.51	28.36	24.55
		주 4회 이상	12.20	17.46	15.59	10.19	10.74	9.19

주: 1) 20세 이상 인구 중 음주율임.

2) 4차년도 조사부터 자료의 조사시점이 변경되어 2008년은 누락되고, 보기문항을 변경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지역별 가구주의 음주율을 살펴보면 2005년과 비교해서 2010년에는 모든 도시에 음주율이 상승하였으며 2007년까지는 중소도시의 음주율이 가장 높았으나 2009년 이후는 대도시의 음주율이 가장 높았다. 음주횟수의 경우는 ‘주 1회 이하’의 비

중이 대도시가 2006년에 감소하였지만 대체적으로 모든도시에서 2009년까지 증가하는 추세였다. 하지만 2010에 모든도시에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 6-32〉 지역별 음주율, 평균음주횟수, 평균음주량(가구주)

(단위: %)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05	음주 =100	비율	67.13	64.46	70.20	59.87
		주 1회 이하	44.84	48.32	43.10	32.98
		주 2~3회	35.71	35.73	35.19	39.12
		주 4회 이상	19.45	15.95	21.71	27.90
2006	음주 =100	비율	70.44	70.70	71.64	62.28
		주 1회 이하	46.03	48.25	45.17	36.88
		주 2~3회	34.86	35.06	34.44	36.10
		주 4회 이상	19.11	16.68	20.39	27.02
2007	음주 =100	비율	73.99	74.24	75.28	65.73
		주 1회 이하	47.27	48.41	47.08	41.21
		주 2~3회	34.34	35.33	33.83	31.23
		주 4회 이상	18.39	16.25	19.09	27.55
2009	음주 =100	비율	71.87	72.89	72.29	64.41
		주 1회 이하	54.63	56.29	53.92	49.15
		주 2~3회	29.38	29.13	29.91	27.74
		주 4회 이상	15.99	14.59	16.17	23.11
2010	음주 =100	비율	72.07	73.26	72.27	65.09
		주 1회 이하	50.51	50.66	50.83	47.85
		주 2~3회	30.79	31.55	30.21	29.75
		주 4회 이상	18.70	17.80	18.95	22.40

주: 1) 20세 이상 인구 중 음주율임.

2) 4차년도 조사부터 자료의 조사시점이 변경되어 2008년은 누락되고, 보기문항을 변경

자료: 한국복지패널 1~45년도 원자료

지역별 가구원의 음주율을 살펴보면 2005년과 비교해서 2010년에는 모든 도시에서 음주율이 상승하였으며 2005년을 제외하고는 대도시의 음주율이 가장 높았다. 모든 도시의 음주율이 2007년까지는 상승하다가 2009년부터는 감소하였으며 음주횟수의 경우는 ‘주 1회 이하’의 비중이 모든 도시에서 2009년까지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10에는 모든 도시에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 6-33〉 지역별 음주율, 평균음주횟수, 평균음주량(가구원 전체)

(단위: %)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05	비율		53.01	52.02	55.14	46.85
	음주 =100	주 1회 이하	57.80	60.68	56.26	47.46
		주 2~3회	28.88	28.17	29.12	32.43
		주 4회 이상	13.32	11.15	14.63	20.11
2006	비율		60.19	61.20	60.57	51.70
	음주 =100	주 1회 이하	59.86	61.74	58.88	52.55
		주 2~3회	27.61	27.09	27.91	29.36
		주 4회 이상	12.53	11.16	13.21	18.09
2007	비율		65.93	66.68	66.67	57.22
	음주 =100	주 1회 이하	61.83	62.66	61.65	57.23
		주 2~3회	26.48	27.04	26.14	24.71
		주 4회 이상	11.69	10.30	12.21	18.06
2009	비율		63.80	65.10	64.02	55.01
	음주 =100	주 1회 이하	67.99	68.75	67.79	63.99
		주 2~3회	21.96	22.24	21.95	20.11
		주 4회 이상	10.05	9.01	10.26	15.90
2010	비율		61.46	62.97	61.77	51.28
	음주 =100	주 1회 이하	62.86	63.83	62.62	57.61
		주 2~3회	24.94	24.69	25.20	25.08
		주 4회 이상	12.20	11.48	12.19	17.31

주: 1) 20세 이상 인구 중 음주율임.

2) 4차년도 조사부터 자료의 조사시점이 변경되어 2008년은 누락되고, 보기문항을 변경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성별 가구주의 음주율을 살펴보면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남녀모두 2007년까지는 음주율이 증가하다가 2009년에 감소하고 2010년에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음주횟수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2005년에 비해서 ‘주 1회 이하’가 늘어나 횟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적인 추세를 보면 남성의 경우는 2009년까지 ‘주 1회 이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0년에는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여성의 경우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34〉 성별 음주율, 평균음주횟수, 평균음주량(가구주)

(단위: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2005	비율		67.13	74.51	33.88
	음주 =100	주 1회 이하	44.84	42.21	70.83
		주 2~3회	35.71	37.03	22.66
		주 4회 이상	19.45	20.76	6.52
2006	비율		70.44	77.63	39.11
	음주 =100	주 1회 이하	46.03	42.53	76.34
		주 2~3회	34.86	36.75	18.48
		주 4회 이상	19.11	20.72	5.18
2007	비율		73.99	81.60	41.89
	음주 =100	주 1회 이하	47.27	43.87	75.20
		주 2~3회	34.34	36.25	18.69
		주 4회 이상	18.39	19.88	6.11
2009	비율		71.87	78.29	41.61
	음주 =100	주 1회 이하	54.63	51.69	80.80
		주 2~3회	29.38	31.00	14.99
		주 4회 이상	15.99	17.31	4.21
2010	비율		72.07	78.62	42.20
	음주 =100	주 1회 이하	50.51	47.13	79.18
		주 2~3회	30.79	32.46	16.59
		주 4회 이상	18.70	20.41	4.23

주: 1) 20세 이상 인구 중 음주율임.

2) 4차년도 조사부터 자료의 조사시점이 변경되어 2008년은 누락되고, 보기문항을 변경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성별 가구원의 음주율을 살펴보면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2005년에 비해서 남녀모두 음주율이 증가하였다 시간적인 추세를 보면 남녀모두 2007년까지는 음주율이 증가하다가 2009년 이후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음주횟수를 살펴보면 남성은 2005년 보다 ‘주 1회 이하’가 증가하였으나 여성은 감소하여 횟수가 더 빈번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적인 추를 보면 남성의 경우는 2009년까지는 ‘주 1회 이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나 2010년에는 감소하였고 여성의 경우는 상승과 하락이 혼재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35〉 성별 음주율, 평균음주횟수, 평균음주량(가구원 전체)

(단위: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2005	비율		53.01	74.37	34.22
	음주 =100	주 1회 이하	57.80	44.79	82.66
		주 2~3회	28.88	36.35	14.61
		주 4회 이상	13.32	18.86	2.73
2006	비율		60.19	77.68	44.70
	음주 =100	주 1회 이하	59.86	45.76	81.59
		주 2~3회	27.61	35.52	15.42
		주 4회 이상	12.53	18.72	3.00
2007	비율		65.93	81.92	51.66
	음주 =100	주 1회 이하	61.83	46.65	83.33
		주 2~3회	26.48	35.35	13.92
		주 4회 이상	11.69	18.01	2.75
2009	비율		63.80	78.99	49.13
	음주 =100	주 1회 이하	67.99	56.32	86.13
		주 2~3회	21.96	28.87	11.21
		주 4회 이상	10.05	14.81	2.66
2010	비율		61.46	78.09	45.49
	음주 =100	주 1회 이하	62.86	51.18	82.10
		주 2~3회	24.94	31.24	14.56
		주 4회 이상	12.20	17.57	3.34

주: 1) 20세 이상 인구 중 음주율임.

2) 4차년도 조사부터 자료의 조사시점이 변경되어 2008년은 누락되고, 보기문항을 변경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표 6-36〉 음주에서의 보건의료지표

(단위: 점, 비율비)

구분	가구주						가구원 전체					
	소득분위집단 간		지역집단 간		성별 간		소득분위집단 간		지역집단 간		성별 간	
	AD	RD	AD	RD	AD	RD	AD	RD	AD	RD	AD	RD
2005	34.31	1.73	10.33	1.17	40.63	2.20	20.34	1.52	8.29	1.18	40.15	2.17
2006	36.88	1.77	9.36	1.15	38.52	1.98	24.74	1.58	9.50	1.18	32.98	1.74
2007	35.28	1.67	9.55	1.15	39.71	1.95	25.89	1.53	9.46	1.17	30.26	1.59
2009	34.43	1.67	8.48	1.13	36.68	1.88	25.55	1.55	10.09	1.18	29.86	1.61
2010	31.30	1.59	8.17	1.13	36.42	1.86	21.85	1.48	11.69	1.23	32.60	1.72

주: 1) 20세 이상 인구 중 음주율임.

2) 4차년도 조사부터 자료의 조사시점이 변경되어 2008년은 누락되고, 보기문항을 변경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음주율의 절대차이와 상대차이를 확인해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서 가구주나 가구원 모두 차이의 변화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절 소결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원자료를 활용하여 연도별·지역별·계층별·점유형태별 보건의료지표들의 수준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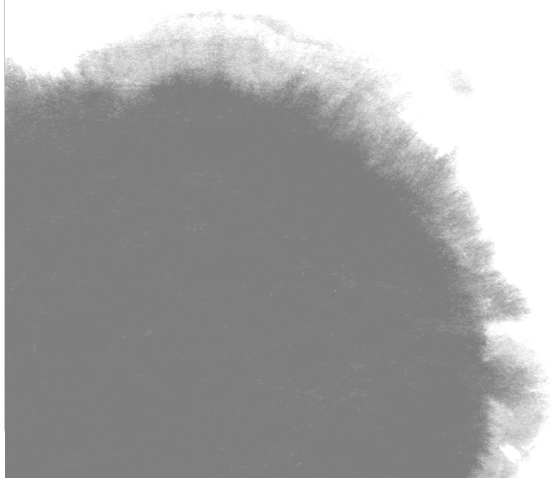
주관적 건강상태는 전체적으로 2005년에 비하여 좋아졌으며, 소득이 낮은 집단의 건강상태가 예전에 비해 좋아졌으며, 소득이 높은 집단은 반대로 건강상태가 낮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소득이 낮은 집단의 건강상태가 소득이 높은 집단에 비하여 낮은 상태는 유지가 되었다.

우울의 경우는 모든 집단에서 2005년에 비하여 우울지수가 낮아져 우울상태가 개선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소득이 낮은 집단의 우울지수가 소득이 높은 집단에 비하여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어 건강상태나 우울 모두 소득이 낮을수록 더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직접적인 우울이나 건강상태 개선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이들의 소득과 같은 생활환경까지 바꿀 수 있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흡연, 간접흡연의 경우 전체적으로 흡연을 하는 비율이 2005년에 비해서 줄어들었으며, 집단들 사이에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음주율의 경우 2005년에 비하여 모든 집단이 음주비율이 줄었으나 소득이 높을수록 음주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울, 건강상태와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으며 이는 흡연율, 간접흡연율, 음주율이 저소득층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보편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07

노동



제7장 노동

본 장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차~5차 원자료를 활용하여 노동관련 지표를 산출하고자 한다³²⁾. 노동지표를 거시 고용지표, 가구 및 개인 고용지표, 노동 및 근로생활의 질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먼저, 거시 고용지표는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을 살펴보고, 가구 및 개인 고용지표는 가구내 취업자수, 연간 취업경험률을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노동 및 근로생활의 질은 종사상 지위 비율, 일의 불규칙성, 유해환경 근로비율을 알아본다. 세부적으로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연도별 지표의 변화를 살펴보고, 소득분위별, 지역별, 성별, 학력별, 연령에 따른 지표의 변화를 가구주³³⁾와 가구주를 포함한 전체 가구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표 7-1〉 노동지표의 구성

분류	지표 구성
거시 고용지표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가구 및 개인 고용지표	가구내 취업자수 연간 취업경험률
노동 및 근로생활의 질	종사상 지위 비율 일의 불규칙성 유해환경 근로비율

- 32) 노동지표의 구성은 노동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본고에서는 자료의 제한성 등으로 인해 일부 지표만을 다루고자 한다.
- 33) 한국복지패널에서는 가구주의 개념을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사 실상 생계를 책임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구의 생계를 담당하는 자로서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를 분석하는 것은 유의미한 작업이라 할 수 있겠다.

제1절 노동지표 산출 방식

노동지표는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및 고용률, 가구내 취업자수, 연간 취업경험률, 종사상 지위, 일의 불규칙성, 유해환경 근로비율을 산출하고자 한다. 각 지표별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및 고용률

거시 노동관련 지표로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하여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경제활동참가율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근로능력이 없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가사, 학업 등의 사유로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비경제활동인구³⁴⁾를 제외한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괄하는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한편,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구직활동³⁵⁾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을 의미한다. 고용률은 만 15세 이상의 생산가능 인구³⁶⁾ 중 취업자수의 비중을 나타낸다. 세부적으로는 소득분위별, 지역별, 성별, 학력별, 연령에 따른 지표의 변화를 가구주와 가구주를 포함한 전체 가구원으로 구분하여 연도별 지표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text{경제활동참가율} = \frac{\text{경제활동인구}}{\text{15세이상인구}} \times 100(\%)$$

$$\text{실업률} = \frac{\text{실업자}}{\text{경제활동인구}} \times 100(\%)$$

$$\text{고용률} = \frac{\text{취업자 수}}{\text{15세 이상 인구}} \times 100(\%)$$

34) 비경제활동인구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자와 주된 활동 상태에 따라 가사, 통학, 연로, 심신장애, 집에서 통근하는 군 복무자(공익근무요원 등)를 의미한다.

35) 구직활동 기간 설정을 정의하는 것에 따라 실업률이 달라질 수 있다. 구직활동 기간의 정의를 ILO에서는 1주일, OECD에서는 4주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한국복지패널에서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지난 4주 동안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을 하지 못한 사람을 실업자로 정의하고 있다.

36) 생산가능 인구의 연령을 통계청에서는 만 15세 이상 인구로, OECD에서는 만 15세 이상 만 65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사용되는 한국복지패널에서는 통계청에 기준에 준하여 만 15세 이상의 인구로 정의한다.

2. 가구내 취업자수

다음으로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별 경제활동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구내 취업자수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개인별 취업상태를 파악하여 가구별로 합산하여 가구내 취업자수를 산출하고, 2005년부터 2009년의 가구내 취업자수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2009년의 소득분위와 지역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한다. 한편, 소득분위가 낮은 가구의 경우 가구원 모두가 근로무능력자 또는 단순근로미약자인 경우가 많아 가구내 취업자수가 과소 추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가구원 전체와 근로무능력 가구원을 제외한 근로능력 가구원³⁷⁾만을 산출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가구내 가구원들의 경제활동 참여 상태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가구 취업자수를 산출하고자 한다. 이는 가구내 15세 이상 근로가능자(근로가능자+단순근로가능자)³⁸⁾ 중 가구내 취업자의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0에서 1의 값을 갖는다. 근로무능력 가구원을 제외하였으므로 분모는 1명 이상의 값을 가지며 분자는 0명 이상의 값을 갖는다. 따라서 0일 경우는 가구내 근로능력자가 1명 이상이나 취업자수는 0명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1일 경우는 가구내 근로능력 가능한 사람이 모두 취업한 경우를 의미한다. 가구취업자수를 소득분위와 지역별로 구분하여 평균값을 살펴보고자 한다.

$$\text{가구 취업자수} = \frac{\text{가구내 취업자수}}{\text{가구내 15세 이상 근로능력자수}}$$

37) 근로능력가구는 가구원 중에서 1명이라도 근로능력 가능자가 있는 가구를 의미함

38) 가구내 가구원의 근로가능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근로능력상태 변수를 활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에서는 개인의 심신능력상 근로능력정도를 ① 근로가능 ② 단순근로 가능(집안에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정도) ③ 단순근로미약자(집안 일만 가능) ④ 근로능력이 없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음(집안일도 불가능)으로 구분된다. 본 지표에서 근로가능자는 ① 근로가능자와 ② 단순근로가능자를 포함한다.

3. 연간 취업경험률

연간 취업경험률은 미취업자를 포함한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연간 경제활동 참여 경험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이다. 이를 위해 가구용 조사표의 소득 조사에서 경제활동 해당여부 변수를 활용하였다. 경제활동 해당여부 변수의 한 항목 이상에서 응답하였으면 연간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판단하였다. 단,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비경제활동 인구와 함께 표기하도록 되어 있어 경제활동 소득변수를 통해 취업경험 인구로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할 경우 연간 취업경험 인구의 과소추정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경제활동 상태가 무급가족종사자일 경우에 연간 취업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한편, 가구주와 가구원 전체를 분석함에 있어서 근로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연간 취업경험률을 살펴보고, 이와 함께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만을 대상으로 지표를 산출하였다.

$$\text{연간 취업경험률} = \frac{\text{연간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text{1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 \times 100(\%)$$

4. 종사상 지위

종사상 지위(또는 고용 지위)는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노동의 질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한국복지패널에서는 경제활동상태 영역에 대한 조사가 있어 중·고생이 아닌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에게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를 조사한다. 조사대상자는 임금근로자(상용직·임시직·일용직·자활근로 및 공공근로),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실업자, 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하나에 응답하게 된다. 미취업자를 제외한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의 비중에 대하여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변화³⁹⁾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2009년의 경우 종사상 지위 비중을 소득분

39) 경제활동 참여상태의 경우 2005년 데이터에서 임시직 임금근로자 비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나 데이터 초기 구축에 있어서 불안정으로 간주해 이를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위별, 성별, 연령별로 살펴보았다. 종사상 지위 비중 역시 가구주와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 전체의 경우를 모두 살펴보았다.

5. 일의 불규칙성

근로생활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는 일의 불규칙성 비율은 12월 31일 기준 취업자 중에서 일을 불규칙적으로 한 사람의 비율을 나타낸다. 한국복지패널에서는 모든 취업 응답자를 대상으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묻는 문항에서 규칙적으로 일한 경우 또는 불규칙적으로 일한 경우 두 문항 중 하나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text{일의 불규칙성 비율} = \frac{\text{불규칙적으로 일한 사람}}{\text{근로경험이 있는 사람}} \times 100(\%)$$

6. 유해환경 근로비율

유해환경 근로 비율은 지난 1년간 일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안전설비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거나, 작업장 오염 등으로 인한 유해한 환경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을 나타낸다.

$$\text{유해환경근로비율} = \frac{\text{유해환경에서 일한 경험 있는 사람}}{\text{근로경험이 있는 사람}} \times 100(\%)$$

제2절 노동지표 신출 결과와 추이

본 절에서는 주요 기준변수인 소득 및 지역, 성별, 학력, 연령 등에 따라 지표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사실상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구주와 가구주를 포함한 전체 가구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1.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및 고용률⁴⁰⁾

먼저, 가구주의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구주의 경제활동참가율을 2005년 79.15%이었으나 2009년에는 78.67%로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분위별로는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 가구주의 소득분위별 경제활동지표

		(단위: %)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경제활동 참가율	2005	79.15	51.01	81.53	87.61	91.85	94.35
	2006	78.03	49.08	81.55	88.40	91.52	92.45
	2007	76.78	47.34	80.01	87.59	90.42	92.70
	2008	78.97	48.58	83.01	88.93	91.99	94.89
	2009	78.67	49.11	81.45	90.52	90.67	94.09
실업률	2005	4.49	12.81	5.50	2.87	2.34	1.03
	2006	4.35	14.73	4.83	2.26	1.43	0.85
	2007	3.64	10.75	4.72	1.70	1.74	0.96
	2008	3.10	9.78	4.24	1.94	0.75	0.59
	2009	1.21	4.03	1.38	0.59	0.44	0.31
고용률	2005	75.59	44.48	77.06	85.09	89.70	93.38
	2006	74.64	41.85	77.61	86.41	90.22	91.67
	2007	73.99	42.25	76.23	86.10	88.85	91.80
	2008	76.52	43.82	79.49	87.20	91.30	94.33
	2009	77.71	47.14	80.32	89.98	90.29	93.79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40) 한국복지패널의 경제활동 참여상태에 대한 기준시점은 전년도 12월 31이다. 따라서 1차 조사시 통계청의 지표보다 높은 실업률 수치를 보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2차 조사부터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일용직 임금근로자, 농업종사자 등을 미취업자로 파악되었던 것을 취업인구로 파악하여 조사하였다. 3차 조사에서는 이와 함께 '소득을 목적으로 주당 1시간 이상 일(아르바이트 포함)'을 한 경우 비경제활동 인구가 아닌 취업인구로 파악하여 조사하였다. 4차 조사부터는 일용직 임금근로자의 경우 12월 중 하루라도 일을 한 경우에만 취업자로 간주하여 조사하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2009년 소득 1분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11%로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을 나타낸 반면, 소득 5분위의 경제활동참가율을 94.09%로 큰 차이를 보였다. 한편, 실업률은 2005년 이래로 점차 감소추세이다. 특히 2008년에는 3.10%였던 실업률이 2009년에는 실업률이 1.21%로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소득분위별로는 소득 분위가 낮을수록 실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은 200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에는 77.71%를 나타냈으며, 분위별로는 경제활동참가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소득 1분위와 소득 5분위와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7-2 참조).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 전체의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가구원 전체의 경제활동참가율을 2005년 57.42%에서 2009년 60.80%로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분위별로는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원 전체의 실업률은 2005년 이래로 꾸준히 감소하였고, 특히 2008년 5.15%에서 2009년 2.39%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소득분위별로는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실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득 4분위의 실업률은 소득 3분위와 소득 5분위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 이전년도와는 다른 추이를 보였다. 가구원 전체의 고용률은 200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에는 59.35%를 나타냈다. 소득분위별로는,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고용률도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고용률도 낮았다.

〈표 7-3〉 가구원 전체의 소득분위별 경제활동지표

		(단위: %)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경제활동 참가율	2005	57.42	43.59	56.35	57.78	63.77	66.58
	2006	57.06	42.10	57.01	60.21	63.20	63.90
	2007	58.41	42.17	56.80	62.78	65.40	65.92
	2008	60.58	41.53	60.40	64.70	67.79	68.85
	2009	60.80	42.92	59.48	65.31	67.95	68.75
실업률	2005	8.12	16.88	11.06	7.57	5.24	2.81
	2006	6.68	15.62	9.06	5.47	4.45	1.73
	2007	5.63	13.09	8.10	4.72	3.24	1.78
	2008	5.15	12.25	6.59	4.16	2.72	2.92
	2009	2.39	4.97	2.67	1.76	2.45	1.05
고용률	2005	52.76	36.23	50.11	53.41	60.42	64.71
	2006	53.25	35.52	51.84	56.92	60.39	62.80
	2007	55.12	36.65	52.20	59.82	63.28	64.74
	2008	57.46	36.45	56.42	62.01	65.95	66.84
	2009	59.35	40.79	57.89	64.16	66.29	68.03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가구주의 경제활동지표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제활동참가율은 대도시에서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09년에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소도시, 농어촌은 2005년부터 계속 증가하여 2009년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각각 81.15%, 74.98% 분석되었다. 한편, 실업률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감소률은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률은 중소도시가 2009년 80.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대도시, 농어촌 순으로 나타났다.

〈표 7-4〉 가구주의 지역별 경제활동지표

(단위: %)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경제활동 참가율	2005	79.15	76.94	82.04	76.24
	2006	78.03	75.82	80.93	74.96
	2007	76.78	75.29	78.88	73.82
	2008	78.97	78.62	80.21	74.38
	2009	78.67	76.92	81.15	74.98
실업률	2005	4.49	5.77	3.60	2.09
	2006	4.35	5.27	3.78	2.30
	2007	3.64	5.22	2.48	1.30
	2008	3.10	3.93	2.66	1.05
	2009	1.21	1.48	1.08	0.55
고용률	2005	75.59	72.50	79.09	74.64
	2006	74.64	71.83	77.87	73.24
	2007	73.99	71.36	76.93	72.86
	2008	76.52	75.53	78.08	73.60
	2009	77.71	75.78	80.27	74.57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다음으로는 가구원 전체의 지역별 경제활동지표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가구원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모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도시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09년 기준 61.36%로 가장 높았다. 실업률도 또한 2009년 기준 중소도시가 가장 높았고, 농어촌이 1.2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가구원 전체의 고용률은 가구원 전체 경제활동참가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2005년 이래로 점차 증가하였으며,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농어촌의 고용률이 가장 높았으나 2009년에는 중소도시의 고용률이 농어촌보다 다소 높았다.

〈표 7-5〉 가구원 전체의 지역별 경제활동지표

(단위: %)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경제활동 참가율	2005	57.42	55.87	58.56	60.87
	2006	57.06	55.16	58.49	60.71
	2007	58.41	56.58	59.88	61.13
	2008	60.58	60.43	60.83	60.15
	2009	60.80	60.34	61.36	60.40
실업률	2005	8.12	9.77	7.20	3.43
	2006	6.68	7.58	6.42	2.98
	2007	5.63	6.90	5.00	2.07
	2008	5.15	5.87	4.99	1.83
	2009	2.39	2.44	2.54	1.24
고용률	2005	52.76	50.41	54.34	58.78
	2006	53.25	50.98	54.74	58.90
	2007	55.12	52.68	56.88	59.86
	2008	57.46	56.88	57.79	59.05
	2009	59.35	58.86	59.80	59.65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가구의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을 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은 남성 가구가 여성 가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7-6〉 가구의 성별 경제활동지표

(단위: %)

		전체	남성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2005	79.15	84.41	55.30
	2006	78.03	83.96	52.33
	2007	76.78	82.05	50.14
	2008	78.97	84.09	54.84
	2009	78.67	83.72	55.52
실업률	2005	4.49	4.03	7.73
	2006	4.35	3.92	7.38
	2007	3.64	3.46	4.94
	2008	3.10	2.83	5.07
	2009	1.21	1.11	1.93
고용률	2005	75.59	81.01	51.03
	2006	74.64	80.67	48.38
	2007	73.99	80.18	47.66
	2008	76.52	81.71	52.06
	2009	77.71	82.79	54.45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구체적으로 남성 가구주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80%를 상회한 반면, 여성 가구주는 약 55%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한편, 2009년 실업률은 남성 가구주와 여성 가구주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5년 여성 가구주의 실업률은 7.73%에서 2009년 1.93%로 남성 가구주보다는 여성 가구주의 실업률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표 7-6 참조)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 전체의 경제활동지표를 성별로 살펴보면, 2009년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72.39%,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9.45%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감소한 반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증가한 것으로 살펴볼 수 있다. 가구원 전체의 실업률은 남성과 여성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의 감소는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와 비슷하게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큰 변화가 있었다. 즉, 2009년 여성의 실업률은 2.21%로 2005년 10.13%에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연도별 변화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7-7〉 가구원 전체의 성별 경제활동지표

(단위: %)

		전체	남성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2005	57.42	73.43	43.16
	2006	57.06	72.10	43.57
	2007	58.41	72.40	45.74
	2008	60.58	73.04	48.42
	2009	60.80	72.39	49.45
실업률	2005	8.12	6.79	10.13
	2006	6.68	5.57	8.32
	2007	5.63	5.13	6.35
	2008	5.15	5.17	5.12
	2009	2.39	2.51	2.21
고용률	2005	52.76	68.44	38.79
	2006	53.25	68.09	39.94
	2007	55.12	68.68	42.83
	2008	57.46	69.26	45.94
	2009	59.35	70.57	48.35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은 가구주의 학력별로 차이를 보였다. 먼저,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전문대 졸업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교 이하 졸업한 가구주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실업률은 2005년에는 대학교 이상 졸업한 가구주의 실업률이 가장 낮았으나 2009년에는 고등학교 이하 졸업한 가구주의 실업률이 0.86%로 가장 낮았다.

〈표 7-8〉 가구주의 학력별 경제활동지표

		(단위: %)				
		전체	중졸 이하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이상
경제활동 참가율	2005	79.15	58.94	86.15	94.30	89.97
	2006	78.03	56.95	86.34	95.03	88.87
	2007	76.78	55.09	85.87	93.08	88.24
	2008	78.97	56.75	86.16	93.75	89.33
	2009	78.67	56.91	85.17	92.63	88.81
실업률	2005	4.49	6.62	4.89	3.91	2.53
	2006	4.35	6.18	4.12	4.25	3.22
	2007	3.64	4.70	4.12	2.34	2.57
	2008	3.10	3.35	3.12	2.56	3.08
	2009	1.21	1.67	0.86	1.67	1.18
고용률	2005	75.59	55.05	81.93	90.61	87.69
	2006	74.64	53.43	82.78	90.99	86.01
	2007	73.99	52.50	82.33	90.90	85.97
	2008	76.52	54.85	83.47	91.35	86.58
	2009	77.71	55.96	84.44	91.08	87.76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가구원 전체의 학력별 경제활동지표는 가구주의 학력별 경제활동지표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즉,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전문대학 졸업자가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 이하 졸업자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실업률은 전문대학 졸업자가 2009년 3.97%로 가장 높은 반면 중학교 이하 졸업자는 2009년 1.32%로 가장 낮았다(표 7-9 참조)

가구주의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높게 나타났고 실업률은 55~64세인 고령층의 가구주가 가장 높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활동참가율은 15~29세인 청년층 가구주와 30~54세인 중장년층의 가구주는 대부분이 경제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65세 이상인 초고령층인 가구주는 2009년 33.83%만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65세 이상인 초고령층은 2005

년 7.98%에서 2009년 1.92%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가구주의 고용률은 경제활동 참가율과 비슷하게 나타났다(표 7-10 참조)

〈표 7-9〉 가구원 전체의 학력별 경제활동지표

(단위: %)

		전체	중졸 이하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이상
경제활동 참가율	2005	57.42	44.37	58.78	70.83	65.63
	2006	57.06	45.67	58.59	70.70	64.21
	2007	58.41	41.49	59.98	70.99	68.42
	2008	60.58	46.90	59.97	73.51	69.04
	2009	60.80	46.75	59.54	73.84	69.57
실업률	2005	8.12	7.70	9.03	9.08	6.92
	2006	6.68	6.58	7.07	9.57	5.14
	2007	5.63	4.35	6.58	7.18	4.82
	2008	5.15	3.42	5.25	7.21	5.24
	2009	2.39	1.32	1.68	3.97	3.09
고용률	2005	52.76	41.88	53.47	64.40	61.09
	2006	53.25	42.66	54.45	63.94	60.91
	2007	55.12	42.55	56.04	65.89	65.12
	2008	57.46	45.30	56.82	68.21	65.42
	2009	59.35	46.13	58.54	70.91	67.42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표 7-10〉 가구주의 연령별 경제활동지표

(단위: %)

		전체	15~29세	30~54세	55~64세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	2005	79.15	95.84	94.98	68.48	33.50
	2006	78.03	95.23	95.14	68.73	33.90
	2007	76.78	95.06	94.73	69.93	35.15
	2008	78.97	93.68	93.24	69.17	35.78
	2009	78.67	94.85	92.89	72.31	33.83
실업률	2005	4.49	2.38	3.37	9.52	7.98
	2006	4.35	3.31	3.66	6.05	7.87
	2007	3.64	2.68	2.84	6.84	5.18
	2008	3.10	1.57	3.21	3.48	2.75
	2009	1.21	0.91	0.96	2.19	1.92
고용률	2005	75.59	93.56	91.78	61.96	30.83
	2006	74.64	92.08	91.66	64.57	31.23
	2007	73.99	92.51	92.04	65.15	33.33
	2008	76.52	91.22	90.25	66.76	34.79
	2009	77.71	93.99	92.00	70.73	33.18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가구원 전체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30~54세인 중장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65세 이상인 초고령층이 가장 낮았다. 가구원 전체 실업률은 15~29세인 청년층을 제외하고는 다른 연령층에서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전체의 실업률은 가구주의 실업률과 달리 65세 이상인 초고령층보다는 55~64세인 고령층에서 2005년에 비해 2009년에는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보여진다. 고용률은 30~54세인 중장년층에서 2009년 75.90%로 고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55~64세인 고령층이 58.31%, 15~29세인 청년층이 43.47%, 65세 이상인 초고령층이 28.67% 순으로 나타났다.

〈표 7-11〉 가구원 전체의 연령별 경제활동지표

		(단위: %)				
		전체	15~29세	30~54세	55~64세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	2005	57.42	42.00	74.70	52.77	26.29
	2006	57.06	37.74	76.01	55.04	27.38
	2007	58.41	41.55	77.49	55.61	29.05
	2008	60.58	46.37	76.94	57.71	29.50
	2009	60.80	46.04	77.14	59.36	29.11
실업률	2005	8.12	14.95	6.17	9.95	7.57
	2006	6.68	11.16	5.72	6.68	6.46
	2007	5.63	9.50	4.87	5.58	4.42
	2008	5.15	9.90	4.18	3.72	2.27
	2009	2.39	5.58	1.61	1.77	1.50
고용률	2005	52.76	35.72	70.09	47.52	24.30
	2006	53.25	33.53	71.66	51.36	25.61
	2007	55.12	37.60	73.72	52.50	27.76
	2008	57.46	41.78	73.72	55.56	28.83
	2009	59.35	43.47	75.90	58.31	28.67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2. 가구 취업 지표

가. 가구내 취업자수 추이

본 절에서는 가구내 취업자수의 비중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구내 취업자수가 1명

인 가구는 2005년 47.50%에서 2009년 41.86%로 감소한 반면, 2명 가구원은 2005년 29.15%에서 31.99%로 증가하였다. 3인과 4인 가구원도 2005년에 비해 2009년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무능력 가구원을 제외한 가구내 취업자수 비중은 가구원 전체 연도별 추이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인 가구원만 취업한 경우는 2005년 51.50%에서 2009년 43.73%로 감소하였으나, 2인 가구원이 취업한 경우는 2005년 31.73%에서 2009년 33.47%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밖의 근로무능력 가구원을 제외한 가구내 취업자수가 3명 또는 4명인 경우도 2005년 이래도 증가하였다.

〈표 7-12〉 가구내 취업자수 비중의 연도별 추이

(단위: %)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전체
전체	2005	18.69	47.50	29.15	3.63	0.91	0.07	0.05	100.00
	2006	19.15	45.06	30.44	4.22	0.97	0.14	0.02	100.00
	2007	18.89	42.13	32.08	5.60	1.14	0.15	0.00	100.00
	2008	19.20	41.12	32.46	5.79	1.34	0.10	0.00	100.00
	2009	17.02	41.86	31.99	7.38	1.68	0.04	0.03	100.00
근로무능력 가구원 제외	2005	11.69	51.50	31.73	3.96	0.99	0.08	0.05	100.00
	2006	13.56	48.17	32.54	4.52	1.04	0.15	0.03	100.00
	2007	13.39	44.94	34.30	5.99	1.22	0.16	0.00	100.00
	2008	13.90	43.76	34.62	6.19	1.43	0.10	0.00	100.00
	2009	13.25	43.73	33.47	7.72	1.75	0.05	0.03	100.00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나. 2009년 주요 기준별 가구내 취업자수

2009년 소득분위별 가구내 취업자수 비중을 살펴보면, 소득 1분위에서는 55.34%가 가구내 취업자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명 가구원만 취업한 경우는 31.45%, 2명 가구원만 취업한 경우는 11.94%를 보였다. 반면에 소득 5분위에서는 가구내 2명이 취업한 경우가 48.2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1인만이 취업한 경우는 35.78%로 나타났다. 가구내 근로무능력 가구원을 제외한 경우도 소득 분위가 낮을수록 1명 가구원만 취업한 경우가 더 많았으며,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2명 가구원이 취업한 경우가 더 많이 차지하였다.

〈표 7-13〉 2009년 소득분위별 가구내 취업자수 비중

(단위: %)

취업자수 소득분위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총합
전체	1	55.34	31.45	11.94	1.20	0.00	0.07	0.00	100.00
	2	15.30	53.74	26.51	4.05	0.40	0.00	0.00	100.00
	3	6.89	46.69	34.84	9.12	2.31	0.00	0.15	100.00
	4	4.88	41.64	38.42	12.05	2.86	0.15	0.00	100.00
	5	2.65	35.78	48.27	10.49	2.82	0.00	0.00	100.00
	전체	17.02	41.86	31.99	7.38	1.68	0.04	0.03	100.00
근로무능력 가구원 제외	1	46.08	37.93	14.45	1.45	0.00	0.09	0.00	100.00
	2	13.03	55.15	27.25	4.17	0.41	0.00	0.00	100.00
	3	5.62	47.33	35.31	9.25	2.34	0.00	0.15	100.00
	4	4.58	41.77	38.54	12.09	2.87	0.15	0.00	100.00
	5	2.56	35.81	48.32	10.50	2.82	0.00	0.00	100.00
	전체	13.25	43.73	33.47	7.72	1.75	0.05	0.03	100.00

자료: 한국복지패널 5차년도 원자료

2009년 지역별 가구내 취업자수를 살펴보면, 대도시, 중소도시에서는 1명 가구원이 취업한 경우가 각각 42.04%, 43.21%로 가장 많았으며, 농어촌은 2명 가구원이 취업한 경우가 35.30%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근로무능력 가구원을 제외한 경우도 전체 가구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즉, 대도시, 중소도시는 가구원 중 1명이 취업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농어촌은 가구원 중 2명이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7-14〉 2009년 지역별 가구내 취업자수 비중

(단위: %)

취업자수 지역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총합
전체	대도시	17.15	42.04	30.74	7.81	2.20	0.00	0.06	100.00
	중소도시	15.60	43.21	32.62	7.23	1.23	0.10	0.00	100.00
	농어촌	23.39	34.22	35.30	5.89	1.20	0.00	0.00	100.00
	전체	17.02	41.86	31.99	7.38	1.68	0.04	0.03	100.00
근로무능력 가구원 제외	대도시	13.74	43.74	32.02	8.14	2.29	0.00	0.07	100.00
	중소도시	12.06	44.99	34.02	7.54	1.28	0.10	0.00	100.00
	농어촌	16.74	37.11	38.39	6.44	1.31	0.00	0.00	100.00
	전체	13.25	43.73	33.47	7.72	1.75	0.05	0.03	100.00

자료: 한국복지패널 5차년도 원자료

다. 주요기준별 가구 취업지수

가구내 근로능력 가구원 수 중 취업가구원 수의 비율을 나타낸 가구 취업지수를 소득분위별 평균값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2005년에는 0.62에서 2009년에는 0.64로 다소 증가하였다. 소득분위별로는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가구 취업지수가 낮고,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가구 취업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소득 1분위에서는 2005년 0.51에서 2009년 0.42로 감소한 반면, 소득 2분위~4분위는 2005년에 비해 2009년에는 높아졌고 소득 5분위에서는 2005년과 2009년에는 각각 0.72, 0.73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표 7-15〉 소득분위별 가구 취업지수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근로능력 가구	2005	0.62	0.51	0.58	0.60	0.66	0.72
	2006	0.61	0.43	0.58	0.63	0.65	0.71
	2007	0.62	0.44	0.59	0.64	0.68	0.71
	2008	0.62	0.41	0.58	0.65	0.71	0.72
	2009	0.64	0.42	0.61	0.68	0.70	0.73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2009년 지역별 가구 취업지수를 살펴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2005년에 비해 2009년에는 증가한 반면, 농어촌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대도시는 2005년 0.59에서 2009년 0.62로 증가하였고 중소도시도 2005년 0.64에서 2009년 0.65로 증가하였다. 반면, 농어촌은 2005년 0.73에서 2009년 0.66으로 감소하였다.

〈표 7-16〉 2009년 지역별 가구 취업지수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근로능력 가구	2005	0.62	0.59	0.64	0.73
	2006	0.61	0.58	0.62	0.70
	2007	0.62	0.59	0.64	0.69
	2008	0.62	0.61	0.63	0.67
	2009	0.64	0.62	0.65	0.66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3. 연간 취업경험률

다음으로는 전체 인구 중 연중 소득을 목적으로 취업한 경험이 있는 비율을 나타내는 연간 취업경험률 지표를 살펴보고자 한다. 근로무능력 가구주를 포함한 전체 가구주에서는 2005년 79.09%에서 2009년 83.29%로 증가하였다. 다만 2007년에는 79.22%로 다소 떨어지기도 하였다. 소득분위별로는 2009년 기준 소득 1분위에서는 57.59%가 취업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소득 5분위에서는 96.52%로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가구주의 연간 취업경험률도 높았다.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주만을 살펴본 결과로는 2005년 87.82%에서 2009년 88.33%로 다소 상승하였으며, 2007년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별로도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근로능력 가구주의 연간 취업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7-17〉 가구주의 소득분위별 연간 취업경험률

(단위: %)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가구주	2005	79.09	51.24	81.62	86.79	91.65	94.68
	2006	80.38	53.61	83.59	90.70	92.48	93.40
	2007	79.22	52.16	82.18	89.30	92.03	93.44
	2008	82.11	54.13	86.53	91.63	93.77	95.99
	2009	83.29	57.59	87.11	93.35	92.67	96.52
근로능력 가구주	2005	87.82	69.68	88.09	90.25	93.51	96.49
	2006	88.25	69.62	89.46	94.12	94.77	95.03
	2007	86.84	67.43	88.00	92.42	94.19	94.60
	2008	88.27	67.46	91.21	93.41	95.19	96.51
	2009	88.33	68.87	90.89	95.03	93.41	96.94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 전체의 연간 취업경험률은 2005년 55.90%에서 2009년 66.44%로 상승하였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만을 살펴봐도 2005년이래도 연간 취업경험률을 상승하였다.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가구원의 연간 취업경험률은 낮고,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가구원의 연간 취업경험률은 높았다. 구체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만의 연간 취업경험률에서 2009년에는 소득 1분위에서 59.59%만이 취업을 경험하였으나, 소득 5분위에서는 73.80%가 취업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8〉 가구원 전체의 소득분위별 연간 취업경험률

(단위: %)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2005	55.90	41.36	54.48	55.99	62.40	66.23
	2006	60.97	46.33	60.51	63.69	67.43	67.93
	2007	61.21	45.64	59.56	65.59	68.53	67.74
	2008	64.93	47.16	64.22	69.83	72.66	71.14
	2009	66.44	50.91	66.54	70.55	72.12	72.55
근로능력 가구원	2005	62.02	53.96	59.76	59.94	65.55	68.74
	2006	66.78	59.25	65.41	67.25	69.94	70.65
	2007	66.59	57.39	64.53	68.53	71.09	69.87
	2008	69.08	56.56	67.90	72.02	74.36	72.55
	2009	70.05	59.59	70.01	72.19	73.34	73.80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가구주의 지역별 연간 취업경험률을 살펴보면, 중소도시의 연간 취업경험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농어촌, 대도시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구주 전체 2009년 기준 대도시는 81.37%, 중소도시는 85.46%, 농어촌은 82.06%로 나타났다.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주만을 살펴보면, 중소도시는 90.55%가 취업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농어촌 88.74%, 대도시 86.03% 순으로 나타났다.

〈표 7-19〉 가구주의 지역별 연간 취업경험률

(단위: %)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가구주 전체	2005	79.09	75.85	82.45	79.87
	2006	80.38	77.54	83.09	81.98
	2007	79.22	76.49	81.84	80.39
	2008	82.11	80.93	83.88	79.01
	2009	83.29	81.37	85.46	82.06
근로능력 가구주	2005	87.82	84.89	90.35	91.41
	2006	88.25	85.68	90.23	92.26
	2007	86.84	84.13	89.07	90.01
	2008	88.27	86.51	89.80	89.61
	2009	88.33	86.03	90.55	88.74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가구원 전체의 지역별 연간 취업경험률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모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가구원 전체의 연간 취업경험률이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농어촌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소도시, 대도시 순이었다. 2009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구원 전체는 농어촌이 67.47%, 중소도시 66.64%, 대도시 66.07%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은 농어촌 72.43%, 중소도시 70.33%, 대도시 69.37% 이었다.

〈표 7-20〉 가구원 전체의 지역별 연간 취업경험률

(단위: %)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가구원 전체	2005	55.90	53.49	57.48	62.33
	2006	60.97	58.70	62.27	67.71
	2007	61.21	59.07	62.71	65.56
	2008	64.93	64.12	65.52	66.34
	2009	66.44	66.07	66.64	67.47
근로능력 가구원	2005	62.02	59.61	63.39	70.05
	2006	66.78	64.72	67.50	75.82
	2007	66.59	64.64	67.70	72.15
	2008	69.08	67.93	69.56	73.30
	2009	70.05	69.37	70.33	72.43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가구주의 연간 취업 경험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5년에는 가구주 전체 중 남성 가구주가 취업을 경험한 비율이 83.52%에서 2009년 87.51%로 증가하였다. 여성 가구주의 경우 2005년 59.01%에서 2009년 63.94%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능력 가구주의 연간 취업경험률은 남성 가구주가 2005년에서 89.77%에서 2009년 90.89%로 증가한 반면, 여성 가구주는 2005년 76.48%에서 2009년 74.89%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7-21〉 가구주의 성별 연간 취업경험률

(단위: %)

		전체	남성	여성
전체	2005	79.09	83.52	59.01
	2006	80.38	84.75	61.34
	2007	79.22	84.25	57.87
	2008	82.11	86.18	62.93
	2009	83.29	87.51	63.94
근로능력 가구주	2005	87.82	89.77	76.48
	2006	88.25	90.43	76.60
	2007	86.84	89.53	72.79
	2008	88.27	90.57	75.58
	2009	88.33	90.89	74.89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가구원 전체의 연간 취업경험률을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가구원 전체 중 남성은 2005년 71.53%에서 2009년 77.26%로, 여성은 2005년 41.97%에서 2009년 55.84%로 증가하였다.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 전체도 남성과 여성 모두 2005년 이래로 증가하였다. 즉, 2005년 남성과 여성의 취업경험률이 각각 76.76%, 47.84%에서 2009년에는 각각 80.47%, 59.55%를 보였다.

〈표 7-22〉 가구원 전체의 성별 연간 취업경험률

(단위: %)

		전체	남성	여성
가구원 전체	2005	55.90	71.53	41.97
	2006	60.97	74.66	48.69
	2007	61.21	74.15	49.48
	2008	64.94	76.19	53.92
	2009	66.44	77.26	55.84
근로능력 가구원 전체	2005	62.02	76.76	47.84
	2006	66.78	79.52	54.56
	2007	66.59	78.79	54.94
	2008	69.08	79.81	58.21
	2009	70.05	80.47	59.55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가구주의 학력별로 연간 취업경험률을 살펴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경험률도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중학교 이하 졸업한 가구주는 2005년 60.72%에서 2009년 65.75%, 고등학교 이하 졸업한 가구주는 2005년 85.25%에서 2009년 88.82%, 전문대학 졸업 가구주는 2005년 92.37%에서 2009년 95.50%, 대학 이상 졸업 가구주는 2005년 89.33%에서 2009년 90.83%로 모두 증가하였다.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주의 연간 취업경험률은 전문대학 졸업 가구주가 2009년 96.5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대학 이상 졸업자 가구주가 92.54%, 고등학교 이하 졸업 가구주가 91.17%, 중학교 이하 졸업 가구주는 76.74% 순으로 나타났다.

〈표 7-23〉 가구주의 학력별 연간 취업경험률

(단위: %)

		전체	중졸 이하	고졸 이하	전문대	대학이상
가구주	2005	79.09	60.72	85.25	92.37	89.33
	2006	80.38	62.47	87.68	94.03	89.48
	2007	79.22	60.38	87.23	94.75	88.62
	2008	82.11	63.92	88.36	95.05	89.89
	2009	83.29	65.75	88.82	95.50	90.83
근로능력 가구주	2005	87.82	77.94	89.77	94.28	92.29
	2006	88.25	78.17	91.27	95.25	92.38
	2007	86.84	74.99	90.96	96.02	91.13
	2008	88.27	77.29	91.46	96.14	91.58
	2009	88.33	76.74	91.17	96.54	92.54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가구원 전체의 학력별 연간 취업경험률은 근로능력 유무와 상관없이 전문대 졸업자의 연간 취업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대학교 이상 졸업자, 고등학교 이하 졸업자, 중학교 이하 졸업 가구주 순으로 분석되었다. 연도별로는 가구원 전체는 중학교 이하 졸업자는 2005년 45.36%에서 2009년 53.35%, 고등학교 이하 졸업자는 2005년 56.23%에서 64.44%, 전문대학 졸업자는 2005년 65.85%에서 2009년 79.48%, 대학 이상 졸업자는 2005년 64.94%에서 2009년 75.26%로 분석되었다. 근로능력 가구원 전체의 학력별 연간 취업경험률은 전문대학 졸업자는 80.33%, 대학 이상 졸업자는 76.13%, 고등학교 이하 졸업자는 66.07%, 중학교 이하 졸업자는 62.80% 순으로 나타났다.

〈표 7-24〉 가구원 전체의 학력별 연간 취업경험률

(단위: %)

		전체	중졸 이하	고졸 이하	전문대	대학이상
가구원 전체	2005	55.90	45.36	56.23	65.85	64.94
	2006	60.97	49.42	61.06	74.70	70.37
	2007	61.21	48.36	61.69	76.73	70.25
	2008	64.93	52.39	63.98	76.47	73.31
	2009	66.44	53.35	64.44	79.48	75.26
근로능력 가구원 전체	2005	62.02	60.64	58.69	66.94	66.31
	2006	66.78	63.85	63.05	75.58	71.80
	2007	66.59	61.21	63.79	77.35	71.38
	2008	69.08	63.75	65.67	77.20	74.15
	2009	70.05	62.80	66.07	80.33	76.13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가구주의 연령별 연간 취업경험률은 15~29세인 청년층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30~64세인 중장년층, 55~64세인 고령층, 65세 이상인 초고령층 순으로 나타났다. 15~29세의 청년층과 30~64세인 중장년층은 95% 이상이 취업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65세 이상인 초고령층은 절반도 못 미치는 43.58%가 취업경험을 하였다.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주만 살펴보면 가구주 전체보다 전반적으로 취업경험률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2009년 기준 15~29세인 청년층은 97.46%, 30~64세인 중장년층은 96.65%, 55~64세인 고령층은 82.86%, 65세 이상인 초고령층은 55.48%이었다.

〈표 7-25〉 가구주의 연령별 연간 취업경험률

(단위: %)

		전체	15~29세	30~54세	55~64세	65세 이상
가구주	2005	79.09	96.85	94.01	66.32	37.68
	2006	80.38	96.97	95.23	72.72	41.39
	2007	79.22	97.70	95.35	72.88	41.55
	2008	82.11	97.93	94.78	74.85	41.82
	2009	83.29	97.46	95.52	79.07	43.58
근로능력 가구주	2005	87.82	97.28	95.69	73.41	57.47
	2006	88.25	97.52	96.41	79.57	59.56
	2007	86.84	98.29	96.60	77.88	57.73
	2008	88.27	97.93	95.94	79.95	57.05
	2009	88.33	97.46	96.65	82.86	55.48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가구원 전체 연령별 연간 취업경험률은 전 연령층에서 2005년부터 계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5~29세인 청년층은 2005년 41.18%에서 2009년 53.53%, 30~54세인 중장년층 2005년 71.72%에서 2009년 81.19%, 55~64세인 고령층은 2005년 50.59%에서 2009년 65.47%, 65세 이상인 초고령층은 2005년 29.10%에서 2009년 36.75%로 증가하였다. 근로능력 가구원만의 연령별 연간 취업경험률은 65세 이상인 초고령층을 제외한 다른 연령층에서는 2005년부터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였다. 65세 이상인 초고령층의 경우는 2005년 52.77%에서 2006년에는 다소 증가하였다가 2007년 51.11%, 2008년 50.24%, 2009년 50.03%로 점차 감소하였다.

〈표 7-26〉 가구원 전체의 연령별 연간 취업경험률

(단위: %)

		전체	15~29세	30~54세	55~64세	65세 이상
가구원 전체	2005	55.90	41.18	71.72	50.59	29.10
	2006	60.97	47.62	76.91	57.85	33.23
	2007	61.21	46.54	78.46	58.73	33.89
	2008	64.93	53.11	79.73	62.57	34.55
	2009	66.44	53.53	81.19	65.47	36.75
근로능력 가구원 전체	2005	62.02	41.53	73.51	57.39	52.77
	2006	66.78	47.82	78.27	64.88	53.38
	2007	66.59	46.72	79.70	64.62	51.11
	2008	69.08	53.37	81.08	67.37	50.24
	2009	70.05	53.89	82.33	69.42	50.03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4. 종사상 지위의 비중

가. 종사상 지위 비중의 추이

취업중인 가구주의 종사상지위 비중을 살펴보면, 상용직 임금근로자는 2006년 54.22%에서 2009년 47.75%로 감소하였으며, 임시직 임금근로자는 2006년 7.21%에서 2009년 13.60%로 증가하였다. 일용직 임금근로자는 2006년 9.97%에서 2009년 9.56%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자활 및 공공근로는 2006년 0.63%에서 2009년 0.85%로 다소 증가하였고, 고용주는 2006년 5.57%에서 2008년 6.05%로 증가하

였다가 2009년 5.16%로 다시 감소하였다. 자영업자는 2006년 21.72%에서 2009년 22.61%로 다소 증가, 무급가족 종사자는 2006년 0.68%에서 2009년 0.47%로 감소하였다.

〈표 7-27〉 취업중인 가구주의 종사상지위 비중

(단위: %)

	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업	무급가족종사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자활 및 공공근로				
2006	54.22	7.21	9.97	0.63	5.57	21.72	0.68	100.00
2007	53.03	7.16	10.68	0.62	5.83	22.02	0.66	100.00
2008	49.01	12.89	9.37	0.60	6.05	21.69	0.39	100.00
2009	47.75	13.60	9.56	0.85	5.16	22.61	0.47	100.00

자료: 한국복지패널 2~5차년도 원자료

한편, 취업중인 가구원 전체의 종사상 지위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상용직 임금근로자는 2006년이래로 계속 감소하였다. 반면, 임시직 임금근로자, 일용직 임금근로자는, 자활 및 공공근로자는 2006년부터 점차 증가하였다. 한편, 고용주와 무급가족종사자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감소하였으며, 자영업자는 2006년과 2009년에 비슷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표 7-28〉 취업중인 가구원 전체의 종사상지위 비중

(단위: %)

	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업	무급가족종사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자활 및 공공근로				
2006	51.37	10.73	9.63	0.59	4.23	16.71	6.74	100.00
2007	49.92	10.79	11.69	0.54	4.39	16.56	6.11	100.00
2008	45.09	18.50	10.33	0.52	4.15	15.94	5.47	100.00
2009	42.82	19.97	11.02	0.86	3.63	16.38	5.33	100.00

자료: 한국복지패널 2~5차년도 원자료

나. 2009년 주요 기준별 종사상지위 비중

2009년 소득분위별 가구주의 종사상지위 비중을 살펴보면, 소득 1분위에서는 자영업자가 39.5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일용직 임금근로자는 21.78%, 임시직 임금근로자는 20.5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소득 5분위에서는 상용직 임

금근로자가 65.2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자영업자가 14.84%이었다. 그러므로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상용직 임금 근로자와 고용주의 비중은 증가하고, 임시직, 일용직 임금근로자, 자영업자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9〉 2009년 소득분위별 가구주의 종사상지위 비중

(단위: %)

		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업	무급가족종사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자활 및 공공근로				
가구주	1분위	12.18	20.55	21.78	4.20	1.23	39.55	0.52	100.00
	2분위	38.23	19.37	15.59	0.65	2.92	22.93	0.32	100.00
	3분위	51.83	13.89	7.20	0.27	4.11	22.23	0.48	100.00
	4분위	60.87	10.73	5.25	0.00	4.38	18.17	0.59	100.00
	5분위	65.24	5.94	1.82	0.00	11.70	14.84	0.46	100.00
	전체	47.75	13.60	9.56	0.85	5.16	22.61	0.47	100.00

자료: 한국복지패널 5차년도 원자료

2009년 소득분위별 가구원 전체의 종사상지위 비중을 살펴보면, 소득 1분위에서는 자영업자가 27.61%로 가장 많았으며, 임시직 임금근로자 23.74%, 일용직 임금근로자 22.68%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득 5분위에서는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60.2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임시직 임금근로자가 13.47%, 자영업자가 11.74%로 나타났다. 즉,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자영업자의 비중과 임시직 및 일용직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감소하고, 상용직 임금근로자와 고용주의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30〉 2009년 소득분위별 가구원 전체의 종사상지위 비중

(단위: %)

		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업	무급가족종사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자활 및 공공근로				
가구원 전체	1분위	11.09	23.74	22.68	3.84	0.77	27.61	10.26	100.00
	2분위	32.69	24.43	17.94	0.71	1.86	16.49	5.88	100.00
	3분위	42.38	22.95	10.35	0.30	2.94	16.53	4.55	100.00
	4분위	53.31	17.98	6.68	0.18	3.51	13.92	4.43	100.00
	5분위	60.28	13.47	3.27	0.33	7.43	11.74	3.47	100.00
	전체	42.82	19.97	11.02	0.86	3.63	16.38	5.33	100.00

자료: 한국복지패널 5차년도 원자료

2009년 가구주 성별에 따른 종사상지위 비중을 살펴보면, 남성 가구주중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50.4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자영업자가 22.81%, 임시직 임금근로자는 11.7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 가구주 중 상용직 임금근로자는 28.97%로 가장 높았으며, 임시직 임금근로자는 26.41%, 자영업자는 21.26% 순으로 나타났다.

〈표 7-31〉 2009년 가구주 성별에 따른 종사상지위 비중

(단위: %)

		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업	무급가족종사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자활 및 공공근로				
가구주	남성	50.45	11.76	8.56	0.33	5.59	22.81	0.52	100.00
	여성	28.97	26.41	16.56	4.51	2.17	21.26	0.12	100.00
	전체	47.75	13.60	9.56	0.85	5.16	22.61	0.47	100.00

자료: 한국복지패널 5차년도 원자료

2009년 가구원 전체의 종사상지위 비중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상용직 임금근로자 49.44%로 가장 높았으며, 자영업자는 19.55%, 임시직 임금근로자는 14.80%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33.3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임시직 임금근로자가 27.36%, 일용직 임금근로자가 12.58%로 나타났다.

〈표 7-32〉 2009년 가구원 전체의 성별에 따른 종사상지위 비중

(단위: %)

		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업	무급가족종사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자활 및 공공근로				
가구원 전체	남성	49.44	14.80	9.92	0.46	4.78	19.55	1.04	100.00
	여성	33.36	27.36	12.58	1.44	1.97	11.84	11.45	100.00
	전체	42.82	19.97	11.02	0.86	3.63	16.38	5.33	100.00

자료: 한국복지패널 5차년도 원자료

2009년 가구주의 종사상지위 비중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15~29세 사이의 청년층은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71.7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임시직 임금근로자가 22.05%를 차지하였다. 30~54세 중장년층은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54.7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자영업자는 17.53%로 나타났다. 55~64세 사이의 고령층에서는 자영업자가 35.60%로 가장 높았으며,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27.54%,

일용직 임금근로자가 15.65% 순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초고령층은 자영업자가 60.1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임시직 임금근로자가 17.36%, 일용직 임금근로자가 12.64%로 나타났다.

〈표 7-33〉 2009년 가구주의 연령별 종사상지위 비중

(단위: %)

		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업	무급가족종사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자활 및 공공근로				
가구주	15~29세	71.70	22.05	3.31	0.00	0.00	2.94	0.00	100.00
	30~54세	54.72	12.13	8.54	0.64	6.16	17.53	0.27	100.00
	55~64세	27.54	14.80	15.65	0.96	4.56	35.60	0.89	100.00
	65세 이상	3.18	17.36	12.64	3.20	1.61	60.15	1.85	100.00
	전체	47.75	13.60	9.56	0.85	5.16	22.61	0.47	100.00

자료: 한국복지패널 5차년도 원자료

2009년 가구원 전체 연령별 종사상 지위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5~29세 청년층은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51.1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임시직 임금근로자 32.99%, 일용직 임금근로자가 11.31%를 보였다. 30~54세 중장년층에서는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48.2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임시직 임금근로자가 16.79%, 자영업자가 15.03%로 나타났다. 한편 55~64세의 고령층에서는 자영업자가 29.1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21.84%, 임시직 임금근로자가 18.86%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65세 이상 초고령층에서는 자영업자가 47.83%가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무급가족종사자가 16.65%, 임시직 임금근로자가 15.41%로 나타났다.

〈표 7-34〉 2009년 가구원 전체의 연령별 종사상지위 비중

(단위: %)

		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업	무급가족종사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자활 및 공공근로				
가구원 전체	15~29세	51.10	32.99	11.31	0.35	0.17	2.32	1.76	100.00
	30~54세	48.25	16.79	9.96	0.72	4.92	15.03	4.33	100.00
	55~64세	21.84	18.86	15.21	1.36	3.27	29.13	10.33	100.00
	65세 이상	2.68	15.41	13.01	2.88	1.53	47.83	16.65	100.00
	전체	42.82	19.97	11.02	0.86	3.63	16.38	5.33	100.00

자료: 한국복지패널 5차년도 원자료

5. 일의 불규칙성⁴¹⁾

본 절에서는 일의 불규칙성을 소득분위별, 성별, 학력, 연령별 및 종사상지위 비중을 통해 살펴보고, 이를 가구주와 가구원전체로 구분지어 분석하였다. 우선, 가구주의 일의 불규칙성은 2007년 19.16%에서 2008년 15.96%로 감소하였다가 2009년 18.24%로 다시 증가하였다. 가구원 전체도 2007년 19.25%에서 2008년 15.45%로 감소하였다가 2009년 17.31%로 다시 증가하였다.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일의 불규칙성이 높았으며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일의 불규칙성이 낮게 나타났다.

〈표 7-35〉 소득분위별 일의 불규칙성

(단위: %)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가구주	2007	19.16	53.41	25.01	14.04	10.77	3.68
	2008	15.96	42.12	20.69	13.29	9.20	3.70
	2009	18.24	41.09	22.83	12.58	11.79	9.43
가구원 전체	2007	19.25	52.55	26.48	14.95	12.59	4.31
	2008	15.45	42.46	21.24	12.50	9.02	5.06
	2009	17.31	39.82	21.37	13.99	11.88	8.71

자료: 한국복지패널 3~5차년도 원자료

일의 불규칙성을 성별로 살펴보면, 우선 여성이 남성보다 일의 불규칙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성 가구주의 경우는 2009년 17.71%가 불규칙적으로 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가구주는 2009년 21.99%가 불규칙적으로 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원 전체의 경우로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일의 불규칙성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41) 한국복지패널 2005년 1차 조사 결과는 문항변경 전의 자료이기 때문에 연속성에서 파악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간주하여 본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2006년 2차 조사에서는 주당 평균근로시간 문항을 '12월 한 달 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으로 조사되어 이를 연간자료라고 볼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본 분석에서는 3차 조사 이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표 7-36〉 성별 일의 불규칙성

(단위: %)

		전체	남성	여성
가구주	2007	19.16	18.17	26.25
	2008	15.96	15.42	19.97
	2009	18.24	17.71	21.99
가구원 전체	2007	19.25	18.00	21.07
	2008	15.45	14.50	16.86
	2009	17.31	17.20	17.48

자료: 한국복지패널 3~5차년도 원자료

한편, 일의 불규칙성을 학력별로 살펴보면, 가구주가 중학교 이하 졸업자인 경우는 2007년 47.25%에서 2009년 45.08%로 감소한 반면, 그 외의 학력을 가진 가구주는 2007년보다 2009년에는 일의 불규칙성이 증가하였다. 가구주 전체를 보아도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가구원은 일의 불규칙성은 감소하고, 그 외의 학력을 가진 가구원은 일의 불규칙성이 증가하였다.

〈표 7-37〉 학력별 일의 불규칙성

(단위: %)

		전체	중졸 이하	고졸 이하	전문대졸 이하	대졸이상
가구주	2007	19.16	47.25	17.10	3.94	4.26
	2008	15.96	41.97	15.12	3.28	3.41
	2009	18.24	45.08	17.23	5.45	6.11
가구원 전체	2007	19.25	48.10	14.98	6.22	6.31
	2008	15.45	42.22	13.35	3.87	5.18
	2009	17.31	43.15	15.98	7.13	7.33

자료: 한국복지패널 3~5차년도 원자료

일의 불규칙성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일의 불규칙성이 낮은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일의 불규칙성은 높았다. 특히 65세 이상의 경우 60%를 상회하고 있어, 일의 불규칙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가구주의 연령이 15~29세인 경우는 2007년 2.54%에서 2009년 1.77%로 감소하였으며, 30~54세 가구주는 2007년 11.60%에서 2009년 12.74%로 증가, 55~64세의 가구주는 2007년 32.94%에서 2009년 29.57%로, 65세 이상은 2007년 60.13%에서 2009년 60.08%로 감소하였다.

〈표 7-38〉 연령별 일의 불규칙성

(단위: %)

		전체	15~29세	30~54세	55~64세	65세 이상
가구주	2007	19.16	2.54	11.60	32.94	60.13
	2008	15.96	5.28	9.75	26.61	60.70
	2009	18.24	1.77	12.74	29.57	60.08
가구원 전체	2007	19.25	8.91	12.38	36.72	63.67
	2008	15.45	6.99	10.32	30.92	63.85
	2009	17.31	7.57	13.12	31.40	61.97

자료: 한국복지패널 3~5차년도 원자료

종사상 지위별 일의 불규칙성을 살펴보면, 가구주는 2009년 일용직 임금근로자가 64.8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영업자가 42.32%, 무급가족 종사자가 20.10%로 나타났다. 가구원 전체의 종사상 지위별 일의 불규칙성도 가구주와 동일하게 일용직 임금근로자가 가장 높았다.

〈표 7-39〉 종사상 지위별 일의 불규칙성

(단위: %)

		전체	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업	무급가족종사
			상용	임시	일용	자활 및 공공근로			
가구주	2007	19.16	0.66	9.01	74.47	9.16	5.60	43.59	36.31
	2008	15.96	0.33	3.58	54.34	20.06	7.81	44.19	19.82
	2009	18.24	1.58	7.19	64.84	2.36	12.41	42.32	20.10
가구원 전체	2007	19.25	0.97	6.78	65.58	9.22	4.31	41.16	55.26
	2008	15.45	0.44	4.45	47.76	13.86	6.31	39.87	51.50
	2009	17.31	1.90	7.19	52.76	1.95	11.74	37.35	51.35

자료: 한국복지패널 3~5차년도 원자료

6. 유해환경 근로비율

본 절에서는 유해환경 근로 비율을 소득분위별, 성별, 학력별, 연령별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가구주의 유해환경 근로 비율은 2005년 14.16%에서 2008년 16.34%로 증가하다가 2009년 13.86%로 감소하였다. 가구원 전체도 2005년 12.18%에서 2007년 13.14%로 증가하다가 2009년 10.01%로 감소하였다. 분위별로 가구주의 유해환경 근로비율을 살펴보면, 2005년도에는 소득 3분위에 있는 가구

주가 유해환경에서 근로한 비율이 18.98%로 다른 분위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소득 2분위에서 17.71%, 소득 1분위에서 15.19%를 보였다. 반면, 2009년에는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유해환경에서 근로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유해환경에서 근로하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 가구원 전체도 가구주와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표 7-40〉 소득분위별 유해환경 근로 비율

		(단위: %)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가구주	2005	14.16	15.19	17.71	18.98	12.35	8.08
	2006	15.25	18.32	21.72	16.02	13.13	8.24
	2007	17.37	18.85	26.44	17.94	16.40	8.25
	2008	16.34	19.63	21.89	18.31	15.59	7.42
	2009	13.86	17.71	16.34	16.15	13.68	6.30
가구원 전체	2005	12.18	14.65	15.01	15.39	11.12	7.42
	2006	12.48	15.84	16.92	13.01	11.13	7.28
	2007	13.14	15.73	20.20	13.44	12.19	6.28
	2008	12.08	16.11	17.11	12.78	10.14	6.47
	2009	10.01	14.22	12.15	11.63	8.94	4.93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유해환경 근로비율을 성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유해환경에서 근로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표 7-41〉 성별 유해환경 근로 비율

		(단위: %)		
		전체	남성	여성
가구주	2005	14.16	14.95	8.44
	2006	15.25	16.39	8.21
	2007	17.37	18.71	8.93
	2008	16.34	17.75	7.27
	2009	13.86	15.22	5.11
가구원 전체	2005	12.18	14.67	7.61
	2006	12.48	16.19	7.41
	2007	13.14	17.76	6.86
	2008	12.08	16.40	6.18
	2009	10.01	14.17	4.38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연도별로는 남성 가구주는 2005년 14.95%가 유해환경에서 근로하였으며, 2009년에는 15.22%로 그 비율이 높아졌다. 반면, 여성 가구주는 2005년 8.44%에서 2009년 5.11%로 감소하였다. 가구원 전체로는 남성은 2009년 유해환경 근로 비율이 14.17%, 여성은 4.38%로 큰 차이를 보였다(표 7-41 참조).

학력별 유해환경 근로 비율은 전문대학 졸업한 가구주와 대학 이상 졸업한 가구주는 2005년에 비해 2009년에 감소한 반면, 중학교 이하 졸업자와 고등학교 이하 졸업자는 2005년에 비해 2009년에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2009년 기준 중학교 이하 졸업한 가구주가 20.8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고등학교 이하 졸업한 가구주가 18.22%, 전문대학 졸업한 가주가 9.33%, 대학교 이상 졸업한 가구주가 5.22%로 학력이 높을수록 유해환경에서 근무를 하는 비율이 낮았다. 가구원 전체의 유해환경 근로 비율을 학력별로 살펴보면, 학력이 낮을수록 유해환경에서 근로하는 비율이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유해환경에서 근로하는 비율이 낮았다.

〈표 7-42〉 학력별 유해환경 근로 비율

(단위: %)

		전체	중졸 이하	고졸 이하	전문대졸 이하	대졸이상
가구주	2005	14.16	20.28	16.93	12.81	6.81
	2006	15.25	20.13	20.64	9.52	5.99
	2007	17.37	23.88	22.44	11.18	7.09
	2008	16.34	24.21	21.05	14.54	5.31
	2009	13.86	20.87	18.22	9.33	5.22
가구원 전체	2005	12.18	18.64	14.23	9.81	5.98
	2006	12.48	17.32	16.58	7.70	4.99
	2007	13.14	19.12	17.01	7.69	5.54
	2008	12.08	19.20	16.17	9.32	3.79
	2009	10.01	16.45	13.76	5.90	3.85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연령별 유해환경 근로 비율을 살펴보면, 30세에서 64세 이하인 가구주 및 가구원이 유해환경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65세 이상 초고령층, 15~29세인 청년층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가구주의 연령이 15~29세인 청년층은 2008년 10.54%에서 2009년 7.22%로 낮아졌으며, 30~54세인 중장년층은 2005년 15.26%에서 2009년 14.84%로 감소하였다. 55~64세인 고령층에서는 2005년 14.38%에서 2007년 21.33%까지 유해환경 근로 비율이 증가하였다가 2009년에는 14.51%까지 감소하였다. 65세 이상 초고령층에서는 2005년 6.85%에서 2009년 10.18%로 증가하였다. 가구원 전체도 가구주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표 7-43〉 연령별 유해환경 근로 비율

(단위: %)

		전체	15~29세	30~54세	55~64세	65세 이상
가구주	2005	14.16	10.54	15.26	14.38	6.85
	2006	15.25	11.13	16.01	17.71	9.62
	2007	17.37	8.87	17.73	21.33	14.63
	2008	16.34	9.78	17.08	19.42	10.87
	2009	13.86	7.22	14.84	14.51	10.18
가구원 전체	2005	12.18	8.75	13.10	13.31	8.72
	2006	12.48	7.59	13.61	15.15	10.13
	2007	13.14	6.16	14.14	17.64	13.15
	2008	12.08	6.61	13.44	16.07	10.36
	2009	10.01	4.58	11.40	12.36	9.67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제3절 소결 및 정책적 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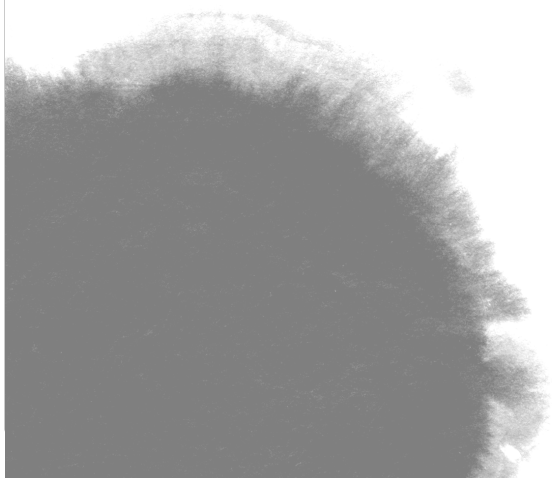
본 장을 통해 거시적인 노동 경제지표와 가구 및 개인의 고용지표, 노동 및 근로 생활의 질에 대한 지표를 살펴보았다. 먼저,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으며,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남성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게 나타났다. 실업률의 경우 2005년 이래로 점차 감소하였으나 청년층의 실업률은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청년층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저소득층과 여성,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더 나은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와 훈련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가구내 가구원들의 경제활동 참여 상태정보를 나타내는 가구 취업지수는 2005년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가구 취업지수도 높았다. 또한 연간 취업경험률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소득분위와 성별, 학력, 연령과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남성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연간 취업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취업자의 종사상지위 비중을 살펴보면, 상용직 임금근로자는 2005년 이래로 점차 감소하는 반면, 임시직 임금근로자는 점차 증가하였다. 그 밖의 일용직 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업 등은 2005년부터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취업자의 종사상지위 비중을 소득분위별로 분석해본 결과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임시직 임금근로자, 일용직 임금근로자,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반면,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일용직 및 임시직 임금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하며, 더 나아가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막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들 중에서도 특히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08

복지수급



제8장 복지수급

본 장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5차 원자료를 활용하여 복지수급지표를 산출하고자 한다. 크게 공공부조제도 수급률, 공적연금제도 수급률, 주거 및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구체적으로는 공공부조제도 수급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욕구 대비 수급률과 보장 수준을 살펴보고자 하며, 공적연금제도 수급은 공적연금과 국민연금의 수급률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주거지원 및 사회복지서비스 수급은 주거지원 프로그램, 노인 대상 복지서비스, 아동 대상 복지서비스, 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노인, 아동,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을 분석하고자 한다.

〈표 8-1〉 복지수급 지표의 구성

분류	지표 구성
공공부조제도 수급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욕구 대비 수급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 수준
공적연금제도 수급률	공적연금 수급률 국민연금 수급률
주거지원 및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	주거지원 프로그램 이용경험률 노인 대상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 아동 대상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 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

제1절 복지수급 지표 산출 방식

복지수급 지표는 공공부조제도, 공적연금제도, 주거지원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도를 대상으로 산출된다. 각 제도별 수급지표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부조제도 수급 지표 산출방식

공공부조제도 수급 지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심으로 수요에 대한 제도의 양적 및 질적인 수급률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양적인 수급률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욕구 대비 수급률로 분석하고 질적인 수급률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생활비 및 소득 대비 보장수준을 분석하고자 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욕구 대비 수급률

욕구 대비 수급률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이 되는 빈곤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가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빈곤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를 수급하기 전 소득⁴²⁾이 빈곤선 이하인 가구로 정의한다. 여기서 빈곤선은 절대빈곤선인 정부가 발표한 해당년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적용하였다.

$$\text{욕구 대비 수급률} = \frac{\text{기초보장수급가구}}{\text{소득빈곤가구}} \times 100(\%)$$

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수준 지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가 빈곤가구의 최저생활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수급가구에 지

42) 소득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를 수급하기 전 소득으로 정의하는 이유는 욕구를 가진 가구라는 개념에서 소득을 산출할 때 공적이전을 받기 전의 소득을 사용한다.

원되는 급여의 수준이 해당 가구의 욕구를 어느 정도 보장하는지에 대한 비율을 의미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가 실제 지출한 총 생활비 중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에 대한 분석과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포함한 경상소득에서의 비중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수준 지표는 급여의 최저생활보장수준을 살펴보는 지표이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생활비 대비 보장수준은 해당 가구의 필요 최소 소비액 중 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가 어느 정도를 보장하는가를 나타내주는 지표로 해당가구가 빈곤가구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필요 최소 소비액을 실제 지출한 총 생활비라고 전제한다.

$$\text{생활비 대비 보장수준} = \frac{\text{현금급여액}}{\text{총 생활비}} \times 100 (\%)$$

소득 대비 보장수준은 해당 가구의 경제적 능력 중 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가 어느 정도를 보장하는가를 나타내주는 지표이다. 따라서 해당 가구의 정상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경상소득을 사용한다.

$$\text{소득 대비 보장수준} = \frac{\text{현금급여액}}{\text{경상소득}} \times 100 (\%)$$

2. 공적연금제도 수급 지표 산출방식

공적연금제도 수급 지표는 공적연금 수급률과 국민연금 수급률 두 가지를 분석한다. 공적연금 수급률은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포괄하여 분석한 지표이며, 이 중 국민연금 수급률을 별도로 분석한다. 수급률은 현재 시점에서 제도의 수요가 있는 대상 중 어느 정도 비율이 혜택을 받는지를 의미한다.

가. 공적연금 수급률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에 특수직역연금을 포함한 전체 공적연금의 수급률을 산출한다. 공적연금 수급률은 노령연금의 수급 대상이 되는 만 60세 이상 노인 중 실제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공적연금 급여는 국민연금의 경우 노령연금과 반환일시금,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인 대상의 연금 고유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는 급여 즉, 유족연금과 장애연금 등의 수급자는 제외한다.

$$\text{공적연금수급률} = \frac{\text{노령연금수급자}}{\text{만 60세 이상 노인}} \times 100(\%)$$

나. 국민연금 수급률

국민연금 수급률은 노령연금의 수급 대상이 되는 만 60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만 60세 이상 노인 중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은 제외되며, 국민연금 급여 중 노령연금과 반환일시금 수급자의 비율을 산출한다.

$$\text{국민연금수급률} = \frac{\text{노령연금수급자}}{\text{만 60세 이상 노인}} \times 100(\%)$$

3. 주거지원 및 사회복지서비스 수급 지표 산출방식

주거지원 및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 지표를 산출한다. 한국복지패널 설문지의 주거 지원 및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수급여부는 해당 년도 1년간 해당 프로그램 이용 경험을 묻고 있다. 그러므로 특정시점에서 해당 프로그램의 수급률이 아닌 연간 이용경험률을 산출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중 영구임대주택,

공공(국민)임대주택 이용경험을 분석하고, 사회복지서비스는 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을 범주별 프로그램들의 종합적인 이용경험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주거지원 프로그램 이용경험률

주거지원 프로그램 이용경험률은 전체 가구 중 해당년도 1년간 영구임대주택과 공공(국민)임대 주택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가구 비율을 산출하는 지표이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영구임대주택 이용경험률과 공공(국민)임대 주택 이용경험률을 각각 분석하고자 한다.

$$\text{주거지원프로그램이용경험률} = \frac{\text{이용경험이있는가구}}{\text{전체가구}} \times 100(\%)$$

나. 노인 대상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

노인 대상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은 전체 노인 가구 중 공공부문의 재원이 들어간 노인 대상 프로그램 이용경험이 있는 가구 비율을 산출하는 지표이다. 우선 노인 가구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를 의미하며, 노인 대상 복지서비스는 공공부문의 재원이 들어간 기초노령연금(경로연금), 의료비 지원, 노인 무료급식, 물품지원, 가정봉사서비스, 식사배달서비스, 방문 가정 간호 혹은 간병 서비스, 이동편의서비스, 주간보호 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 노인일자리사업, 사회교육 서비스의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본 지표에서는 공공부문의 서비스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민간부문 재원만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단, 민간부문의 전달체계를 활용하더라도 공공부문의 지원이 들어간 경우는 분석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노인 가구는 노인 대상 복지서비스는 이용경험은 해당년도 1년간 상기 프로그램 중 하나라도 이용한 경우 경험이 있는 것으로 간주했다.

$$\text{노인가구복지서비스이용경험률} = \frac{\text{이용경험이있는노인가구}}{\text{전체노인가구}} \times 100(\%)$$

다. 아동 대상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

아동 대상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은 보육지원서비스 이용경험률과 학비지원서비스 이용경험률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보육지원서비스 이용경험률은 만 5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중 보육지원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가구의 비율을 의미하며, 보육지원 서비스는 국공립보육시설 이용, 보육료 감면 및 유치원비 보조를 의미한다. 이용경험률은 해당 년도 1년간 아동 대상 복지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text{보육지원서비스이용경험률} = \frac{\text{이용경험이있는만5세미만아동가구}}{\text{만5세미만아동가구}} \times 100(\%)$$

한편, 학비지원서비스 이용경험률은 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 중 학비지원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가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학비지원서비스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가구 대상 학비지원과 모부자가정 대상 학비지원 등 공공재원으로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비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용경험은 해당 년도 1년간 이용한 경험 여부를 의미한다.

$$\text{학비지원서비스이용경험률} = \frac{\text{이용경험이있는학생가구}}{\text{전체학생가구}} \times 100(\%)$$

라. 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

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은 전체 장애인 가구 중 공공부문의 재원이

들어간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이용경험이 있는 가구 비율을 산출하는 지표이다. 장애인 가구는 장애인이 있는 가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비등록장애인을 포함한다. 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는 공공부문의 재원이 들어간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서비스,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용품 지원, 의료 재활서비스, 가정봉사 서비스, 방문 가정간호 혹은 간병서비스, 이동편의 서비스, 주택관련 서비스, 가족상담 및 심리재활 서비스, 사회적응 및 취업관련 서비스, 장애아동 보육비 및 장애자녀 교육비 지원, 장애자녀 관련 프로그램(학습지원 서비스 등), 자동차 관련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이용경험은 해당년도 1년간 상기 프로그램 중 하나라도 이용한 경우 경험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text{장애인가구복지서비스이용경험률} = \frac{\text{이용경험이있는장애인가구}}{\text{전체장애인가구}} \times 100(\%)$$

마.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은 전체 가구 중 취약 가구원 대상 복지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가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상기 분석한 노인·아동·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중 하나라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의 비율을 산출하며, 해당 년도 1년간 취약 가구원 대상 서비스 이용경험이 있으면 경험이 있음으로 간주한다.

$$\text{취약계층복지서비스이용경험률} = \frac{\text{이용경험이있는가구}}{\text{전체가구}} \times 100(\%)$$

제2절 복지수급 지표 산출 결과

본 절에서는 공공부조제도 수급률 및 보장수준, 공적연금과 국민연금의 수급률, 주거지원 및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을 지역별, 가구규모별, 가구형태별, 소득분위별 등에 따라 지표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공공부조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지표는 빈곤 및 공공부조 제도 분석에서 의미있는 범주로 간주되는 지역, 가구규모, 가구형태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욕구 대비 수급률

소득빈곤가구 중 기초보장수급가구의 수급률을 나타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욕구 대비 수급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2005년에는 29.31%이었던 수급률이 2009년에는 46.79%로 수급률이 증가하였다. 지역적으로는 대도시가 수급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중소도시, 농어촌 순이다. 연도별로는 대도시는 2005년에 비해 2009년에는 19.91%p 증가하여 52.96%를, 중소도시는 17.14%p 증가하여 44.68%를, 농어촌은 12.08%p 증가하여 35.52%를 나타냈다.

〈표 8-2〉 지역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욕구 대비 수급률

(단위: %)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05	29.31	33.05	27.54	23.44
2006	39.03	44.39	36.73	30.39
2007	41.48	49.89	37.76	30.18
2008	44.43	49.64	43.16	33.30
2009	46.79	52.96	44.68	35.52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욕구 대비 수급률을 가구규모별로 살펴보면, 1인과 2인 가구는 욕구대비 수급률이 2005년 이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3인 가구 이상부터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등 일관된 양상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인 가구는 2005년에 36.95%에서 2009년에는 53.39%로 증가, 2인 가구는 2005년 23.20%에서 2009년 36.11%로 증가하였다.

〈표 8-3〉 가구규모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욕구 대비 수급률

(단위: %)

	전체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2005	29.31	36.95	23.20	29.44	29.10	20.95	26.16
2006	39.03	46.03	32.33	41.17	35.49	37.70	33.83
2007	41.48	46.46	32.30	48.14	40.05	62.96	34.48
2008	44.43	50.64	35.36	47.82	38.68	47.92	43.06
2009	46.79	53.39	36.11	52.40	37.75	60.87	34.40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가구형태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욕구 대비 수급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노인 가구는 2005년 26.09%에서 2009년 39.01%로 12.92%p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수급률이 40%를 하회하고 있었다. 반면, 여성가구는 2009년 52.70%로 절반정도가 수급을 받고 있었으며, 모부자 가구는 2009년 85.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8-4〉 가구형태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욕구 대비 수급률

(단위: %)

	전체	노인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모부자 가구
2005	29.31	26.09	39.27	60.12
2006	39.03	34.97	51.02	84.33
2007	41.48	36.01	50.90	84.48
2008	44.43	37.62	50.57	67.73
2009	46.79	39.01	52.70	85.47

주: 1) 노인 가구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를 의미함.

2) 모부자가구는 어머니 혹은 아버지와 만 17세 이하의 미혼자녀로만 구성된 가구를 의미함.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수급가구에게 지원되는 급여 수준이 해당 가구의 욕구를 어느 정도 보장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생활비 대비 보장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⁴³⁾. 우선, 전체적으로는 2005년 47.47%에서 2008년 39.72%까지 감소하다가 2009년 41.14%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2005년보다 보장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가 가장 생활비 대비 보장수준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농어촌, 중소도시 순이다. 연도별로는 대도시는 2005년 48.70%에서 2009년 42.84%로, 중소도시는 2005년 46.45%에서 2009년 39.60%로, 농어촌은 2005년 45.58%에서 2009년 39.69%로 모두 감소하였다.

〈표 8-5〉 지역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비 대비 보장수준

(단위: %)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05	47.47	48.70	46.45	45.58
2006	49.63	49.05	50.30	49.92
2007	42.15	42.49	41.16	44.08
2008	39.72	42.96	36.15	40.02
2009	41.14	42.84	39.60	39.69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다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비 대비 보장수준을 가구규모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가구 규모가 작을수록 생활비 대비 보장수준이 높고, 가구 규모가 클수록 생활비 대비 보장수준이 낮았다. 1인 가구는 2009년 기준 53.63%, 2인 가구는 42.68%인 것에 비해 5인 가구는 23.52%, 6인 이상은 21.87%만이 생활비 대비 보장을 받고 있었다. 연도별로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생활비 대비 보장수준이 감소하다가 2009년에는 다소 증가한 추세로 나타났다.

4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의 생활비 대비 보장수준을 해석할 때, 현금급여의 보장수준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현물로 제공되는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이 급여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복지패널 데이터의 총생활비 변수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물급여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총생활비 대비 보장수준이 과소추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표 8-6〉 가구규모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비 대비 보장수준

(단위: %)

	전체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2005	47.47	66.02	47.35	30.53	34.46	22.51	21.06
2006	49.63	70.89	48.80	33.91	32.06	21.53	17.22
2007	42.15	57.78	43.36	30.70	23.23	24.21	15.66
2008	39.72	51.46	40.64	27.77	21.21	23.42	26.23
2009	41.14	53.63	42.68	30.98	24.80	23.52	21.87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비 대비 보장수준을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노인 가구는 2005년이래도 생활비 대비 보장수준이 감소하고 있다. 2005년에는 55.01%로 절반이상이 생활비 대비 보장을 받고 있었지만, 2009년에는 42.18%로 보장수준 비율이 낮아졌다.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도 노인 가구와 비슷하게 2005년 50.90%로 절반 정도가 생활비 대비 보장을 받고 있었지만, 2009년 43.55%만이 보장수준의 비율로 나타났다. 반면에 모부자 가구는 2005년에도 34.25%에서 2006년 36.95%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2009년 33.85%로 다시 감소하였다.

〈표 8-7〉 가구형태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비 대비 보장수준

(단위: %)

	전체	노인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모부자 가구
2005	47.47	55.01	50.90	34.25
2006	49.63	58.30	53.76	36.95
2007	42.15	49.46	44.92	33.58
2008	39.72	43.18	41.04	35.53
2009	41.14	42.18	43.55	33.85

주: 1) 노인 가구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를 의미함.

2) 모부자가구는 어머니 혹은 아버지와 만 17세 이하의 미혼자녀로만 구성된 가구를 의미함.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다음으로는 수급 가구의 경제적 능력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금급여가 어느 정도 보장하는가를 나타내기 위해 소득 대비 보장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체적으로는 2005년 42.05%에서 2006년에는 43.99%로 다소 증가하였다가 2008년 38.89%로 감소, 2009년에는 40.27%로 다시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2005년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즉, 2009년 수급가구의 경상소득 중 현금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가장 보장수준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소도시, 농어촌 순이다. 구체적으로는 대都市는 2005년 43.09%에서 2009년 42.06%로, 중소도시는 2005년 40.79%에서 2009년 39.01%로, 농어촌은 2005년 41.73%에서 2009년 37.57%로 감소하였다.

〈표 8-8〉 지역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 대비 보장수준

(단위: %)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05	42.05	43.09	40.79	41.73
2006	43.99	44.53	43.53	43.22
2007	42.28	43.54	40.57	42.82
2008	38.89	42.00	36.01	37.19
2009	40.27	42.06	39.01	37.57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가구규모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 대비 보장수준을 살펴보면, 가구 규모가 작을수록 소득 대비 보장수준이 높고 가구 규모가 클수록 소득 대비 보장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즉, 1인 가구는 2009년 52.56%로 절반정도가 소득 대비 보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6인 이상 가구는 21.45%만이 소득 대비 보장을 받고 있었다.

〈표 8-9〉 가구규모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 대비 보장수준

(단위: %)

	전체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2005	42.05	55.17	44.22	28.08	32.74	22.37	21.16
2006	43.99	58.39	46.27	32.85	29.81	21.03	16.65
2007	42.28	56.09	42.97	33.60	24.09	27.53	16.50
2008	38.89	49.63	39.54	27.85	22.44	23.98	27.74
2009	40.27	52.56	41.10	30.63	25.17	22.70	21.45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 대비 보장수준을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노인 가구는 2005년 46.97%에서 2006년 49.54%

로 소득 대비 보장수준이 증가했다가 2009년까지 40.21%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또한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우도 2005년 44.02%에서 2006년 47.79%로 증가, 2009년까지 42.23%로 다시 감소하였다. 반면에 모부자 가구는 2005년 31.06%에서 2006년과 2007년에는 36.50%로 증가하였다가 2009년 32.27%로 감소하였으나 2005년에 비해 다소 소득 대비 보장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8-10〉 가구형태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 대비 보장수준

(단위: %)

	전체	노인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모부자 가구
2005	42.05	46.97	44.02	31.06
2006	43.99	49.54	47.79	36.50
2007	42.28	48.03	44.80	36.50
2008	38.89	40.56	40.18	35.74
2009	40.27	40.21	42.23	32.27

주: 1) 노인 가구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를 의미함.

2) 모부자가구는 어머니 혹은 아버지와 만 17세 이하의 미혼자녀로만 구성된 가구를 의미함.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2. 공적연금제도

본 절에서는 특수직연금과 국민연금을 포괄하는 공적연금 수급률과 공적연금 중 국민연금 수급률을 별도로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소득 분위별로도 살펴본다.

가. 공적연금 수급률

만 60세 이상 노인중 노령연금 수급비율을 살펴본 공적연금 수급률은 전체적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수급률이 증가하였다. 즉, 2005년에는 20.18%에서 2009년에는 29.43%로 약 30%가 공적연금을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위별로는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공적연금 수급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소득 1분 위에서는 2009년 20.72%, 소득 2분위에서는 30.86%이었으나, 소득 4분위 이상 부터는 약 45%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8-11〉 분위별 공적연금 수급률

(단위: %)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05	20.18	14.02	20.50	30.00	31.60	25.24
2006	23.59	15.47	24.44	34.04	35.41	36.64
2007	25.70	16.87	27.80	35.11	36.95	40.99
2008	27.63	18.97	29.64	37.56	42.58	39.52
2009	29.43	20.72	30.86	36.57	45.35	45.88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나. 국민연금 수급률

만 60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2005년 15.94%에서 2009년 24.09%로 증가하였다. 분위별로는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국민연금 수급률이 낮고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국민연금 수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소득 1분위에서는 2009년 20.13%만 수급받고 있었으나, 소득 5분위에서는 30.94%가 수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12〉 분위별 국민연금 수급률

(단위: %)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05	15.94	13.77	16.99	19.91	19.72	14.96
2006	18.79	15.04	21.22	22.68	25.23	21.04
2007	20.40	16.39	24.14	24.92	19.75	27.21
2008	22.38	18.49	25.82	26.50	28.63	23.52
2009	24.09	20.13	26.68	25.25	30.94	30.94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3. 주거지원 및 사회복지서비스

본 절에서는 주거지원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경험률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주거지원 프로그램 이용경험률은 저소득층 대상 프로그램의 이용경험을 나타내며, 지역, 가구규모별, 가구형태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복지서비스는 노인, 아동,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서비스와 각 취약계층 대상별 프로그램을 포괄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을 분석하고자 한다.

가. 주거지원 프로그램 이용경험률

주거지원 프로그램 중 영구임대주택 이용경험률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2005년 2.20%에서 2006년 1.45%로 감소하였다가 2009년까지 2.53%로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에 비해 2009년에는 영구임대주택 이용경험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의 이용경험률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소도시, 농어촌 순이다. 구체적으로는 대都市는 2005년 3.15%에서 2009년 3.65%로, 중소도시는 2005년 1.55%에서 2009년 1.68%로 나타났다. 한편 농어촌은 2005년과 2006년에는 영구임대주택 이용경험률이 전혀 없었지만, 2007년에 0.09%, 2009년 1.02%로 나타났다.

〈표 8-13〉 지역별 영구임대주택 이용경험률

(단위: %)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05	2.20	3.15	1.55	0.00
2006	1.45	2.89	0.19	0.00
2007	1.80	3.20	0.69	0.09
2008	2.39	3.20	2.02	0.00
2009	2.53	3.65	1.68	1.02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가구규모별 영구임대주택 이용경험률은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가구 규모가 작을수록 영구임대주택 이용경험률이 높고, 가구 규모가 클수록 영구임대주택 이용경험률이 낮았다. 구체적으로는 1인 가구는 2009년 4.71%가 이용경험이 있었지만 6인 이상 가구에서는 0.71%만이 영구임대주택 이용경험을 하였다.

〈표 8-14〉 가구규모별 영구임대주택 이용경험률

(단위: %)

	전체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2005	2.20	2.83	2.67	2.50	1.62	1.08	0.00
2006	1.45	2.68	2.05	1.06	0.81	0.57	1.56
2007	1.80	3.90	2.05	1.67	0.84	0.90	0.00
2008	2.39	4.73	2.52	2.00	1.23	1.51	0.00
2009	2.53	4.71	2.60	1.94	1.41	2.62	0.71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영구임대주택 이용경험률을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노인 가구는 2005년 2.53%에서 2007년에는 1.87%로 다소 감소하였다가 2009년 2.66%로 다시 증가하였으나, 2005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여성가구주 가구는 2005년 4.31%에서 2006년 3.69%로 다소 감소하였다가 2009년 5.09%로 다시 증가하였다. 한편, 모부자 가구는 2005년 6.05%에서 2007년 4.11%로 감소, 2009년까지 6.89%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15〉 가구형태별 영구임대주택 이용경험률

(단위: %)

	전체	노인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모부자 가구
2005	2.20	2.53	4.31	6.05
2006	1.45	1.89	3.69	4.59
2007	1.80	1.87	4.12	4.11
2008	2.39	2.61	4.53	8.48
2009	2.53	2.66	5.09	6.89

주: 1) 노인 가구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를 의미함.

2) 모부자가구는 어머니 혹은 아버지와 만 17세 이하의 미혼자녀로만 구성된 가구를 의미함.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공공(국민)임대주택 이용경험률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소도시가 가장 이용경험률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농어촌, 대도시 순이다. 구체적으로는 대도시는 2005년 0.66%에서 2009년 1.02%로, 중소도시는 2005년 1.61%에서 2009년 1.78%로, 농어촌은 2006년 0.35%에서 2009년 1.09%로 나타났다.

〈표 8-16〉 지역별 공공(국민)임대주택 이용경험률

(단위: %)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05	1.03	0.66	1.61	0.00
2006	1.25	1.83	0.81	0.35
2007	1.39	0.75	2.16	0.83
2008	1.62	0.86	2.38	1.80
2009	1.36	1.02	1.78	1.09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가구규모별 공공(국민)임대주택 이용경험률을 살펴보면 2009년 기준 3인 가구는 1.92%로 공공(국민)임대주택 이용경험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5인 가구가 1.58%, 2인 가구가 1.3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장 이용경험률이 낮은 가구규모는 1인 가구로 0.92% 수준이었다.

〈표 8-17〉 가구규모별 공공(국민)임대주택 이용경험률

(단위: %)

	전체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2005	1.03	0.53	1.32	1.13	0.89	1.69	0.00
2006	1.25	0.78	1.69	1.42	1.01	1.54	0.56
2007	1.39	0.76	1.53	1.72	1.13	2.53	0.52
2008	1.62	0.84	1.59	1.92	1.83	2.54	0.70
2009	1.36	0.92	1.35	1.92	1.22	1.58	1.34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공공(국민)임대주택 이용경험률을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노인 가구는 2005년 1.07%에서 2006년 0.88%로 다소 감소하였다가 2009년까지 1.15%로 증가하였다. 여성가구주 가구는 2005년 0.77%에서 2009년 2.22%로 1.45%p 증가하였다. 한편, 모부자 가구는 2005년 3.39%에서 2009년 9.78%로 증가하여 노인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보다 공공(국민)임대주택 이용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8-18〉 가구형태별 공공(국민)임대주택 이용경험률

(단위: %)

	전체	노인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모부자 가구
2005	1.03	1.07	0.77	3.39
2006	1.25	0.88	1.83	6.23
2007	1.39	0.98	1.74	7.65
2008	1.62	1.34	1.58	6.94
2009	1.36	1.15	2.22	9.78

주: 1) 노인 가구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를 의미함.

2) 모부자가구는 어머니 혹은 아버지와 만 17세 이하의 미혼자녀로만 구성된 가구를 의미함.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나. 노인 대상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중에서 노인 대상 복지서비스의 이용경험률을 살펴본 결과, 2005년 19.12%에서 2009년 80.97%로 이용경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이 2007년에서 2008년 사이에 크게 증가하게 된 것은 기초노령연금 시행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2009년에는 그 혜택이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살펴볼 수 있다. 노인 대상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1개 이용한 이용률은 2009년 39.98%, 2개 프로그램 이용률은 25.93%로 나타났다.

〈표 8-19〉 노인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

(단위: %)

	이용경험 있음	이용 서비스수		
		1개	2개	3개 이상
2005	19.12	8.29	4.07	6.76
2006	21.90	9.76	3.12	9.02
2007	24.61	11.72	3.75	9.14
2008	66.42	43.90	11.42	11.10
2009	80.97	39.98	25.93	15.06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다. 아동 대상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

만 5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서 2005년 26.52%가 보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9년에는 52.27%가 이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아동 대상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만 5세 미만 아동이 1명이 있는 가구 중에서 50.59%가 보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2명 이상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는 60.54%가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도에서 2009년도에 보육지원 서비스 이용경험률이 급격하게 증가된 이유는 2009년부터는 양육수당을 포함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 8-20〉 만 5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보육지원 서비스 이용경험률

(단위: %)

	이용경험 있음	만 5세 미만 아동 수	
		1명	2명 이상
2005	26.52	25.35	31.53
2006	31.16	28.90	40.40
2007	37.37	34.79	46.86
2008	39.65	36.68	52.13
2009	52.27	50.59	60.54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중고생이 있는 가구의 1년간 학비지원 서비스 이용경험률은 2005년 12.53%에서 2009년 23.82%로 서비스 이용경험률이 증가하였다. 중고등학생이 1명이 있는 가구에서는 2009년 23.39%가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명 이상의 중고생이 있는 가구에서의 학비지원 서비스 이용경험률은 24.72%로 분석되었다.

〈표 8-21〉 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의 학비지원 서비스 이용경험률

(단위: %)

	이용경험 있음	중고등학생 수	
		1명	2명 이상
2005	12.53	10.48	15.83
2006	18.39	16.81	21.21
2007	18.79	15.64	24.73
2008	19.78	16.22	26.13
2009	23.82	23.39	24.72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라. 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은 2005년 28.05%에서 2009년 41.84%로 증가하였다. 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 중 1개의 프로그램만 이용한 사람은 2009년 34.78%, 2개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람은 4.43%, 3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람은 2.63%로 나타났다.

〈표 8-22〉 장애인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

(단위: %)

	이용경험 있음	이용 서비스 수		
		1개	2개	3개 이상
2005	28.05	25.38	2.45	0.22
2006	33.32	29.36	3.76	0.19
2007	31.40	26.90	3.82	0.69
2008	37.69	31.79	4.09	1.81
2009	41.84	34.78	4.43	2.63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마.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

다음으로는 노인 가구, 아동 가구, 장애인 가구를 모두 포괄하는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취약계층의 전체적으로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은 2005년 15.50%에서 2009년 37.03%로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노인복지서비스는 2005년 5.07%에서 2009년 22.49%로 증가하였으며, 아동복지서비스는 2005년 18.27%에서 2009년 30.95%로, 장애인복지서비스는 2005년 3.80%에서 2009년 6.89%로 증가하였다.

〈표 8-23〉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

(단위: %)

	이용경험 있음	이용 서비스		
		노인복지서비스	아동복지서비스	장애인복지서비스
2005	15.50	5.07	18.27	3.80
2006	19.82	6.31	22.79	5.12
2007	21.56	7.55	25.58	5.06
2008	31.88	18.95	26.18	6.08
2009	37.03	22.49	30.95	6.89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제3절 소결 및 정책적 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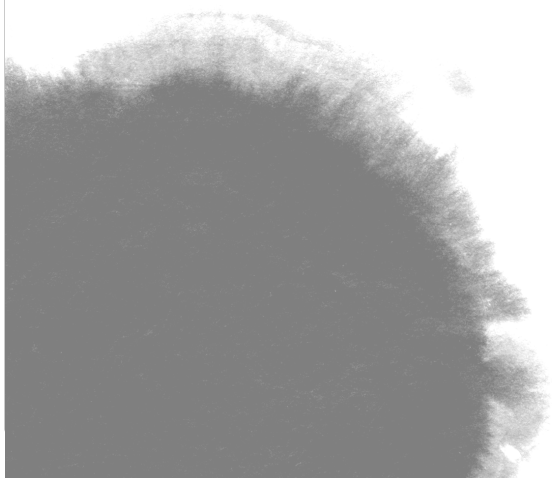
본 장을 통해 공공부조제도 수급률, 공적연금제도 수급률, 주거지원 및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경험률에 대한 지표를 살펴보았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욕구 대비 수급률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에는 2005년에 비해 약 1.6배나 증가하였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제도를 생활비 및 소득 대비 보장수준을 살펴보면 보장 수준이 점차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농어촌 지역이 보장수준이 낮았다. 가구 형태별로는 노인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모두 40% 내외의 보장수준을 보였으며, 모부자가구는 보장수준이 특히 낮게 나타났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해결방안 모색뿐만 아니라 국민기초 보장 수준의 다양화를 위한 급여체계를 개편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주력해야 함을 시사한다.

공적연금 수급률과 국민연금 수급률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수급률이 낮았으며,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수급률이 높게 나타났다. 즉, 저소득층의 노후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및 기초노령연금 가입의 확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노인 가구, 아동 가구, 장애인 가구를 모두 포괄하는 취약계층의 복지 서비스 이용률을 살펴보면, 노인복지서비스와 아동복지서비스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이용률이 점차 증가한 반면,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이용률로 분석되어 장애인 가구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의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노인 및 아동가구를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09

빈곤의 동태적 변화



제9장 빈곤의 동태적 변화

제1절 동태적 분석의 의의와 데이터 구성

1. 동태적 분석의 의의

<한국복지패널> 자료의 치수가 늘어남에 본격적으로 종단적(longitudinal) 분석이 가능해졌다. 물론 한국복지패널 자료가 동일한 가구나 개인의 생활실태를 매년 조사하는 패널조사인 만큼 종단분석은 2차년도 자료부터 가능했었다. 그러나 지나치게 짧은 시계열에 한정된 분석은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아, 이제까지는 종단적 분석이 잘 시도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5차년도 자료의 공개와 더불어 종단적 분석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 장에서는 그러한 이용한 종단적 분석의 한 예로써, 우리나라 가구의 빈곤지위가 동태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빈곤의 동태적 지위란 달리 말해 빈곤의 이력, 즉 빈곤의 경험여부와 경험 횟수, 지속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어떤 가구가 주로 빈곤을 경험하며,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등 빈곤의 지위 변화와 관련된 정보는 빈곤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각 가구가 갖는 빈곤의 경험과 지속 측면에서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빈곤대책을 시행할 수 있다면 빈곤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빈곤의 지위와 관련된 다양한 특성 가운데에서도 주로 빈곤 경험의 횟수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고, 빈곤경험 횟수의 차이에 따른 집단별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데이터의 구축 및 분석방법

이하의 분석에서는 빈곤의 지위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복지패널 1~5차 자료를 연결하여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다. 각 연도별 데이터를 연결할 때에는 가구 결합기 변수를 이용하였고, 패널 데이터에는 1~5차 조사에서 모든 해에 걸쳐 소득과 가구 특성이 관측된 자료만을 포함시켰다. 즉 각 연도마다 발생한 분가가구, 신규 생성가구, 중도탈락가구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분석의 대상이 된 가구는 5,637가구이다.⁴⁴⁾

빈곤지위의 변화를 분석함에 있어서 분석의 단위는 가구로 한정하였다. 가구의 빈곤지위는 각 연도별 데이터에서 일차적으로 판별한 후, 이를 각 연도별로 연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빈곤지위는 2가지 소득범주에 대해 2가지 기준으로 판별하였다. 즉, 소득범주는 각연도 원자료 상의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을 이용하였고, 빈곤선은 중위소득의 50%값을 기준으로 한 상대빈곤선과 연도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를 이용한 최저생계비 기준 빈곤선(절대빈곤선으로 지칭)을 이용하였다. 한편, 복지패널의 원자료에서 중위소득 가구의 60%선을 이용하여 저소득가구와 일반 가구를 구분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기준에 따른 가구의 소득지위 변화를 분석에 추가하였다. 가구원수를 구분하지 않고 소득을 비교할 경우 가구원수의 차이를 감안하기 위하여 가구소득을 균등화하였는데, 가구소득 균등화의 방법은 가구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는 방식을 취하였다.

또한, 기초보장 수급지위의 변화 역시 빈곤의 지위 변화의 중요한 측면이므로, 기초보장 수급가구의 지위 변화도 동시에 분석하였다. 복지패널 자료에서 수급가구는 일반수급가구와 조건부수급가구, 가구원 중 일부수급가구, 특례가구 등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이 글의 분석에서는 이들 모두를 수급가구로 분류하였다.⁴⁵⁾ 각 연도별 자료를 연결한 패널 데이터를 분석할 때 가중치는 5차년도 데이터의 표본가중치를 이용하였다.

44) 참고로 각 차수별 가구의 관측치 1차(2006년조사, 2005년 소득 기준) 7,072가구, 2차 6,580가구, 3차 6,314가구, 4차 6,207가구, 5차 6,304가구이다.

45) 5차 조사의 경우 이전과 달리 일반/조건부/특례의 구분과 가구원 전부/일부 수급을 별도의 변수로 제공하고 있으나 분석의 일관성을 위해 가구원 일부 수급가구도 수급가구로 분류하였다.

빈곤의 경험과 가구의 특성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때, 가구의 특성은 어느 가구원의 어느 시점의 특성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 글에서 가구의 특성은 5차년도에 파악된 가구주의 특성을 기준으로 할 것이다.

복지패널의 각 차수별 데이터는 조사가 이루어진 이전 연도의 소득 자료를 보고하고 있다. 예컨대 1차 자료는 2006년에 조사되었으며 2005년의 소득과 2005년 말의 가구 상태를 보고한다. 따라서 이하에서 소득에 관해 시점을 언급할 경우에는 발생한 연도를(자료가 조사된 연도가 아닌) 표기할 것이다.

제2절 빈곤지위의 변화

1. 빈곤경험횟수의 분포

각 연도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패널 데이터를 생성하기 이전에 각 연도별, 기준별로 빈곤 가구의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 <표 9-1>과 같다. 저소득가구의 비율은 1차년도(2005년) 27.4%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5차년도에는 24.7%로 떨어졌다. 균등화된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빈곤가구의 비율 역시 1차년도의 20.8%에서 5차년도의 18.4%로 감소하였다. 반면 기초보장 수급가구의 비율은 1차년도의 5.9%에서 다소 상승하여 5차년도에는 7.0%를 보이고 있다.

<표 9-1> 각년도별 가구 빈곤율 변화(년도별 원자료 이용)

	1차 (2005년)	2차 (2006년)	3차 (2007년)	4차 (2008년)	5차 (2009년)
저소득	27.4	27.3	26.7	26.3	24.7
상대빈곤_경상소득	20.8	20.9	20.6	20.1	18.4
상대빈곤_가처분소득	20.3	20.2	19.9	19.6	17.6
절대빈곤_경상소득	13.0	10.7	10.1	8.2	7.0
절대빈곤_가처분소득	14.2	11.9	11.2	9.2	7.8
기초보장수급	5.9	6.9	7.3	7.4	7.0

(단위: %)

1차부터 5차까지 소득이 관측된 가구만을 대상으로 연결된 데이터에서 각 연도별 빈곤율은 다음의 <표 9-2>와 같다. 앞의 <표 9-1>과 비교할 때, 거의 모든 빈곤관련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데, <표 9-1>에서 2009년의 경상소득 기준 상대빈곤율은 18.4%로 나타났으나, 1차~5차 자료까지 모두 소득이 관측된 가구만을 대상으로 빈곤율을 추정한 결과 <표 9-2>에서와 같이 2009년의 경상소득 기준 상대빈곤율은 19.0%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의미하는 바는 5차 조사까지 이르는 동안 표본에서 탈락된 가구 가운데 고소득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것이다.

<표 9-2> 연결자료 상의 각 연도별 가구 빈곤율 변화

(단위: %)

	1차 (2005년)	2차 (2006년)	3차 (2007년)	4차 (2008년)	5차 (2009년)
저소득	27.9	26.7	25.4	25.8	25.7
상대빈곤_경상소득	21.0	19.9	19.1	19.1	19.0
상대빈곤_가처분소득	20.5	19.3	18.5	18.7	18.3
절대빈곤_경상소득	13.2	10.3	9.1	8.1	7.4
절대빈곤_가처분소득	14.4	11.6	10.1	9.1	8.2
기초보장수급	6.8	7.2	7.5	7.4	7.3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연결자료

시계열적으로 빈곤율의 저하 경향이 관측되는 점에서는 <표 9-1>과 <표 9-2>가 동일하다. 특히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절대빈곤율의 경우 감소폭이 크게 나타난다. 반면 기초보장 수급가구 비율의 변화는 크지 않은 편이다.

아래의 <표 9-3>은 각 기준별로 5년간의 빈곤 경험횟수의 분포를 보여준다. 5년간 가구 소득이 한 번도 저소득으로 분류된 적 없는, 즉 중위소득의 60%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는 가구의 비율은 56.5%이다. 반대로 나머지 약 43.5%는 한 번 이상 저소득을 경험했음을 의미한다.

경상소득 기준 상대빈곤의 경우, 5년간 한번도 빈곤을 경험한 적이 없는 가구의 비율은 64.9%이며, 나머지 35.1%의 가구는 빈곤을 경험하였다. 전체 가구의 11.3%(빈곤경험가구의 32.1%)는 1년만 빈곤을 경험하였으며 6.0%(빈곤경험가구의 17.1%)가 2년간, 그리고 4.8%(빈곤경험가구의 13.6%)가 3년간 빈곤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전체 가구의 약 8.2%(빈곤경험가구의 약 23.4%)가 5년동안 계속 빈곤상태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는 빈곤 경험 가구 가운데 1회만 빈곤을 경험한 일시빈곤가구와 지속적으로 빈곤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장기빈곤 가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초보장 수급의 경험이 있는 가구는 전체의 9.2%로 나타났다. 기초보장 수급가구 중 5년간 수급지위를 유지한 장기수급가구는 전체 가구의 5.1%이지만, 수급경험 가구 가운데에서는 절반 이상인 54.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경상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가 5년간 유지된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약 1.5%(빈곤 경험가구의 6.3%)인 것과 비교하면 수급의 장기화는 상대적으로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표 9-3〉 2005년~2009년의 5년간 빈곤경험횟수의 분포

(단위: %)

빈곤기준 경험횟수	저소득	상대빈곤 경상소득	상대빈곤 가처분소득	절대빈곤 경상소득	절대빈곤 가처분소득	기초보장수급
0	56.5	64.9	64.4	76.1	73.3	90.8
1	12.6	11.3	12.2	11.6	13.1	1.1
2	6.6	6.0	6.5	5.6	6.2	0.9
3	5.3	4.8	4.7	3.2	3.4	1.0
4	5.6	4.8	5.0	2.1	2.2	1.3
5	13.6	8.2	7.2	1.5	1.8	5.1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연결자료

2. 빈곤경험횟수별 소득수준 비교

빈곤을 경험한 횟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수준이 낮았던 기간이 길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 소득의 격차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빈곤을 경험한 횟수에 따라 집단을 구분한 후 각 집단별로 소득수준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한 것이 <표 9-4>이다.

〈표 9-4〉 빈곤경험횟수별 평균소득 비교(경상소득 상대빈곤율 기준)

(단위: 원, %)

빈곤경험 횟수	경상소득		가처분소득소득	
	평균	상대소득비교	평균	상대소득비교
0	2,949	100.0	2,666	100.0
1	1,710	58.0	1,598	60.0
2	1,137	38.6	1,069	40.1
3	962	32.6	921	34.5
4	788	26.7	748	28.0
5	576	19.5	550	20.6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연결자료

이 표는 경상소득 기준 상대빈곤의 경험 횟수별로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의 상대적 수준을 비교한다. 이 때 평균소득은 각 연도의 소득을 2009년의 물가를 기준으로 실질소득으로 전환한 후 5년간 소득에 대해 평균값을 구한 것이다. 비교 결과 빈곤을 경험한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실질소득은 감소하였고, 각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빈곤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가구의 연평균 경상소득은 약 2,950만원이었으며, 가처분소득은 약 2,670만원 수준이었다. 빈곤 무경험 가구의 소득수준과 비교하였을 때 빈곤 1년 경험 가구의 경상소득은 약 58.0%, 2년 경험가구의 경상소득은 38.6%였으며 5년 빈곤경험 가구의 평균소득은 19.5%였다. 가처분소득의 격차는 경상소득에 비해 덜한 것을 알 수 있다. 1회 빈곤을 경험한 가구의 소득은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가구의 60%였고 5년간 빈곤상태에 계속 머물렀던 가구의 소득은 빈곤 무경험 가구의 20.6% 수준이었다.

한편 기초보장 수급경험 횟수별로 소득수준을 비교하면 다음 <표 9-5>에 나타난 바와 같다. 5년간 기초보장 수급 경험이 전혀 없는 가구의 평균 경상소득은 연간 약 2,447만원이며 평균 가처분소득은 2,223만원이었다. 수급 무경험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1년 경험가구의 경상소득은 약 44%, 2년 경험가구의 소득은 44.3%, 3년 경험가구의 소득은 41.1%였다. 수급을 경험한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의 소득격차는 큰 반면, 1~3년간 수급을 경험한 가구들 사이에서 경험 횟수에 따른 소득격차는 크지 않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표 9-5〉 기초보장수급 경험횟수별 평균소득 비교

(단위: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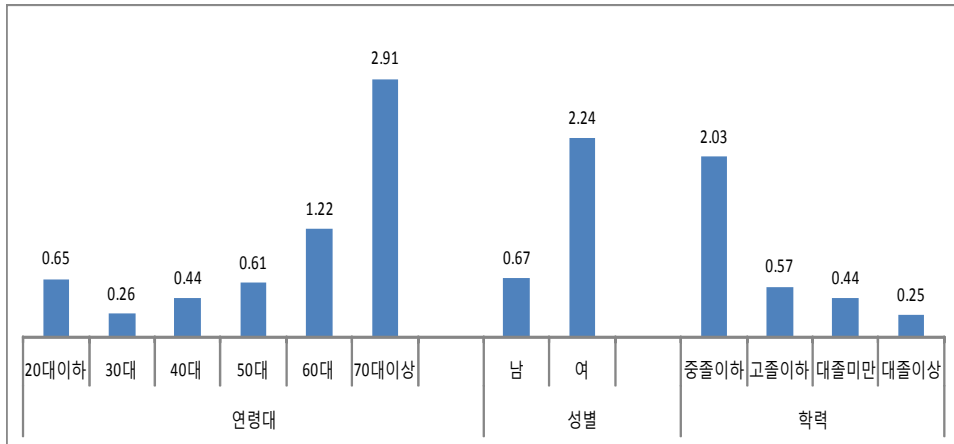
수급경험 횟수	경상소득		가처분소득소득	
	평균	상대소득비교	평균	상대소득비교
0	2,447	100.0	2,223	100.0
1	1,077	44.0	1,009	45.4
2	1,084	44.3	1,052	47.3
3	1,006	41.1	979	44.0
4	907	37.1	801	36.0
5	834	34.1	828	37.2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연결자료

3. 가구 특성별 빈곤 경험 횟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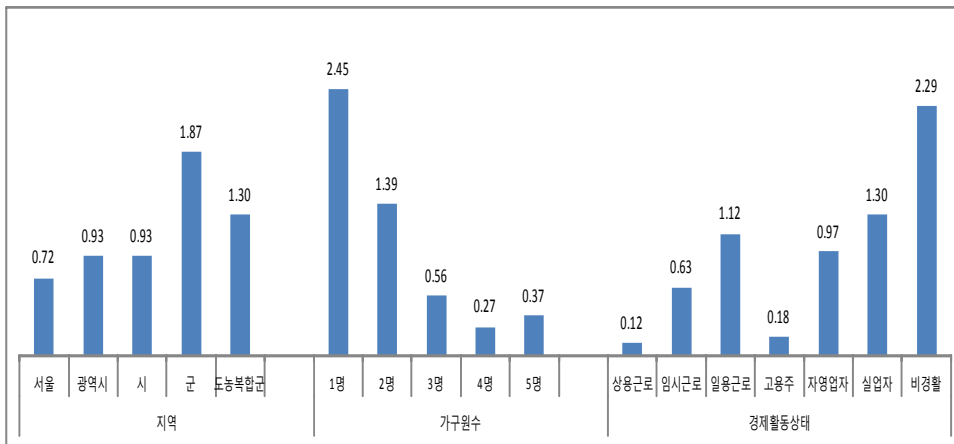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빈곤경험 횟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가구의 성별, 연령별, 학력별로 경상소득준 상대빈곤의 평균 경험횟수를 비교하였다(그림 9-1 참조). 연령별로는 50대까지는 평균 1회 미만의 빈곤경험을 보여주는 반면, 60대는 1.22회, 70대 이상 가구는 2.91회의 빈곤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성별로 비교하면 남성의 경우는 0.67회인 반면 여성의 경우 2.24회로 나타나, 여성가구가 빈곤의 위험에 훨씬 많이 노출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저학력층이 빈곤을 더 빈번하게 경험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분석 결과 중졸 이하 가구가 5년간 약 2회 빈곤을 경험한 반면 다른 학력층에서는 평균 빈곤 경험횟수가 1회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1] 가구특성별 빈곤경험횟수의 분포(연령, 성, 학력별)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연결자료

[그림 9-2] 가구특성별 빈곤경험횟수의 분포(지역, 가구원수, 경제활동상태별)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연결자료

한편 [그림 9-2]는 거주지역, 가구원수, 가구의 경제활동상태(종사상 지위)별로 빈곤 경험횟수를 비교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나 광역시, 기타 도시지역의 빈곤경험 횟수가 1회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군 지역은 가장 높은 1.87회의 빈곤 경험을 보인다. 가구원수별로는 1인 가구의 빈곤 경험횟수가 압도적으로 많았고(2.45회), 다음이 2인 가구(1.39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인 가구부터는 평균 경험횟수가 1회에 미치지 못한다. 가구의 경제활동 상태 및 종사상 지위에 따라 빈곤경험횟수를 비교한 결과, 가구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빈곤 경험횟수가 2.29회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실업자(1.30회), 일용근로자(1.12회)로 나타났다. 가구주가 상용근로자나 고용주인 가구의 빈곤 경험횟수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제3절 빈곤 진입과 탈출

1. 빈곤 진입과 탈출의 의미

소득수준의 변동에 따라 각 가구들은 빈곤층으로의 진입과 탈출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 절에서는 가구 단위의 빈곤 진입과 탈출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하에서는 전년도에는 빈곤층이 아니었던 가구 가운데 금년에 빈곤층에 속하게 되면 이 가구를 빈곤 진입가구로 구분하고, 전년도 빈곤 가구 대비 빈곤진입가구의 비율을 빈곤진입률로 지칭할 것이다. 반대로 전년도에는 빈곤가구였으나 금년도에 빈곤층이 아니게 된 가구를 빈곤 탈출 가구라고 구분하고, 전년도 빈곤가구 가운데 빈곤탈출 가구의 비율을 빈곤탈출률로 지칭할 것이다.

$$\text{빈곤진입률} = \frac{\text{금년도 새롭게 빈곤에 진입한 가구의 수}}{\text{전년도 비빈곤가구의 수}} \times 100(\%)$$

$$\text{빈곤탈출률} = \frac{\text{금년도 새롭게 빈곤에서 벗어난 가구의 수}}{\text{전년도에 빈곤가구의 수}} \times 100(\%)$$

빈곤으로의 진입과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은 빈곤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즉 빈곤을 측정하는 소득범주를 어떻게 설정하고 빈곤선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이하에서는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에 대해 두 가지 빈곤선, 즉 연도별 최저생계비와 중위소득의 50%선을 이용하여 빈곤 진입과 탈출을 분석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기초보장 수급가구로의 진입(수급지위의 신규 획득)과 탈출(탈수급)의 변화 역시 분석할 것이다.

2. 빈곤진입률과 빈곤탈출률

아래의 <표 9-6>은 두 개의 소득범주와 두 개의 빈곤선을 기준으로 빈곤진입률과 빈곤탈출률이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보여준다. 빈곤진입과 탈출이 최초로 관측된 해가 2006년이므로 이 표에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빈곤진입률과 빈곤탈출률이 나타나 있다. 최저생계비를 빈곤선으로 설정했을 때의 빈곤진입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경상소득기준 빈곤진입률의 경우 2006년에 약 5.2%였으나 2009년에는 4.1%로 감소하였다.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진입률은 2006년 약 6.0%에서 2009년 4.5%로 감소하였다.

상대빈곤선을 기준으로 측정한 빈곤진입률은 등락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인다. 경상소득 기준 빈곤진입률은 2006년 7.3%에서 2007년에는 6.5%로 감소했으나 2008년 다시 약 7.0%로 다소 상승하였고 2009년에는 다시 6.7%로 감소하였다.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삼은 빈곤진입률이 상대빈곤의 진입률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은 최저생계비의 절대적 수준이 중위소득의 50%선보다 낮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일수록 소득의 이동성도 저하되게 되므로, 빈곤선의 절대적 수준이 낮아지면 빈곤 진입이 활발하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표 9-6> 연도별 빈곤진입률과 빈곤탈출률

(단위: %)

	연도	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 50% 기준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빈곤진입	2006	5.18	5.98	7.30	7.65
	2007	4.78	5.36	6.53	6.88
	2008	4.32	4.95	6.95	7.31
	2009	4.08	4.49	6.70	6.70
빈곤탈출	2006	55.67	55.25	32.62	35.43
	2007	53.04	53.54	43.97	33.24
	2008	54.58	54.27	29.26	31.05
	2009	55.49	54.64	28.81	3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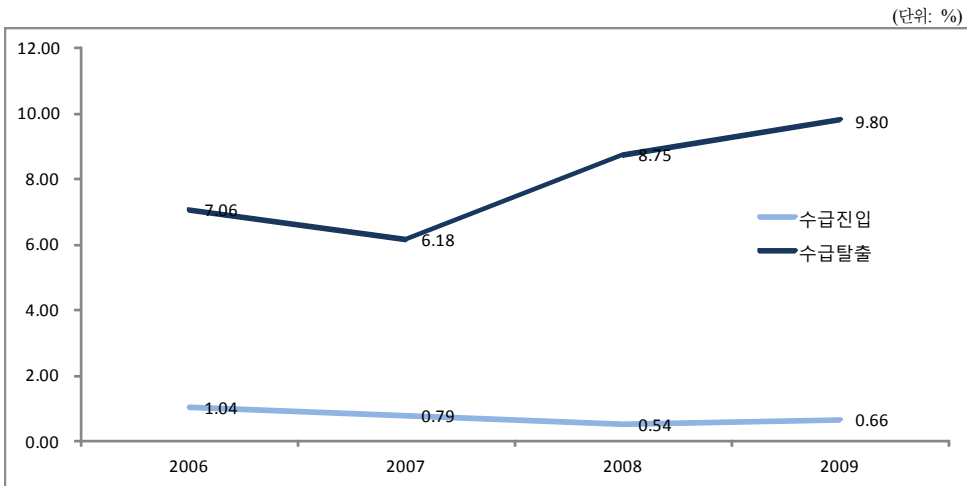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연결자료

최저생계비를 기준을 설정했을 때의 빈곤탈출률은 경상소득의 경우 2006년 약 55.7%에서 2009년에는 약 55.5%로 거의 변함이 없다.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볼 경우 2006년의 빈곤탈출률은 약 55.3%이던 것이 2009년에는 약 54.6%로 다소 상승하였다. 중위소득의 50%선을 기준으로 한 상대빈곤의 탈출률은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빈곤 탈출률은 2006년의 32.6%에서 2009년에는 28.8%로 낮아졌으며, 가처분소득 기준 상대빈곤 탈출률 역시 2006년의 35.4%에서 2009년에는 약 31.3%로 낮아졌다. 최저생계비 기준 빈곤탈출률이 거의 변함이 없거나 다소 상승하는 것에 비해 상대빈곤 탈출률은 감소하는 추세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는 높으나 상대빈곤선보다 낮은 구간의 계층이 빈곤탈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가구소득이 상대빈곤선보다 약간 높은 저소득층 가구가 빈곤화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3. 기초보장 수급진입률과 수급탈출률

아래의 [그림 9-3]은 기초보장 수급가구로의 진입률과 탈출률의 변화를 보여준다. 여기서 기초보장 수급진입률이란 전년도에 기초보장 수급가구가 아니었던 가구 가운데 금년도에 수급가구가 된 가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기초보장 수급탈출률이란 전년도에는 기초보장수 수급가구였던 가구 가운데 금년도에 수급지위를 벗어난 가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기초보장 수급진입률은 2006년 1.0%에서 2009년에는 약 0.7%로 더욱 낮아졌다. 반대로 수급탈출률은 2006년 약 7.1%에서 2009년에는 약 9.8%로 높아졌다.

[그림 9-3] 기초보장수급 진입률과 탈출률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연결자료

수급진입과 탈출률은 위에서 살펴본 빈곤진입률과 탈출률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기초보장 수급가구의 규모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것으로 추정되는 가구의 규모에 비해 작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기초보장 수급가구는 매우 정체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제4절 소결 및 정책적 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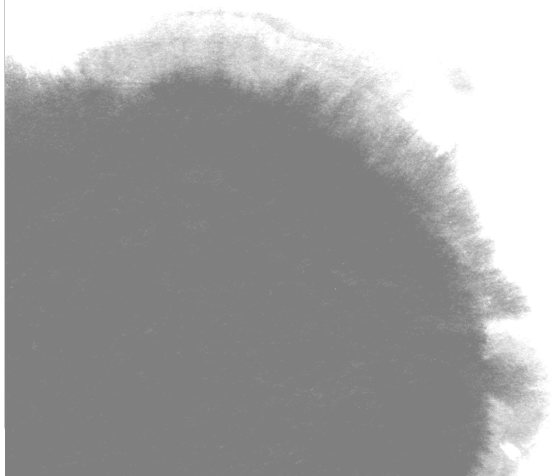
지난 5년간 빈곤의 경험횟수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빈곤 경험가구가 어떤 기준을 사용하든 25%를 넘는다는 사실로부터 빈곤정책의 대상 범위를 더욱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 대해 빈곤을 미리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이 점을 염두에 둔다면 전체 가구의 약 1/4이 빈곤정책의 대상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둘째는 전통적으로 빈곤에 대해 취약한 집단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집단은 정태적 측면뿐만 아니라 빈곤 경험이라는 동태적 측면에서도 그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집단에 대해서는 빈곤의 진입뿐만 아니라 빈곤의 장기화를 막을 수 있는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기초보장 수급자의 경우 장기수급자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수급자로의 진출입이 활발히 일어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달리 말해 일시적 충격에 의해 빈곤을 경험하게 된 계층에 대한 보호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빈곤층 변화에 대한 기초보장제도의 대응성을 높이거나 일시적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10

비공식 근로와 빈곤



제10장 비공식 근로와 빈곤

제1절 문제의식

취업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는 주요한 경로이긴 하지만, 일을 하는데도 빈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취업빈곤층이 광범하게 존재하고 최근 들어 취업빈곤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⁴⁶⁾은 취업촉진 우선정책(work-first policies)만으로 근로빈곤 문제를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근로빈곤의 노동시장 요인을 분석한 이병희(2010)는 근로빈곤층의 노동시장 활동성이 낮지 않으며, 저소득과 실직 위험에 따라 빈곤을 벗어나기 어렵고, 빈곤을 벗어나더라도 빈곤선 주위에서 이동하여 재빈곤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저소득과 실직 위험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고용안전망 확충과 최저임금의 현실화, 차별시정, 근로감독행정 강화 등의 노동시장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근로빈곤 문제를 사회보험정책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의 근로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에게만 보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광범하게 존재한다. 또한 사회보험으로부터의 배제가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 높은 실직 위험 등의 일자리 질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정책적으로도 최저임금·근로조건·노동조합·취업지원서비스 등 노동정책과 제도의 사각지대로 이어진다.

46) 「가계조사」 연간자료(통계청)에서 취업자 가운데 빈곤 상태에 있는 비중은 가구 시장소득 기준으로 2006년 8.8%에서 2010년 9.7%로 증가하였으며, 가구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도 7.7%에서 8.3%로 증가하였다(이병희, 2011a).

사회보험 측면에서 근로빈곤 문제를 다루는 본 연구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이 근로빈곤층에게 가지는 의미와 사회보험정책과 노동정책의 연계가 가지는 적극적인 의의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자리를 비공식 근로(informal work)로 정의하여, 빈곤층이 경험하는 비공식 근로의 특성을 밝히고 취업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보험 정책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2절에서 분석방법과 자료를 소개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공식 근로를 사회보험의 가입 측면에서 사각지대로 정의한다. 제3절에서는 비공식 근로와 빈곤간의 정태적 관계를 분석한다. 취업빈곤층의 상당수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는 규명되어야 할 과제이다. 특히 비공식 근로와 빈곤간의 내생성을 고려한 연립방정식 모형을 통해 비공식 근로가 가구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제4절에서는 비공식 근로와 빈곤간의 동태적인 관계를 규명한다. 우선 비공식 근로가 지속되는 현상이며, 개인적 이질성을 통제한 뒤에도 상태의존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인다. 또한 비공식 근로의 고착화와 상대적으로 높은 실직 위험은 빈곤을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을 밝힐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5절에서는 이상의 발견에 기초하여 비공식 근로를 억제하는 보편적인 정책이 필요함을 제기한다.

제2절 분석 방법과 자료

비공식 근로는 열악한 근로조건, 경력 개발 기회의 제한, 실직·질병·노령 등의 위험에 대한 보호로부터의 배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세수 탈루, 공적 부담의 재정 부담 증가, 비공식 고용 부문의 비효율적인 생산의 온존에 따른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하고, 사회적으로도 사회적 위험 증가와 사회적 이동성 제한으로 인해 사회 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ILO, OECD, EU 등의 국제기구에서는 공식 고용으로의 전환 정책을 권고하고 있다. OECD(2004)는 중간소득국가에서 실업 문제보다 비공식 근로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EU는 고용정책 가이

드라인에서 미신고 근로를 공식 근로로 전환하는 조치를 회원국이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비공식 근로에 대한 국가 통계는 개발되어 있지 않다. 외국의 연구에서는 사회보험 가입·수혜 여부, 근로계약 유무(임금근로), 사업자등록 여부(비임금근로) 등을 사용하여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고용 문제를 비공식 근로로 정의하고자 한다. ILO가 1993년 15차 국제노동통계총회에서 채택된 비공식 부문 취업(employment in the informal sector)의 정의를 2003년 17차 국제노동통계총회에서 비공식근로(informal employment) 정의로 확대한 것은 사회보험 미가입 문제를 비공식 취업 문제로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ILO(2003)에 따르면 비공식 취업은 ① 비공식 부문 기업의 자영업자와 고용주 ② 공식 또는 비공식 부문의 무급가족종사자 ③ 비공식 고용 ④ 생산자 협동조합의 구성원 ⑤ 자가 소비를 위한 생산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등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는데, 비공식 고용(employees holding informal jobs)은 “법적으로는 관행상으로는 노동법, 소득과세, 사회보장, 고용관련 보호(해고시 사전통지, 퇴직금, 유급휴가, 유급병가 등)를 받지 못하는” 고용으로 정의함으로써 노동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을 연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는 가입 측면과 급여 측면에서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법적으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이다. 고용보험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가사노동자,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가 해당한다. 둘째, 법적인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의무 불이행 또는 보험료 부담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이다. 국민연금에서 납부 예외자, 장기 체납자, 고용보험에서 미가입자가 해당한다. 셋째, 수급요건이 엄격하여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이다. 고용보험에서 피보험단위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 국민연금에서 가입 기간이 짧아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한 계층이 해당한다. 넷째, 수급하더라도 급여 수준이 낮거나 수급기간이 짧아서 보장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이다. 국민연금에서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였으나 연금액이 적어 노후 빈곤에 노출되는 계층이나 실업급여에서 수급기간이 3개월인 자가 이에 해당한다. 본 연구는 급여 수준의 적절성과 관련된 유형을 제외하고, 가입 측면에서의 사각지대인 첫째, 둘째 유형으로 비공식

근로를 정의한다.⁴⁷⁾

분석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조사하는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자료(조사 기준연도는 2005~2009년)를 사용한다. <한국복지패널>은 농어를 포함한 전국을 대표하고 있지만, 저소득층을 과대표집하므로 통계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빈곤과 비공식 근로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개인 단위의 자료를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가구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가구 및 개인 정보를 ‘가구원 정보’의 개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 단위의 자료로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가구의 빈곤 여부는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 이전소득)을 기준으로 상대적 빈곤 개념으로 판별하였다. 가구균등화 지수(가구원수의 제곱근)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에 속한 개인을 빈곤층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비공식 근로는 공적 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취업자로 정의하였다. 산재보험은 사업주 배상 책임에 근거하여 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보상 급여가 지급되고 있으므로 고려하지 않는다. 건강보험 가입 여부는 가구 단위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개인 단위의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제3절 비공식 근로와 빈곤간 관계

1. 비공식 근로의 규모와 추이

분석 표본은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인 18~59세이면서 연말 기준의 취업자로 한정하였다. 최종적으로 구성된 표본은 5차년도의 경우 5,254명(가중된 표본수는 19,689천명)이다.

<표 10-1>에는 취업형태별 공적 연금과 고용보험의 가입 현황이 제시되어 있다. 2009년 말 현재 18세 이상 60세 미만 취업자 가운데 공적 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

47) 구인화·백학영(2008), 김태완·박지혜(2009)도 가입 측면에서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규모와 특성,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를 납부하는 비중은 64.9%로 나타난다. 임금근로자의 공적 연금 가입률은 70.4%이며, 비임금근로자는 훨씬 낮은 44.5%에 그치고 있다.

공적 연금 적용 대상자인데도 실직·휴직·사업 중단 등을 이유로 한 납부 예외, 보험료 미납, 미가입 등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취업자는 16.4%이다. 적용대상인 면서 미가입·미납자의 비중은 비임금근로자가 25.6%로 임금근로자의 13.9%에 비해 높다. 그리고 적용제외자는 취업자의 18.7%이며, 임금근로자의 15.7%에 비해 비임금근로자가 29.9%로 높다.

고용보험을 보면,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57.6%이며, 적용 대상임에도 미가입한 자가 30.2%, 적용제외자가 12.2%로 나타난다.

〈표 10-1〉 취업형태별 공적 연금과 고용보험 가입 현황(2009, 18~59세 취업자)

(단위: 천명, %)

			취업자	임금	비임금
전체			19,688.9 (100.0)	15,507.1 (100.0)	4,181.8 (100.0)
연금	가입·납부	직장 가입	9,104.6 (46.2)	8,795.2 (56.7)	309.4 (7.4)
		지역 가입	2,173.5 (11.0)	623.4 (4.0)	1,550.2 (37.1)
		특수직역연금	1,500.9 (7.6)	1,500.9 (9.7)	
	미가입·미납	납부예외	2,648.7 (13.5)	1,780.2 (11.5)	868.6 (20.8)
		미납	139.5 (0.7)	39.4 (0.3)	100.1 (2.4)
		미가입	438.1 (2.2)	334.3 (2.2)	103.8 (2.5)
	적용제외	비해당	3,549.9 (18.0)	2,344.5 (15.1)	1,205.4 (28.8)
		연금수급	133.6 (0.7)	89.3 (0.6)	44.4 (1.1)
고용보험	가입		9,004.7 (45.7)	8,929.3 (57.6)	75.4 (1.8)
	미가입		4,679.6 (23.8)	4,679.6 (30.2)	
	적용제외	특수직역	1,500.9 (7.6)	1,500.9 (9.7)	
		자영업	4,106.4 (20.9)		4,106.4 (98.2)
		비해당	397.3 (2.0)	397.3 (2.6)	(0.0)

자료: 한국복지패널 5차년도

상대적 빈곤 여부별로 가입 현황을 보면, 공적 연금 가입률은 빈곤하지 않는 취업자가 64.9%인 반면 빈곤한 취업자는 29.1%에 불과하다. 빈곤 취업자 가운데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가 23.3%, 적용제외자가 43.5%에 이른다. 취업 빈곤계층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3.3%으로 비빈곤 취업자의 절반에 불과하다.

〈표 10-2〉 빈곤 여부별 공적 연금과 고용보험 가입 현황(2009, 18~59세 취업자)

(단위: 천명, %)

			비빈곤		빈곤	
전체			18,124.4	(100.0)	1,564.6	(100.0)
연금	가입·납부	직장 가입	8,775.2	(48.4)	329.4	(21.1)
		지역 가입	2,047.3	(11.3)	126.3	(8.1)
		특수지역연금	1,500.9	(8.3)		
	미가입·미납	납부예외	2,283.5	(12.6)	365.3	(23.3)
		미납	125.8	(0.7)	13.7	(0.9)
		미가입	388.8	(2.1)	49.3	(3.2)
	적용제외	비해당	2,926.3	(16.1)	623.5	(39.9)
		연금수급	76.5	(0.4)	57.1	(3.7)
고용보험	가입		8,639.9	(47.7)	364.7	(23.3)
	미가입		3,969.8	(21.9)	709.8	(45.4)
	적용제외	특수지역	1,500.9	(8.3)		
		자영업	3,734.2	(20.6)	372.3	(23.8)
		비해당	279.5	(1.5)	117.8	(7.5)

자료: 한국복지패널 5차년도

본 연구에서 공식 근로는 공적 연금과 고용보험에 모두 가입한 임금근로자⁴⁸⁾와 공적 연금에 가입한 비임금근로자로, 비공식 근로는 적용제외자와 전부 또는 일부 미가입자로 정의하였다. 이 때 적용 제외자는 연금 적용 제외 또는 수급중인 자·고용보험의 적용 제외자이며, 나머지를 미가입자로 분류하였다.

〈표 10-3〉 비공식 근로의 규모(2009, 18~59세 취업자)

(단위: 천명, %)

		공식 근로	비공식 근로			계
			미가입	적용제외		
전체		12,122.0 (61.6)	7,566.9 (38.4)	3,863.2 (19.6)	3,703.8 (18.8)	19,688.9 (100.0)
취업형태	임금	10,262.4 (66.2)	5,244.7 (33.8)	2,790.7 (18.0)	2,454.0 (15.8)	15,507.1 (100.0)
	비임금	1,859.6 (44.5)	2,322.2 (55.5)	1,072.5 (25.6)	1,249.7 (29.9)	4,181.8 (100.0)
빈곤 여부	비빈곤	11,713.8 (64.6)	6,410.6 (35.4)	3,399.2 (18.8)	3,011.4 (16.6)	18,124.4 (100.0)
	빈곤	408.2 (26.1)	1,156.3 (73.9)	464.0 (29.7)	692.3 (44.3)	1,564.6 (100.0)

자료: 한국복지패널 5차년도

48) 직장 가입과 지역 가입을 구분하지 않는다.

<표 10-3>에는 비공식 근로의 규모가 제시되어 있다. 취업자 가운데 38.4%가 비공식 근로이다. 취업형태별로 보면, 임금근로자의 33.8%가 비임금 근로에 종사하고 있으며, 비임금 근로자는 이보다 높은 55.5%에 이른다. 빈곤 여부별로 보면, 빈곤 상태에 있는 취업자의 비공식 근로 비중은 73.9%로, 비빈곤 취업자의 35.4%에 비해 훨씬 높다.

<표 10-4>에는 비공식 취업률의 추이가 제시되어 있다. 취업자 가운데 비공식 근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41.1%에서 2009년 38.4%로 약간 감소하였다. 비공식 취업률의 소폭 감소는 빈곤 여부와 관계없이 나타나지만, 빈곤층의 비공식 취업률은 비빈곤층의 그것에 비해 2배를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복지 수혜 여부별로 세분하여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중인 취업자는 대부분 비공식 근로에 종사하며, 비공식 취업률은 2005년 95.3%에서 2009년 98.5%로 오히려 증가하였다.

<표 10-4> 빈곤 여부별 비공식 취업률 추이(18~59세 취업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전체	0.411	0.399	0.416	0.386	0.384
비빈곤	0.377	0.364	0.381	0.358	0.354
빈곤	0.764	0.782	0.834	0.739	0.739
기초생활 비수급	0.732	0.730	0.787	0.682	0.660
기초생활 수급	0.953	0.957	0.967	0.960	0.985

<표 10-5>에서 취업 빈곤율은 2005년 8.9%에서 2008년 7.3%로 하락하다가 2009년에는 7.9%로 소폭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비공식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나타난다. 한편 2009년 비공식 취업자의 빈곤율은 15.3%로, 공식 취업자의 3.4%에 비해 4.5배나 높다.

〈표 10-5〉 공식 근로 여부별 빈곤율 추이(18~59세 취업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전체	0.089	0.085	0.077	0.073	0.079
공식 근로	0.036	0.031	0.022	0.031	0.034
비공식 근로	0.165	0.167	0.154	0.140	0.153

자료: 한국복지패널, 1차~5차년도.

2. 비공식 근로와 빈곤간 관계

취업빈곤층의 상당수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비공식 근로에 종사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인지는 규명되어야 할 과제이다. 빈곤과 비공식 근로는 내생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 한편으로는 비공식 근로가 빈곤을 야기하는 하나의 원인일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빈곤한 가구의 구성원은 사회안전망이 미비한 상태에서 비공식 근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비공식 근로와 빈곤간 내생성을 고려하여 Amuedo-Dorantes(2004)의 방법에 따라 비공식 근로 가능성과 가구 빈곤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연립방정식 프로빗으로 추정하였다.

$$Informal\ Sector_{ijl} = \alpha_1' Poverty_i + \beta_1' P_{ij,1} + \delta_1' H_{i,1} + \gamma_1' F_{jl,1} + \epsilon_{ijl}$$

$$Poverty_{ijl} = \alpha_2' Informal\ Sector_i + \beta_2' P_{ij,2} + \delta_2' H_{i,2} + \gamma_2' F_{jl,2} + \epsilon_{ijl}$$

i 는 가구, j 는 가구, l 은 사업체를 나타내며, 각 방정식에서 P_{ij} 는 인적 특성, H_i 는 가구 특성, F_{jl} 은 일자리 특성이다. 연립방정식에서 α_1 은 가구 빈곤이 비공식 근로에 미치는 영향, α_2 는 비공식 근로가 가구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것이다.

추정 모형에서 인적 특성으로 연령, 가구주와의 관계, 학력을 포함하였으며, 일자리 특성으로는 근속, 직업, 산업, 사업체 규모를, 가구 특성으로 가구원수, 가구원내 취업자수를 포함하였다. 연립방정식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비공식 근로 결정 방정식

에는 가구원내 취업자수를, 빈곤 결정 방정식에는 사업체 규모를 제외하였다.

<표 10-6>에는 표본 특성이 비공식 근로 여부별로 제시되어 있다. 비공식 근로는 여성, 중장년, 비가구주, 저학력자에 집중되어 있다. 일자리 특성별로 보면 비공식 취업자의 근무 연수는 상대적으로 짧으며, 영세사업장, 서비스·판매·단순노무 직종, 건설업·도소매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다. 비공식 취업자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수와 가구내 취업자수는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10-6〉 표본 특성(2009, 18~59세 취업자)

		공식 근로		비공식 근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빈곤율		0.033	(0.360)	0.153	(0.659)
인적 특성	여성	0.350	(0.960)	0.548	(0.911)
	15~29세	0.165	(0.746)	0.166	(0.681)
	40~49세	0.298	(0.921)	0.334	(0.863)
	50~59세	0.211	(0.821)	0.295	(0.835)
	배우자	0.197	(0.800)	0.362	(0.880)
	가구원	0.191	(0.791)	0.214	(0.751)
	중졸 이하	0.092	(0.582)	0.249	(0.792)
	초대졸	0.160	(0.738)	0.077	(0.487)
	대졸 이상	0.382	(0.978)	0.164	(0.678)
일자리 특성	근속연수	7.797	(16.199)	5.257	(13.301)
	1-4인 사업체	0.182	(0.777)	0.613	(0.892)
	5-9인 사업체	0.099	(0.601)	0.139	(0.633)
	10-29인 사업체	0.133	(0.684)	0.109	(0.571)
	관리전문직	0.258	(0.880)	0.148	(0.650)
	사무직	0.261	(0.883)	0.052	(0.405)
	서비스판매직	0.151	(0.721)	0.322	(0.856)
	단순노무직	0.097	(0.597)	0.245	(0.787)
	농림어광업	0.021	(0.286)	0.066	(0.453)
	전기가스수도업	0.030	(0.342)	0.005	(0.134)
	건설업	0.059	(0.473)	0.096	(0.540)
	도소매음식숙박업	0.127	(0.669)	0.320	(0.854)
	운수창고통신업	0.104	(0.614)	0.057	(0.426)
	금융보험, 사업서비스	0.117	(0.647)	0.091	(0.526)
	공공,사회,개인서비스	0.293	(0.916)	0.262	(0.805)
가구 특성	가구원수	3.417	(2.388)	3.476	(2.224)
	가구내 취업자수	1.899	(1.640)	2.088	(1.579)
빈도수(명)		2,988		2,251	
가중된 빈도수(천명)		12,097		7,542	

자료 : 한국복지패널 5차년도

<표 10-7>에는 비공식 근로와 빈곤에 대한 연립방정식 프로빗 추정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각 방정식 잔차의 상관계수 ρ 가 0이라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어, 내생성을 고려한 연립방정식 프로빗 추정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른 요인들을 통제할 때 비공식 취업 가능성은 청년층, 비가구원에서 상대적으로 높으며, 고학력자일수록 낮다. 일자리 특성별로 보면, 단기 근로자, 영세 사업장 종사자, 판매직, 단순노무직,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사업지원 서비스업에서 비공식 취업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가구 빈곤 가능성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으며,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는 낮다. 단순노무직에서 가구 빈곤 가능성이 높다.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빈곤 상태일 가능성이 높고, 가구내 취업자수가 많을수록 낮게 나타난다.

우리의 관심인 가구 빈곤이 비공식 취업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빈곤층은 비빈곤층에 비해 비공식 취업 가능성이 58.8%p 높다. 이는 사회안전망이 미비한 상황에서 빈곤층이 비공식 근로에 비자발적으로 종사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공식적인 일자리를 획득하기까지 소요되는 탐색비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빈곤층은 생활유지를 위해 비공식 일자리에 종사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비공식 근로는 공식 근로에 비해 가구 빈곤 가능성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40.4%p 높인다. 비공식 근로가 고착화될 경우 빈곤을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비공식 근로의 지속성 여부는 다음 장에서 다룬다.

〈표 10-7〉 비공식 근로와 빈곤에 대한 연립방정식 프로빗 추정

	비공식 근로			빈곤		
	추정계수	(표준오차)	한계효과	추정계수	(표준오차)	한계효과
빈곤	1.919	(0.061) ***	0.588			
비공식 근로				1.884	(0.049) ***	0.404
여성	0.089	(0.064)	0.034	0.197	(0.076) **	0.036
15~29세	0.157	(0.074) **	0.061	-0.068	(0.097)	-0.012
40~49세	0.012	(0.056)	0.004	0.117	(0.072)	0.022
50~59세	-0.002	(0.067)	-0.001	0.207	(0.083) **	0.040
배우자	0.463	(0.067) ***	0.181	-0.488	(0.073) ***	-0.076
가구원	0.247	(0.068) ***	0.096	0.018	(0.083)	0.003
중졸 이하	0.015	(0.064)	0.006	0.080	(0.072)	0.015
초대졸	-0.439	(0.072) ***	-0.158	0.235	(0.099) **	0.047
대졸 이상	-0.093	(0.061)	-0.035	-0.184	(0.089) **	-0.031
근속년수	-0.016	(0.003) ***	-0.006	-0.005	(0.003)	-0.001
1~4인 사업체	0.992	(0.052) ***	0.375			
5~9인 사업체	0.673	(0.065) ***	0.264			
10~29인 사업체	0.432	(0.066) ***	0.170			
관리전문직	-0.158	(0.082) *	-0.060	-0.076	(0.125)	-0.013
사무직	-0.580	(0.086) ***	-0.205	0.049	(0.122)	0.009
서비스판매직	0.063	(0.075)	0.025	-0.047	(0.086)	-0.008
단순노무직	0.126	(0.063) **	0.049	0.168	(0.068) **	0.032
농림어광업	0.150	(0.099)	0.059	0.447	(0.100) ***	0.100
전기가스수도업	-0.164	(0.190)	-0.061	0.062	(0.254)	0.012
건설업	0.625	(0.083) ***	0.245	-0.303	(0.097) ***	-0.046
도소매음식숙박업	0.397	(0.075) ***	0.156	-0.231	(0.083) ***	-0.038
운수창고통신업	0.175	(0.082) **	0.068	-0.041	(0.094)	-0.007
금융보험, 사업서비스	0.472	(0.084) ***	0.186	-0.142	(0.124)	-0.024
공공, 사회, 개인서비스	0.226	(0.069) ***	0.088	0.085	(0.078)	0.015
가구원수	-0.015	(0.018)	-0.006	0.072	(0.023) ***	0.013
가구내 취업자수				-0.334	(0.037) ***	-0.060
상수항	-1.194	(0.098) ***		-1.656	(0.121) ***	
ρ			1.000 (0.000)			
Log likelihood			-3307.2			
표본수			5,239			

주: 1) 기준 집단은 남성 30대 가구주 고졸, 제조업 30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생산직임.

2) $\rho = 0$ 의 우도비 검정 결과 : $\chi^2(1) = 1098.17$ Prob > $\chi^2 = 0.0000$

3) *는 10%, **는 5%, ***는 1% 수준에서 유의함

자료: 한국복지패널 5차년도

제4절 비공식 근로의 지속성과 빈곤에 미치는 영향

1. 비공식 근로의 경험과 지속

<한국복지패널> 1차~5차년도 자료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18~59세 개인들을 대상으로 이웃하는 두 해 동안 모두 조사된 개인들을 결합하여 ‘연간 패널자료’를 구성하였다. 이 때 근로능력 판별은 연말 기준의 연령, 근로능력에 관한 주관적 응답, 장애 등급, 주된 경제활동상태, 경제활동상태 정보를 이용하였다. 즉, 15세 미만의 아동, ‘근로능력 없음’으로 응답한 자, 비경제활동인구이면서 65세 이상, 재학 중, 군복무 중, 중증 장애인을 근로무능력자로 정의하고, 나머지를 근로능력자로 분류하였다. 연결 패널자료의 표본수는 4~5차년도의 경우 6,536명(가중된 표본수는 22,668천명)이다.

<표 10-8>에는 연간 이행확률이 제시되어 있다. 비공식 근로가 1년 후에도 비공식 근로를 유지할 확률은 73.9%에 이르며, 공식 근로로 전환할 확률은 15.0%에 그친다. 그리고 비공식 근로가 1년 후에 비취업 상태에 있을 확률은 11.1%로, 공식 근로의 5.2%에 비해 두 배를 상회하여 비공식 취업자의 실직 위험이 높게 나타난다. 또한 비취업자가 1년 후 비공식 근로로 취업할 확률은 15.4%로, 공식 근로로 취업할 확률 8.3%에 비해 높다. 즉, 비공식 근로가 고착화되거나 실직 위험이 높아서 ‘비공식 ↔ 비취업 순환’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빈곤 여부별로 보면, 비공식 근로에 종사하는 빈곤층이 공식 근로로 전환할 확률은 9.5%로, 비빈곤층의 16.0%에 비해 크게 낮다. 또한 비공식 취업자가 1년 후 비취업 상태로 전환할 확률도 빈곤층이 13.5%로, 비빈곤층의 10.6%에 비해 높다. 그리고 비취업자가 비공식 근로로 전환하는 확률은 빈곤층이 21.1%로, 비빈곤층의 14.1%에 비해 높다. 이는 빈곤층의 비공식 근로 고착화와 실직 위험이 높음을 보여 준다.

〈표 10-8〉 일자리 특성별·빈곤 여부별 1년 후 일자리 특성의 변화(15~59세 근로능력자)

(단위: %)

빈곤 여부	t t+1	백분율			열 백분율 (연간 이행행렬)		
		공식	비공식	비취업	공식	비공식	비취업
전체	공식	38.5	2.8	2.3	88.4	6.5	5.2
	비공식	4.4	21.5	3.2	15.0	73.9	11.1
	비취업	2.3	4.2	20.8	8.3	15.4	76.2
비빈곤	공식	42.1	3.0	2.4	88.7	6.3	5.0
	비공식	4.4	20.3	2.9	16.0	73.3	10.6
	비취업	2.1	3.5	19.2	8.4	14.1	77.5
빈곤	공식	9.1	1.5	1.2	77.1	12.5	10.4
	비공식	3.9	31.9	5.6	9.5	77.0	13.5
	비취업	3.8	9.9	33.0	8.2	21.1	70.7

자료: 한국복지패널 1차~5차년도 연간패널자료

비공식 근로의 경험(incidence)과 지속(persistence) 문제를 보다 장기간에 걸쳐 살펴보기 위하여 동일한 개인을 대상으로 장기 패널자료를 구성하였다. <한국복지패널> 1차~5차년도 자료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18~59세 개인들을 대상으로 모든 조사연도에 조사되고, 최소한 한 해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개인들을 결합하여 ‘전체 연결패널자료’를 구성하였다. 표본수는 4,808명(가중된 표본수는 15,682천명)이다.

<표 10-9>에서 5년 동안 취업 경험자를 대상으로 초기 시점의 일자리 특성별로 비공식 근로 경험과 지속을 살펴보았다.

우선 1차년도 비공식 취업자의 38.9%만이 5년 동안 한 번 이상 공식 근로를 경험하며, 오히려 비취업자의 공식 근로 경험이 41.3%로 높게 나타나, 비공식 취업자의 사회보험 가입 기회가 제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실직 경험은 비공식 취업자가 28.0%로 공식 취업자의 15.0%에 비해 높다.

한편 5년간 누적 경험기간을 보면, 비공식 취업자는 5년간 3.6년의 비공식 근로 경험을 기록하여, 비공식 취업자는 사회적 보호로부터 지속적으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비공식 취업자의 비취업 경험기간은 0.5년에 불과하여, 높은 실직 위험에 비해 노동시장 이탈성향은 낮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1차년도 비공식 취업자의 41.8%는 5년 동안 비공식 근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상의 발견은 비공식 근로가 고착화되어 있으며, 사회보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배제되거나 단기간 가입하는데 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사회보험으로의 배제 때문에 실직 위험이 높더라도 장기적인 실업상태에 있지 않고 노동시장에 빨리 복귀하는 성향이 높음을 시사한다.

〈표 10-9〉 비공식 근로 경험과 지속(15~59세 취업경험자)

		공식 근로	비공식 근로	비취업	전체
5년간 경험 여부 (비중)	공식 근로	1.000	0.389	0.413	0.688
	비공식 근로	0.191	1.000	0.762	0.568
	비취업	0.150	0.280	1.000	0.344
5년간 누적 경험기간 (년)	공식 근로	4.4	0.9	0.9	2.6
	비공식 근로	0.4	3.6	1.6	1.7
	비취업	0.2	0.5	2.5	0.7
5년간 지속 경험 (비중)	공식 근로	0.706			0.341
	비공식 근로		0.418		0.143

주: 일자리 특성 분류는 2005년 기준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1차~5차년도 전체 연결패널자료

2. 비공식 근로의 지속성

비공식 근로의 지속성은 두 가지 메커니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가능성은 비공식 근로 확률이 높은 개인적 이질성(individual heterogeneity)에 기인할 수 있다. 관찰가능한 인적 자본이나 관찰 불가능한 근로의욕 등에서의 차이 때문에 비공식 근로가 지속성을 띠는 것을 말한다. 둘째 가능성은 특정 시점의 비공식 근로가 이후의 비공식 근로 확률에 직접적으로 인과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에 발생한다. 이러한 상태 의존성(state dependence)은 비공식 일자리에 종사하는 동안 인적자본의 미축적(non-accumulation)이나 감가상각(depreciation)에 의해 공식 일자리로의 상향 이동이 제한될 경우에 발생한다.

진정한 상태 의존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공식 근로에 영향을 미치는 이질성을 통제해야 한다.⁴⁹⁾ 비공식 근로 여부가 이산적 종속변수이기 때문에 방정식 (1)과 같은 동태적 확률효과 프로빗 모형(dynamic random effects probit model)을 사용한다.

$$I_{it}^* = \gamma I_{it-1} + x_{it}'\beta + \epsilon_i + u_{it} \quad (i = 1, \dots, N; t = 2, \dots, T) \quad (1)$$

I_{it}^* 는 t 기에 개인 i 가 비공식 근로에 있을 잠재 변수이다. I_{it-1} 는 직전 시기에 개인 i 의 비공식 근로 여부다. x_{it} 는 설명변수 벡터이다. 확률 오차항은 두 항으로 구성된다. 개인 특수적 오차항 ϵ_i 은 시간의 경과에도 변함이 없으며 관측불가능하는 이질성이다. 반면 u_{it} 는 평균이 0이고, 계열상관이 없으며, x_{it} , ϵ_i 와 상관관계가 없다고 가정한다.

표준적인 확률효과 모형에서는 ϵ_i 가 x_{it} 와 상관관계가 없다고 가정하지만, 이는 현실성이 없는 경우가 잦다. 이러한 문제는 Mundlak(1978)의 방법에 따라 ϵ_i 와 설명변수들의 시간 평균값과의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epsilon_i = \overline{x_i}\delta + \alpha_i$, $\alpha_i \sim iid N(0, \sigma_\alpha^2)$.

이러한 관계를 식 (1)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I_{it}^* = \gamma I_{it-1} + x_{it}'\beta + \overline{x_i}'\delta + \alpha_i + u_{it} \quad (2)$$

그러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이질성을 잘 통제하더라도 초기조건 문제(initial conditions problem)가 발생한다. 종속 변수의 최초 관찰치인 I_{i1} 는 관측불가능한 이질성 ϵ_i 과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상관성이 존재하면, 식(2)의 추정결과는 상태의존성을 과대 추정하게 된다.

49) 추정방법은 Stewart(2007), Clark and Kanellopoulos(2009)를 참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Wooldridge(2005)의 제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도입한다.
 $\alpha_i = a_0 + a_1 I_{i1} + a_2 \bar{x}_i + \xi_i$. 단, $\xi_i \sim N(0, \sigma_\xi^2)$ 이며 L_{i1} , x_i 과 독립적이다.

이를 식 (2)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최종적인 추정 방정식 (3)이 도출된다.

$$I_{it}^* = \gamma I_{it-1} + \alpha_1 I_{i1} + x_{it}'\beta + \alpha_2 \bar{x}_i + \xi_i + u_{it} \quad (3)$$

추정방정식에서 γ 가 본 연구에서 추정하는 진정한 상태의존성의 크기이다.

<표 10-10>에는 비공식 근로의 지속성에 대해 자료를 통합하여 프로빗 추정한 결과와 동태적 확률효과 프로빗 추정한 결과가 함께 나타나 있다. 추정계수 대신에 비공식 근로 확률에 대한 설명변수들의 한계 효과(marginal effect)⁵⁰⁾를 제시하였다. 이 때 표본은 이웃하는 두 해 동안 취업 상태를 유지한 자로 한정하였다. 분석 표본 수는 4,241명의 10,766개 일자리(가중할 경우 14,332천명의 38,545천개 관측치)다.

동태적 확률 효과 프로빗 모형을 이용한 추정 결과에서 ρ 가 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여, 자료를 통합한 추정치와 패널 추정치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자료를 통합하여 프로빗 추정한 결과에서는 지난 해 비공식 근로의 경험은 비공식 근로 확률을 66.4%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질성과 초기 조건을 통제한 동태적 확률효과 프로빗 모형 추정에서는 그 크기가 59.4%인 것으로 나타난다. 비공식 근로 경험은 이후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비공식 근로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50) 한계 효과는 모든 변수의 평균값 수준에서 연속변수의 경우 $dF(x)/dx$, 더미변수의 경우 0에서의 1로 변할 때의 확률 변화분을 의미한다.

〈표 10-10〉 비공식 근로의 지속 확률 추정

	통합 프로빗		동태적 확률효과 프로빗	
	한계 효과	(표준 오차)	한계 효과	(표준 오차)
전기 비공식근로	0.664	(0.011) ***	0.594	(0.012) ***
최초 비공식근로			0.233	(0.015) ***
여성	0.035	(0.022)	0.044	(0.023) **
15~29세	0.003	(0.029)	-0.010	(0.070)
40~49세	0.034	(0.016) **	0.089	(0.048) *
50~59세	0.012	(0.020)	0.104	(0.070)
배우자	0.044	(0.023) *	0.010	(0.101)
가구원	-0.014	(0.025)	-0.095	(0.078)
중졸이하	0.044	(0.019) **	-0.161	(0.118)
초대졸	-0.031	(0.021)	0.132	(0.158)
대졸 이상	-0.013	(0.019)	0.159	(0.144)
근속	-0.005	(0.001) ***	-0.005	(0.002) ***
1~4인 사업체	0.233	(0.018) ***	0.174	(0.031) ***
5~9인 사업체	0.157	(0.025) ***	0.119	(0.036) ***
10~29인 사업체	0.090	(0.024) ***	0.091	(0.033) ***
관리전문직	-0.053	(0.022) **	-0.097	(0.043) **
사무직	-0.129	(0.020) ***	-0.150	(0.041) ***
서비스판매직	0.024	(0.023)	0.048	(0.042)
단순노무직	0.028	(0.022)	0.061	(0.022) ***
농림어광업	0.138	(0.035) ***	0.102	(0.083)
전기가스수도업	-0.023	(0.050)	0.091	(0.107)
건설업	0.133	(0.030) ***	0.225	(0.066) ***
도소매음식숙박업	0.088	(0.027) ***	0.174	(0.056) ***
운수창고통신업	0.028	(0.028)	0.116	(0.063) *
금융보험, 사업서비스업	0.134	(0.032) ***	0.188	(0.063) **
공공, 사회, 개인서비스업	0.055	(0.023) **	0.075	(0.054)
ρ			0.000	(0.000)
Log pseudolikelihood	-10578.6		-2943.5	
표본수	10,766			

주: 1) 기준 집단은 남성 30대 가구주 고졸, 제조업 30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생산직임.

2) 동태적 확률효과 프로빗 추정 결과에서 시간 가변적인 변수의 평균과 연도 더미의 효과를 별도로 제시하지 않음.

3) $\rho = 0$ 의 우도비 검정 결과: $\chi^2(01) = 2.6e-04$ Prob $\geq \chi^2 = 0.494$

4) *는 10%, **는 5%, ***는 1% 수준에서 유의함

자료: 한국복지패널 1차~5차년도 취업자 연간패널자료

3. 비공식 근로와 빈곤간 동태적 변화

빈곤 탈출의 주요한 경로는 취업 상태로의 전환이지만, 빈곤 탈출률이 가장 높은 경로는 공식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전환하였을 때이다. 빈곤 탈출률은 공식 일자리를

유지하였을 때 76.8%, 비공식 취업자가 공식 일자리로 전환하였을 때 76.4%, 비취업자가 공식 일자리를 획득하였을 때 66.4% 순으로 나타난다. 한편 비빈곤층이 다음 해에 빈곤 상태로 전환하는 확률은 실직하였을 때 가장 크며, 이어서 비공식 일자리로 전환하였을 때이다.

〈표 10-11〉 일자리 특성 변화별 빈곤 상태의 변화(15~59세 근로능력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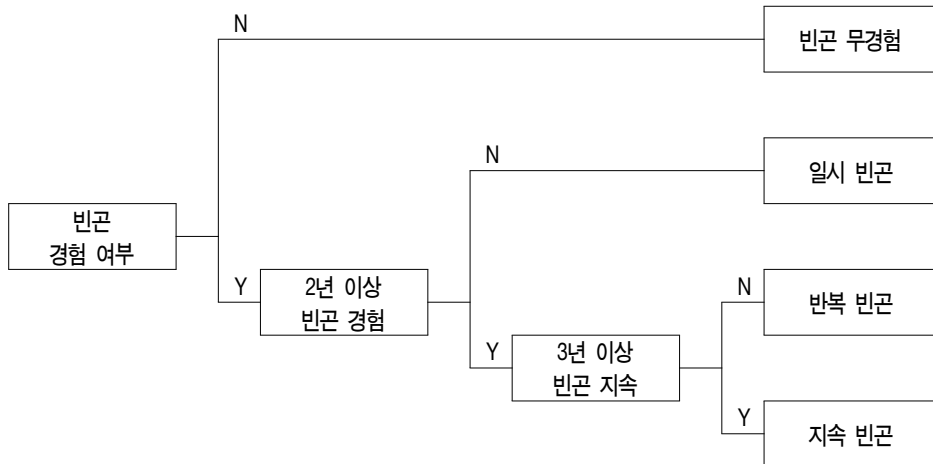
(단위: %)

	비빈곤→비빈곤 A	비빈곤→빈곤 B	빈곤→비빈곤 C	빈곤→빈곤 D	빈곤 유입률 B/(A+B)	빈곤 탈출률 C/(C+D)
공식 → 공식	95.8	1.6	2.0	0.6	1.6	76.8
공식 → 비공식	87.9	6.3	3.4	2.3	6.7	59.9
공식 → 비취업	80.9	13.1	1.6	4.4	13.9	26.8
비공식 → 공식	87.3	2.9	7.5	2.3	3.2	76.4
비공식 → 비공식	78.0	5.8	6.8	9.4	7.0	41.9
비공식 → 비취업	68.3	12.7	6.2	12.8	15.7	32.6
비취업 → 공식	76.1	5.5	12.2	6.2	6.7	66.4
비취업 → 비공식	67.9	6.5	12.0	13.7	8.7	46.6
비취업 → 비취업	76.3	6.3	5.6	11.8	7.6	32.3
전체	84.5	4.6	4.8	6.1	5.1	44.2

자료: 한국복지패널 1차~5차년도 연간패널자료

실직 위험이 높은 비공식 취업자는 소득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빈곤을 벗어나더라도 재빈곤화 가능성이 클 것이다. 이에 Fouarge and Layte(2005), 이병희(2010)의 빈곤 유형화 방식에 따라 5년간의 빈곤 이력 정보를 구성하여 빈곤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고려한 빈곤 유형을 구분하였다. 우선, 빈곤무경험층(the persistent non-poor)을 구분하고, 빈곤경험층은 해당 기간중 1년만 빈곤을 경험한 계층을 일시 빈곤(the transient poor), 1번 이상 빈곤했으되 매회당 빈곤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 반복빈곤(the recurrent poor), 최소한 연속된 3년 이상 빈곤한 지속빈곤(the persistent poor)로 분류하였다. 이 때 빈곤 시작시기 또는 빈곤 종료시기를 파악할 수 없는 좌측 또는 우측 절단(left or right censoring) 문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림 10-1] 빈곤이력에 따른 빈곤 유형 구분



<표 10-12>에는 비공식 근로 여부별로 빈곤 유형이 제시되어 있다. 우선 취업경험자 가운데 분석대상인 5년 동안 빈곤을 한 번 이상 경험하는 계층은 23.9%로 나타난다. 빈곤경험층의 구성을 보면, 취업경험자의 특성상 한 해만 빈곤을 경험한 일시빈곤이 가장 많으며, 이어서 빈곤을 반복하거나 경험하거나 연속된 2년 동안 빈곤을 경험한 반복빈곤, 연속된 3년 이상 빈곤한 지속빈곤 순으로 나타난다.

1차년도 일자리 특성별로 보면, 공식 취업자가 5년 동안 빈곤을 한 번 이상 경험하는 비중은 11.9%인데 비해, 비공식 취업자는 33.7%, 비취업자는 37.8%에 이른다. 또한 공식 취업자는 빈곤을 경험하더라도 일시적인 빈곤의 특성을 가지는 반면, 비공식 취업자와 비취업자는 상대적으로 반복빈곤과 지속빈곤의 비중이 높다. 흥미로운 것은 비취업자의 빈곤 경험률이 비공식 취업자에 비해 다소 높지만, 빈곤 유형은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이는 두 집단이 이질적인 집단이 아니라 비공식 근로와 비취업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집단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빈곤 유형별로 5년간의 누적 경험기간을 보면, 빈곤 경험층은 비공식 근로를 2.5년, 공식 근로를 1.3년, 비취업을 1.2년 경험한다. 빈곤 유형별로 보면, 연속된 3년 이상 지속적인 빈곤상태에 있는 집단에서도 비공식 근로가 3.0년에 이르며, 비취업은 1.4년에 그친다. 반복 빈곤층에서도 비공식 근로(2.5년)와 비취업(1.3년)을 합하여 3.8년에 이른다. 즉 빈곤을 지속하거나 반복하는 계층에서 비공식근로와 갖

은 실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10-12〉 비공식 근로와 빈곤 유형(15~59세 취업경험자)

(단위: %, 년)

		빈곤무경험	빈곤경험				전체
				일시빈곤	반복빈곤	지속빈곤	
전체		76.1	23.9 [100.0]	12.0 [50.2]	6.4 [26.8]	5.5 [23.0]	100.0
2005년 일자리 특성	공식근로	88.1	11.9 [100.0]	8.0 [67.0]	2.6 [21.4]	1.4 [11.6]	100.0
	비공식근로	66.3	33.7 [100.0]	15.2 [45.0]	9.5 [28.2]	9.0 [26.7]	100.0
	비취업	62.2	37.8 [100.0]	16.9 [44.7]	10.9 [28.9]	10.0 [26.4]	100.0
5년간 누적 경험기간	공식근로	2.9	1.3	1.8	1.2	0.6	2.6
	비공식근로	1.5	2.5	2.2	2.5	3.0	1.7
	비취업	0.6	1.2	1.0	1.3	1.4	0.7

주: []은 빈곤경험층 대비 구성비중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1차~5차년도 전체 연결패널자료

<표 10-13>은 빈곤 유형의 결정요인을 다항로짓모델(multinomial logit model)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이 때 기준 집단은 5년간 빈곤을 경험하지 않는 집단으로 설정하였다.

비공식근로 경험기간이 1년 증가할 때, 빈곤 무경험에 비해 일시빈곤 위험이 1.3배, 반복빈곤이 1.4배, 지속빈곤이 1.8배 증가한다. 비취업 경험기간이 1년 증가할 때는 일시빈곤의 상대적 위험이 1.4배, 반복빈곤이 1.7배, 지속빈곤이 2.1배 증가한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비공식근로와 비취업 경험이 빈곤 경험 가능성을 높이며, 특히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을 높인다.

〈표 10-13〉 빈곤 유형의 결정요인(취업경험자, 다항로짓)

	일시빈곤/빈곤무경험		반복빈곤/빈곤무경험		지속빈곤/빈곤무경험	
	상대 위험도	로버스트 표준오차	상대 위험도	로버스트 표준오차	상대 위험도	로버스트 표준오차
여성	1.053	(0.174)	1.258	(0.237)	1.980	(0.396)***
15~29세	1.317	(0.233)	0.463	(0.114)***	0.402	(0.119)***
40~49세	1.303	(0.162)**	1.160	(0.188)	1.342	(0.247)
50~59세	0.980	(0.171)	1.215	(0.263)	1.279	(0.288)
배우자	0.639	(0.126)**	0.448	(0.101)***	0.202	(0.048)***
가구원	1.268	(0.258)	2.295	(0.511)***	2.491	(0.668)***
중졸 이하	1.739	(0.247)***	2.182	(0.373)***	3.930	(0.705)***
초대졸	0.904	(0.157)	0.884	(0.203)	0.715	(0.241)
대졸 이상	0.591	(0.082)***	0.568	(0.106)***	0.413	(0.110)***
가구원수	1.072	(0.050)	1.086	(0.072)	1.230	(0.085)***
가구내 취업자수	0.554	(0.042)***	0.398	(0.039)***	0.303	(0.043)***
5년간 비공식근로 경험년수	1.259	(0.035)***	1.447	(0.054)***	1.834	(0.104)***
5년간 비취업 경험년수	1.387	(0.065)***	1.705	(0.098)***	2.131	(0.160)***
Log pseudolikelihood	-10665.1					
표본수	4,808					

주: 1) 일자리 특성 경험년수를 제외한 설명변수는 1차년도 기준임.

2) 기준 집단은 남성 30대 가구주 고졸임.

3) *는 10%, **는 5%, ***는 1% 수준에서 유의함.

자료: 한국복지패널 1차~5차년도 전체 연결패널자료

제5절 소결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가업을 기준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비공식 근로로 정의하여, 비공식 근로와 빈곤간의 관계를 정태적·동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빈곤층이 경험하는 비공식 근로의 특성을 밝히고, 취업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보험 정책과제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주요한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공식 근로는 취업자의 1/3을 상회하는데, 빈곤층에서 비공식 근로의 비중은 3/4에 이른다. 비공식 취업률은 최근 들어 소폭 감소하였지만, 빈곤층의 비공식 근로의 비중은 비빈곤층에 비해 2배를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둘째, 비공식 근로와 빈곤 결정간의 내생성을 통제한 추정에서, 빈곤층은 비빈곤층에 비해 비공식 취업 가능성이 58.8%p 높다. 이는 사회안전망이 미비한 상태에서 빈곤층은 비공식 근로에 비자발적으로 종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비공식 근로가 공식 근로로 이동할 가능성은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는 15.0%에 그치며, 분석기간인 5년 동안 38.9%만이 공식 근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향 이동 가능성이 낮다.

넷째, 비공식 근로 경험은 다음 해에도 비공식 근로를 지속할 확률을 59.4% 높이며, 이러한 비공식 근로의 지속성은 개인적인 이질성이 아니라 상태 의존성에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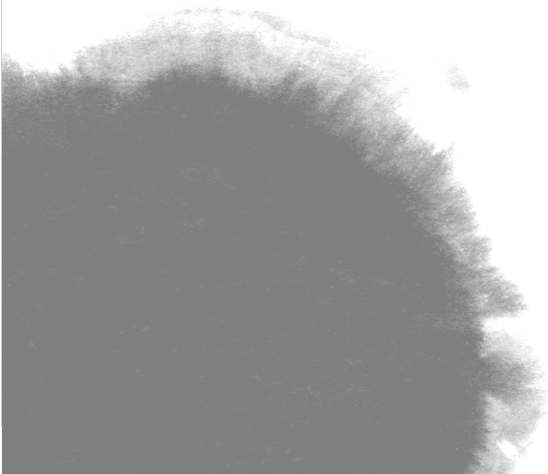
다섯째, 공식 근로로 전환할 때 빈곤 탈출률이 가장 높지만, 비공식 근로의 고착화 경향이 높으며, 이에 따라 빈곤을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비공식 근로의 지속성을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나에 따라 정책적인 대응은 달라질 수 있다. 주로 개인적 이질성에 기인한다면 비공식 근로의 지속성을 높이는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표적화하는 정책이 요구되는 반면, 상태의존성이 주된 요인이라면 비공식 근로를 억제하는 보편적인 정책이 보다 적절한 수단일 것이다. 비공식 근로의 고착화가 상태의존성의 측면이 강하며, 지속적 또는 반복적 빈곤의 원인이 된다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비공식 근로를 억제하고 공식 근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보편적인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은 사회보험 가입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사회보험의 보험적 기능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불평등을 오히려 생산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노동시장 지위가 사회보험으로부터의 배제로 이어지는 고리를 단절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은 공식 고용으로의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이 직면하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사회보험 가입은 취업 및 소득에 대한 공적 자료의 확보를 통해 근로기준, 최저임금, 고용서비스를 비롯한 노동시장정책·제도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이병희, 2011c). 본 연구는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을 빈곤 정책으로 한정하지 않고 공식 근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보여 준다.

11

근로장려세제 효과분석:
근로동기와 가공소득에 미친 영향



제1장 근로장려세제 효과분석: 근로동기와 가구소득에 미친 영향

제1절 서론

근로빈곤층의 증가는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절박한 사회문제의 하나이다.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빈곤선 부근에 머물고 있고, 복지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것은 사회통합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제3차 한국복지패널 조사자료를 사용하여 근로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적용실태를 분석한 홍경준(2010) 연구에 의하면 근로빈곤가구 중 일부는 사회안전망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거나 일부 사회복지제도에 의해서만 보호를 받고 있다. 예컨대 근로빈곤가구 중 일용직 가구의 38.89%, 자영자 가구의 67.94%, 근로가능 가구의 41.02%가 자활사업, 고용보험, 근로장려세제, 기초보장, 대인복지서비스 등 5개 종류의 사회안전망에서 완전배제되어 있는 것이다. 근로빈곤가구 중 사회안전망 포섭 비율이 상대적 가장 높은 상용직 가구의 경우에도 자활사업 1.27%, 고용보험 가입율 56.9%, 근로장려금 적용률 4.4%, 기초보장 23.0%, 대인복지서비스 51.4%에 그친다.

그동안 사회적 보호가 미흡했던 근로빈곤층에 대해 소득지원을 강화하고 또한 근로동기를 제고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는 한국판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라고 할 수 있는 근로장려세제를 2006. 12. 입법하였고, 시행준비 과정을 거쳐 2009년 9월부터 첫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였다. 이를 두고 근로장려세제가 과연 어떤 효과를 초래하고 있는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하고 있다.

근로장려세제의 시행효과는 제도의 입법 당시부터 논란의 대상이 된 사항이다(김재진·박능후, 2005).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던 논자는 근로장려세제가 또 다른 복지급여의 하나로서 정부의 재정지출만 야기하고, 수급자의 근로동기 강화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을 적극 주장하던 논자는 제도의 명칭부터 저소득근로가구에 대한 소득지원기능을 강조하여 도입되는 한국형 EITC를 ‘근로소득보전세제’로 지칭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수급가구의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효과가 있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제도 시행에 앞서 제도의 지향점을 설정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한 바가 있지만 실증 연구가 아닌 추론적 연구라는 한계를 가진다. 제도 시행을 전후하여 나온 일련의 연구들도(안종범·송재창, 2006; 전영준, 2008; 조선주, 2009; 최현수·이서현, 2010) 실증자료가 아니라 시뮬레이션에 의한 추론적 효과분석이라는 한계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

한국의 근로장려세제는 급여구조가 점증, 평탄, 점감구간으로 구성되어 미국 EITC와 매우 흡사함으로 파급효과도 상당 부분 미국과 비슷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EITC 시행 경험이 상당 기간 축적된 미국의 EITC 연구결과를 일정 부분 한국 상황에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구간별 적용대상자의 점유 비중, 가구 구성원의 특성 등에 따라 파급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한국의 근로장려세제 시행에 따른 실제적 효과는 미국의 결과와 상이할 수 있으며, 결국 시행 후 실증적 분석을 행한 연후에 한국 근로장려세제의 실제적 효과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제도시행에 의한 효과 발생은 당사자들이 제도를 충분히 인지하고, 인지된 제도내용에 의해 당사자들의 행태 변화가 유발되어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효과측정이 가능하려면 시행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따라서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일반인의 인지도가 낮고, 관련 실증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제도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은 다소 이르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 시행 초기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상태에서 나타나고 있는 초기 효과를 사실 그대로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는 향후 장기적인 효과검증시 시행효과의 변화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선을 제공하는 의미도 가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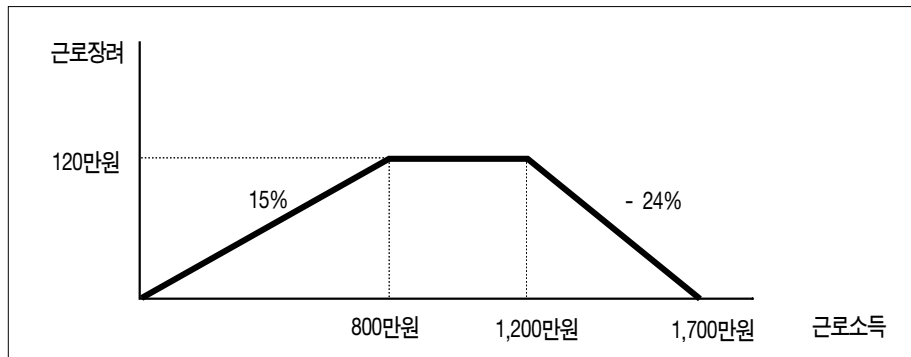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2009년부터 첫 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한 근로장려세제가 도입 당시 의도하였던 효과를 발생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즉, 근로장려세제 도입이 근로빈곤층의 근로의욕증진과 소득증진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그 효과를 시행 후 수집된 실증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2절 이론적 고찰

1. 근로장려세제의 내용과 근로유인 기제

2008년 근로소득을 기초로 2009년 9월 첫 급여가 지급된 근로장려세제의 대상자는 첫째, 18세 미만의 자녀를 1인 이상 부양하는 가구로서 둘째, 가구 총소득이 연 1700만원 미만이고, 셋째, 무주택이거나 만약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가액이 50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넷째, 일반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여야 한다. 근로장려세제에 의해 주어지는 급여의 명칭은 ‘근로장려금’이며, 급여수준은 수급가구의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점증구간, 평탄구간, 점감구간으로 구성되어 지급된다. 점증구간은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근로장려금도 증가하는 구간으로서 급여율은 15%이고 소득구간은 연소득 0~800만원이다. 평탄구간은 연소득 800만원~1200만원 구간이며, 최대급여액인 연 120만원이 일정하게 근로장려금으로 주어진다. 점감구간은 1200만원~1700만원 구간으로서 점감률은 -24%이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1-1] 근로장려세제 급여모형



이론적 관점에서 보면 EITC 시행에 따른 노동공급효과는 점증구간에서는 양의 대체효과와 부의 소득효과가 발생하며, 평탄구간에서는 대체효과는 없고 부의 소득효과만 발생하고, 점감구간에서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모두 부의 방향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근로장려세제의 적용을 받는 계층의 소득이 낮으므로 소득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아 점증구간에서는 소득효과를 상회하는 대체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1-1〉 근로장려세제 급여구간별 이론적 노동공급효과

급여구간	대체효과	소득효과	종합
점증구간	+	—	+
고정구간	0	—	—
점감구간	—	—	—

따라서 잠재적 수급대상자들의 소득분포가 어느 구간에 밀집되어 있느냐에 따라 전체적인 노동공급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즉, 수급대상자들이 점증구간에 보다 많이 분포되어 있으면 근로장려세제 시행의 결과 노동공급이 증가할 것이고, 점감구간에 보다 많이 밀집되어 있으면 노동공급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공급이 단순히 임금율의 변화에 따른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 자체에서 얻는 부가적인 효용이 있을 경우 노동자는 임금율의 변화에 관계 없이, 혹은 임금율의 변화에 매우 미미하게 반응하면서 노동공급을

결정할 수도 있다. 따라서 노동공급을 관찰할 경우 임금율의 변화에만 국한하지 말고,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가능한 많이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가구내 다른 가구원이 취업하여 가구소득이 증가할 경우 소득효과가 발생하게 됨으로 취업가구원 수는 특정 가구원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고려되어야 한다.

근로자의 노동공급 행태를 설명하는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model)에 의하면 개별 근로자는 노동을 통해 얻는 이익과 그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을 비교하여 자신의 이익이 최대화 되는 지점에서 노동시장 진입과 노동시간을 결정한다(Moffitt, 1992; Edin & Levin, 1997). 여기서 노동을 통해 얻는 이익은 기본적으로 금전적 보상인 임금이며, 비용은 여가의 상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가구내 돌봄을 요하는 아동의 존재는 근로자의 단위시간당 여가비용을 증가시켜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연령과 학력은 근로자의 인적자본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며, 그 결과 연령과 학력은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작용하게 된다.

경기변동모델은 근로자의 노동공급을 설명함에 있어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직업의 산업내 위상 등 거시경제적 변수들을 중시한다(Blank & Blinder, 1986). 경제성장률이 높으면 전반적인 고용량이 증가하게 되고, 성장산업에 소속된 직업은 수요 증가로 노동공급도 늘어나지만 사양산업은 노동수요 감소가 지속되면서 결국 노동공급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노동공급을 분석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변수는 근로자의 인적자본을 구성하는 인구사회적 요인은 물론 가구내 다른 가구원의 취업여부,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등 거시변수도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다.

2. EITC 효과에 대한 기존 문헌 분석

EITC 시행 경험에 상당 기간 축적된 미국의 경우 EITC 제도가 가져온 파급효과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는데 이론적인 예측과 달리 실증적인

연구는 EITC의 노동공급효과가 계층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EITC가 저소득근로자의 노동시간을 줄인 효과가 있었다는 실증연구(Browning, 1995)와 노동공급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실증연구(Eissa and Liebman, 1996; Meyer and Rosenbaum, 2001; Cancian and Levinson, 2006)가 있는가 하면, EITC가 총체적인 노동공급량을 늘렸다는 실증연구(Liebman, 1998)가 대립되고 있다. EITC가 고용이나 근로시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유로서 프로그램이 복잡하고, 잠재적 수급자들의 프로그램 이해도가 낮고, 노동시장의 여건이 근로시간을 조정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Cancian and Levinson, 2006).

소득증대 측면에서는 EITC 급여로 인해 가구소득이 증가하고, 그 결과 빈곤완화, 특히 아동빈곤완화에 크게 기여하였다(Greenstein, 2005; Ziliak, 2004). 또 다른 연구(Chetty and Saez, 2009)는 EITC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수급자의 노동공급과 소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EITC 급여 구간별로 급여액의 차이가 나는 것을 이해시킨 결과 수급자들은 자신들의 소득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행동하였다.

노동행태에 미친 효과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참여여부, 노동강도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다수의 연구(Dicket et. al., 1995; Blank, et al., 1999; Meyer, 2001; Grogger, 2003; Hotz, Mullin, and Scholz, 2005)에서 복지제도에 의존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여성들의 경우 EITC가 복지급여 대신 취업을 하도록 유도하는데 기여하였다는 공통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반면에 부부 가구의 경우 EITC는 한 배우자가 취업하고 있으면 다른 배우자는 집에 머물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Eissa and Hoynes, 2004; Ellwood, 2001).

기존 연구가 함의하는 바는 EITC 시행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선형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요인에 의해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EITC 시행으로 효과가 발생하려면 잠재적 수급자들이 제도를 인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 급여구조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도 시사해 주고 있다.

제3절 연구설계

1. 분석자료 및 조사설계

근로장려세제 효과평가는 잠재적 수급집단의 행태변화를 장기간에 걸쳐 파악하여야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잠재적 수급집단에 대한 실태조사가 반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적합한 자료로서 한국복지패널이 있다.

한국복지패널은 4차년도 조사에서 처음으로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조사항목을 추가하여 근로장려세제의 효과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하였고, 5차년도 조사에서는 인식 외에 급여신청여부, 수급액 등을 묻는 항목을 추가하였다. 5차년도 자료는 근로장려금이 처음 지급된 2009년 일년간의 가구소득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인데, 근로장려금은 그 정보의 일부에 해당한다.

한국복지패널 5차년도 조사는 원표본과 추가표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1차년도 조사착수 당시 구성되었던 7,072가구 중 4차년도까지 조사완료된 6,207가구는 원표본에 해당하며, 5차년도에서 추가된 359가구는 추가표본인데 이들을 합한 6,566가구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었다. 이 중에서 조사가 완료된 가구는 6,034가구이며, 이들이 기본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다. 다만 2008년~2009년간의 행태변화를 보는 본 연구의 특성상 5차 연도에서 새롭게 추가된 가구는 해당 정보가 없어 분석에서 제외되고, 4차 및 5차 연도에서 모두 조사된 5,922가구가 분석되었다.

동일 대상에 대해 매년 자료가 수집되는 복지패널을 사용하여 근로장려세제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은 이론모형측면에서 보면 장기적으로는 단순시계열설계(simple interrupted time-series design)에 해당한다⁵¹⁾. 이 경우 5차연도 기간 중에 주어진 첫 급여가 근로장려세제의 처치(treatment)에 해당하며, 이후 매년 자료수집은 반복적인 관측에 해당한다.

o1 o2 o3 o4 o5 X o6 ……

51) Rubin, Allen & Earl Babbie, *Research Methods for Social Work*, 4th edition. 2001. Wadsworth Publishing. Singapore.

그러나 단기적으로 근로장려세제의 첫 시행을 전후한 2008년과 2009년의 행태변화를 분석하는 본 연구는 사전사후검사설계(pertest-posttest design)에 해당한다.

o1 X o2

매년의 복지패널조사자료는 조사가 실시된 그 직전 해의 조사대상자들의 행태자료를 담고 있는데 2008년의 행태를 담고 있는 2009년 실태조사자료를 처치가 일어나기 전인 사전검사(o1)로 보는 이유는 최초의 근로장려금 지급이 2009년에 이뤄졌기 때문에 그 직전 해인 2008년에는 아직 근로장려세제에 의한 행태변화가 유발되지 않은 시기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근로장려금이 첫 지급된 2009년의 행태를 담고 있는 2010년 실태조사자료는 사후검사(o2)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채택한 연구방법의 기본틀은 사전사후검사설계에 기초하여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일어난 잠재적 수급대상자들의 행태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여기서 유념할 것은 복지패널 자료 수집시기와 근로장려세제 시행시기, 그리고 잠재적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의 행태변화시기 간의 관계이다. 시간적 순서를 보면 근로장려세제의 시행이 선행하고, 잠재적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의 행태변화는 후행한다. 이런 관점에서 근로장려세제의 시행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근로장려세제 초기 시행 효과를 측정하려고 할 때 가장 이상적인 조건은 특정 시점에 근로장려세제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제히 시행되는 것이다. 즉, 단기간 내에 정책적 충격(policy impact)이 주어지고, 그 충격을 전후하여 나타나는 행태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시기가 명백할 경우 효과측정의 시기 설정은 용이해진다. 그러나 근로장려세제의 실제 시행 과정은 간단치 않았다.

근로장려세제가 입안, 시행되기까지의 경과를 보면 정부가 이 체도를 도입하기로 한 정책결정은 2005. 8월에, 국회에서 관련 법규(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및 제100조의 5) 제정은 2006. 12. 26일에 이뤄졌고, 법의 공포일은 2006. 12. 30일이다. 이 때 시행시기는 2008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에 근로장려금을 처음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뒤이어 행정부에 의한 관련 시행령(2007. 2. 28)과 시

행규칙이 제정(2007. 3. 30) 되었다. 국회는 첫 급여가 지급되기 전인 2008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대폭 완화하였으며, 대폭 완화된 수급요건에 의거하여 국세청은 2009년 5월 지급신청을 접수하였고, 심사를 거쳐 2009년 9월 처음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였다.

이상의 경과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2008년 12월까지의 근로장려세제 시행을 위한 일련의 준비가 이뤄진 시기이고, 국민들이 근로장려세제를 직접적으로 대면하게 된 것은 2009년 5월의 지급신청과 같은 해 9월의 첫 근로장려금 수급을 통해서이다. 따라서 첫 지급이 이뤄진 2009년을 실질적인 제도 시행연도로 잡고, 그 직전 해인 2008년을 기준시점으로 설정하는 것은 나름대로 타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⁵²⁾.

일반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 시행시점을 2009년 5월~9월로 파악할 경우 이 시기는 본 연구에서 개념적으로는 시행 이후 기간으로 설정한 기간의 한 부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시행 이후 수급자의 행태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기간은 온전한 1년이 아니라 짧게는 3개월(2009년 10월~12월), 길게는 8개월(2009년 5월~12월)로 단축되지만 시행 2차년도 이후부터 효과를 측정한다면 온전한 1년을 단위로 효과발생을 분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효과 발생 기간 단축은 제도를 시행하는 첫 연도에는 불가피한 제약조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어떠한 사회정책도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일거에 시행될 수 없으며, 어느 정도 시행기간이 필요함으로 그 효과를 측정함에 있어 시행 첫해는 효과 발생 기간이 단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 시행 초기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은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제도 시행 초기 효과 표출이 불안정하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시행 초기 효과측정을 통해 미비점을 발견하여 수정을 가함으로써 제도의 조기정착에 기여할 수 있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도 시행 연륜이 쌓여감에 따라 시행효과도 변화하게 되는데, 초기 효과의 측정은 이후 시행효과 변화를 비교하는 준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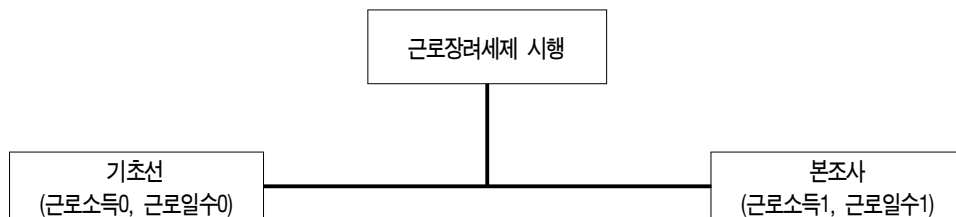
52) 2008년 외에 관련 법규가 공포되기 전인 2006년을 기준 시점으로 잡거나, 제도에 포함되지 않은 마지막 연도인 2007년을 기준 시점으로 설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어느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설정하느냐는 어떤 측면에서 효과를 측정하느냐에 크게 의존할 것이다

서도 활용될 수 있어 각 단계마다 행하는 시행효과 측정은 나름대로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2. 분석틀과 변수의 조작적 정의

소득증대와 근로동기 강화에 미친 근로장려세제 효과를 측정하는 논리틀은 다른 변수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근로장려세제 실시 전후의 임금소득과 근로일수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즉, 근로장려세제 시행이 소득증대에 미친 효과 여부는 근로장려세제 시행을 전후하여 나타나는 근로소득1과 근로소득0을 비교하는 것이고, 근로동기에 미친 효과 여부는 근로일수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그림 11-2] 근로장려세제 효과 측정 논리틀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가구근로소득변화는 1년간 가구원이 벌어들인 총근로소득의 차액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2009년 1년간 가구원이 벌어들인 총근로소득과 2008년 1년간 가구원이 벌어들인 총근로소득의 차액을 의미한다.

또다른 종속변수인 근로일수변화는 전체 가구원이 1년간 「취업자로서 일을 한 일수」의 변화를 의미한다. 예컨대 조사대상 기간 1년 중 10개월 동안 취업한 자가 월평균 20일 취업하였다면 이 사람의 1년간 근로일수는 200일이 되는 것이다. 이 역시 2009년 1년간 가구원이 취업자로서 일을 한 총근로일수와 2008년 1년간 가구원이 취업자로서 일을 한 총근로일수의 차이로 계산된다.

근로장려세제는 가구 단위로 소득과 재산, 아동의 존재 여부 등을 따져 급여를

지급함으로 본 연구에서 분석한 근로일수도 대상자의 임금근로, 자영업 등 근로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가구원 전체의 1년간 총근로일수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즉, 가구원 중 취업자가 지난 1년간 일을 한 근로일수의 총합을 그 가구의 근로시간으로 파악한 것이다.

〈표 11-2〉 주요 변수의 조작적 정의

구분	변수명	조작적 정의
종속 변수	가구임금소득변화	2009년 가구임금소득 - 2008년 가구임금소득
	가구총근로일수변화	2009년 가구총근로일수 - 2008년 가구총근로일수
독립 변수	가구주 연령	2009년 12월 기준 만 연령을 10년 단위로 묶어 순위화 10대=1, 20대=2, 30대=3, 40대=4, 50대=5, 60대 이상=6
	가구주 학력	초졸 이하부터 대학원재학 이상으로 순위화 초졸이하=1, 중졸이하=2, 고졸이하=3, 대졸이하=4, 대학원재학 이상 = 5
	가구원 수	2009년 기준 전체 가구원 수
	가구내 아동 수	2008년 기준 가구내 17세 이하인 가구원 수
	취업가구원 수	2009년 1년간 가구내 취업 경험이 있는 가구원 수
	임금근로가구원 수	2009년 1년간 주된 취업형태가 임금근로인 가구원 수
	상용근로가구원 수	2009년 1년간 주된 취업형태가 상용근로자인 가구원 수
	취업가구원 수 변화	2009년 취업가구원 수 - 2008년 취업가구원 수
	임금근로가구원 수 변화	2009년 임금근로가구원 수 - 2008년 임금근로가구원 수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	2009년 근로장려금 수급=1, 2009년 근로장려금 미수급=0
	근로장려세제 인지 여부	근로장려세제 인지 = 1, 근로장려세제 미인자=0 인 자: ‘들어본 적이 있고, 내용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혹은 ‘들어본 적이 있고, 내용도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다’로 응답한 경우 미인자: ‘들어본 적도 없고, 모른다’ 혹은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근로장려세제시행」은 잠재적 수급집단이 근로장려세제에 대해 인지하는 여부와 실제 근로장려금을 수급 여부로 개념화하였다. 즉, 근로장려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것은 실태조사에서 「근로장려세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고, 내용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하거나, 「들어본 적이 있고, 내용도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다」로 응답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에 반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들어본 적도 없고, 모른다」와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

다」고 응답한 경우이다. 아울러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는 2009년에 실제 급여를 받은 여부를 의미한다.

다만 여기서 유의를 요하는 것은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인지도는 가구주를 대상으로 수집한 정보라는 점이다. 복지패널 조사자료는 가구내 취업자 중 가구주 외의 가구원에 대해서는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인지도를 측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가구주 외 다른 취업가구원의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인지도는 가구주의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인지도와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분석상의 한계가 존재한다.

가구근로소득과 근로일수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로장려세제의 효과를 파악하려면 다른 요인들의 효과를 통제하여야 한다. 학력, 연령, 혼인상태 등 개인 근로자의 인적자본력을 구성하는 인구사회적 요인,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직업의 산업내 위상 등 거시경제적 변수들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분석단위가 개인이 아니라 가구 임금소득인 경우 가구내 취업가구원의 수, 특히 임금근로가구원의 수, 가구내 아동의 수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영향 요인 중에서 각 가구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제성장률, 실업률 등 거시변수는 고려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3. 분석모형

근로장려세제가 잠재적 수급가구의 소득변화 및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모형은 다수의 독립변수를 포함한 다중회귀분석모형이다.

$$Y = \beta_0 + \beta_1 X_1 + \beta_2 X_2 + \beta_3 X_3 + \dots + \beta_K X_K + \varepsilon_i$$

여기서 종속변수(y)는 「2008년~2009년간 가구임금소득의 변화액」과 「2008년~2009년간 가구총근로일수의 변화량」이다. 독립변수인 X_i 는 가구주 연령, 학력, 가구내 아동수, 가구원 수, 임금근로가구원 수, 임금근로가구원 수 변화, 상용근로자 수, 취업가구원 수, 취업가구원 수 변화,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인지 여부,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 등을 나타낸다.

제4절 분석결과

1. 조사대상의 특성

가. 전체 대상의 특성

5차 복지패널에 담겨 있는 전가구의 특성을 가구주에 대한 개인적인 속성과 가구의 속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분석대상 가구주 5,884명의 연령 분포는 60대 이상(31.3%)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40대(24.2%), 50대(21.6%), 30대(19.0%), 20대(3.9%) 순이다. 가구주의 학력은 고졸이하(33.1%)의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초졸이하(21.6%), 대졸이하(21.0%), 중졸이하(12.2%), 전문대졸이하(7.9%), 대학원 입학이상(4.2%) 순이다.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가구주의 인지도를 보면 이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가구주의 비율은 10.2%에 그치며, 모르고 있는 비율이 89.8%로서 현저히 높다.

〈표 11-3〉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제도에 대한 인지도

특성		구분	구성 비율(%)
연령 (n=5,884)	20대 미만		0.0
	20대		3.9
	30대		19.0
	40대		24.2
	50대		21.6
	60대 이상		31.3
	합계		100.0
학력 (n=5,884)	초등졸 이하		21.6
	중학교졸 이하		12.2
	고등학교졸 이하		33.1
	전문대졸 이하		7.9
	대학교졸 이하		21.0
	대학원입학 이상		4.2
	합계		100.0
근로장려세제 인지여부 (n=6,207)	알고 있다		10.2
	모른다		89.8
	합계		100.0

조사대상 가구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구원 수의 비율은 4명 가구의 비율이 26.7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2명(22.87%), 3명(20.97%), 1명(20.19%), 5명(7.32%) 순이다. 아동 수의 경우 아동이 없는 가구의 비율이 61.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2명(19.1%), 1명(15.6%), 3명(3.3%), 4명 이상(0.6%) 순이다. 근로장려세제의 수급요건으로 가구내 1명 이상의 부양아동을 요구함으로 절반 이상의 가구(61.5%)가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취업가구원 수의 경우 가구내 취업가구원이 1명 있는 경우(40.3%), 2명(31.7%), 3명 이상(13.3%) 순이고, 취업가구원이 없는 비율도 14.8%에 이른다. 임금근로 가구원 수는 1명(40.9%), 2명(25.0%), 3명이상(7.9%) 등이고, 임금근로 가구원이 없는 가구 비율은 26.3%이다. 가구내 상용근로자 수는 전혀 없는 경우(54.7%), 1명(34.4%), 2명(10.3%), 3명이상(0.7%) 순이다.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는 수급한 가구비율이 1.5%에 불과하고, 절대다수의 가구(98.5%)가 근로장려금을 수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연간 임금소득수준을 보면 3,000만원 이상인 가구의 비율이 38.27%이며, 다음으로 500만원 미만(30.61%), 1,500만~2,000만원 미만(6.54%), 2,000만~2,500만원 미만(6.46%), 1,000만~1,500만원 미만(6.29%), 500만~1,000만 미만(6.17%), 2,500만~3,000만원 미만(5.66%)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1-4〉 전체 가구 특성별 구성

특성	구분	구성 비율(%)
가구원 수 (n=6,204)	1명	20.19
	2명	22.87
	3명	20.97
	4명	26.70
	5명	7.32
	6명	1.66
	7명 이상	0.28
	합계	100.0
아동수 (n=6,207)	0명	61.5
	1명	15.6
	2명	19.1
	3명	3.3
	4명 이상	0.6
	합계	100.0
취업가구원 수 (n=5,884)	0명	14.8
	1명	40.3
	2명	31.7
	3명 이상	13.3
	합계	100.0
임금근로 가구원 수 (n=5,884)	0명	26.3
	1명	40.9
	2명	25.0
	3명 이상	7.9
	합계	100.0
상용근로자 수 (n=5,884)	0명	54.7
	1명	34.4
	2명	10.3
	3명 이상	0.7
	합계	100.0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 (n=6,207)	수급	1.5
	미수급	98.5
	합계	100.00
가구 연간 임금소득 (n=6,204)	500만 미만	30.61
	500만 ~ 1,000만 미만	6.17
	1,000만 ~ 1,500만 미만	6.29
	1,500만 ~ 2,000만 미만	6.54
	2,000만 ~ 2,500만 미만	6.46
	2,500만 ~ 3,000만 미만	5.66
	3,000만 이상	38.27
	합계	100.0

나.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가구의 특성

제5차 복지패널은 2009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99가구⁵³⁾를 담고있다. 각 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액수를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최고급여수준인 120만원을 수급한 사례가 36가구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8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사례가 13가구이며, 20만원 미만 사례도 13가구로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평균 수급액은 76.7만원이다.

〈표 11-5〉 근로장려금 수준별 가구수 분포

급여수준	가구수
20만원 미만	13
20만원 ~ 40만원 미만	11
40만원 ~ 60만원 미만	12
60만원 ~ 80만원 미만	9
80만원 ~ 100만원 미만	13
100만원 ~ 120만원 미만	5
120만원	36
합계	99

근로장려금을 받은 가구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복지패널 자료상에 제시되어 있는 가구구분을 보면 2008년 소득기준 저소득가구 31%, 일반가구 69%로 구성되어 있다. 수급가구의 구성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가구보다 일반가구의 비율이 더 높은 점은 일반적 예상과 다른 결과이다. 이를 좀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수급가구의 경상소득분포를 보면 다음 표와 같다.

53) 제5차 자료에는 표본가중치를 가한 후 근로장려금 수급사례가 100가구로 나오나 이 중 한가구는 제4차 패널에서 조사되지 않아 본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그 결과 99가구가 분석되었다.

〈표 11-6〉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의 연도별 경상소득 분포

소득구간	연도별 가구 사례수	
	2008년	2009년
800만원 미만	0	0
800 ~ 1,200만원 미만	3	1
1,200 ~ 1,700만원 미만	8	11
1,700 ~ 3,000만원 미만	40	35
3,000 ~ 4,000만원 미만	38	26
4,000만원 이상	9	26
합계	99	99
평균값	2,813만원	3,189만원

2008년 임금소득을 기준으로 가구임금소득 분포를 보면 점증구간에 해당하는 연간 800만원 이하의 임금소득은 12가구, 평탄구간에 해당하는 800~1,200만원 수준은 12가구, 점감구간인 1,200~1,700만원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가구는 14가구가 있다. 그 외에 1,700~3,000만원 미만가구가 37가구이며, 3,000~4,000만원 가구가 20가구, 4,000만원 이상인 가구도 4가구가 존재한다.

〈표 11-7〉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의 가구임금소득 분포

소득구간	연도별 가구 사례수	
	2008년	2009년
800만원 미만	12	14
800 ~ 1,200만원 미만	12	6
1,200 ~ 1,700만원 미만	14	16
1,700 ~ 3,000만원 미만	37	34
3,000 ~ 4,000만원 미만	20	17
4,000만원 이상	4	12
합계	99	99
평균값	2,079만원	2,258만원

2. 가구소득 변화 분석

복지패널에 담겨 있는 가구수는 6,000가구를 조금 상회한다. 이들 중 가구의 연간 임금소득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비율이 38.27%에 이른다. 가구소득이 고정적이지 않고 매년 상당한 진폭의 변동을 보이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상위소득을 보이는 가구는 연소득 1,700만원 이하라는 근로장려세제 수급요건과는 거리가 먼 집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근로장려세제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 조사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보다 소득수준 측면에서 근로장려세제에 포함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진 집단으로 대상 범위를 좁혀 분석하는 것이 효과 측정의 정밀성을 더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분석대상을 가구근로소득 1,700만원 이하인 가구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첫째, 가구의 매년 소득수준이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를 오가는 변동률이 높아 2년간에 걸친 가구소득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상당 정도 폭을 두고 가구소득 수준을 설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첫 해의 가구근로소득수준이 높아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의 경우에도 다음 해에는 가구근로소득 수준이 낮아져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므로, 잠재적 수급가능 집단을 폭넓게 설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 다른 고려사항으로서 조사표 상에 나타나 있는 임금소득의 내역을 보면 「기본급여,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경상적으로 매월 지급된 수당, 성과급, 소득공제 환급분, 판공비, 복지카드, 회사에서 내준 자동차 유지비 및 휴대폰 요금, 무료 중식」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근로장려세제에서 상정하고 있는 임금소득보다 그 범위가 넓은 점이다. 국세청에서 파악하는 임금소득은 기본급여,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경상적으로 매월 지급된 수당, 성과급까지는 포함하지만 소득공제 환급분, 판공비, 복지카드, 회사에서 내준 자동차 유지비 및 휴대폰 요금, 무료 중식 등은 임금소득으로 포착하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포착하기 힘든 항목들이다. 따라서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가구임금소득은 국세청 자료상으로 포착되는 가구임금소득 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두 가지 사항을 감안하면, 분석대상의 가구임금소득 수준은 적어도 연간

3,000만원까지는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좀 더 넓혀 연소득 4,000만원까지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가구임금소득을 몇 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가. 가구임금소득 연 3,000만원 이하 경우

2009년 가구임금소득이 연 3,000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세제의 소득증대 효과를 분석한 결과가 다음 표에 정리되어 있다. 다변량회귀분석모형을 stepwise 방식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가구임금소득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어 투입된 11개의 독립변수 중 2개의 독립변수(가구주 연령, 가구내 아동 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개 변수는 모두 가구의 임금소득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컨대 임금근로가구원 수가 1명 증가하면 연간 가구임금소득이 1,471만원 증가하며, 취업가구원이 1명 증가하면 연간 143만원의 가구임금소득이 증가한다.

〈표 11-8〉 가구임금소득변화 분석결과: 가구임금소득 연 3000만원 이하 경우

변수	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β		
포함된 변수	(상수)	517.445	73.706		7.020	.000
	임금근로가구원수 변화	1,471.348	58.697	.685	25.067	.000
	취업가구원 수 변화	-609.708	59.420	-.282	-10.261	.000
	가구주 학력	-100.196	15.057	-.101	-6.654	.000
	가구원수	-108.510	19.626	-.100	-5.529	.000
	임금근로가구원수	-225.758	47.105	-.125	-4.793	.000
	취업가구원수	143.800	44.679	.090	3.218	.001
	근로장려금 수급여부	334.193	154.942	.032	2.157	.031
	근로장려세제 인식여부	161.053	78.300	.031	2.057	.040
	상용근로자수	106.281	52.708	.032	2.016	.044
		β 입력	t	유의확률	편상관계수	공선성 통계량/공차
제외된 변수	가구주 연령	-.014	-.816	.414	-.013	.654
	가구내 아동수	.035	1.612	.107	.026	.433

Adjusted R-squared: 0.239
Model significance level 0.000 분석 사례수: 4,044

이에 반해 취업가구원 수 1명이 증가하면 2008년에 비해 2009년의 가구임금소득이 609.7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취업가구원의 증가가 임금근로자가 아닌 비임금근로자의 증가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유추된다⁵⁴⁾. 즉, 실직 중이던 가구원이 비임금근로자로 새로 취업할 경우 가구내 취업가구원 수는 증가하고 총소득도 증가하지만 가구의 임금소득은 현상유지를 보이거나 오히려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분석결과표는 2008년~2009년間に 가구주 학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에서 임금소득이 오히려 줄어들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임금근로가구원 수 자체는 변화가 없는 가구에서는 임금근로가구원 수가 많은 가구가 임금근로가구원 수가 적은 가구에 비해 2008년~2009년間に 가구임금소득이 오히려 줄어들었음을 보여준다.

분석의 초점이 되는 근로장려세제의 시행 효과를 보면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도록 통제된 상태에서 2009년 근로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받지 않은 가구에 비해 가구임금소득이 연간 334만원 증가하였다($p=0.031$). 즉, 근로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2008년에 비해 2009년 가구임금소득이 334만원 증가한 것이다. 또한 근로장려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가구는 근로장려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가구에 비해 연간 가구임금소득이 161만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40$). 요약하면, 근로장려세제의 시행은 가구임금소득이 연간 3,000만원 이하인 가구에서 가구의 근로소득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대시킨 효과를 유발하였다.

나. 가구임금소득 연 4,000만원 이하 경우

분석대상 가구 범위를 좀 더 넓혀 가구임금소득 연 4,000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세제의 시행효과를 검증한 결과가 다음 표에 정리되어 있다.

54) 이러한 결과는 다항분석에서 각 항의 계수는 함께 투입된 다른 모든 변수의 영향력을 배제한 상태에서 그 변수만의 효과를 나타낸 것에서 연유한다. 즉, 종속변수인 가구임금소득에 미치는 각 독립변수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임금근로가구원 수의 변화」와 「취업가구원 수의 변화」를 독립변수로 동시에 투입한 경우, 「취업가구원 수 변화」의 계수(coefficient)의 의미는 「임금근로가구원 수」 변화가 가구임금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제외하고 임금근로가구원이 아닌 다른 취업자 즉, 「비임금근로 가구원 수」의 변화에 의해 유발되는 효과만을 표시하는 것이다.

〈표 11-9〉 가구임금소득변화 분석결과: 가구임금소득 연 4,000만원 이하 경우

변수	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β		
포함된 변수	(상수)	470.540	73.906		6.367	.000
	임금근로가구원수 변화	1,378.779	48.813	.654	28.246	.000
	취업가구원수 변화	-549.425	49.422	-.257	-11.117	.000
	가구주 학력	-84.222	13.699	-.087	-6.148	.000
	가구원수	-117.074	20.325	-.112	-5.760	.000
	상용근로자수	160.115	36.887	.060	4.341	.000
	근로장려금 수급여부	330.413	135.736	.033	2.434	.015
	가구내 아동의 수	75.914	30.215	.049	2.512	.012
제외된 변수	근로장려세제 인식여부	145.912	67.255	.030	2.170	.030
		β 입력	t	유의확률	편상관계수	공선성 통계량/공차
	가구주 연령	-.004	-.229	.819	-.003	.573
	임금근로가구원수	-.023	-1.261	.207	-.019	.546
	취업가구원수	.028	1.455	.146	.022	.486

Adjusted R-squared: 0.240
Model significance level 0.000 사례수: 4,684

분석대상을 가구임금소득 연 4,000만원 이하로 확대한 경우에도 근로장려세제의 소득증대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연간 4,000만원 이하의 가구근로소득을 가진 가구 중에서 2009년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수급하지 않은 가구에 비해 2009년 근로소득이 2008년 근로소득보다 330.4만원 높다($p=.015$). 또한 근로장려세제에 대해 알고 있는 가구는 모르고 있는 가구에 비해 가구의 연간 임금소득이 145.9만원 높다($p=.030$).

다. 가구임금소득 연 5,000만원 이하 경우

분석대상을 가구임금소득 연 5,000만원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여 분석한 결과가 다음 표에 정리되어 있다. 분석대상을 가구임금소득 연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면 「근로장려금 수급여부」 변수만 유의미한 소득증대 효과를 유발하고($p=0.004$),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인식여부」 변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임금소득수준이 높아 근로장려세제 적용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분석대상 내에 많이 포함됨으로써 근로장려세제의 영향을 받는 가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표 11-10〉 가구임금소득변화 분석결과: 가구임금소득 연 5,000만원 이하 경우

변수	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β		
포함된 변수	(상수)	442.666	72.006		6.148	.000
	임금근로가구원수 변화	1,418.375	47.831	.657	29.654	.000
	취업가구원수 변화	-564.952	48.457	-.258	-11.659	.000
	가구주 학력	-77.848	12.987	-.080	-5.994	.000
	상용근로자수	181.033	32.491	.075	5.572	.000
	가구원수	-105.547	19.242	-.100	-5.485	.000
	가구내 아동의 수	87.240	27.936	.057	3.123	.002
	근로장려금 수급여부	369.655	128.308	.036	2.881	.004
		β 입력	t	유의확률	편상관계수	공선성 통계량/공차
제외된 변수	가구주 연령	-.022	-1.317	.188	-.019	.568
	임금근로가구원수	-.011	-.612	.541	-.009	.518
	취업가구원수	.030	1.626	.104	.023	.473
	근로장려세제 인식여부	.025	1.918	.055	.028	.929
Adjusted R-squared: 0.240						
Model significance level 0.000 사례수: 5,164						

가구임금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들을 분석대상으로 많이 포함하게 되면 근로장려세제에 영향을 받는 대상 가구의 비중이 줄어들으로써 근로장려세제의 시행 효과가 제대로 포착되지 않게 되는데, 이는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다음 표는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정리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면 「근로장려금 수급여부」 변수와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인식여부」 변수 모두 유의미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즉, 근로장려세제의 시행이 잠재적 수급자의 근로소득을 증대시키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근로장려세제의 잠재적 수급대상은 저소득 가구이며, 이들 중에서도 근로장려금을 받는 가구의 비율이 매우 낮은 현 상황에서 분석대상을 고소득층이 많이 포함된 일반가구로 확대해 설정하게 되면 잠재적 수급 집단의 반응이 분석과정에서 반영되는 비중이 낮아져 근로장려세제의 효과가 미미하거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11-11〉 가구임금소득변화 분석결과: 전가구

변수	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β		
포함된 변수	(상수)	135.437	62.166		2.179	.029
	임금근로가구원수 변화	1,505.478	66.793	.484	22.539	.000
	취업가구원수 변화	-605.594	68.047	-.191	-8.900	.000
	상용근로자수	291.726	35.798	.105	8.149	.000
	가구원 수	-106.817	26.108	-.073	-4.091	.000
	가구내 아동의 수	83.674	35.676	.040	2.345	.019
		β 입력	t	유의확률	편상관계수	공선성 통계량/공차
제외된 변수	가구주 연령	-.003	-.208	.835	-.003	.699
	가구주 학력	-.013	-.956	.339	-.012	.800
	근로장려금 수급여부	.017	1.403	.161	.018	.987
	임금근로가구원수	.018	.973	.331	.013	.449
	취업가구원수	.025	1.397	.162	.018	.448
	근로장려세제 인식여부	.004	.312	.755	.004	.961
Adjusted R-squared: 0.134						
Model significance level 0.000				사례수: 6,207		

3. 근로시간 변화 분석

근로시간변화 분석의 경우에도 앞서 가구근로소득 분석시에 사용한 가구근로소득 수준별 단계적 분석을 행하였다.

가. 가구임금소득 연 3,000만원 이하 경우

가구임금소득 연 3,000만원 이하 가구에 대한 총근로일수변화를 분석한 결과가 다음 표에 정리되어 있다. 취업가구원 수가 1명 늘어나면 가구총근로일수가 126.2일 증가하며, 반면에 임금근로가구원 수가 1명 늘어나면 가구의 총근로일수는 47.1일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견 상호모순적으로 보이는 두 변수의 영향력은 임금근로가구원 수가 늘어나면 그 대신 보다 근로시간이 많았던 다른 형태의 취업자수가 감소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표 11-12〉 가구 총근로일수변화 분석결과: 가구임금소득 연 3,000만원 이하 경우

변수	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β		
포함된 변수	(상수)	35.992	10.440		3.447	.001
	취업가구원수 변화	126.243	4.262	.509	26.619	.000
	임금근로가구원수 변화	-47.154	4.193	-.193	-11.246	.000
	가구주 연령	-.437	.156	-.033	-2.798	.005
	가구원수	-8.335	1.836	-.062	-4.539	.000
	근로장려세제 인식 여부	18.622	6.960	.028	2.676	.007
	가구내 아동의 수	7.867	2.984	.038	2.636	.008
		β 입력	t	유의확률	편상관계수	공선성 통계량/공차
제외된 변수	가구주 학력	-.005	-.467	.641	-.005	.759
	근로장려금 수급여부	.007	.712	.477	.008	.925
	임금근로가구원수	-.001	-.084	.933	-.001	.633
	취업가구원수	.012	.847	.397	.009	.521
	상용근로자수	-.017	-1.655	.098	-.018	.892
Adjusted R-squared: 0.142						
Model significance level 0.000				사례수: 4,044		

근로장려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가구의 경우 그렇지 못한 가구에 비해 가구총근로일수가 18.6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p=0.007$). 이에 반해 근로장려금 수급여부는 가구의 근로시간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두 사항을 결합하면 근로장려금 수급 자체 보다는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인식만으로도 근로시간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가구임금소득 연 4,000만원 이하 경우

분석대상을 가구임금소득 연 4,000만원 이하로 확대하여도 결과는 유사하다. 근로장려세제 시행을 대변하는 두 가지 변수 중 「근로장려세제 인식 여부」 변수만이 유의미하게 가구의 총근로일수 변화를 유발하고 있고($p=0.012$),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근로장려세제를 알고 있는 가구는 그렇지 못한 가구에 비해 가구 총 근로일수가 15.874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13〉 가구 총근로일수변화 분석결과: 가구임금소득 연 4,000만원 이하 경우

변수	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β		
포함된 변수	(상수)	22.085	9.814		2.250	.024
	취업가구원수 변화	122.168	4.111	.479	29.717	.000
	임금근로가구원수 변화	-44.744	4.161	-.180	-10.752	.000
	가구주 연령	-.294	.151	-.022	-1.942	.052
	근로장려세제 인식 여부	15.874	6.334	.024	2.506	.012
	임금근로가구원수	9.579	2.385	.049	4.016	.000
	가구원수	-7.468	1.955	-.055	-3.819	.000
	가구내 아동의 수	8.655	2.892	.043	2.993	.003
		β 입력	t	유의확률	편상관계수	공선성 통계량/공차
제외된 변수	가구주 학력	.004	.324	.746	.003	.737
	근로장려금 수급여부	.014	1.395	.163	.014	.924
	취업가구원수	.027	1.438	.150	.014	.244
	상용근로자수	.000	.010	.992	.000	.735
Adjusted R-squared: 0.136						
Model significance level 0.000 사례수: 4,684						

다만 분석대상 범위를 가구임금소득 연 3,000만원에서 연 4,000만원으로 확대하였을 때 가구의 총근로일수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들에는 약간의 변화가 일어났다. 즉, 연 3,000만원 이하 가구의 경우 가구 총근로일수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임금근로가구원 수」 변수가 연 4,000만원 이하 가구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변수로 나타난 것이다.

다. 가구임금소득 연 5,000만원 이하 경우

분석대상을 가구임금소득 연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한 경우에도 앞서 분석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관찰 대상인 「근로장려금 수급여부」는 가구 총근로일수 변화에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로장려세제 인식 여부」는 유의미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p=.000$). 이 경우 근로장려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가구는 그렇지 못한 가구에 비해 연간 근로일수가 21.179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가구원 수가 늘어나면 가구 총근로일수가 증대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지만, 가구원 수 자체는 상반된 효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가구원 수 증대가 노인

과 학생 등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 수가 늘어나면 그 만큼 취업에 종사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의 기회가 제약을 받는 것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표 11-14〉 가구 총근로일수변화 분석결과: 가구임금소득 연 5,000만원 이하 경우

변수	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β		
포함된 변수	(상수)	9.989	4.369		2.286	.022
	취업가구원수 변화	118.140	4.091	.451	28.881	.000
	임금근로가구원수 변화	-40.032	4.108	-.157	-9.746	.000
	근로장려세제 인식 여부	21.179	5.981	.033	3.541	.000
	임금근로가구원수	11.940	2.186	.062	5.461	.000
	가구원 수	-10.074	1.903	-.074	-5.294	.000
	가구내 아동의 수	12.952	2.532	.064	5.114	.000
제외된 변수		β 입력	t	유의확률	편상관계수	공선성 통계량/공차
	가구주 연령	-.017	-1.503	.133	-.014	.662
	가구주 학력	.014	1.447	.148	.014	.886
	근로장려금 수급여부	.010	1.077	.281	.010	.934
	취업가구원수	.027	1.472	.141	.014	.232
	상용근로자수	-.007	-.678	.498	-.007	.717
	Adjusted R-squared: 0.131					
Model significance level 0.000				사례수: 5,164		

이러한 분석결과는 분석대상을 전체 가구로 확대한 경우에도 유사하다. 여전히 근로장려세제 인식 여부는 가구 총 근로일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p=.013$), 근로장려금 수급여부는 별다른 영향력이 없다. 앞서 근로소득변화를 분석할 때는 소득수준에 따라 근로장려금 수급여부가 소득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발생하였지만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 소득단계별 분석에서 단지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인식 여부만이 가구의 근로시간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대해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조사대상자에 포함된 근로장려금 수급자 수가 너무 적어 그 효과가 미미하게 반영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경우라면 향후 근로장려세제가 확대 시행되거나, 조사표본에 보다 많은 근로장려금 수급자가 포함되게 되면 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포착되고, 분석될 것이다.

둘째,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만으로도 근로시간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자신들의 근로소득에 기초하여 정부가 사후적으로 현금을 지급(근로장려금)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자는 그러한 인식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일을 더 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근로일수를 늘려 소득이 증가한 결과 자신의 소득수준이 수급자격의 범위를 상회해버림으로써 실제 사후적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인식이 근로시간 증대를 유발하지만 정작 근로장려금 수급으로는 귀결되지 못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표 11-15〉 가구 총근로일수변화 분석결과: 전체 가구

변수	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β		
포함된 변수	(상수)	22.008	8.633		2.549	.011
	취업가구원수 변화	112.744	3.859	.426	29.215	.000
	임금근로가구원수 변화	-30.635	3.878	-.119	-7.899	.000
	임금근로가구원수	14.415	2.053	.079	7.021	.000
	가구주 연령	-.260	.136	-.020	-1.909	.056
	가구원수	-8.619	1.774	-.064	-4.859	.000
	가구내 아동의 수	7.462	2.498	.038	2.987	.003
	근로장려세제 인식여부	13.161	5.305	.021	2.481	.013
		β 입력	t	유의확률	편상관계수	공선성 통계량/공차
제외된 변수	가구주 학력	.009	-.016	.987	.000	.697
	근로장려금 수급여부	.012	1.384	.166	.012	.951
	취업가구원수	.032	1.788	.074	.016	.215
	상용근로자수	-.003	-.283	.777	-.003	.615
Adjusted R-squared: 0.135						
Model significance level 0.000 사례수: 6,207						

제5절 소결 및 정책적 함의

1. 소결 및 정책적 함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근로장려세제는 많은 국민들의 관심 속에 시행에 착수하였다. 2009년 9월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근로장려세제는 시행 초기 모든 사회정책이 직면하는 다양한 행정적 문제를 순조롭게 극복하면서 저소득근로계층을 지원하는 사회정책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그러나 근로장려세제가 보다 공고하게 뿌리내리려면 애초에 이 제도를 도입한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그 효과가 검증되어야 한다.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기대는 다양하지만 가장 중심적인 역할기대는 저소득근로가구의 소득증대와 근로동기강화이다. 이는 기존의 소극적 사회복지제도가 이루지 못한 역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생산적 복지와 일을 통한 적극적 복지를 강조하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역할기대이기도 하다.

근로장려세제가 과연 이러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파악하고자 한 본 연구는 근로장려세제가 도입, 시행된 시점을 전후하여 잠재적 수급집단이 보이는 행태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분석해 내었다. 물론 이러한 분석 결과는 시행 초기의 한정된 자료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잠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첫째, 근로장려세제는 잠재적 수급가구의 근로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의 근로소득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근로장려세제의 시행효과를 측정했을 때 근로장려세제에 대해 인식을 가진 가구는 그렇지 못한 가구에 비해, 그리고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가구는 지급받지 않은 가구에 비해 가구의 근로소득이 유의미하게 증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할 당시 기대했던 소득증대효과가 일정 정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 근로장려금 수급집단의 규모가 작고,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상황임으로 본 연구에서 분석된 근로장려세제의 소득증대효과는 일정한 제약 조건 하에서 신중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근로장려세제가 잠재적 수급가구의 근로시간 증대에 미친 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에도 가구의 근로시간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타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근로장려세제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 근로장려세제에 대해 인식을 가지고 있는 가구는 그렇지 못한 가구에 비해 가구의 총근로일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근로장려금 수급 자체는 가구의 근로일수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근로장려세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보다 많은 저소득근로계층이 이 제도를 인지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자발적으로 근로동기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근로장려금을 실제 지급받은 가구의 임금소득 분포가 사전적으로 예상하는 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현행법상으로는 가구총소득 연 1,700만원 이하의 가구만 수급자격을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수급가구의 총소득은 이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조세행정상의 가구 범위 및 소득의 개념이 사회통념상의 가구범위 및 소득개념과 다른 점에 그 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근로장려세제의 효과를 검증하는 경우에도 가구소득을 2,000만원 이하로 설정하면 유의미한 효과가 분석되지 않으나, 분석대상 소득수준을 4,000만원으로 설정하면 유의미한 효과가 포착되는 점과도 연관된 문제이다. 다만 이러한 불일치가 함의하는 바는 근로장려세제에서 대상으로 잡고 있는 가구의 개념이 사회통념상의 가구 개념과 상당 정도 거리가 있음으로 해서 근로장려세제가 발휘할 수 있는 현실적 효과가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조세행정상의 가구 및 소득 개념과 사회통념상의 가구 및 소득개념을 면밀히 비교분석하여 그 차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 연구의 한계

근로장려세제의 정책효과를 분석하고자 한 본 연구는 제도의 시행 초기가 가지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과 연구방법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잠재적 수급대상자의 인지도가 낮고, 인지하는 경우에도 그 지식 정도가 불완전한 까닭에 이들의 제도인지 여부를 변수로 사용하여

근로장려세제 효과를 측정한 것 역시 일정 정도 불완전함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다룬 근로장려세제의 시행 효과는 개념적으로는 제도 시행을 전후한 1년간의 시행효과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최대 7개월, 최소 4개월의 정책효과를 분석한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는 잠재적 수급대상자에게 정책 시행의 충격(impact)이 실질적으로 가해진 시기는 근로장려금 지급신청을 받은 2009년 5월부터 근로장려금 첫 지급이 이뤄진 2009년 9월까지의 기간임으로 정책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 기간은 1년이 아니라 최대 7개월(5월 이후 12월말까지)에서 최소 4개월(9월 이후 12월 말까지)에 불과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제도 시행 초기의 정책효과를 분석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직면하는 상황이라 하겠다. 따라서 근로장려세제의 시행효과가 실제보다 과소평가될 소지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향후 효과분석이 지속되면 최소한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가해진 정책시행의 효과 검증이 가능해짐으로써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

셋째, 근로장려세제의 효과 분석이 가구단위로 이뤄진 것이 가지는 한계점을 지적할 수 있다. 가구원 중 주소득자와 부소득자 간에 근로장려세제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은연 중에 가구원 전체가 동일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가정하여 효과를 분석하였다. 주소득자와 부소득자간의 행태변화가 다를 수 있음을 전제하는 경우 분석단위도 개별 가구원의 임금소득을 기준으로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강신욱·손창균·남상호 외(2010). **2010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구인회·백학영(2008).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실태와 영향요인. **사회보장연구**, 24(1), pp.175-204.
- 김미곤·여유진·김계연·오지현·신재동·김민희(2010). **2009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한 사회지표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재진·박능후(2005). **한국형 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타당성 및 도입방안 연구**. 대통령자문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 김태완·박지혜(2009).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규모 및 특성**. 제2회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발표문.
- 안종범·송재창(2006). 한국형 EITC 제도 도입의 파급효과와 추진방안. **재정논집**, 20(1), pp.33-71
- 이병희(2010). 근로빈곤의 노동시장 요인과 빈곤 동학. **경제발전연구**, 16(1), pp.93-116.
- 이병희(2011a). **근로빈곤 정의와 추정**. 근간.
- 이병희(2011b).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동향과 전망**, 통권 82호, pp.185-211.
- 이병희(2011c).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한 공식고용 촉진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개원 23주년 기념 토론회 발표문, 2011.10.13.
- 전영준(2008).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의욕 증진효과: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접근. **재정학연구**, 1(4), pp.1-43.

조선주(2009). 근로장려세제(EITC)가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연구. **노동정책연구**, 9(3), pp.29-54.

최현수·이서현(2010).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개편방안의 효과성 분석 및 소득보장체계 연계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홍경준(2010). 사회안전망 적용 실태 분석: 근로빈곤층을 중심으로. 이병희·홍경준 이상은 강병구 윤자영, **근로빈곤의 실태와 지원정책**, 한국노동연구원.

Amuedo-Dorantes, Catalina(2004). Determinants and Poverty Implications of Informal Sector Work in Chile,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52(2), pp.347-68.

Blank, Rebecca M., David Card, and Philip K. Robins.(1999). *Financial Incentives for Increasing Work and Income Among Low-Income Families*. NBER Working Paper No. 6998. Cambridge, Ma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Browning, Edgar K.(1995). "Effects of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on Income and Welfare." *National Tax Journal*, 48(1), pp.23-43.

Cancian, Maria and Arik Levinson.(2006). Labor Supply Effects of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Evidence from Wisconsin's Supplemental Benefit for Families with Three Children. *National Tax Journal*, 59(4), pp.781-800.

Chetty, Raj and Emmanuel Saez.(2009). *Teaching the Tax Code: Earnings Responses to an Experiment with EITC Recipients*. NBER Working Paper No.14836.

Clark, Ken and Nikolaos C. Kanellopoulos(2009). *Low Pay Persistence in European Countries*. IZA Discussion Papers, No.4183.

Crettaz, Eric and Giuliano Bonoli(2010). *Why are Some Workers Poor? The Mechanisms that produce Working Poverty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Working Papers on the Reconciliation of Work and Welfare in Europe, REC-WP 12/2010.

- Devicienti, Francesco, Fernando Groisman and Ambra Poggi(2009). *Informality and poverty: Are these processes dynamically interrelated? Evidence from Argentina*. Working Papers 146, ECINEQ, Society for the Study of Economic Inequality
- Dickert, Stacy, Scott Houser and John Karl Scholz.(1995).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and Transfer Programs: A Study of Labor Market and Program Participation,” in James M. Poterba (ed.), *Tax Policy and the Economy*,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and the MIT Press. pp.1-50.
- Edin, Kathryn & Lein, Laura,(1997). “Work, Welfare, and Single Mothers Economic Survival Strateg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2(2), pp.253-266.
- Eissa, Nada and Hilary W. Hoynes,(2004). Taxes and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of Married Couples: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8, pp.1931-1958.
- Eissa, Nada, and Jeffrey Liebman.(1996). Labor Supply Response to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1(2), pp.605-637
- Ellwood, David T.,(2001). The Impact of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and Social Policy Reforms on Work, Marriage, and Living Arrangements. in B. Meyer and D. Holtz-Eakin (eds.), *Making Work Pay: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and Its Impact on America's Familie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Fouarge, Didier and Richard Layte(2005). Welfare Regimes and Poverty Dynamics: The Duration and Recurrence of Poverty Spells in Europe. *Journal of Social Policy*, 34(3), pp.407-426.
- Greenstein, Robert.(2005).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Boosting Employment, Aiding the Working Poor*. Washington: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Grogger, Jeffrey.(2003). The Effects of Time Limits, the EITC, and Other Policy Changes on Welfare Use, Work, and Income Among Female-Headed Familie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5 (2), pp.394-408.

Hotz, V. Joseph, Charles H. Mullin, and John Karl Scholz.(2005).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and Labor Market Participation of Families on Welfare. In B. Meyer and G. Duncan, eds., *The Incentives of Government Programs and the Well-Being of Families*, Chicago: Joint Center for Poverty Research.

ILO(2003). *Guidelines concerning a statistical definition of informal employment, endorsed by the Sevente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s (November-December 2003)*. ILO.

Liebman, Jeffrey B,(1998). The Impact of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on Incentives and Income Distribution. *Tax Policy and the Economy*, 12, Cambridge, MA: NBER and the MIT Press.

Meyer, Bruce D.(2001). *Taxes, Welfare, and Work by Single Mothers*. NBER Reporter Online. Cambridge, MA: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Meyer, Bruce D., and Dan T. Rosenbaum.(2001). Making Single Mothers Work: Recent Tax and Welfare Policy and Its Effects. In B. Meyer and D. Holtz-Eakin, eds., *Making Work Pay:The Earned Income Tax Credit and Its Impact on America's Familie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Moffitt, Robert,(1992). Incentive Effects of the U.S. Welfare System: A Review.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0(1), pp.1-61.

Mundlak, Yair(1978). On the Pooling of Time Series and Cross Section Data. *Econometrica*, 46(1), pp.69-85.

OECD(2004). *Informal Employment and Promoting the Transition to a*

- Salaried Economy*. Employment Outlook.
- OECD(2008). *Declaring work or staying underground: informal employment in seven OECD countries*. Employment Outlook.
- Stewart, Mark B.(2007). The Inter-related Dynamics of Unemployment and Low-Wage Employment. *Journal of Applied Econometrics*, 22(3), pp.511-531.
- Williams, Colin C. and Piet Renooy(2008). *Measures to tackle undeclared work in the European Union*. Dublin: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 Wooldridge, Jeffrey M.(2005). Simple solutions to the initial conditions problem in dynamic, nonlinear panel data models with unobserved heterogeneity. *Journal of Applied Econometrics*, 20(1), pp.39-54.
- Ziliak, James P.(2004). *Filling the Poverty Gap, Then and Now*. Working Paper 2003-06. Lexington, KY: UK Center for Poverty Research.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비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 - 발간자료 - 간행물회원등록을 통해 가입
-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가입

▶ 회비납부

- 신용카드 결제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019-219956-01-014) 예금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의처

-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협력홍보팀
간행물 담당자 (Tel: 02-380-8303)

Kihasa 도서 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http://www.yes24.com |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

■ 2011년	11-01	u-Health 현황과 정책과제	송태민	9,000원
	11-02	보건의료분야 여건변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자출 및 수입구조에 대한 분석	조재국	미정
	11-03	천서민 건강관리서비스 확충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제도 활성화 방안	이상영	6,000원
	11-04	약제비 지출의 효율화를 위한 고비용 의약품 관리방안	박실바아	5,000원
	11-05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정기혜	7,000원
	11-06	소비자 중심의 유기식품의 관리체계 및 개선방안 -유기가공식품 표시제 중심으로-	곽노성	7,000원
	11-07	저소득층 아동비만 및 저체중문제의 진단과 대응방안	김혜련	6,000원
	11-08	치료에서 예방으로의 패러다임전환에 따른 건강증진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은진	6,000원
	11-09	인구집단 의료이용 형평성 현황 및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김동진	6,000원
	11-10	통일대비 북한 위기상황에 따른 보건복 지대응 방안	황나미	미정
	11-11	건강보험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제고방안	신영석	미정
	11-12	노후준비 실태를 반영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노후소득보장 제도와 관련 복지제도간 연관성을 중심으로	윤석명	미정
	11-13	사회보장제정과 재원조달에 관한 연구	최성은	5,000원
	11-14	보편적복지와 선별적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유근춘	미정
	11-15	장애연금제도 발전방안 연구 -장애·장애·장애인 연금간 효과적인 역할정립 중심으로	신화연	미정
	비발간	해외사회보장제도 정보서비스 제공	강유구	미정
	11-16-1	선진국의 아동사태관리체계비교연구: 영국, 미국,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김미숙	미정
	11-16-2	호주 사회보장체계 연구	여유진	6,000원
	11-17-1	정부의 복지재정지출 DB구축방안에 관한 연구(5차년도): 복지수요와 사회복지재정 수준에 관한 연구	고경환	6,000원
	11-17-2	노인복지서비스 공급방식의 변화와 복지경영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고경환	8,000원
	11-17-3	2011 사회예산분석	최성은	7,000원
	11-17-4	2011 보건복지 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미정
	11-17-5	공적연금 재정평가 및 정책현안 분석	윤석명	미정
	11-17-6	사회복지재정 추계모형개발	원종욱	8,000원
	11-17-7	건강친화적 재정정책 구축을 위한 연구	정영호	5,000원
	11-18	공정사회를 위한 천서민 정책 개선 방안	이태진	미정
	11-19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노대명	7,000원
	11-20	개층구조 및 사회이동성 연구	여유진	미정
	11-21	탈수급 제고를 위한 기초보장 패널구축: 역동성 평가를 위한 양적·질적 패널 구축 및 기초연구	최현수	미정
	11-22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정평가 및 재정추계 기본모형 개발연구	김태완	6,000원
	11-23	공공부조 정책 내용과 집행의 상호조응성 분석 -TANF의 배경과 그 집행의 특징-	이현주	7,000원
	11-24	2011 반곤연계연보	김문길	미정
비발간	비발간	2011 기초보장평가 및 정책대안 모색	이태진	미정
	비발간	2011 기초보장모니터링 및 현장보고	최현수	미정
	11-25	사회복지제도운영체계 국제비교연구: 정부효율성이 높은 국가의 복지서비스행정을 중심으로	강혜규	미정
	11-26	중산층가족의 복지제제도 증진방안 연구	김유경	미정

11-27	다문화가족아동의 사회적응실태 및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김미숙	미정
11-28	지역별 건강수평의 형평성 분석과 정책과제	변용찬	5,000원
11-29	장애노인 서비스 연계방안 연구	김성희	7,000원
11-30	장애인 복지지표를 통해 살펴 본 OECD 국가의 장애인정책 비교 연구	김성희	6,000원
11-31	사회적기업의 사회복지서비스제공 실태 및 운영구조 연구	강혜규	미정
11-32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외국인 유입의 파급효과분석	이삼식	미정
11-33	건강지표 산출을 위한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및 제고방안	정영철	5,000원
11-34	보건복지통계의 품질관리표준화 방안 연구	손창균	6,000원
11-35	사회복지 통계생산 효율화방안 연구	도세록	미정
11-36	한국의 보건복지동향 2011	장영식	미정
11-37-1	출산율 예측 모형 개발	이삼식	6,000원
11-37-2	저출산에 대한 만혼의 영향과 정책과제	김태홍 (외부)	미정
11-37-3	출산관련 행태 변화에 따른 신생아 건강 동향과 정책과제	최정수	7,000원
11-37-4	소득계층별 출산 양육 행태 분석 및 정책방안	김은정	6,000원
11-37-5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백선희 (외부)	미정
11-37-6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이삼식	7,000원
11-37-7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박종서	미정
11-37-8	외국의 이민정책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임정덕 (외부)	미정
11-37-9	베이비 부머의 삶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정경희	미정
11-37-10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노인인력 활용 패러다임모색 OECD 국가별 비교를 중심으로	이소정	미정
11-37-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형평성 평가	이윤경	미정
11-37-1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지출 분석 및 정책방안	선우 덕	8,000원
11-37-13	예방적 관점에서의 효과적인 노인건강관리서비스의 개발 연구-M시 중적연구기관(1)	오영희	6,000원
11-37-14	고령친화여가 산업활성화 방안	김수봉	미정
11-37-15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	오영희	8,000원
11-37-16	저출산대책 관련 국제동향 분석 -스페인·폴란드 판	이삼식	5,000원
11-37-17	선진국 고령사회 대응정책 동향	정경희	미정
11-37-18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관련 쟁점연구	이소정	미정
11-37-19	출산관련 조사자료DB구축	신창우	10,000원
비밀간	국제심포지움	이삼식	미정
비밀간	저출산고령사회연구관련 학술대회	이삼식	미정
11-37-20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유지방안에 관한 연구	김기홍 (외부)	미정
11-37-21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경제적 함의	이삼식	미정
비밀간	저출산고령화와 사회갈등	이삼식	미정
11-37-22	저출산 시대 아동의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방안	(미정) (외부)	미정
11-37-23	저출산고령화대응여성세자영업자생활실태연구	박종서	미정
11-38	보건의료지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06-2010년 결과 보고서-	오영호	8,000원
11-39-1	건강영향평가의 제도화방안 연구	이상영	10,000원
11-39-2	건강도시산업의 건강영향평가 및 기술 지원	김동진	11,000원
11-39-3	아태 지역 유럽 지역의 건강영향평가의 정책동향	최은진	10,000원

	11-39-4	건강영향평가 DB구축	김동진	10,000원
	11-40-1	기후변화 관련 건강문제 적응대책에 대한 평가체계 개발	김남순	9,000원
	11-40-2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사고 위기대응방안 연구	김정선	8,000원
	11-41-1	아시아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홍석표	미정
	11-41-2	한국 보건의료분야 공적개발원조(ODA)의 효율적 운영방안	홍석표	미정
	11-42	취약 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및응급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2차년도)	김승권	11,000원
	11-43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 전략 I: 아동분야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김미숙	13,000원
	11-44-1	한국의 복지실태	남상호	미정
	11-44-2	2011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본 한국의 사회지표	강신욱	8,000원
	비발간	한국의 사회복지분석	남상호	미정
	11-45	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Ⅱ)	정영호	7,000원
	비발간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한 보건의료정책방향 모색	박실비아	미정
	비발간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한 보건의료분석	조재국	미정
	11-46	2011년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미정
	11-47	2011년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3년차)	이연희	미정
■ 2010년	10-01	지역보건의료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이상영	5,000원
	10-02	회귀분석정질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 방안	박실비아	5,000원
	10-03	해외의료시장 개척의 투자효과 분석과 중장기 발전 전략	조재국	7,000원
	10-04	식품안전분야의 사회적 위험 요인 중장기 관리전략 수립	정기혜	6,000원
	10-05	단체급식의 영양관리 개선을 통한 국민식생활 향상 방안	김혜련	7,000원
	10-06	식품안전 규제영향분석의 실효성 제고 방안	곽노성	7,000원
	10-07	식품위해물질 모니터링 중장기 추진 계획 수립	김정선	5,000원
	10-08	건강보험 정책현황과 과제	신영석	7,000원
	10-09	의료비 과부담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	신현웅	5,000원
	10-10	국민연금기금 해외투자 환경 분석을 위한 주요 해외금융시장 비교 연구	원종욱	5,000원
	10-11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이태진	5,000원
	10-12	한국 제3섹터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	노대명	8,000원
	10-13	기초보장제도 생계보장 평가와 정책방향	김태환	7,000원
	10-14	주거복지정책의 평가 및 개편방안 연구 : -기초보장제도 시행 10년 주거급여를 중심으로-	이태진	7,000원
	10-15	자활정책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향	노대명	7,000원
	10-16	2010년도 빈곤통계연보	김문길	8,000원
	10-17	OECD 국가 빈곤정책 동향분석 복지자본주의 체제 변화에 따른 공공부조제도의 조응성 분석	여유진	7,000원
	10-18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개편방안의 효과성 분석 및 소득보장체계 연계방안 연구	최현수	8,000원
	10-19	아동복지정책 유형과 효과성 국제비교	김미숙	6,000원
	10-20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최저수준 설정을 위한 연구: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윤상용	8,000원
	10-21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자중심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강해규	8,000원
	10-22	장애인의 통합사회 구현을 위한 복지정책 연구: 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 복지분야 중간점검	김성희	8,000원
	10-23	민간 복지지원 확충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의 모색	박세경	7,000원
	10-24	자살의 원인과 대책연구: 정신의학적 접근을 넘어서	강은정	5,000원
	10-25	한국 노인의 삶의 변화 분석 및 전망을 통한 노인복지정책 개발	이윤경	7,000원
	10-26	보건복지통계 발전방안 연구	송태민	7,000원
	10-27	보건복지통계 생산 표준화 방안 연구: 메타정보관리를 중심으로	손창균	6,000원
	10-28	한국의 보건복지 동향: 2010	장영식	10,000원
	10-29	지역별 보건통계 생산방안	도세록	6,000원

10-30-1	저출산 원인과 파급효과 및 정책방안	이삼식	17,000원
10-30-2	생애주기 변화와 출산수준 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교육, 경제활동 및 결혼을 중심으로	이삼식	5,000원
10-30-3	결혼행태 변화와 출산율의 상관성 연구	변용관	5,000원
10-30-4	출산관련 의식변화와 출산율간 인과관계 연구	김나영	6,000원
10-30-5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자녀가치와 출산율 관계 연구	김은정	5,000원
10-30-6	저출산의 거시경제적 효과분석	남상호	6,000원
10-30-7	저출산·고령화가 가족형태 및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김은지 (외부)	6,000원
10-30-8	자녀 양육비용 추계와 정책방안 연구	신윤정	6,000원
10-30-9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보험 개편방안	윤석명	7,000원
10-30-10	한국의 인구정책 동향과 전망	장영식	6,000원
10-30-11	입양실태와 정책방안	김유경	10,000원
10-30-12	인공임신중절 실태와 정책과제	최정수	6,000원
10-30-13	저출산 극복을 위한 불임부부 지원사업 현황과 정책과제	황나미	6,000원
10-30-14	저출산·고령화시대 노동력 부족과 인력활용 방안	염지혜	5,000원
10-30-15	저출산정책 효과성 평가 연구	이삼식	5,000원
10-30-16	저출산·고령사회 정보관리체계 및 통계DB 구축방안 연구	송태민	7,000원
10-30-17	산노년층의 특징과 정책과제	정경희	6,000원
10-30-18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정경희	10,000원
10-30-19	예비노년층의 일과 여가에 대한 욕구와 정책적 함의	이소정	6,000원
10-30-20	산노년층(베이비붐세대)의 건강실태 및 장기요양 이용욕구 분석과 정책과제	신우덕	5,000원
10-30-21	산노년층의 소비행태 특성과 고령친화산업적 함의	김수봉	7,000원
10-31-1	2010 사회예산 분석	최성은	8,000원
10-31-2	2010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9,000원
10-31-3	정부의 사회복지재정 DB구축에 관한 연구(4차년도): DB의 활용성 측면을 중심으로	고경환	7,000원
10-31-4	사회복지 재정지출과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연구	최성은	6,000원
10-31-5	복지경영의 이론적 논의와 과제	고경환	6,000원
10-31-6	공적연금 재정평가 및 정책현안 분석	윤석명	7,000원
10-31-7	건강보험 재정평가	신영석	5,000원
10-32-1-1	건강도시 건강영향평가 사업 및 기술 지원 제1권	김동진	8,000원
10-32-1-2	건강도시 건강영향평가 사업 및 기술 지원 제2권	김동진	11,000원
10-32-2	건강영향평가 DB 구축	서미경	5,000원
10-32-3	건강마을의 건강영향평가	최은진	5,000원
10-33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3년차)	오영호	9,000원
10-34	보건사회 기후변화 모니터링센터 운영 (1년차)	신호성	14,000원
10-35	취약위험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1년차)	김승권	10,000원
10-36	아시아 복지국가 자료 및 전략센터 구축 (1년차): 아시아 국가의 사회안전망	홍석표	8,000원
10-37-1	2010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강신욱	14,000원
10-37-2	2009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한 사회지표 분석	김미곤	6,000원
10-38-1	2008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 보고서(Ⅱ)	정영호	11,000원
10-38-2	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 보고서(Ⅰ)	정영호	7,000원
10-39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10년차)	정영철	7,000원
10-40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2년차)	이연희	5,000원